

최종보고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직접 피해지원 계획수립 연구용역

2008. 11

연구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직접 피해지원 계획수립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1월

주관연구기관명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대 표 자 : 남 계 춘

공동연구기관명 : 군산대학교수산과학연구소
대 표 자 : 박 성 우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2
제3절 연구방법	4
제2장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방안 연구	5
제1절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5
1. 개념 및 요건	5
2. 농업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쌀,과수) 사례분석	7
제2절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시행계획(안)	15
1. 목적 및 추진방향	15
2.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세부 시행계획(안)	16
제3절 기관별 역할 및 표준프로세서(SP)	38
1. 사업신청단계	38
2. 지급대상 선정단계	39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39
4. 자금배정단계	40
5. 이행점검단계	41
6. 성과측정단계	43
7. 성과목표	43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44
제4절 수산부문 소득보전직불제 Manual(안) 제시	45
1. 목적	45
2. 시책 및 추진방향	45
3. 근거법령	45
4. 연도별 지원계획	45
5. 사업시행요령	46
6.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안)	51
제5절 도상연습 및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위원회 기능	70
1. 도상연습 대상 어업인 및 종사자 현황	70
2. 도상연습	73
3.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관련 위원회 기능	79
제6절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D/B구축 계획(안)	84

1. 농업부문 농업경영체 등록추진 현황	84
2. 수산부문 D/B 계획(안)	86
3. 소 결	88
제3장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91
제1절 대상품목(업종) 선정기준	91
1. 평가 기준 선정을 위한 절차	91
2. 대상품목 (업종) 선정의 기준	91
제2절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산출방법 및 지급절차	92
1.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92
2.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및 지급절차	95
제4장 연근해 어선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연구	99
제1절 기존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분석	99
1.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배경	99
2. 연근해어업어선 감척현황분석	100
제2절 연근해 어선 폐업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103
1. 기존 연근해어선감척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03
2. 연근해어선감척체계의 입찰제 도입	104
3. 한미FTA체결에 따른 연근해어업 영향분석	105
제5장 폐업지원금지급을 위한 추진체계 연구	109
제1절 과거 원양어선 감척사례 및 추진체계 분석	109
1. 과거원양어선 감척사례분석	109
2. 원양어선 감척추진체계 분석	112
제2절 폐업 대상자자격조건 및 자격 확인 방안 등 제시	114
1. 폐업대상자 지원대상 및 조건	114
2. 폐업대상자 자격확인 방법	117
제3절 최종폐업대상자결정, 지원액 산정 및 지급방법수립	119
1. 사업대상자선정방법	119
2. 폐업대상자 지원액 산정	119
3. 지원금 지급절차 및 방법	121
제6장 폐업지원금 지급방식 연구	125
제1절 현행 연안 감척사업 방식인 부분 입찰제 분석	125
1.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입찰제 도입배경	125
2. 연안 감척사업의 부분입찰방식	126

제2절 기존 폐업지원금 지급방식인 개별 평가식 분석	127
1. 기존 폐업지원금 지급방식	127
2. 개별 평가식 폐업지원금 방식의 문제점	127
제3절 영업수익 및 잔존가치 동시입찰제 분석	128
제4절 원양어업 입찰제 도입에 대한 어업인 선호도분석	131
제5절 어선·어구처리방안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방법검토	132
제 7 장 원양어선 업종별 수익성 분석	135
제1절 수역별 수익성 분석	135
1. 업체별 수익성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계획	135
2. 설문 회수 결과	139
제2절 수익성분석을 위한 추가자료 수집	143
1. 추가자료 수집과 분석	143
2. 추가수집 자료의 분석결과	145
제3절 업종별 수익성 분석	146
1. 폐업지원 대상 업종의 선택	146
2. 폐업지원 대상 업종의 수익성 분석	149
제 8장 원양어업 업종별 폐업 정성적 요인 분석	151
제1절 연안국의 입어 정책 요인	151
1. 호주	151
2. 쿡 제도	151
3. 피지	153
4. 마셜공화국	154
5. 뉴질랜드	154
6. 팔라우	155
7. 파푸아 뉴기니	155
8. 솔로몬제도	156
9. 통가	157
10. 투발루	158
11. 웨스턴사모아	159
12. 아르헨티나	160
13. 캐나다	160
14. 인도	161
15. 인도네시아	162
16. 말레이시아	163
17. 미얀마	163

18. 페루	164
19. 러시아	164
20. 미국	165
21. 베트남	166
22. 연안국 입어정책 요인에 대한 요약 및 결론	167
제2절 폐업의 정성적 요인	165
1. 폐업의 정성적 요인 선정	165
2. 폐업의 정성적 요인에 대한 업종별 영향도	165
3. 업계의 폐업 의지 분석	166
제9장 원양어선 업종별 폐업 우선순위 및 물량 연구	171
제1절 폐업 우선순위 및 물량 결정을 위한 절차 개요	171
제2절 단계1-업종별 과거 수익성 분석 결과	172
제3절 단계2-한미FTA로 인한 각 업종별 직접피해 산정	173
제4절 단계3-폐업 대상 업종 선정	178
제5절 단계4-폐업 우선순위 결정 절차	179
1. 한미FTA 직접 피해만 고려할 경우	179
2. 한미FTA 직접 피해 & 정성적 요인 동시에 고려한 경우	179
3. 폐업지원 대상 업종 선정	190
제6절 수역별, 업종별, 연도별 폐업 물량	191
1. 업종별 현황과악	191
2. 물량배분 시 고려할 제약 조건	193
3. 연도별 폐업 물량배분 최적화	194
제 10 장 폐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금산정	203
제1절 입찰제 도입방안 연구	203
1. 입찰제도의 장단점분석	203
2. 입찰절차 및 방법	204
3. 입찰방식 비교검토	209
4. 담합방지 방안 및 낙찰자 계약포기에 대한 대책방안	210
제2절 입찰 기초가격 산정	212
1. 기존 원양어선감척사업 지원조건분석	212
2. 입찰기초금액 산정대안	213
3. 입찰예정가격산정	214
제11장 어선·어구 등 처리방안 검토	215
제1절 정부매입 또는 선주임의 처리방안 검토	215

1. 정부매입 처리방안	215
2. 선주임의 처리방안	215
제2절 정부매입시 어선·어구 처리방안 검토	217
1. 감척어선을 고철로 처리하는 방안	217
2. 감척어선의 재활용 방안	217
3. 폐선 처리에 관련된 법령	218
제12장 폐업(구조조정)에 의한 전업 및 실업대책	221
제1절 업종별 선원수 및 선원수급실태	221
1. 업종별 선원수	221
2. 선원수급 실태	223
3. 선원 수급상의 문제점	224
제2절 업종별 실업선원 산출	226
제3절 감척선원 실업수당 소요액 산정	230
제4절 감척선원 실업수당 지급주체 분석	236
1. 선원법에 의한 실업수당 지급	236
2. 과거 감척사업 시의 실업수당 지급실태	236
3. 원양어선 감척시의 실업수당 지급 주체	237
4. 감척 어선원에 대한 고용보험법 이용 권유	237
제5절 감척선원의 전업대책 검토	239
1. 실업에 대비한 전업가능 형태	239
2. 선원으로의 재취업 알선	240
3. 해운·수산물관련 분야로 취업시키는 방안	243
4. 교육훈련을 통한 전업 안내	244
5. 어선감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정책 방안	245
제13장 폐업어선의 처리실태분석	247
제1절 과거 연근해 감척어선 처리실태 분석	247
1. 연근해어선의 용도별활용형태	247
2. 감척어선을 재활용 형태별 구체적인 내용	248
3. 폐선처리주체	251
제2절 과거 원양어선 처리실태 분석	252
1. 원양어선처리 기준	252
2. 원양어선처리 실태	252
3. 원양어선 폐선처리주체	253
4. 원양감척어선 처리방안	253

부 록 I	i
1. 어업별 (기대)평년수익액	i
2. 어선·어구 잔존가치액	ii
가. 선령별 잔존가액	ii
나. 의장품 등의 가액	ii
다. 고철가액	ii
3.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 폐업지원금 지급 방법의 주요내용 비교	v
부 록 II	vi
한미 FTA체결에 따른 원양어업 폐업지원금 집행지침	vi
부 록 III	xxxiv
원양어업 업종별 수익성 조사	xxxiv

〈표 목 차〉

<표 2-1> WTO 농업협정문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 보조정책	6
<표 2-2> 농업분야 허용(녹색정책) 직접지불금 요건	7
<표 2-3> 사업목적 및 개요 비교(쌀, 과수)	8
<표 2-4> 사업대상자 비교(쌀, 과수)	9
<표 2-5> 지급요건 비교(쌀, 과수)	10
<표 2-6>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산출방법	10
<표 2-7>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금 산출방법	11
<표 2-8>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방법	11
<표 2-9> 사업신청단계 담당기관별 역할	12
<표 2-10> 사업자 선정단계 담당기관별 역할	13
<표 2-11> 자금배정단계 담당기관별 역할	14
<표 2-12>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시행 목적 및 추진 방향	16
<표 2-13> 수산부문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자 개념 정리	17
<표 2-14> 한미 FTA로 인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요건(안)	18
<표 2-15>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어업별 생산 감소액 추정	19
<표 2-16>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품종별 생산 감소액 추정	19
<표 2-17> 명태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0
<표 2-18> 명태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20
<표 2-19> 민어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1
<표 2-20> 민어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21
<표 2-21> 고등어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2
<표 2-22> 고등어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22
<표 2-23> 넙치류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3
<표 2-24> 넙치류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23
<표 2-25> 대구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4
<표 2-26> 대구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24
<표 2-27> 가자미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5
<표 2-28> 가자미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25
<표 2-29> 계류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6
<표 2-30> 계류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26
<표 2-31> 꽃게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6
<표 2-32> 계류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27
<표 2-33> 오징어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7
<표 2-34> 오징어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27
<표 2-35> 아귀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8

<표 2-36> 아귀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28
<표 2-37> 뱀장어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9
<표 2-38> 뱀장어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29
<표 2-39> 키조개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29
<표 2-40> 키조개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30
<표 2-41> 콩치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30
<표 2-42> 콩치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30
<표 2-43> 볼락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31
<표 2-44> 볼락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31
<표 2-45> 서대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31
<표 2-46> 서대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32
<표 2-47> 서대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32
<표 2-48> 가오리의 생산량 및 수입 비중	32
<표 2-49> 돔류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33
<표 2-50> 돔류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33
<표 2-51> 수산분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방법	35
<표 2-52>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세부 시행계획(안)	37
<표 2-53> 사업신청단계의 담당기관 및 역할	38
<표 2-54> 지급대상 선정단계의 담당기관 및 역할	39
<표 2-55>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의 담당기관 및 역할	40
<표 2-56> 자금배정단계의 담당기관 및 역할	41
<표 2-57> 이행점검단계의 담당기관 및 역할	41
<표 2-58> 성과측정의 담당기관 및 역할(제제)	43
<표 2-59> 성과목표의 지표 및 측정방법(안)	43
<표 2-60> 수산부분 소득직접지불사업 사업평가 방법	44
<표 2-61> 연도별 지원계획	45
<표 2-62> 한미 FTA로 인한 소득직불금 지원대상(안)	46
<표 2-63> 시범사업 대상품목별 어업인 및 종사자 현황(전체)	70
<표 2-64> 원양어업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 및 종사자	71
<표 2-65> 연근해 시범사업 대상품목	72
<표 2-66> 양식 및 내수면어업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	73
<표 2-67> 원양어업 도상연습 계획일정	74
<표 2-68> 양식어업(넙치) 도상연습 계획일정	75
<표 2-69> 민어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해당여부 분석	76
<표 2-70> 민어(원양)의 직불금 도상연습 시나리오	77
<표 2-71> 민어(원양) 도상연습 시나리오별 지급단가 산정	77
<표 2-72> 민어(원양) 도상연습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조정계수 0.8적용)	78

<표 2-73> 민어(원양) 도상연습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조정계수 0.85적용) 78	78
<표 2-74> 민어(원양) 도상연습 소득보전 지불불금 산출(조정계수 0.90적용) … 78	78
<표 2-75> 민어(원양)의 조정계수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정 …………… 79	79
<표 2-7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실무위원 주요내용 …………… 80	80
<표 2-7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81	81
<표 2-7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82	82
<표 2-79> 농업경영체 등록제 고려 수산부문 소요인력 추정 …………… 88	88
<표 2-80> 수산부문 D/B구축 계획(안) …………… 90	90
<표 3-1> 업종별 폐업 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 항목 …………… 91	91
<표 3-2> 어선.어구 처리방안 및 입찰기준가격 산정방법 …………… 93	93
<표 3-3> 지원금 규모에 따른 대안 …………… 94	94
<표 3-4> 연안어업감척사업 추진절차 …………… 96	96
<표 4-1> 연안어업어선 감척물량('05년~'07년) …………… 100	100
<표 4-2> 근해어선 연도별 감척물량 및 감척예산 …………… 101	101
<표 4-3>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연도별 감척물량 및 계획 …………… 102	102
<표 4-4> 입찰제 도입으로 인한 연안어선감척사업비 절감액내역 …………… 105	105
<표 4-5> 연안어선감척사업비 절감액 총액 …………… 105	105
<표 4-6> 품목별 양허유형 …………… 106	106
<표 4-7> 어업별 생산 감소액(단위 : 억원) …………… 106	106
<표 4-8> 한미 FTA체결에 따른 연근해어업 지원방안 …………… 108	108
<표 5-1> 원양어업의 구조조정내역(총괄) …………… 110	110
<표 5-2> 북해도트롤어업 구조조정현황('98~'99) …………… 110	110
<표 5-3> 콩치붕수망어업 구조조정현황('00~'02) …………… 111	111
<표 5-4> 오징어채낚기어업 구조조정현황 ('02-'03) …………… 111	111
<표 5-5> '04년 감척어선 및 폐업보상비 지급현황 …………… 112	112
<표 5-6>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어업 선정분포 …………… 115	115
<표 5-7> 원양어업업종별 선질분포 …………… 115	115
<표 5-8> 어선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비 …………… 115	115
<표 5-9> 연근해 및 기존원양어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조건 …………… 120	120
<표 6-1> 연안어업의 어선감척사업의 부분입찰제에 따른 시행절차 …………… 126	126
<표 6-2>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 분리 또는 동시입찰의 장단점 …………… 129	129
<표 6-3> 혼합(부분)입찰 원양어선감척사업추진 절차 …………… 130	130
<표 6-4> 어선.어구 처리방안 …………… 132	132
<표 6-5> 폐업대상어선 톤급별 분포 …………… 133	133
<표 6-6> 어선규모별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가격 …………… 134	134
<표 7-1> 표본 추출 방법의 종류 …………… 135	135
<표 7-2> 표본 추출 방법의 장단점 …………… 136	136

<표 7-3> 업종별 원양어선 톤급별 세력 분포	138
<표 7-4> 설문회수 결과의 업종 분포	139
<표 7-5> 설문회수 결과의 업종 분포	141
<표 7-6> 업종별 매출액영업이익률	142
<표 7-7> 업종별 수익성 비율	145
<표 7-8> 한미 FTA로 인한 업종별 생산 피해 규모	147
<표 7-9> 폐업지원 대상 업종 선정	148
<표 7-10> 폐업지원 대상 업종의 3년 평균 영업수익액	150
<표 8-1> 폐업의 고려 요인	165
<표 8-2> 폐업 고려요소에 대한 업종별 영향도 설문양식	166
<표 8-3> 연도별 폐업희망 어선 수 통계	167
<표 8-4> 폐업희망 어선수를 토대로 한 업종별 폐업 희망 지수	168
<표 8-5> 입찰기초가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169
<표 9-1> 수익성 분석 결과 요약	172
<표 9-2> 한미FTA의 각 품목별 양허결과	173
<표 9-3> 주요 어종의 생산규모 분석 (생산량 기준)	174
<표 9-4> 주요 어종의 생산규모 분석 (생산금액 기준)	175
<표 9-5> 원양 품목 별 한미FTA의 피해 규모 추정	175
<표 9-6> 주요 어종-업종 간 관련도	176
<표 9-7> 한미 FTA로 인한 업종별 생산 피해 규모	177
<표 9-8> 한미 FTA로 인한 업종별 수익률 변화 추정	178
<표 9-9> 업종별 폐업우선순위 (한미FTA피해만 고려)	179
<표 9-10> 폐업 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 기준	180
<표 9-11> Irreducible Stochastic인 경우 대행렬의 수렴	185
<표 9-12> Reducible Stochastic인 경우 대행렬의 수렴	185
<표 9-13> 폐업의 고려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	186
<표 9-14> 업종별 경영 수익성	187
<표 9-15> 폐업 고려요소에 대한 업종별 영향도	188
<표 9-16> 폐업 고려요소에 대한 업종별 영향도	189
<표 9-17> 업종별 폐업우선순위(한미FTA피해& 정성적요인 동시고려)	189
<표 9-18> 폐업지원대상업종 선정결과(한미FTA피해&정성적요인동시고려시) ·	190
<표 9-19> 원양어업 업종별 현황	191
<표 9-20> 원양어업 업종별 선령 현황 (합작선 제외)	192
<표 9-21> 원양어업 업종별 연차별 폐업 추진실적	193
<표 9-22> 한미FTA 수산 부문 재정지원 계획	194
<표 9-23> 폐업 물량 배분 시나리오 구분	195
<표 9-24> 폐업 시나리오-개괄 <A-1>	198

<표 9-25> 폐업 시나리오-상세 <A-1>	198
<표 9-26> 폐업 시나리오 <A-1>에 따른 폐업업종의 폐업 비율	198
<표 9-27> 폐업 시나리오-개괄 <A-2>	199
<표 9-28> 폐업 시나리오-상세 <A-2>	199
<표 9-29> 폐업 시나리오 <A-2>에 따른 폐업업종의 폐업 비율	199
<표 9-30> 폐업 시나리오-개괄 <B-1>	200
<표 9-31> 폐업 시나리오-상세 <B-1>	200
<표 9-32> 폐업 시나리오 <B-1>에 따른 폐업업종의 폐업 비율	200
<표 9-33> 폐업 시나리오-개괄 <B-2>	201
<표 9-34> 폐업 시나리오-상세 <B-2>	201
<표 9-35> 폐업 시나리오 <B-2>에 따른 폐업업종의 폐업 비율	201
<표 9-36> MRR 5% 고려 시 추가 소요예산 (3년 수익의 70% 고려)	202
<표 9-37> MRR 5% 고려 시 추가 소요예산 (3년 수익의 100% 고려)	202
<표 10-1> 입찰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204
<표 10-2> 원양어업감척사업의 입찰관련 내용	207
<표 10-3> 입찰신청접수에 따른 입찰구분	210
<표 10-4> 06년 연안어업감척사업의 입찰예정가대비 낙찰율	213
<표 10-5>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지원규모 및 방법	214
<표 12-1> 원양어선 어업종류별 선박척당 내·외국인 선원수(단위: 명)	222
<표 12-2> 원양어선 어업종류별 선박척수 및 총선원수(단위: 척, 명)	222
<표 12-3> 북양트롤의 어선·어구에 대한 미보상시의 년차별 감척물량	226
<표 12-4> 감척물량 <A-1> 및 <A-2>에 따른 실업예상 선원수(단위: 척, 명)	227
<표 12-5> 북양트롤의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시의 년차별 감척물량	228
<표 12-6> 감척물량 <B-1> 및 <B-2>에 따른 실업예상 선원수(단위: 척, 명)	229
<표 12-7> 원양어선 업종별 월고정급(단위: 천원)	231
<표 12-8> 원양어선 업종별 평균적인 월고정급 및 통상임금(단위: 천원)	232
<표 12-9> 원양어선 감척에 의한 년차별 실업수당 예상액(단위: 명, 천원)	234
<표 12-10> 최근 5년간 원양어선 어선원 취업현황(단위: 척, 명, %)	241
<표 12-11> 원양 어선원 수급전망(단위: 명, %)	242
<표 13-1> 연근해폐업어선재활용실적(1999~2006)	247
<표 13-2> 공공기관 폐어선 활용사례	249
<표 13-3> 원양어업의 감척내역	252
<표 13-4> 어선처리주체별 특성 분석	25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4
<그림 2-1> 자금배정 절차 도식화	41
<그림 2-2> 사업추진 체계도	48
<그림 3-1> 원양어업폐업지원금 산출과정	97
<그림 3-2> 원양어업폐업지원금 지급절차	98
<그림 4-1> 기존 평가에 의한 연근해 어선감척체계	103
<그림 5-1> 원양어업어선감척을 위한 현재의 평가체계	113
<그림 5-2> 기존원양어업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지급절차	121
<그림 5-3> 원양어업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및 방법	124
<그림 6-1> 원양어선감척을 위한 현재의 평가체계	127
<그림 6-2> 입찰제 도입여부 및 입찰신청방법에 대한 의견	131
<그림 7-1> 설문조사 절차	137
<그림 9-1> 폐업 물량 결정을 위한 연구 절차	171
<그림 9-2> 폐업 대상 업종 결정을 위한 절차	180
<그림 9-3> ANP의 수행절차	183
<그림 10-1> 연안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절차	205
<그림 10-2> 연안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절차	206
<그림 10-3> 원양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절차	207
<그림 10-4> 담합방지용 각서(예시)	211
<그림 12-1> 감척 후 다른 직업으로의 전업 가능성	239
<그림 12-2> 감척 후 다른 직업으로의 전업가능 형태	240
<그림 12-3> 감척 후 전업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	240
<그림 13-1> 폐업어선재활용 및 처리실태(1999-2006년)	248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수산업분야의 경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농업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제6조의 “폐업지원금”에 근거하여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수산업분야에서도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 FTA 체결에 따른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미 FTA 이행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을 원하는 업종(품종)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세부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지급 사업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지급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방법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서(Manual)를 작성하고자 한다.

○ 특히, 한미 FTA 체결 등 대외 어업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세력을 구조조정하여야 하고 아직 원양어업분야의 구조조정계획은 미수립 상태이기 때문에 원양어업 분야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연구를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 본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대책방안으로서 직접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소득보전직불금 및 원양어업의 폐업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방법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제2절 연구범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1)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세부시행계획, (2) 원양어업폐업 지원금 지급 세부시행계획」이며 과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방안 연구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
 - 대상품목 선정기준(합리적 사후지정 방안)
 -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등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침서(Manual) 작성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도상연습계획 마련 및 실시
- 농림분야 소득보전직불제도 비교 연구

(2)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

- 대상품목(업종) 선정기준(합리적 사후지정 방안)
-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등
-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침서(Manual) 작성

(3) 연근해 어선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연구

- 기존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및 처리실태 분석
- 연근해 어선 폐업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4) 폐업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진체계 연구

- 과거 원양어선 감척사업 및 처리실태 분석
- 폐업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자격 확인 방안 등 제시
- 최종 폐업 대상자 결정, 지원액 산정, 지급 방법 수립

(5) 폐업지원금 지급방식 연구

- 현행 연안 감척사업 방식인 부분 입찰제(영업수익입찰 후 개별 잔존가치평가)의 장단점
- 과거 연근해 및 원양어업에서 시행한바 있는 폐업지원금 지급방식인 개별 평가식(선박별 영업수익+ 선박별 잔존가치)의 장단점
- 새로운 폐업지원금 지급방식으로서 전부(영업수익+ 잔존가치) 입찰제 장단점

(6) 원양어업 업종별 수익성 분석(합작선 포함)

- 수역별, 업종별 수익성 분석(단, 소수 수역 업종은 인근 수역에 포함)
-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원양협회 보관 경영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수익성 분석

(7) 원양어업 업종별 감척 정성적 요인 분석(합작선 포함)

- 연안국의 입어 정책 요인 조사
- 업계의 감척 의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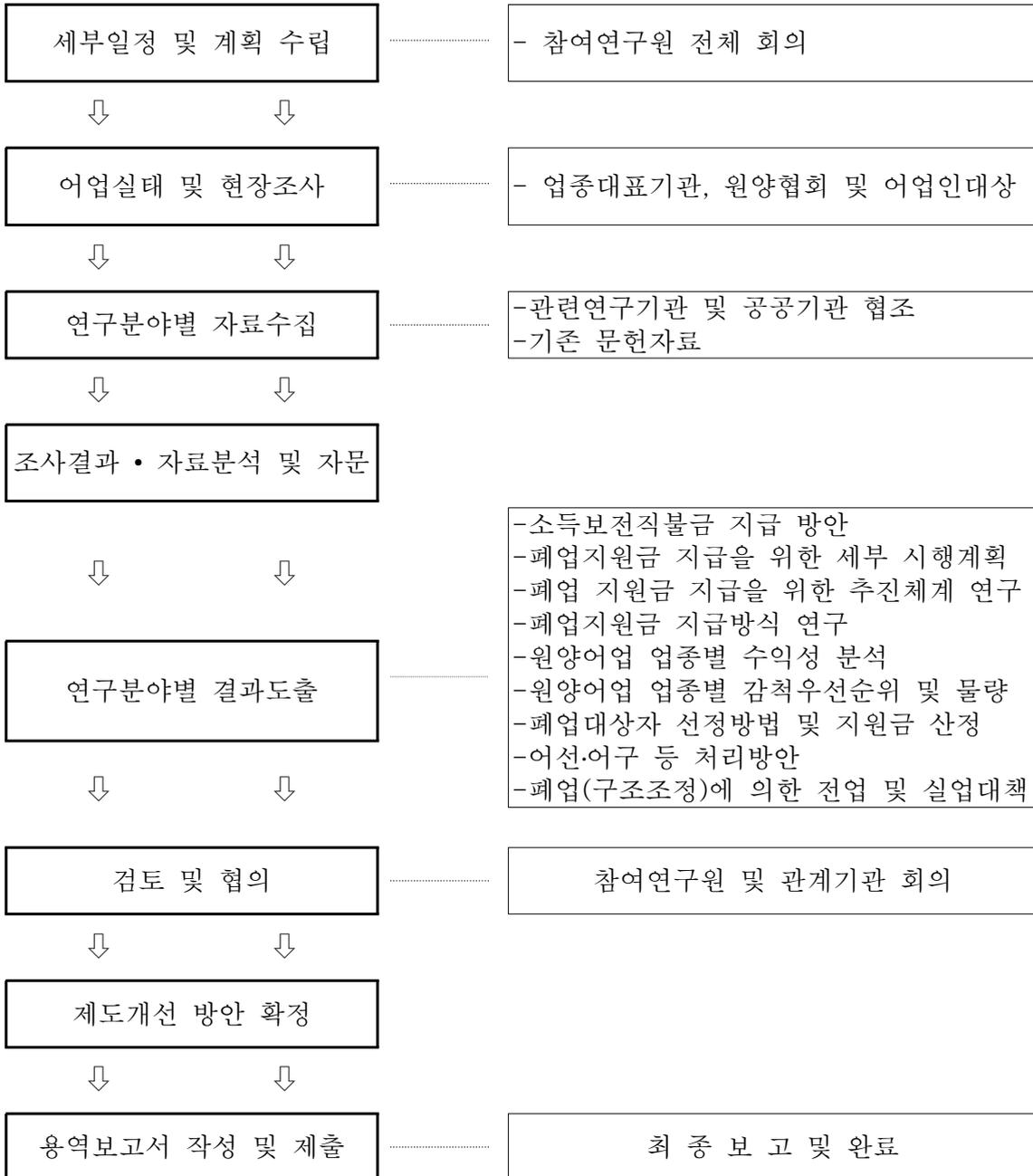
(8) 원양어업 업종별 감척 우선순위 및 물량 연구

- 업종별 감척 우선순위 제시
- 수역별, 업종별, 연도별 감척물량 제시
- (9) 폐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금 산정
 - 입찰제 도입방안 연구 (입찰절차 및 방법, 담합방지 방안, 추진주체별 역할 등)
 - 입찰 기초가격 산정(제1차년도 감척 업종)
 - 영업수익 산정 : 평년 수익액의 3년분
 - 영업수익을 고려한 입찰 기초가격 산정
- (10) 어선·어구 등 처리방안 검토
 - 정부매입 또는 선주임의 처리방안 검토
 - 정부매입시 어선·어구처리방안 수립
- (11) 폐업(구조조정)에 의한 전업 및 실업대책
 - 업종별 선원수(내외국인 구분), 선원수급실태 등
 - 업종별 실업선원 산출
 - 감척선원 실업수당 소요액 산정
 - 감척선원 실업수당지급주체에 관한 검토
 - 감척선원의 전업대책 검토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수행방법은 <그림 1-1>의 연구수행체제도와 같다.

<그림 1-1> 연구수행체제



제2장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방안 연구

본 장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농림분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제도 분석, 피해예상품목 대상 도상연습 등을 통해 수산분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및 지침서(안)를 작성하고, 아울러 각 단계별 관련 기관의 역할 정립 등 세부추진(안)을 제시하였다.

제1절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 개념 및 요건

가. 일반적 개념

직접지불(Direct Payment)¹⁾은 시장기능을 통해 생산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서 생산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가격지지정책과는 달리 정부재정에서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재정이전의 소득보조정책이다.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OECD에서 가격지지 중심의 농정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이것이 UR협상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주로 OECD(1990,1994)보고서의 용어인 직접소득지불(Direct Income Pay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경제적 시장왜곡 최소화라는 전제하에 생산에 대한 중립성과 목표지향성을 추구하게 된다. 여기서, 생산중립성이란 직접지불금이 생산수준에 영향이 적거나 생산요소 투입 혹은 생산량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목표지향성이란 재정이전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 주어진 재정규모 하에서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비효율성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각각 의미한다.

1) 직접지불금에는 직접지불(Direct Payment), 직접소득지지(Direct Income Support), 직접소득지불(Direct Income Payment), 디커플링(Decoupling)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직접지불(Direct Payment):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2」, 정부의 공공재정에 의해 지불되는 보조금 중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보조금
 - 직접소득지지(Direct Income Support) 및 직접소득지불(Direct Income Payment): 「OECD 보고서(1987)」, 공공재정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고 생산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모든 소득보조금
 - 디커플링(Decoupling): 「OECD 보고서(1987)」,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생산과 소비보조의 완전한 분리)

나. 농업협정을 통해 본 직불금 요건²⁾

현재, 수산부문의 보조금 협상과 관련 직불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미미한 점을 감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농업부문의 직불제를 통해 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UR농업협정에서는 시장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가격정책의 보조를 감축하는 대신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특정품목의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부분적으로 직접지불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국내보조를 분류하고 있다.

<표 2-1> WTO 농업협정문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 보조정책

구분		내용
허용	녹색정책 (green box) ※부속서 제2조 5-15항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 연구, 보급, 교육, 검사, 농업·농촌기반정비, 유통촉진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 -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 및 국내식료원조 ○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 생산과 분리된 소득지지/소득의 대폭 감소 보상 -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 - 구조조정원조(은퇴·탈농지원, 농지전용 및 투자원조) - 환경대책 및 낙후지역 등 지원원조 대책
	청색정책 (blue box) ※부속서 제6조 5항	○ 생산제한계획에 기초를 둔 직접지불로서 다음 조건 어느 하나에 합치하는 정책 - 일정시점에서 고정된 면적 및 단수를 기준으로 한 직접지불 -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의 생산에 대한 직접지불 - 일정 시점에서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
	최소허용보조 (De-minimis) ※부속서 제6조 4항	○ 녹색 또는 청색 이외의 정책이지만 - 품목 특정한 정책으로 AMS합계가 해당 농산물 생산액의 5%이내의 것 - 품목 특정이 아닌 정책으로 AMS합계가 총농업생산액의 5% 이내의 것 ※ 단, 개발도상국의 경우 두 항 모두 10%이하의 정책
감축	황색정책 (amber box) ※부속서 제2조 1항	○ 위에서 열거한 감축대상 정책을 제외한 농업생산자를 위한 모든 국내보조 정책 - 시장가격지지, 감축대상 직접지불 투입재 보조 및 유통비용 절감 등

자료: 이명현, 농업에서의 직접지불제도, 「재정포럼」, 2000.4.

한편, 감축대상이 되지 않는 허용정책들은 크게 녹색정책과 청색정책들로서 녹색정

2) 직불금의 유형은 제주발전연구원(2005), 「제주지역 발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내용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임.

책 중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지불금 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WTO 규정은 허용가능 직접지불금 요건을 나열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들 직불금은 기본적으로 무역왜곡효과 또는 생산지지효과가 전혀 없든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공적인 정부계획을 통해 생산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녹색정책 보조금의 유형에는 소득안정정책 직접지불, 재해대책 직접지불, 구조조정 직접지불, 환경정책 직접지불, 지역정책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WTO협정 부속서에서 그 요건들을 상세히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2-2> 농업분야 허용(녹색정책) 직접지불금 요건

직접지불금 유형	주요 내용
수입보험, 소득안정화정책 (수입보험제도, 소득안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수입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 또는 과거 5년 동안 최고, 최소연도를 제외한 3년간 평균수입보다 3할이상 감소 ○ 보전액: 감소액의 7할 미만 ○ 제한: 대상작물을 특정하지 않는 등 생산의 형태 및 양 등에 연계되지 말아야 함
재해대책 (작물보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자연재해에 의하여 과거 3년간 평균생산량 또는 과거 5년동안 최고, 최소연도를 제외한 3년간 평균생산량보다 3할이상 감소 ○ 보전액: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장래의 생산량 또는 생산유형을 요구해서는 안됨 ○ 제한: 생산자가 수입보험, 소득안정화정책에 대한 지원을 동일한 연도에 받는 경우 총소득손실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됨
구조조정정책 (탈농 및 휴경 보상, 투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농: 상업적 농업생산에서 영구적인 탈농 ○ 휴경: 최소3년간 시장판매목적의 농지를 휴경하거나, 축산의 경우 도축이나 영구적인 처분 ○ 투자: 객관적·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대응, 생산자의 재정적·물리적 구조조정사업에 한함
환경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정책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소득손실을 지원
지역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생산자 ○ 보전액: 당해지역 농업생산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소득손실금액 ○ 제한: 대상작물을 특정하지 않는 등 생산의 형태 및 양, 국내·국제가격 등에 연계하지 않아야 함

자료: 김태곤, 농정개혁의 국제적인 동향과 직접지불제, 「농촌경제」, 제22권 제1호, 1999.

2. 농업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쌀,과수) 사례분석

WTO체제 출범이후,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직접지불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97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시작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1999년), 논농업 직접지불제(2001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2002년), 생산조정제(2003년), 조건불리지역 및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2004년),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2005년, 단 지급실적 없음) 등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소득보전과 관련이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와 과수산업소득보전 직불제를 중심으로 사업내용, 사업추진 표준프로세스(SP) 및 기관별 역할 등을 살펴봄으로써 수산부문의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계획안 작성에 반영하고자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개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DDA/쌀협상으로,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이들 소득직불제에 대한 사업의 목적 및 개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3> 사업목적 및 개요 비교(쌀, 과수)

구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
목적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폭 확대에 따른 쌀농가소득 안정 도모	한·칠레 FTA 이행에 따른 과수농가 경영안정 도모
근거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방식/품목	사전지정고사: 쌀	사전지정고사: 시설포도, 키위
성과목표/지표	<성과목표> 생산농가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의 97.5%이상 유지 <성과지표>: 농가소득지지율 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수확기 쌀값+직불금을 백분율화 ※ 다음연도 2월에 산출	<성과목표> 직불제 발동요건 충족시 피해농가에 직불금 지급 <성과지표>: 피해농가지원율 보상농가수/보상농가발생수×100 ※ 다음연도 1월에 산출
재정투입계획	'07년 이전(실적): 5조4천22억 '08년도(계획): 1조2천446억 '09년 이후: 9천485억 ※ 고정직불금(당해년도 10월)과 변동직불금(다음연도 3월)합계	'07년도 이전(실적): 없음 '08년도(계획): 1천200억 '09년 이후: 5천806억

나. 주요내용

사업시행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자, 지원요건, 직접지원금 산출방식으로 구분하여 비

교하였다.

먼저, 사업대상자와 관련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자와 대상농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과수산업소득 직접지불제는 지급대상자만을 규정하고 있다.

<표 2-4> 사업대상자 비교(쌀, 과수)

구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
지급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대상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등 ※농업인등: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제외대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 ※농업인등: 쌀소득지불과 동일 ○직불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신청서 제출 조건
지급대상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제외대상: 하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제외 농지 규정(열거) 	규정 없음

둘째, 지급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두 사업이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가격요인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변동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고정 직접지불금과 기준(목표)가격대비 국내가격하락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FTA체결에 따른 해당품목의 국내수입요건과 국내가격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각 사업별로 지급요건을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5> 지급요건 비교(쌀, 과수)

구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
특징	○고정,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변동직불금에 한해 가격요건 적용	○수입요건과 가격요건 동시 충족
지급요건	○고정 직접지불금: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 충족시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면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변동 직접지불금: 고정직접지불금요건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충족 -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수입요건 -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칠레산 수입량비율이 10%이상 + 전년대비 수입량 증가 -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칠레산 수입비율 10%미만 + 전년대비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수입량산출시점 포도(1-6월),키위(4-5월) ○가격요건 -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당해연도 평균가격: 주출하시기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단위중량당 가격 ※주출하시기: 시설포도(3-6월), 키위(전년11-5월)

셋째, 직불금 산출방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이원화해서 보조하고 있으며, 과수산업소득 직접지불금은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보조금을 산출하고 있다.

<표 2-6>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산출방법

구분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특징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원/㎡)×대상농지면적(㎡)
항목별 개념	○지급단가: 별도고시 - 농업진흥지역 안: ha당 746천원(㎡당 74.6원) - 농업진흥지역 밖: ha당 597천원(㎡당 59.7원) ○대상농지면적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농지로 확정한 농지의 면적을 말함 ※ 단, 하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지원대상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면적은 해당하지 않음
지급시기	당해연도 10월

〈표 2-7〉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금 산출방법

구분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금
특징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61가마(80kg)×벼재배면적(m ² /10,000m ²)
항목별 개념	○변동직불금 지급단가(80kg 기준) - [(목표가격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85%]-고정직불금 단가 ※목표가격: 170,083원/쌀80kg('05-07년산 적용)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조사 ※수확기: 당해연도 10월~다음해 1월 ※고정직불금 단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가중평균가격
지급시기	다음해 3월

〈표 2-8〉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방법

구분	산출방법
특징	국내가격 하락과 연동하여 지급
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산출항목별 개념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확인한 실제재식수 > 표준재식주수 : 신청재식수 인정 확인한 실제재식수 < 표준재식주수 : 산정(실제재식수×표준비율) ※표준재식수: 시설포도(올타리식 100주, 평덕시 20주), 키위(20주)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작물통계조사(농림통계연보)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 ※작물통계조사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발표 농산물소득조사에 의함 ○ 지급단가 = (기준가격-당해연도 평균가격)×80% - 기준가격: 시설포도 4,560원/kg, 키위 1,700원/kg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주출하시기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임 - 당해연도 평균가격: 지원대상품목의 주출하시기 동안에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위중량당 가격 ※주출하시기: 시설포도(3-6월), 키위(전년 11월-5월)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정관리자로 지정된 지방공사에서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물량을 말함 ○ 조정계수 - 당해 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지급신청총액(산출결과 1을 초과 불가) ※허용보조액: 품목총생산액×10%(WTO 허용보조율) ※조정계수는 지급총액이 WTO 최소허용 보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으로 지급신청총액이 WTO 최소허용보조를 초과할 경우에만 최소허용보조액과 같아지도록 조정
지급시기	별도 지정 없음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표준프로세스는 사업신청단계, 지급대상 선정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상황 관리 등 (이행점검/성과측정/사업평가 및 환류)으로 크게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각 단계에 따라 담당기관별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담당기관이란 농림수산물부(사업총괄기관), 시도 혹은 시군구(사업주관기관), 생산자 단체, 농업인 및 기타 관계기관 등을 말한다.

1) 사업신청 단계

정부기관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하달 및 홍보하고, 이에 따라 피해 농가가 당해연도의 직불금 지급신청을 하는 단계로서 담당기관별 역할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9> 사업신청단계 담당기관별 역할

구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
농림수산물부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 사업 집행지침 수립→시도에 하달	좌동
시도(시군구)	○사업내용 공고 및 홍보 - 관계기관협조(농업기술센터,농관원, 한국농촌공사, 농협 등) ※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및 홍보책자 배포, 반상회 홍보 등	○사업내용 공고 및 홍보 - 시도(혹은 시군구) 게시판에 10일이상 공고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	해당사항 없음	○ 농림수산물부에 직불금 지원심사 요청 ※ 농림수산물부 직권 심사 요청 가능
농업인(신청인)	○신청기간: 매년 1월~2월 ○신청기관: 주소지관할 읍,면, 동사무소 ○신청서류 제출 ※ 직불금 등록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경작자 증명서류 등	○신청시기: 지원계획시달시 통보 ○신청기관: 시군구(담당부서) ○신청서류: 지급신청서 및 농업인 입증서류

2) 사업자 선정단계

상기의 사업신청단계가 완료되면 사업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인의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이 단계는 시군구등 사업주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표 2-10〉 사업자 선정단계 담당기관별 역할

구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
읍면동사무소	○검증할 사항: 매년 3~4월 - 읍면동장은 대상농지 및 신청인 자격,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해당사항 없음
시도(시군구)	○지급대상자 등록: 4월말 - 읍면동장 확인사항을 확정하여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증 교부: 5월말 -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신청인은 등록증교부후 14일이내 읍면동장에게 의의신청 가능 ○지급대상 관리 및 이행상황 종합점검: 6-8월 - 의의신청 사항, 지급대상 농지 및 신청인 자격변경 등 ○지급대상 확정: 9월 ○지급대상 통보/보조금 요청 : 시군구→농림수산식품부(9월)	○확인기간: 사업신청 이후 ※농업기술센터와 합동 ○검증할 사항 - 지원대상적합성 여부, 사업신청내용 사실관계, 신청인 자격 등 ※ 필요시 현장조사 확인 ○ 지급대상자 확정 ※농정심의회 심의
한국농촌공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6-8월 - 농지경계, 용·배수 등 - 실질 비재배여부 등 ○점검결과 시군구 통보: 9월	해당사항 없음
농촌진흥청	○토양검사: 6-11월 ○점검결과 시군구 통보:12월	해당사항 없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잔류농약검사: 6-11월 ○점검결과 시군구 통보:12월	해당사항 없음

3) 자금배정단계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지급단가, 조건, 예산집행 등의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표 2-11> 자금배정단계 담당기관별 역할

구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직접지불금: 시도에 배정 ○ 직접지접지불금 농협중앙회 통보 ※시도별 지급명세서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직불금 배정 확정 및 통보: 농림수산식품부→시도
시도(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직접지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별 소요액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 확정→시도배정→시군구에 전금 ○ 변동직접지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급명세서보고 - 시군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급사무소에 지급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별 세부계획서 취합후 시도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 시달된 예산 시군구에 재배정 ○ 시군구는 배정내역에 따라 신청인(과수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농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불금 지급명세서에 의거 시군지부 및 지급사무소에 전금 ○ 시군지부 및 지급사무소는 시군구 지급의뢰에 근거 농업인(신청인)에게 직불금 지급 	해당사항없음

4) 이행관리 등

직불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이후 관리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써 사업추진 단계별로 담당기관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아울러 사업이 완료된 이후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지침의 수정 및 개선 사항 발생시 이를 보완하여 추진하는 평가 및 환류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외에도, 사업주관기관인 시군 등은 직불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직불금 지급 이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였거나, 기타 직불금 회수가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있다.

제2절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시행계획(안)

1. 목적 및 추진방향

가. 목적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합법적 보조금인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는 1987년 WTO 농업협정 당시 사용된 일종의 정부지원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생산자에 대해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정책을 통칭하는 것이다(WTO 농업협정문부속서2, OECD 보고서, 1987).

직접지불제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인 '소득보전직불제'는 FTA(자유무역협정)등과 같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국산 상품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생산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에서 UR 이후 농가소득 감소의 충격 완화장치로 1997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실시되었고, 2004년부터 2010년(7년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동 연구와 관련하여 수산부문 소득보전직불제의 목적은 한-미 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미국산 수산물의 수입증가로 국산수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추진방향

수산부문 소득보전직불제의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둘째, 당해연도 국내 생산량대비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으로 증가하고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지원³⁾, 셋째,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은 한미 FTA발효이후 한시적(7년간/231억원 계획)으로 운영한다.

다. 근거법령

근거법령으로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이며⁴⁾ 동 조문에서는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

3) 특정품목이 지원대상 품목과의 대체제품이거나 연관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미 FTA이행으로 인하여 동 품목의 가격이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품목을 지원대상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으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2-12>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시행 목적 및 추진 방향

구분	세부내용	비고
목적	○한·미 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미국산 수산물 수입 증가로 국산수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농업부문과 유사
추진 방향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당해연도 국내 생산량대비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으로 증가하고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지원 ※ 단, 대체관계 및 연관관계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시 수입량 비율이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품목에 포함 가능 ○지원사업은 WTO협정발효이후 한시적으로 운영 - 사업시행기간 : 7년간 231억원 계획	한·미FTA 발효 이후 적용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세부 시행계획(안)

한-미 FTA발효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한·미 FTA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세부시행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원양 및 연근해에서 실제 어획 또는 양식하는 어업인 등)으로 한다.

또한, 지원대상품목의 어획실적 확인은 원양어업의 경우 당해 품목의 반입물량을 신고한 서류를 근거로 하고, 연근해 및 양식은 해당 어업인의 경우 계통판매실적은 수협 위판자료를 근거로 하되, 비계통 판매부분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 인정된 것에 한한다. 여기에서 비계통 판매 증빙서류는 입출금 거래통장

4) 이하 본범이라함

5) 어업인등이란 본법 제4조(어업인등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어업인 및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함

<어업인등의 정의 및 범위>

내역,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물품 보관증, 소득세신고 등 명확한 거래금액이 표시되는 서류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⁶⁾

해당되는 어업인들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이며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 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2-13> 수산부문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자 개념 정리

구분		지원대상자	비고
대상품목	원양	○원양산 품목 및 물량은 원양산업협회 신고한 서류 - 원양산은 국내산으로 인정받기위해 신고(관세청) - 대부분 원양산업협회 부산지부에 신고 - 관할 지역은 부산시(감천항 원양전용부두 소재)	원양통계 참조
	연근해 및 양식	○신청인의 수협 계통판매실적 ○비계통(사매매)의 경우 어업인이 증빙서류로 관할 관청 신고 ※사매매 : 거래통장내역, 세금계산서, 소득세신고 등 명확한 거래금액이 표시되는 서류만 인정	사매매 문제
지급신청서 제출		○해당되는 어업인들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신청서
지원대상자		○단기: 피해신청 어업인으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장기: 직불품목 D/B관리어가로 등록된 자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자 -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 어업인은 지원대상 제외	단계별 추진

근거법령	세부내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전업어업인)	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 등에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수산업법 (영어조합법인)	5명 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협동적 어업경영, 수산물의 공동출하·공수출 등 통한 어가소득 증대목적으로 설립한 경영체

6) 직불금 산출금액이 지원대상자의 신청금액 중에서 입증된 실적에 근거하여 지급됨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경우 사매매 입증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사매매의 입증에 대해 명확한 근거 및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연근해 어업형태별 사매매 증빙서류 및 제한사항>

구분	증빙서류	제제사항
어선어업	[통장거래]: 입출금 통장사본 ※단, 입금자의 상호 혹은 성명표시 [현금거래]: 입금표 및 물품보관증 [세금계산서]: 법인명의 판매분	증빙서류 이외 생산실적 불인정 (불인정 해당분 만큼 지불금 감소)
양식어업	[통장 및 현금거래]: 상동 [세금계산서]: 법인명의 판매분 [소득세 신고 혹은 소득세 납부증명서]	상동
비고	근거: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책임입증주의 인정범위: 각 항목별로 중복되는 금액은 1건만 인정	

나.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보완대책(안)”안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산분야의 경우는 한미 FTA로 가격이 최근 5개년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에 비해 80%이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품목으로 한다⁷⁾.

이러한 지원요건을 농업부문과 비교하면,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의 경우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수산부문은 생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표 2-14> 한미 FTA로 인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요건(안)

구분	수산부문	과수산업소득보전
지원 요건	<가격하락 > ○한미 FTA로 가격이 최근 5개년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에 비해 80%이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품목 ※가격: 생산가격(어업생산통계)	<가격하락>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가격: 도매가격 기준
	<수입량 증가 ⁸⁾ >: 다음중 하나에 해당 ○국내생산량 대비 미국산 수입량 비율이 10%이상 ⇒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 ⇒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단, 대체관계 및 연관관계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시 수입량 비율이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품목에 포함 가능	<수입량 증가> ○좌동

자료 :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보완대책(안)(07.6.29), 과수산업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2007)

다. 지원대상 가능품목(안)

지원대상 품목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FTA로 가격이 최근 5개년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에 비해 80%이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품목으로 하고,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 차이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합리적 사후지정 방안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서 합리적 사후지정방안이란 ‘FTA이행지원위원회’(FTA농어업특별법 제16조)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업종)을 사후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이는 ‘수입

7)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보완대책[안](2007.6.29, 해양수산부)

8) 수입량 증가 여부는 수입량 비율 10%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0%이상이면 당해연도에 전년도보다 그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당해연도 수입량 비율이 10%이하인 경우는 전년도보다 그 비율이 5%P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증가로 피해를 입는 전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FTA 체결로 인한 품목별 영향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품목별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⁹⁾.

동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8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¹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연평균 185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추정되었다.

<표 2-15>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어업별 생산 감소액 추정
(단위 : 억원)

구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281	234	286	323
원 양	185	165	185	206
연 근 해	54	33	59	71
양 식	38	34	38	42
내 수 면	4	2	4	4

※ 15년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의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감소액을 산출

다음으로 생산 감소가 가장 큰 품종은 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 순으로 민어의 경우 연평균 117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었다.

<표 2-16>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품종별 생산 감소액 추정

구 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281	234	286	323
민 어	117	113	117	121
명 태	57	44	55	71
넙 치	37	34	37	40
오 징 어	15	10	17	19
대 구	13	9	15	15
기 타	42	24	45	57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관, 최종 협상 결과를 토대로 생산감소, 수입증대, 수출증대 및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추정하였고, 이에 대해 민간(수협, 원양협회) 및 전문가(수산회, 부경대, 명지대 등)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

10) 단, 명태의 합작물량을 포함할 경우 향후 15년간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360억원으로 증가

지원대상 가능 주요품목은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자료 등을 기초로 한-미 FTA체결에서 주요 민감 품목으로 분석된 17개 품목별 현황(명태 합작 제외) 및 한-미 FTA 양허 피해예상액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명 태

국내 소비 어류의 11.5%를 점유하며 주로 찌개, 부침개 등으로 사용되는 명태는 평균 150,339톤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에서 주요 민감 품목임을 감안하여 15년에 걸쳐 철폐(10년간의 유예기간 후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표 2-17> 명태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명태	냉동	원양	150,339	138,977	15년	30%	5,671 ¹¹⁾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우리나라 전체 어류생산량과 비슷한 규모인 연간 약 150만톤의 명태를 생산하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약379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냉동 명태수입의 7.8%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명태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명태(냉동)	1,522,000	237,306	48,459	3,792	7.8
명태(필레트)			26,913	519	2

세계 최대 명태 생산국가인 미국은 명태를 원어 상태로 소비하지 않고(미국내 수요가 없음), 가공품(연육, 피렛트 등)의 형태로 수출을 하거나 자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에 체결에 따라 명태 조정관세(30%)를 철폐할 경우 연간 약 57억원의

11)합작물량 포함시 15년평균 생산량 감소액은 13,573백만원으로 증가함

생산액감소가 예상되며 미국산 명태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명태시장을 지배 할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수역에서 어렵게 쿼타를 확보하고 입어료(연간 33백만\$, '06년 기준)를 지불하며 조업하고 있는 북양트롤업계 전체가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미국이 냉동명태를 원어 상태로 수출하기 위해 명태연육의 생산을 줄일 경우 명태연육 가격이 급등하여 국내 연관산업(게맛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 민 어

국내 소비 어류의 1%를 점유하며 주로 채수용, 찌개, 구이용 등으로 사용되는 민어는 평균 19,363톤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에서 주요 민감 품목임을 감안하여 12년에 걸쳐 철폐(8년간의 유예기간 후 4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었다.

연간 1,200톤의 민어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1,000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냉동 민어수입의 0.02%에 해당된다.

<표 2-19> 민어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민어	냉동	연근해	1,426	12,549	12년	63%	11,715
		원양	17,937	72,741			
		합계	19,363	85,290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표 2-20> 민어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민어(냉동)	12,000	12,184	4,585	1	0.02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경쟁국어선(현지 또는 주변국어선)에 비하여 입어료 및 선원 임금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관세('06년: 63%)를 부과해 업계를 보호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미국에서 수입이 거의 없지만 민어의 관세가 높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산 민어 수입이 급증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어를 주 어업으로 하고 있는 해외트롤어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동 어업에서 어획되는 민어는 기타 어종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충해 주는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어의 관세가 폐지될 경우 미국산 민어는 가장 큰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어, 연간 약 117억원의 생산액감소가 예상된다.

(3) 고등어

국내 소비 어류의 8.0%를 점유하며 주로 구이용, 간고등어, 통조림 등으로 사용되는 고등어는 평균 140,432톤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에서 주요 민감 품목임을 감안하여 12년에 걸쳐 철폐(8년간의 유예기간 후 4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표 2-21> 고등어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고등어	냉동	연근해	140,432	183,018	12년	10%	281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연간 약 4만톤의 명태를 생산하는 미국은 고등어가 주로 통조림용으로 사용되어 자국 소비는 낮으며 따라서 자원의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3,238만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냉동 고등어 수입의 1.1%에 해당한다.

<표 2-22> 고등어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고등어(냉동)	46,000	10,598	32,378	369	1.1

고등어의 자국 소비비중이 낮은 미국은 고등어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북대서양에 상당한 자원량이 있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어획량이 증가 하여 대규모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등어는 국내 소비어류의 8%를 차지하는 대중어종으로 특정 업종의 의존도(대형선망 85%)가 높고, 특정지역(부산 87%)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수입 증가로 국내산 고등어 가격이 하락 될 경우, 이를 만회하려는 업계의 조업 강화로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TAC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등어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연간 약 3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4) 넙치류

국내 소비 어류의 1.1%를 점유하며 활어회, 신선회, 탕류 등으로 사용되는 넙치는 평균 40,738톤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에서 주요 민감 품목임을 감안하여 12년에 걸쳐 철폐(8년간의 유예기간 후 4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표 2-23> 넙치류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기타넙치	냉동	연근해	2,049	24,909	12년	10%	3,711
	활어	양식	38,689	381,152			
	합계		40,738	406,061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연간 약 5만2,000톤의 명태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약 316만달러를 수입(기타넙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타넙치 수입의 17.4%에 해당한다.

<표 2-24> 넙치류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넙치(냉동)	52,000	218,371	851	2	0.2
넙치기타(냉동)			18,144	3,159	17.4

고가의 어종으로 주요 양식어종인 넙치류는 대부분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지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전남·제주 73%) 관세 철폐시 해당지역의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넙치 양식은 일정규모 이상 육지 생산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촌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넙치 양식 사료는 사료업계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넙치양식과 관련한 다른 산업에도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2006년 기준 미국 넙치 수출의 15%가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고 미국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시 수입증가가 우려되며 특히 미국이 국내 싱싱회 판매를 목적으로 품질강화를 통해 수출을 증대할 경우 수입증가로 이어져, 양식어가 및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싱싱회 보급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넙치류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연간 약 37억원의 생산액감소가 추정되었다.

(5) 대구

국내 소비 어류의 1.0%를 점유하며 탕류, 찜류 등으로 사용되는 대구는 <표 2-25>에서와 같이 생산량은 평균 12,201톤이며, 한-미 FTA체결에 따라 신선냉장의 경우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내, 냉동의 경우 국내 소량 생산·소비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5년내 철폐로 합의하였다.

<표 2-25> 대구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대구	신냉	연근해	4,574	16,564	10년	10%	1,280
	냉동	원양	7,627	10,765	5년		
	합계		12,201	27,329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연간 약 27만톤이 넘는 대구를 생산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신선냉장은 연간 약 20만달러, 냉동의 경우 약 647만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대구 수입의 4.5%(신선냉장), 35.2%(냉동)에 해당한다.

<표 2-26> 대구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대구(신냉)	276,000	183,691	4,391	200	4.5
대구(냉동)			18,356	6,470	35.2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총 냉동 대구 수입금액이 약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철폐시 가격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에 수출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구의 생산감소액은 연간 약 13억원으로 나타났다.

(6) 가자미

국내 소비 어류의 0.2%를 점유하며 탕류, 부침개 등으로 사용되는 가자미는 평균 15,745톤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되었다.

<표 2-27> 가자미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가자미	냉동	연근해	15,745	112,321	10년	10%	218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연간 약 16만톤 가까이 가자미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냉동의 경우 연간 약 62만 달러, 냉동(피레트)의 경우 약 23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자미 수입의 32.1%(냉동), 36.6%(냉동 피레트)에 해당한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자미의 생산감소액은 약 2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2-28> 가자미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가자미(냉동)	148,000	65,400	1,914	615	32.1
가자미피레트(냉동)			636	233	36.6

(7) 게류(대게 붉은대게 등)

국내 소비 패류 및 갑각류 중 5.8%를 점유하며 탕류, 찜류, 수출용 게살 등으로 사용되는 게류의 생산량은 평균 35,837톤이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표 2-29> 계류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계류	냉동	연근해	35,837	132,656	10년	20%	268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미국의 연간 가자미 생산량은 약 7만톤이며, 이 중 우리나라는 연간 약12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계류 수입의 0.6%에 해당한다. 관세 철폐에 따른 계류의 생산감소액은 약 3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2-30> 계류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기타계(냉동)	73,000	321,726	18,638	117	0.6

(8) 꽃 게

국내 소비 패류 및 갑각류 중 2.4%를 점유하며 장류, 탕류 등으로 사용되는 꽃게의 생산량은 평균 4,430톤이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표 2-31> 꽃게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꽃게	신냉	연근해	4,430	66,171	10년	14%	330
	냉동	연근해			10년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연간 약 8만톤의 꽃게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꽃게 수입의 0.06%에 해당한다. 향후 관세 철폐에 따른 꽃게의 생산감소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32〉 계류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꽃게(신냉)	77,000	147,590	72,031	45	0.06
꽃게(냉동)					

(9) 오징어

국내 소비 연체류 및 갑각류 중 31.3%를 점유하며 횡감류, 탕류 등으로 사용되는 오징어는 평균 307,054톤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표 2-33〉 오징어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오징어	냉동	연근해	199,657	399,253	10년	24%	1,522
		월양	107,397	123,492	10년		
		합계	307,054	522,745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오징어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비중은 연간 약 7만톤의 꽃게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약 2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오징어 수입의 1.8%에 해당한다.

〈표 2-34〉 오징어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오징어(냉동)	71,000	54,508	10,528	197	1.8

현재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징어의 양이 미미하나 높은 관세(24%)가 철폐되면 미국산 오징어의 가격경쟁력이 증가되어 수입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오징어의 생산감소액은 약 15억원으로 나타났다.

(10) 아귀

국내 소비 어류의 0.5%를 점유하며 탕류, 찜류 등으로 사용되는 아귀의 평균 생산량은 11,853톤이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체결되었다.

<표 2-35> 아귀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아귀	냉동	연근해	11,853	28,026	10년	10%	240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연간 약 2만3,000톤의 아귀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약 26만 달러(냉동: 25만 달러, 신냉: 1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아귀 수입의 46.3%에 해당한다.

<표 2-36> 아귀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아귀(냉동)	23,000	36,168	54,055	24,756	45.7
아귀(신냉)			2,387	1,393	58.3

우리나라 전체 아귀 수입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아귀의 생산감소액(냉동 기준)은 약 2억원으로 예상된다.

(11) 뱀장어

국내 소비 어류의 0.7%를 점유하며 구이, 찜개, 가공용 등으로 사용되는 뱀장어는 평균 6,342톤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37〉 뱀장어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뱀장어	활어	내수면	6,342	93,219	10년	30%	350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뱀장어의 미국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입액은 약 2만불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지 않는 미국산 뱀장어는 높은 관세율(30%)이 철폐될 경우 대량 수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뱀장어의 향후 생산감소액은 약 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38〉 뱀장어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뱀장어(활어)	-	-	19,011	-	-

(12) 키조개(개이지살)

국내 소비 어류의 0.6%를 점유하며 무침, 횃감 등으로 사용되는 키조개의 평균 생산량은 6,3484톤이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표 2-39〉 키조개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개이지살 (키조개)	냉동	연근해	3,778	10,425	10년	20%	74
		양식	2,606	5,434			
		합계	6,384	15,859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연간 약 2만7,000톤의 키조개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약 99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키조개 수입의 21.4%에 해당한다. 관세 철폐 따른 키조개의 생산감소액은 약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2-40> 키조개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키조개(냉동)	27,000	275,683	4,589	986	21.4

(13) 콩치

국내 소비 어류의 0.4%를 점유하며 구이, 통조림 등으로 사용되는 콩치는 평균 28,411톤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체결되었다.

<표 2-41> 콩치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콩치	냉동	연근해	3,363	5,749	10년	36%	223
		원양	25,048	23,351			
		합계	28,411	29,100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우리나라는 연간 약 7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콩치 수입의 0.3%에 해당한다. 관세 철폐 따른 콩치의 생산감소액은 약 2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2-42> 콩치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콩치(냉동)	-	-	22,614	74	0.3

(14) 불락

국내 소비 어류의 1.2%를 점유하며 활어회, 선어회, 찌개 등으로 사용되는 불락의 평균 생산량은 28,079톤이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

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표 2-43> 불락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불락	냉동	연근해	4,960	39,443	10년	10%	559
	활어	양식	23,119	190,692			
	합계		28,079	230,135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연간 약 3만7,000톤의 불락을 생산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약 125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냉동 불락 수입의 17.5%에 해당한다. 향후 관세 철폐 따른 불락의 생산감소액은 약 5억500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44> 불락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불락(냉동)	37,000	21,757	7,130	1,252	17.5

(15) 서 대

국내 소비 어류의 0.1%를 점유하며 탕류, 찜류 등으로 사용되는 서대는 평균 3,026톤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표 2-45> 서대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서대	냉동	연근해	1362	8,210	10년	10%	-
		원양	1664	4,248			
	합계		3,026	12,458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연간 약 12만5,000톤의 불락을 생산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약 3000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냉동 불락 수입의 0.07%에 해당한다.

<표 2-46> 서대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서대(냉동)	125,000	40,248	3,824	3	0.07

(16) 가오리

국내 소비 어류의 1.3%를 점유하며 탕류, 찜류 등으로 사용되는 가오리는 평균 8,579톤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47> 서대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15년 평균, 단위 백만원)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가오리	냉동	연근해	2,631	14,884	10년	10%	705
		원양	5,948	6,871			
	합계	8,579	21,755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연간 약 2만7,000톤의 가오리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약212만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오리 수입의 15%에 해당한다. 향후 관세 철폐 따른 가오리의 생산감소액은 약 7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2-48> 가오리의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가오리(냉동)	27,000	7,526	14,086	2,124	15

(17) 돔류

국내 소비 어류의 0.1%를 점유하며 활어회, 찌개 등으로 사용되는 돔의 평균 생산

량은 3,018톤이며, 한-미 FTA체결에서는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10년(비선형철폐)철폐를 시행하기로 체결되었다.

<표 2-49> 돔류의 생산 및 양허결과에 따른 생산감소

대상 품목		생산('04-'06)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생산액감소
어종	품목 (HS)	어업별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돔	냉동	연근해	3,018	31,949	10년	10%	116

자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결과(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4)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분석(KMI, 2007.5)

연간 약 5,600톤의 돔을 생산하는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관세철폐시 약 50톤 가량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생산감소액은 약 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50> 돔류의 미국 생산량 및 수입 비중

품목	미국 생산		한국 수입(천\$)		
	생산량(톤)	생산액(천\$)	전체	미국	비중(%)
돔(신냉)	5,600	7,361	4,123	-	-

라. 지원기간 및 산출방법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한미FTA 체결 및 이행에 따른 미국산 수입으로 인한 국내 어가의 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업인 소득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것으로 현행의 본법에 근거하여 한미FTA이행 이후 한시적으로 7년간 운영한다.

한편, 소득직불금의 산출방법과 관련 본법에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에 지급단가 및 조정계수를 곱하여 직불금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 품목별 직불금 = 품목별 평균생산량* × 지급단가(기준가격** - 당년 평균가격***)
× 조정계수

* 품목별 평균생산량 : 어업생산통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득보전직
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별·어종별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
량(본법 시행규칙 별표1)

(1)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 어선톤당 평균생산량×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2) 양식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당년 평균가격의 차액에 위원회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
- 기준가격 : 지원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 심의비율(80%)을 곱한 가격

- 당년 평균가격 : 어업생산통계(통계청)에 의한 지원대상품목의 주어기 동
안의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본법 시
행규칙 별표1)

*조정계수: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
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함(본법 제3조)

자료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지원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산분야 소득직불금 산출과 관련 본법의 규정중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품목별 평균생산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
인지원특별법)에 의하면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별, 어종별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
산량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 동 개념에 의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생산능
력과는 무관하게 지급되게 되는데, 수산업의 경우 어장이나 어업인의 생산능력에
따라 개인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경우지원대상자간의 형평성의 문
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법의 제4조 단서규정에 따라 생산면적 또는 생산
량 기준으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
므로 수산분야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어획실적에 따라 산출함
을 원칙으로 한다.¹³⁾

12) 농업의 경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나 과수산업소득보전직불금은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 기준으로 소득보전
직불금을 산출하고 있음

13) 수산업의 경우는 농업과 달리 어장의 규모나 장소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생산면적이나
생산량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둘째, 지급단가는 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정계수는 농업협정에 한정된 사항으로 수산분야 소득보전 직불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보전비율(85%)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표 2-51> 수산분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품목별 직불금 = 품목별 생산량* × 지급단가**(기준가격 - 당년 평균가격) × 보전비율(0.85)

* 품목별 생산량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1년간¹⁴⁾의 계통 및 비계통 출하 실적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실적중 입증된 생산량

(1) 계통출하 : 지구별 수협에 위판된 위판실적

(2) 비계통출하 :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된 실적

※ 증빙서류: 입출금통장사본, 입금표(물품보관증), 세금계산서, 소득세신고서 등

*지급단가: [기준가격 - 당년 평균가격]의 차액

- 기준가격 : 지원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 심의비율(80%)을 곱한 가격

- 당년 평균가격 : 어업생산통계(통계청)에 의한 해당 품목의 주어기 동안의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 보전비율: 지원대상품목의 가격하락이 100% 한미FTA 발효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일정비율로 보전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85% 비율 적용)

마. 시행주체 및 지급방법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의 시행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이고, 지원형태는 100% 정부보조로 실시한다.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통장계좌로 직불금을 입금시켜야 하고, 통장입금시 어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직불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¹⁵⁾

14) 품목별 생산량의 입증기간으로서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간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로 주어기를 반영하여 1년미만의 기간으로 함. 예를 들어, 2009년 10월1일자로 고시를 한 경우를 가정하면, 해당 품목의 생산량 입증기간은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의 생산량 자료가 됨. 단, 특정품목의 주어기를 감안할 경우, 해당품목의 주어기가 7월부터 11월이라 할 경우에 그 입증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지원을 고시하는 시점에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15) 지급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첫째, 수발기금→수협→해당어업인, 둘째 기금→시·군·구

바. 소 결

지금까지 살펴본 한·미 FTA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세부 시행계획(안)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 품목과 관련 원양어업은 당해 품목의 반입물량을 신고한 서류를 근거로 하며, 연근해 및 양식은 계통판매 실적(지역별 수협이 위판 자료) 및 신청인이 신고한 비계통 실적(입출금 통장내역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소득세신고서 등의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해당 어업인들은 어업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이며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 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한-미 FTA로 인해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미국산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하거나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품목별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품목을 선정한다.

지원대상 품목은 KMI에서 제시한 한-미 FTA체결에 따른 17개 민감어종을 우선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한-미 FTA 발효 이후 7년간(예산 231억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업의 시행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라고, 지원형태는 100% 정부보조로 실시한다.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통장계좌로 직불금을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통장입금시 어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직불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

→수협→해당어업인, 셋째, 기금→시·군·구→해당어업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52>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세부 시행계획(안)

구 분		세부 시행계획(안)	비고
대상 품목	원양	○ 원양산 품목 및 물량은 원양산업협회에 신고한 서류	원양통계 참조
	연근해 및 양식	○ 지구별 수협외 계통판매실적 ○ 비계통(사매매)의 경우 어업인이 증빙서류로 관할 관청 신고시에만 인정 ※ 입출금 통장내역서, 세금계산서, 소득세신고서 등	사매매 문제
지급신청서 제출		○ 해당되는 어업인들은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 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신청서
지원대상자		○ 단기: 피해지원 신청 어가 ○ 중장기: 직불품목D/B화 관리 등록어가 ※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 어업인은 지원대상 제외	D/B 관리 어가
지원요건		○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당해연도 수입량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거나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이면서 당 해연도 수입량 비율이 전년도보다 5%이상 증가 ※ 단, 대체관계 및 연관관계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시 수 입량 비율이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품목에 포함 가능 ○ 한미 FTA로 가격이 최근 5개년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에 비해 80%이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품목	해수부 자료 (‘07.6.29)
지원품목		○ 사후지정방안 : ‘FTA이행지원위원회’에서 지급요건을 충 족하는 품목(업종)을 사후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이는 ‘수 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전 품목 ※ 민감품목 가정: 민어, 명태, 기타넙치, 오징어, 대구, 가 오리, 볼락, 홍어, 뱀장어, 꽃게, 고등어, 게류, 임연수어, 아귀, 쾡치, 가자미, 떡장어, 돔 등	FTA 농 어업 특별 법 제16조
지원기간		○ 한미 FTA발효이후 7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발효후
예산(안)		○ 7년간 231억원(예정)	-
산출방법		○ 품목별 직불금 = 품목별 생산량 × 지급단가(기준가격 - 당년 평 균가격) × 보전비율(85%)	-
시행주체 및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정부보조 100%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로 직불금 입금	-

제3절 기관별 역할 및 표준프로세서(SP)

수산분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진행과정은 사업신청단계 → 사업자 선정단계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자금배정단계 → 이행점검단계 → 성과측정단계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 담당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신청단계

소득보전지불금 지급을 위한 첫 번째 진행단계로서 담당기관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2-53> 사업신청단계의 담당기관 및 역할

기 관	역 할
농림수산 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및 관련기관(원양산업협회, 수협 등)에게 통보
시·도 (시·군·구)	○ 사업내용공고 - 시·군·구에서는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시·군·구(읍·면·동) 및 관련기관(수협 위판장)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 시·군·구는 관련기관(수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원양어업은 원양산업협회
어업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신청기관 : 지원대상어업인 관할 시·군·구 -신청서류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반입신고서(원양), 판매실적,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어획, 양식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서류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농림수산식품부, 각 시·도,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신청단계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시행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각 시·도는 통보받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시·군·구(읍·면·동)와 관련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 및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대상어업인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2. 지급대상 선정단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인 지급대상 선정단계의 세부사항은 시·군·구가 주 업무를 담당하며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포획 또는 양식한 어업인 여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생산기간·생산지역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다.

<표 2-54> 지급대상 선정단계의 담당기관 및 역할

기관	세 부 내 용 (시·군·구)
신청인의 자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포획 또는 양식한 어업인인지 여부 확인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생산기간, 생산지역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중복신청 여부 확인
지원대상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자체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등은 신청자확인결과별지 서식 제2호) 제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이의신청내용 및 소명자료를 참고로 재심사 후 이의신청내용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서(서식 제2호)에 이의신청자를 등록하며,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에서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소득보전직불 사업계획서(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시·도지사는 시·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서식 제3호)를 작성,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 보고 및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예산(자금)신청서(서식 제4호)를 제출한다.

<표 2-55>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의 담당기관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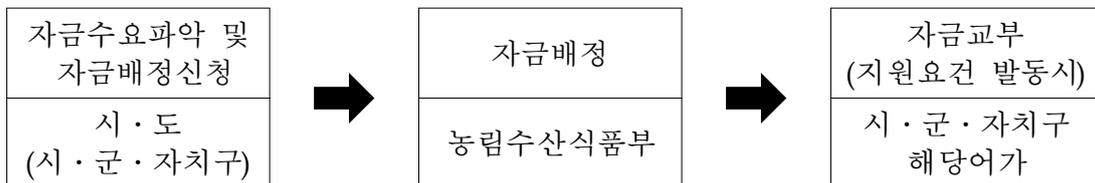
구 분	역 할 (시·군·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보고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예산지급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검토 하여 시·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세부계획서(서식 제3호)를 작성,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 보고 및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예산(자금)신청서(별지 서식 제4호)를 제출함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생산량 변경시에는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함.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을 하도록 함.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하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

4. 자금배정단계

네 번째 단계인 자금배정단계의 담당기관 및 역할은 <표 2-56>에서 나타난 것과 같으며, <그림 2-1>은 자금배정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2-56〉 자금배정단계의 담당기관 및 역할

담당기관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직불사업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을 배정함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함
시·군·자치구	○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서식 제5호)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입금함



〈그림 2-1〉 자금배정 절차 도식화

5. 이행점검단계

이행점검단계는 사후관리와 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별 담당기관의 역할은 〈표 2-57〉과 같다.

〈표 2-57〉 이행점검단계의 담당기관 및 역할

담당기관	역할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요건 발생으로 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각 시·도의 사업비 진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 방지 및 사업효율화를 추진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 시·군·자치구 - 점검일정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현지방문 점검

<p>시·군·자치구 (사업 및 자금 관리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최종 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지불금수령자 관리대장(별지 서식 제8호)을 기록 ○ 사업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불사업정산서(별지 서식 제7호)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보고(별지 서식 제6-1, 6-2호) ※ 시·군·자치구(완료후 5일 이내) → 시·도(시·군·자치구 보고된 후 5일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보고
<p>담당기관</p>	<p>역 할 (제제)</p>
<p>시·군·자치구 (사업 및 자금 관리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후 다음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료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성과측정단계

성과측정단계에서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측정·평가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평가를 담당하며 소득지지율과 수혜자 정책만족도 등을 평가 지표로 사용한다.

<표 2-58> 성과측정의 담당기관 및 역할(제제)

담당기관	역 할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요건 발생시 소득보전직불사업의 전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표 : 소득보전 지지율 - 부지표 : 수혜자 대상 정책 만족도 - 평가일정 : 품목별 정산후 2개월 이내 ○ 주지표: 당해연도 기준가격대비 사업실적품목별 주어진 평균생산가+소득보전직접지불금비율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소득지지율(%) - 측정산식 : (사업년도 실적 / 당해연도 기준가격)×100% - 성과지표 측정 : 품목별 정산후 2개월이내에 당해연도 품목별 주어진 평균생산가격을 토대로 소득지지율 측정 ○ 부지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요건 등에 대해 수혜 어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기 : 지원대상 품목별로 자금 배정시 - 조사대상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7. 성과목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으로 인해 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인들의 실질수입을 기준가격의 97%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함과 동시에 정책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표 2-59> 성과목표의 지표 및 측정방법(안)

성과지표	당해연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법
		'06	'07	'08		
주지표 (어가소득지지율)	97%	-	-	-	품목별 정산후 2개월이내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평균생산가+직불금)을 백분율화
부지표 (정책 만족도)	4점	-	-	-	상동	지원단가, 지급요건 등 전체 항목 평균만족도로 측정

또한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수산업 소득보전 직접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기준가격비율 및 조정계수의 변경 등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를 운영하기로 한다.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소득보전지불금 지급을 위한 마지막 진행단계인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사업평가단계는 지원요건 발생시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방식, 추진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표 2-60> 수산부분 소득직접지불사업 사업평가 방법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세부내용
직불금 소득지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내용 : 당해연도 기준가격대비 사업실적품목별 주어진 평균생산가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통해 어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였는지 평가 ○ 평가지표 : 소득지지율이 당해연도 기준가격 대비 97%이상 유지여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품목별 지원 정산후 2개월 이내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사업실적 / 당해연도 기준가격)×100%
사업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지급단가의 적정성, 지원대상 품목의 적정성, 직불금의 소득기여도 등에 대하여 고객만족도가 일정수준(5점 중 4점이상)이상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조사시기 : 지원대상 품목별로 자금배정시부터 사업정산후 2개월이내 ○ 조사항목 : 지급단가의 적정성, 지원대상품목의 적정성, 직불금의 소득기여도, 직불금에 대한 종합만족도 등 ○ 조사절차 : 항목별로 리커트의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전체 평균 만족도를 산출하여 평가

환류단계는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한다.

제4절 수산부문 소득보전직불제 Manual(안) 제시

1. 목적

수산부문 소득보전직불제의 목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증가로 국산수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시책 및 추진방향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당해연도 국내 생산량대비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으로 증가하고,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지원하며¹⁶⁾, 사업시행기간은 한미 FTA발효이후 7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 근거법령

수산부문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의 근거법령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이다.

4. 연도별 지원계획

연도별 지원계획은 2008년도 한·미 FTA가 발효된다는 가정하에 사업시행기간은 한미 FTA 발효후 7년간(2008년 발효 가정)이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대책 중에서 확보된 소요예산은 231억원이다.

<표 2-61>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13	합계	
사업량(톤)	-							
사	계	51	30	25	20	20	85	231
업	보 조	51	30	25	20	20	85	231
비	용 자	-						
	지방비	-						
	자부담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통상과 내부자료(2008년)

16) 단, 대체관계 및 연관관계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시 수입량 비율이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지원대상품목은 FTA농어업특별법 제16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사후지정토록 되어있다.¹⁷⁾ 아직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목별 피해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언급한 관련자료에 의거하여 민감품목으로 예상되는 민어, 명태, 기타넙치, 오징어, 대구, 가오리, 볼락, 뱀장어, 꽃게, 고등어, 게류, 임연수어, 아귀, 쾡치, 가자미, 떡장어, 돔 등(민감품목 가정)의 17개 품목이 해당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62> 한미 FTA로 인한 소득직불금 지원대상(안)

구분	지원대상(안)	비고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 ○ 기본절차: 어업인이 당해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 사업신청자 어업인 전원(피해인정시) ※ D/B관리대상 신청어가 우선 선정 	수산부분의 경우, D/B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D/B구축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 (단기: 신청자격 완화)
중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실제 생산어업인이면서 품목 D/B화 관리어가 ○ 기본절차: 단기와 동일 ○ 지원: 직불금 신청어업인(D/B 등록어가) 피해 대상 어업인으로 인정된 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로 면허 및 허가를 득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자 문제는 실제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가¹⁸⁾ 중 D/B구축 관리대상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아직 어가를 대상으로 한 통계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 중장기별 기간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에는 D/B구축 이전단계로 실제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가 중에서 한미 FTA체결시 피해를 입은 어가 중에서 소득직불금 신청을 한 어가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이 경우 D/B구축을 병행하면서 순차적으로 D/B구축 관리대상 어가를 우선 직불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여부를 검증함으

17) 사후지정이란 'FTA이행지원위원회'(FTA농어업특별법 제 16조)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업종)을 사후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이는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전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함.

18) 지원대상자는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로 면허 및 허가를 득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로써 D/B구축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D/B구축이 완료된 이후 단계로서 지원대상자는 동 D/B구축 관리대상자에 한해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시군 등 지자체에서 이를 선정하도록 한다.

2) 지급단가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

* 기준가격 : 어업생산통계에 의해 산출하되,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생산가격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가격에 심의비율(8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 : 어업생산통계에 따라 산출하되, 품목별 주어진 기간 동안의 해당 품목의 어업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3) 품목별 직불금

품목별 직불금은 품목별 생산량에 지급단가 및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품목별 직불금 = 품목별 생산량* × 지급단가(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 × 보전비율(85%)

* 품목별 생산량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실적에 준하여 산출하되, 품목고시일로부터 역산한 1년간의 해당 어업인별 생산량(계통출하 및 비계통 출하)

- 원양어업 : 원양산업협회에 신고한 당해 품목의 반입물량 신고서류

- 연근해어업 : 계통출하(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및 비계통출하(신청어업인이 제출한 서류)

4)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지침통보(농림수산식품부→시·도)

② 사업지침공고(시·군·자치구)

③ 직불금지원 심사요청(전국단위 생산자 조직→농림수산식품부)

- 직불금 지급요건이 발생될 경우

④ 지원 계획시달(농림수산식품부→시·도→시·군·자치구)

⑤ 직불금 지급신청(신청인→시·군·자치구)

⑥ 신청서 등 조사·확인(시·군·자치구·수산기술센터(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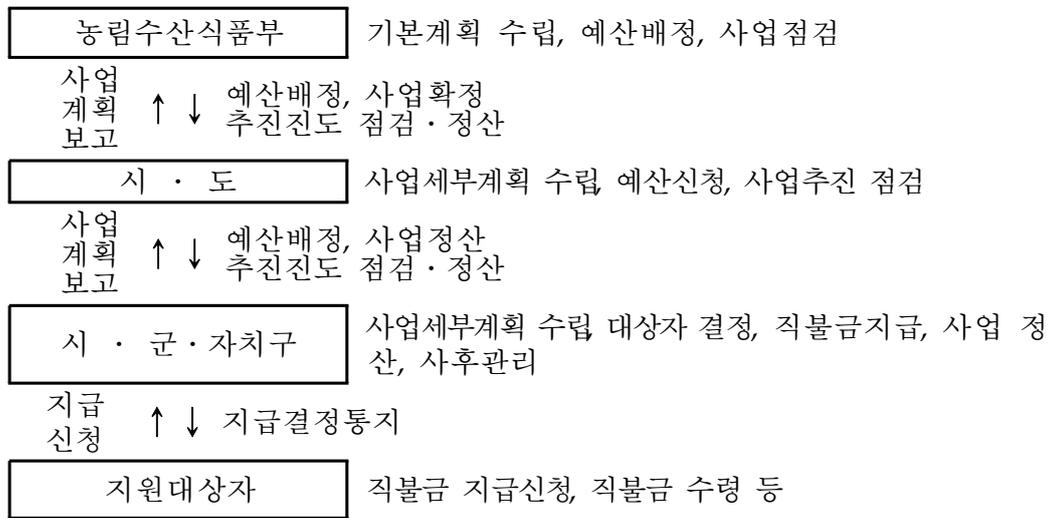
⑦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시·군·자치구·수산심의회)

⑧ 사업세부 계획보고 및 예산배정요구(시·군·자치구→시·도→농림수산식품부)

⑨ 예산배정(농림수산식품부→시·도→시·군·자치구)

⑩ 직불금 지급결정 통지(시·군·자치구→신청인)

⑪ 직불금 지급(시·군·자치구→신청인)



<그림 2-2> 사업추진 체계도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사업주관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해당부서
- 시·도 : 수산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수산담당부서

3)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지침 수립·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나) 사업홍보

시·군·자치구에서는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사업내용을 공고 및 홍보하도록 한다.

다) 직불금 지원심사요청

직불금 지원심사요청의 주체는 전국단위의 당해품목 생산자 조직(원양어업 포함)으로 하며, 요청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해당과)으로 한다.

수입량 산출시점은 한·미 FTA 발효 시점으로 하며,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당해연도 평균가격이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주어진 동안에 어업생산통계에 의한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단위중량당 가격이다.

라) 지원계획시달

지원요건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 당해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등 세부지원 계획을 시·도에 시달한다.

마)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신청시기는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한다. 신청기관은 지원대상 어업인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수산담당부서)로 한다. 신청서류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이며, 등기부등본등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바) 신청서 등 조사·확인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처분대장(면허/허가)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조사·확인(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한다. 조사·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생산한 어업인 여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 및 생산면적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등을 조사·확인 후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작성 비치한다.

조사·확인한 관련 서류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최종지급일부터 5년간 보관 관리한다.

사)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자체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아) 사업세부 계획보고 및 예산배정요구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검토하여 시·도 소득보전직불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및 소득보전직불사업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다.

자) 예산배정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직불사업 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을 배정한다.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한다.

차) 사업계획의 변경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의 변경시에는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변경 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순으로 하며,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보고는 생략한다.

카) 직불금 지급결정 통지 및 지급

시·군·자치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 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입금한다.

4) 사업비 정산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기타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최종 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수령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관리한다.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후 다음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한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자로 판명된 경우,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등이다.

2) 보고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보고(별지 제6-1호, 제6-2호 서식)는 시·군·자치구(완료 후 5일이내) → 시·도(시·군·자치구 보고된 후 5일이내) → 농림수산식품부의 순으로 보고한다.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보고한다.

6.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안)

가. 사업개요

1) 목 적

한·미 FTA 이행에 따라 미국산 수산물의 수입증가로 국산 수산물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 보전을 통해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품목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으로 품목별 생산어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의 97%이상 유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주지표: 소득지지율(%)	97	-	-	-	품목별 정산후 2개월이 내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 도 실적(주어기 평균 가격+ 직불금)을 백분 율화
▪부지표: 만족도(점)	4	-	-	-	상동	지원단가, 지급요건 등 전체 항목 평균만족도 로 측정

※ 기준가격 및 평균가격(지원한도 및 범위 참조). 만족도 조사는 항목별로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소득보전직불금	-	-	5,100	1,500	16,500
보 조	-	-	5,100	1,500	16,500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나.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품종의 고시일(추후 확정) 이전부터 당해 품종을 실제 어획 혹은 양식하는 어업인으로서 해당 어업인의 어업 면허 및 허가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으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어업인”은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경영자를 말함. 다만,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인 중에서 어업종사자는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로서 어업권 행정처분대장(면허, 허가, 신고)에 등재된 자

나)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대상어종의 국내생산량 대비 미국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즉, 당해년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하거나 당해년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이상 증가(필요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심의

를 거쳐 품목고시 이전에 동 요건은 조정가능).

- 지원대상어종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추후 고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당 어업인의 피해액 일정부분 직접 보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정부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품목별 생산량×지급단가(기준가격-당년 평균가격)×보전비율(0.85)
- 품목별 생산량 : 피해어업인이 신청한 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월을 기준으로 역산한 1년간의 계통 및 비계통 생산량의 합계(단, 생산실적이 입증된 물량에 한함)
 - 계통출하 : 지구별 수협에 위판된 위판실적
 - 비계통출하 :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된 실적
 - ※ 증빙서류 : 입출금통장사본, 입금표(물품보관증), 세금계산서, 소득세신고서 등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년 평균가격」의 차액
 - 기준가격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 심의비율(80%)를 곱한 가격
 - 평균가격 : 지원대상 품목별 주어기 동안의 어업생산통계에 의한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 ※ 품목별 주어기: 지원대상 품목 고시시 별도 지정
- 보전비율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정한 비율로서 85%를 적용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통보

- 지원요건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등 세부 지원계획을 시·도에 시달
- 관측정보 등에 따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요건 심사

시·도(시·군·구)

- 사업내용 공고 및 홍보
 - 시·도(시·군·구)에서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자체 게시판, 홍보지 및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등

생산자단체

- 품목별로 지원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해품목의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은 농림수산식품부(수산통상과)에 직불금 지원심사 요청
 - 생산자단체는 어업인이 심사요청한 품목에 대해 관련 어업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어업인을 대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수산통상과)에 심사를 요청
 - 생산자 단체 : 연근해(수협중앙회), 원양(원양산업협회), 내수면(품목별 생산자협회)

어업인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심사 건의
 - 어업인은 유형별(연근해, 원양, 내수면)로 해당 생산자단체에 직불금 지원 심사를 건의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 신청기관 : 신청인의 어업권을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서류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계통출하 : 수협위판실적 증명서
 - 비계통출하 : 입출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소득세신고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자단체와 협동으로

어업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조사·확인(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필히 현지조사·확인)

- 영 제3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생산한 어업인인지 여부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조사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사실여부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비치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 조사·확인한 관련 서류는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자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사업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시에는 시·군·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단,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생략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및 교부결정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예산배정 내역 통보(시·도, 수협) 및 자금 송금요청(수협)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구에 재배정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입금
 - 통장입금시 어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 소득보전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신청인이 당초 지정한 예금계좌 입금이 않될 경우,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증빙한 후 동 계좌로 입금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는 시·도에서 신청한 교부신청 사업비를 시·도로 교부결정하여 사업비를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최종 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 관리
- 사업비 정산
 - 직불금은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직불금의 교부 및 신청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농수부에 정산보고와 동시에 수산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수협중앙회)에 사업비 정산내역 통보

자금위탁관리(수협중앙회)

- 수산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은 시도별 사업비 정산내역에 의거 당해연도 사업내역 정산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요건 발생으로 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각 시·도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 방지 및 사업효율화 추진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시·군·구
 - 점검일정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 점검반 :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성과측정단계

《성과 측정》

- 당해년도 기준가격 대비 사업실적(품목별 주어진 평균생산가+ 소득보전직접지불금)비율을 평가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실적 / 당해연도 기준가격) × 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직불금 소득지지율 평가
 - 평가내용 : 당해연도 기준가격 대비 사업실적(품목별 주어진 평균생산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통해 어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였는지 평가
 - 평가지표 : 소득지지율이 당해연도 기준가격 대비 97%이상 유지하는지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품목별 지원정산 후 2개월 이내
 - 평가절차
 -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로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해당 품목의 주어진 것을 고려하여 품목별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후 2개월이내 소득지지율을 산출하여 평가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지급실적 / 당해연도 기준가격)
- 사업만족도 평가
 - 조사내용 : 지급단가의 적정성, 지원대상 품목의 적정성, 직불금의 소득기여도 등에 대하여 고객만족도가 일정수준(5점중 4점이상)이상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조사시기 : 지원대상 품목별로 자금배정시부터 품목별 사업정산후 2개월 이내
 - 조사항목 : 지급단가의 적정성, 지원대상품목의 적정성, 직불금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등
 - 조사절차 : 항목별로 리커트의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전체 평균 만족도를 산출하여 평가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환류

[별지제1호서식]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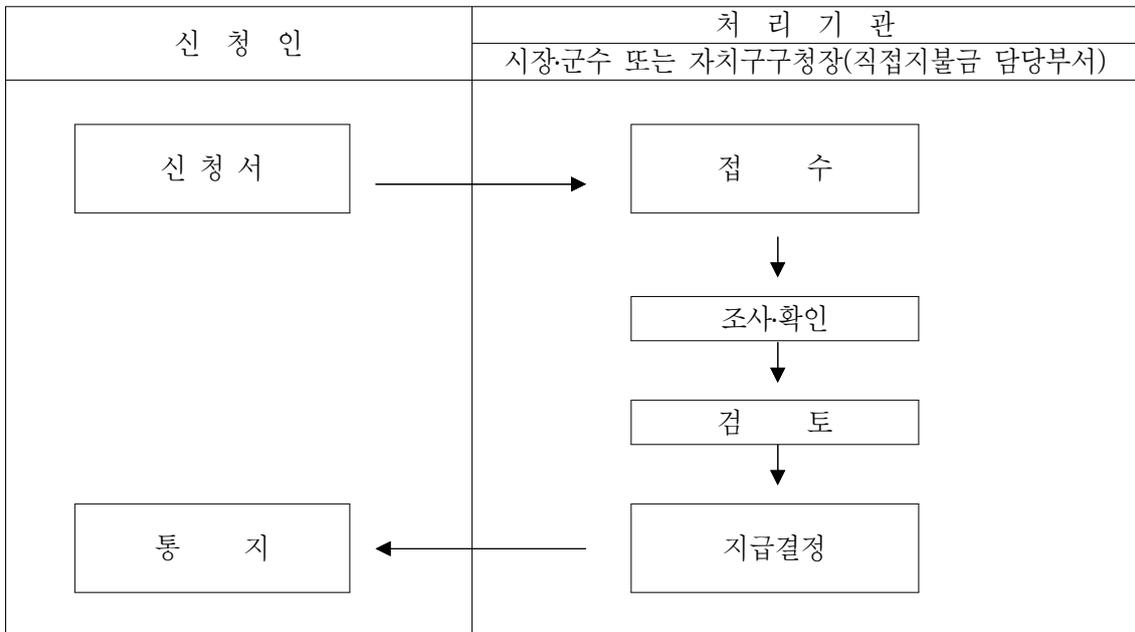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어업등 분야)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전화 번호				
신청 내용	⑤ 신청 품목	⑥소재지			⑦면허 번호	⑧ 허가번 호	⑨ 면허면 적 (㎡)	⑩ 생산 기간	⑪생산량 (kg)		
		시·군	읍·면	리·동							
생산 현황	⑫생산 품목										
	⑬생산량 (kg)										
⑭소득보전직접지불금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예금주)											
<p>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서명 또는 날인)</p> <p>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 쪽)

<p>* 기재요령</p> <p>① ~ ③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p> <p>⑤ ~ ⑨란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양식면허 등의 행정처분대상상 소재지와 면허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p> <p>⑩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p> <p>⑪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량을 기재합니다.(계통 및 비계통 합계액을 기입)</p> <p>⑫·⑬란은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어종 등을 기재합니다.</p>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

◦ 신청자

품목별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확인내용			겸업 여부	비고
				생산량 (kg)	생산 기간	출하 지역		
명태								
	소 계	○○명 신청						
넙치								
	소 계	○○명 신청						
	소 계	○○명 신청						
총 합 계		○○명 신청						

※ 확인한 생산량이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단 생산량은 계통 및 비계통 판매액을 합계한 실적으로 기재

◦ 제외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품목 종류	주요생산품목/생산 량(kg)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어업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

200 년 월 일

확 인 자

○○ 시·군·구 직 성명 (인)

○○ 시·군·구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세부계획서

(단위 : Kg, 천원)

시군	어종별	사업량(Kg)	사업비(기금)	어가수
합계	계			
	명태			
	오징어			
○ ○시	소계			
○ ○군	소계			

[별지 제4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예산(자금) 신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사업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계					
명태	소계				
	○ ○시				
	○ ○군				
	·				
오징어	소계				
	○ ○시				
	○ ○군				
	·				

[별지 제5호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 (금 원)
5. 지급내용

품 목	품목별 생산량 (kg)	지급단가 (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6-1호 서식]

<시·군·자치구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년도)

수 신 : ○ ○시·도지사

발신 : ○ ○시·군·자치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품종별	자 금 배정액(천원)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천원)
			어가수(호)	생산량(kg)	지급액(천원)	
합 계	합 계					
	명태					
	오징어					
00시·군	소 계					
	명태					
	오징어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2호 서식]

<시·도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년도)

수 신 : 농림수산식품부

발신 : ○ ○시·도지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품목별	자 금 배정액(천원)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천원)
			어가수 (호)	지급생산량 (kg)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명태					
	오징어					
00시·군	소 계					
	명태					
	오징어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

1. 총괄

가. 수입

(단위 : 원)

구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B+C)		
계						
◦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 이익금						
-						

나. 지출

(단위 : 원)

구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B+C)		
계						
◦ 사업비						
- 명태						
- 오징어						
◦ 손실금						
-						

2. 어종별

가. 명태

시군별	사업량(kg)			사업비(원)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				

나. 오징어

시군별	사업량(kg)			사업비(원)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				

3. 기타 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8호 서식]

(작성일자 : . . .)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시·군)							관리 번호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 역	연도별	품목별	소재지			면허/ 허가	영어 기간	생산량 (kg)
			시·군	읍·면	리·동			
지 급 내 역								
지급 년월일	품목	생산량 (kg)	지급단가 (원/kg)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수협(은행) ○○-○○-		

<별표 1>

[한미 FTA 발효(2009년 가정)시 추진절차도 예시]

<추진 단계>	<세부내용>
FTA 발효 (09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도 연간사업추진계획 수립(농림수산식품부) ○ 심의위원회 구성(중앙:농림수산식품부, 지방:각 시/군) ○ 피해대상 품목 심사신청(수협,농림수산식품부 담당과) ※ '08년도 체결시부터 12월말까지 자료활용
↓ 사업대상품목 선정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도 피해지원 대상 품목 추정보완 및 확정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 확정(중앙 심의위원회 개최) ※ 당해연도 지원품목 전년도 피해품목(예산반영 편의성 확보) ○ '09년도 사업 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농림수산식품부→각지도) ○ 각지도 공고 및 각 시군구 홍보계획 완료
↓ 사업시행 (2~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군구 대어민대비 당해연도 사업계획 홍보(2월이전) ○ 피해어업인 소득직불 신청(3-4월: 2개월간)(어업인→시군) ※ 소득증빙서류 구비: 통장, 계급계산서, 세금신고서 등 ○ 각 시군은 신청한 어업인의 직불금 자격여부 검증(5월) ○ 각 시군은 신청결과에 따라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5월) ⇒ 각 시군단위 지원대상 어업인 확정 ○ 각 시군결과 시도에 통보(6월) ○ 각 시도는 시군별 결과를 집계하여 예산 신청서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7월) ○ 중앙단위 심의위원회 개최(8월) ⇒ 각 시군 신청 내역 심의 및 확정 후 각 시군에 통보 및 예산 배정 ○ 각 시도는 배정받은 예산을 각 시군으로 재배정(8월) ○ 각 시군은 피해대상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9월)→각시도에 정산보고(10월)→각지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산보고(10월)
↓ 사후관리 및 평가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진행 점검(8-10월): 자금배정부터 정산보고시까지 ○ 사업결과 평가: 매사업년도 사업실적분석으로 가격지지율 검증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금 D/B등록어가 프로그램 개발

<별표 2>

[주요 관심품목별 월별 생산비중 비교(2003~2007년간 평균)]

(단위: %)

구분	주어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태 (원양)	하반기 (22,856)	-	1.6	6.1	-	0.2	1.8	5.9	16.2	25.2	20.3	14.4	13.8
민어 (원양)	연중 (18,756)	8.5	7.4	7.0	7.4	8.1	8.3	8.2	9.4	8.4	8.8	9.3	9.2
민어 (연근해)	하반기 (1,721)	15.3	7.2	7.0	5.0	3.3	1.2	2.0	5.4	3.7	4.9	21.6	23.4
넙치 (연근해)	중반기 (2,204)	7.7	5.3	6.9	10.2	18.4	11.9	5.8	4.7	5.0	7.8	8.5	7.8
넙치 (양식)	연중 (38,354)	9.2	8.6	9.6	9.2	8.7	6.0	6.0	6.8	7.5	7.3	8.3	12.7
오징어 (연근해)	하반기 (210,341)	9.6	2.2	1.0	0.6	1.1	2.1	3.7	7.0	14.0	28.6	12.5	17.7
오징어 (원양)	상반기 (133,098)	11.2	10.98	23.3	19.6	14.2	7.5	2.9	1.8	1.7	2.0	1.0	4.1
대구 (연근해)	하반기 (4,616)	8.2	0.2	3.5	3.9	4.8	3.3	6.0	9.3	13.4	11.6	14.2	19.8
대구 (원양)	중반기 (7,276)	2.2	1.5	0.6	3.0	14.36	23.9	19.4	10.8	14.5	5.3	1.5	3.1
가오리 (연근해)	중반기 (6,012)	7.5	6.0	5.2	5.4	9.9	10.6	8.6	15.3	12.1	7.7	5.1	6.6
가오리 (원양)	상반기 (2,891)	9.7	9.8	15.6	14.6	13.6	6.8	3.9	3.0	3.3	5.4	6.3	8.1
불락 (연근해)	연중 (5,344)	8.8	5.69	7.8	8.0	9.6	9.3	6.8	6.1	5.9	10.3	11.7	10.1
불락 (양식)	연중 (25,855)	7.4	6.6	6.9	8.8	10.8	9.7	9.8	7.2	6.6	7.4	8.5	10.3
홍어 (연근해)	연중 (301)	7.9	4.8	6.5	11.2	10.9	6.3	3.0	2.8	9.2	11.2	8.4	18.0
홍어 (원양)	중반기 (1,184)	4.7	1.9	3.0	2.7	3.0	3.1	10.4	30.0	21.5	8.8	6.3	4.6
뱀장어 (내수면)	연중 (6,791)	6.2	8.4	8.1	8.1	8.4	7.8	8.6	8.8	7.4	9.3	9.3	9.7
고등어 (연근해)	하반기 (137,423)	6.8	2.5	3.1	2.3	1.6	3.9	3.8	6.4	10.6	16.2	28.1	14.8

구분	주어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꽃게 (연근해)	중반기 (7,275)	0.8	0.3	0.9	9.4	13.2	10.7	1.5	2.9	30.2	20.0	8.1	2.0
계류 (연근해)	연중 (34,818)	8.8	8.3	9.8	10.2	10.2	9.5	4.2	2.3	7.3	9.9	9.2	10.3
임연수어 (연근해)	중반기 (1,493)	4.7	8.9	13.0	17.2	16.7	7.5	5.4	4.5	6.8	7.2	5.5	2.6
아귀 (연근해)	상반기 (12,092)	13.9	9.0	10.3	11.2	15.2	9.4	4.0	2.7	3.3	4.3	6.1	10.5
꽁치 (원양)	하반기 (24,668)	-	-	-	-	1.7	9.4	11.6	10.4	17.7	24.4	13.9	10.8
꽁치 (연근해)	중반기 (3,391)	2.9	1.2	1.9	5.6	36.8	31.9	2.5	0.1	0.5	3.3	5.8	7.4
가자미 (연근해)	중반기 (16,937)	9.0	7.5	11.9	11.5	12.0	10.1	6.1	6.3	5.2	6.5	6.3	7.5
떡장어 (연근해)	중반기 (35)	-	2.3	8.0	5.1	7.4	33.5	6.8	2.3	2.3	13.6	18.8	-
돔류 (연근해)	연중 (4,381)	8.3	5.3	7.7	12.0	14.8	8.6	5.9	4.5	7.0	9.7	8.8	7.5
키조개 (연근해)	상반기 (4,335)	7.9	8.0	13.5	11.6	11.5	9.9	0.4	0.4	7.4	9.4	9.5	10.6
키조개 (양식)	상,하반기 (2,494)	9.9	16.3	12.1	2.8	3.6	5.1	3.5	3.3	16.1	12.8	7.4	7.0

※ 자료: 어업생산통계정보시스템, 2003 ~ 2007년 월별

제5절 도상연습 및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위원회 기능

1. 도상연습 대상 어업인 및 종사자 현황

가.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 및 종사자 현황

시범사업 대상품목은 KMI에서 제시한 한·미 FTA체결에 따른 17개 민감어종이며, 대상품목별 어업인 및 종사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관련어업의 종류는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 양식 및 내수면어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63> 시범사업 대상품목별 어업인 및 종사자 현황(전체)

민감 품목	품목	양허결과	관세율 ('06년)	관련어업인 및 종사자
명태	냉동	15년(T)	30%	- 북양트롤 27척(700명) <95.4%>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0.2%>
민어	냉동	12년(T)	63%	- 모선식외줄낚시 2척(50명) <37.1%> - 해외트롤 73척(2,263명) <11.1%> - 외끌이대형기선 48척(336명) <3.1%>
고등어	냉동	12년	10%	- 대형선망 205척(2,560명) <75.5%> - 소형선망 111척(888명) <19.3%>
넙치	냉동/활어	12년(T)	10%	- 각망 380척 <2.7%> - 양식 765어가 <95%>
대구	신냉/냉동	10년(비) 5년	10%	- 국적2척(60명), 합작2척 <48.7%> - 근해자망 472척(2,360명) <4.3%>
가자미	냉동	10년(비)	10%	- 동해구기저 8척(80명) <31.2%> - 외끌이서남해 75척(750명) <13.7%>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8.3%> - 근해자망 472척(2,360명) <2.7%>
게류	냉동	10년(비)	20%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4.7%> - 근해자망 472척(2,360명) <3.5%> - 연안통발 8,400척(33,600명) <21.2%>
꽃게	신냉/냉동	10년(비)	14%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13.3%> - 근해자망 472척(2,360명) <1.58%> - 연안통발 8,400척(33,500명) <5.4%>
오징어	연근해/ 원양	10년(비)	24%	- 원양채낚기 72척(2,016명) <99.6%> - 해외트롤 73척(2,263명) <26.3%> - 대형트롤 70척(720명) <76.8%> - 근해채낚기 587척(7,044명) <93.9%> - 동해구트롤 33척(264명) <92.5%>

아귀	냉동	10년(비)	10%	- 외끌이기저 48척(336명) <16.7%> - 외끌이서남해 75척(750명) <14.4%>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2.9%> - 근해안강망 382척(3,820명) <3.8%>
뱀장어	활어	10년(비)	30%	- 내수면양식 347어가 <100%>
키조개	연근해/ 양식	10년(비)	20%	- 잠수기 208척(624명) <22.0%>
꽂치	연근해/ 원양	10년(비)	36%	- 원양봉수망 5척(155명) <99.7%>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2.9%>
불락	냉동/활어	10년(비)	10%	- 해면양식 3,241어가 - 연안복합 32,148척(35,000명) <4.4%>
서대	연근해/ 원양	10년(비)	10%	- 해외트롤 73척(2,263명) <0.9%>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0.8%>
가오리	연근해/ 원양	10년(비)	10%	- 원양저연승 국적2척, 합작2척(60명) <8.2%> - 연안자망 19,346척 (38,692명) <1.6%>
돔류	냉동	10년(비)	10%	- 해면양식 1,858어가 - 모선식외줄낚시 2척(50명) <26.2%> -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48척) 336명 <3.2%>

자료 : 한-미 FTA 협상결과(해양수산부, 2007)년도 자료

주 : T = TRQ, 비 = 비선형철폐

나. 원양어업 시범사업 대상 종사자 현황

도상연습 대상품목 중 원양어업 종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대상품목 중 원양어업으로 어획하는 어종은 명태와 민어, 대구, 오징어, 꽂치, 서대, 가오리, 돔류 등의 8개 어종이다.

<표 2-64> 원양어업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 및 종사자

민감 품목	품목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관련어업인 및 종사자
명태	냉동	15년(T)	30%	- 북양트롤 27척(700명) <95.4%>
민어	냉동	12년(T)	63%	- 모선식외줄낚시 2척(50명) <37.1%> - 해외트롤 73척(2,263명) <11.1%>
대구	냉동	5년	10%	- 국적2척(60명), 합작2척 <48.7%>
오징어	원양	10년(비)	24%	- 원양채낚기 72척(2,016명) <99.6%> - 해외트롤 73척(2,263명) <26.3%>
꽂치	원양	10년(비)	36%	- 원양봉수망 5척(155명) <99.7%>
서대	원양	10년(비)	10%	- 해외트롤 73척(2,263명) <0.9%>
가오리	원양	10년(비)	10%	- 원양저연승 국적2척, 합작2척(60명) <8.2%>
돔류	냉동	10년(비)	10%	- 모선식외줄낚시 2척(50명) <26.2%>

자료 : 한-미 FTA 협상결과(해양수산부, 2007)년도 자료

주 : T = TRQ, 비 = 비선형철폐

다. 연근해어업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 현황

도상연습 대상품목 중 연근해어업 종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대상품목 중 연근해어업으로 어획하는 어종은 명태, 민어, 고등어, 넙치, 대구, 가자미, 계류, 꽃게, 오징어, 아귀, 키조개, 쾡치, 불락, 서대, 가오리, 돛류 등의 16개 어종이다.

<표 2-65> 연근해 시범사업 대상품목

민감품목	품목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관련어업인 및 종사자
명태	냉동	15년(T)	30%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0.2%>
민어	냉동	12년(T)	63%	- 외끌이대형기선 48척(336명) <3.1%>
고등어	냉동	12년	10%	- 대형선망 205척(2,560명) <75.5%> - 소형선망 111척(888명) <19.3%>
넙치	냉동 활어	12년(T)	10%	- 각망 380척 <2.7%>
대구	신냉 냉동	10년(비) 5년	10%	- 근해자망 472척(2,360명) <4.3%>
가자미	냉동	10년(비)	10%	- 동해구기저 8척(80명) <31.2%> - 외끌이서남해 75척(750명) <13.7%>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8.3%> - 근해자망 472척(2,360명) <2.7%>
계류	냉동	10년(비)	20%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4.7%> - 근해자망 472척(2,360명) <3.5%> - 연안통발 8,400척(33,600명) <21.2%>
꽃게	신냉 냉동	10년(비)	14%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13.3%> - 근해자망 472척(2,360명) <1.58%> - 연안통발 8,400척(33,500명) <5.4%>
오징어	연근해	10년(비)	24%	- 대형트롤 70척(720명) <76.8%> - 근해채낚기 587척(7,044명) <93.9%> - 동해구트롤 33척(264명) <92.5%>
아귀	냉동	10년(비)	10%	- 외끌이기저 48척(336명) <16.7%> - 외끌이서남해 75척(750명) <14.4%>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2.9%> - 근해안강망 382척(3,820명) <3.8%>
키조개	연근해	10년(비)	20%	- 잠수기 208척(624명) <22.0%>
쾡치	연근해	10년(비)	36%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2.9%>
불락	냉동 활어	10년(비)	10%	- 연안복합 32,148척(35,000명) <4.4%>
서대	연근해	10년(비)	10%	- 연안자망 19,346척(38,692명) <0.8%>
가오리	연근해	10년(비)	10%	- 연안자망 19,346척 (38,692명) <1.6%>
돛류	냉동	10년(비)	10%	-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48척) 336명<3.2%>

자료 : 한-미 FTA 협상결과(해양수산부, 2007)년도 자료

주 : T = TRQ, 비 = 비선형철폐

라. 양식 및 내수면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 현황

도상연습 대상품목 중 양식 및 내수면어업 종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대상품목 중 양식 및 내수면어업으로 어획하는 어종은 넙치, 뱀장어, 볼락, 돛류 등의 4개 어종이다.

<표 2-66> 양식 및 내수면어업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

민감품목	품목	양허 결과	관세율 ('06년)	관련어업인 및 종사자
넙치	냉동 활어	12년(T)	10%	- 양식 765어가 <95%>
뱀장어	활어	10년(비)	30%	- 내수면양식 347어가 <100%>
볼락	냉동 활어	10년(비)	10%	- 해면양식 3,241어가
돛류	냉동	10년(비)	10%	- 해면양식 1,858어가

자료 : 한-미 FTA 협상결과(해양수산부, 2007)년도 자료

주 : T = TRQ, 비 = 비선형철폐

2. 도상연습

가. 계획(안)

1) 원양어업

원양어업 도상연습계획(안)의 대상 어종은 한미 FTA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원양어업의 어종으로, 민어, 명태, 오징어, 대구 등 4개 어종으로 선정하였다.

원양어업은 원양산업협회 회원사(원양업체수 110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징어 선단 30척(남서태평양 포클랜드·알젠틴, 페루), 명태 선단 6척(러시아 북서베링해역 등), 기타 158척(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서부아프리카, 인도양, 남빙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연습 대상은 원양산업협회 회원사 중에서 15개사로 지정했으며, 1~2척의 어선보유업체 74개사 중 67%를 차지하고 있다.

도상연습 일정은 '08.9~10월이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참가 대상자 선정 및 관계자 교육(연구기관, 9-10월)
- ② 도상연습 실시공고, 신청접수(해수부 → 원양산업협회 → 부산시, 9월 중순~하순)
 - 지자체 배정예산 통보(부산시), 한미 FTA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어종별 수요조사 및 한미FTA체결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어종 및 소득감소분 조사(부산시)

- ③ 대상자 및 보조금지급 결정 통보(부산시 → 원양업자, 9월말)
- ④ 이의 신청 검토 및 결과 송부(부산시, 10월초)
- ⑤ 도상연습 관계자 종합평가(10월 중순)

<표 2-67> 원양어업 도상연습 계획일정

계획내용	참여자	일정
도상연습 준비 관계자 회의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기관	8월 하순
소득보전직불제(안) 지자체 배포 및 의견수렴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기관	9월 초순
참가 대상자 선정 및 관계자 교육	연구기관	9월 중순
도상연습 실시공고, 신청접수	농림수산식품부 부산시, 원양업자	9월 중하순
대상자 및 보조금 지급 결정통보	원양업자	9월 말
이의 신청 검토 및 결과송부	부산시	10월 초
종합평가(전체 공청회)	관계자 전원	10월 중순

2) 양식어업(넙치)

양식어업 도상연습계획(안)의 대상 지역은 제주도 남제주군 육상수조식 양식어가이며, 양식어가 119건(전국대비(684어가)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2006년 12월 기준)

도상연습 일정은 '08.9~10월이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참가 대상자 선정 및 관계자 교육(연구기관, 9-10월)
- ② 도상연습 실시공고, 신청접수(해수부 → 제주도 → 남제주군, 9월 하순)
 - 지자체 배정예산 통보(제주도→ 남제주군), 한미 FTA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어종별 수요조사(제주도) 및 한미FTA체결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어종 및 소득감소분 조사(남제주군)
- ③ 대상자 및 보조금지급 결정 통보(남제주군 → 넙치양식 어업자, 9월 하순)
- ④ 이의 신청 검토 및 결과 송부(1차 : 남제주군, 2차 : 제주도, 10월 초순)
- ⑤ 도상연습 관계자 종합평가(10월 중순)

<표 2-68> 양식어업(넙치) 도상연습 계획일정

계획내용	참여자	일정
도상연습 준비 관계자 회의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기관	8월 하순
소득보전직불제(안) 지자체 배포 및 의견수렴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기관	9월 초순
참가 대상자 선정 및 관계자 교육	연구기관	9월 중순
도상연습 실시공고, 신청접수, 사정	농림수산식품부, 제주도, 남제주군, 양식업자	9월 중하순
대상자 및 보조금 지급 결정통보	남제주군 양식업자	9월 하순
이의 신청 검토 및 결과송부	제주도, 남제주군	10월 초
종합평가(전체 공청회)	관계자 전원	10월 중순

나. 직불금 산출 사례분석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조건은 첫째, 한-미 FTA로 인해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미국산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한 경우, 둘째,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본 연구상 도상 연습은 한-미 FTA가 미 발효되었으므로 '08년도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으며 동년 10월에 지원품목을 고시하였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한-미 FTA체결에 따른 17개 민감어종 중 원양산 민어('06년¹⁹⁾ 기준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선정)를 대상으로 소득직불금 산출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품목별 직불금 = 품목별 생산량 × 지급단가(기준가격 - 당년 평균가격) × 보전비율(85%)

여기에서, 품목별 생산량이라 함은 지급대상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른 어획실적(원양어업임으로 원양산업협회에 반입신고한 실적)을 말한다. 다음으로 기준가격

19) 한미 FTA 협정문에 의거 '06년 관세율 적용

은 지원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 심의비율(80%)을 곱한 가격이며, 당년 평균가격은 어업생산통계에 의한 '08년도 주어기(연중 반입물량이 유사하므로 품목고시일 직전월부터 년초까지로서 1~9월) 동안의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을 말한다. 보전비율은 85%를 적용하였다.

<표 2-69> 민어의 소득보전 직접불금 해당여부 분석

구 분		산출과정(세부내용)					산출결과
가 격 요 건	기준가격[A] (원/kg)	'03	'04	'05	'06	'07	3,174
		3,817	3,731	4,039	4,484	4,165	
	-최고치('06), 최저치('04) 제외 -3개년('03,'05,'07)의 평균 금액×80%						
	당년평균가격[B] (원/kg)	-'08년 주어기(1~9월) 생산량: 11,939톤 -'08년 주어기(1~9월) 생산금액: 41,230,103천원 ※당년 평균가격 = 생산금액/생산량					3,453
	지급단가[A-B]	기준가격-당년평균가격					△279
수입요건		당해년도 미국산 수입비중 10%이상인면서, 전년대비 증가 가정					

주 : 산출결과는 산출평균값이며,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함

민어(원양)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정에 앞서 민어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해당 품목인지 알아본 결과, 당년평균가격(3,458원/kg)이 기준가격(3,174원/kg)보다 높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민어(원양)가 해당 품목이 되기 위해서는 당년 평균가격(B)이 기준가격(A: 5개년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80%)인 kg당 3,174원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만 한미FTA 체결로 인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품목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연구상 도상연습을 당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를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분석하였다.

1)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 설정에 앞서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의 고시 대상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수입량요건이 1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즉, 민어(원양)의 국내생산량 대비 미국산 수입비중이 10%이상인면서 전년대비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전제한다. 당년평균가격이 일정수준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표 2-70〉 민어(원양)의 직불금 도상연습 시나리오

구분		기준가격대비 당년평균가격 수준 가정(I,II,III)		
		90%	80%	70%
당년생산량대비 신청물량 가정 (1,2,3)	30%	시나리오 I-1	시나리오 II-1	시나리오 III-1
	50%	시나리오 I-2	시나리오 II-2	시나리오 III-2
	100%	시나리오 I-3	시나리오 II-3	시나리오 III-3

한편, 직불금 산출시 적용되는 조정계수의 가정에 따라, 상기의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보전비율을 0.80, 0.85, 0.90로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시나리오별 직불금 산출

상기의 시나리오에 따라 먼저 기준가격대비 당년 평균가격 하락을 가정에 따른 지급단가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1〉 민어(원양) 도상연습 시나리오별 지급단가 산정

구분		산출결과		
시나리오 적용전	기준가격(A)	3,174원/kg (3개년 평균금액의 80%적용 가격)		
	당년평균가격	3,453원/kg (‘08년 1-9월까지 평균가격)		
시나리오 적용후	당년평균가격(B)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2,857원/kg	2,539원/kg	2,222원/kg
	지급단가(A-B)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317원/kg	635원/kg	952원/kg

※ 시나리오: 기준가격(A)대비 당년평균가격(B) 90%(시나리오 I), 80%(시나리오 II), 70%(시나리오 III)수준인 경우 가정

상기의 지급단가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어업인이 신청물량 범위에 따른 민어(원양)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산출한다. 단, 여기서 피해어업인의 신청물량은 ‘08년도 1월부터 9월(품목고시일 직전월부터 연초까지의 실적)까지의 전체 물량중에서 30%, 50%, 100%인 경우로 가정하였다.

<표 2-72> 민어(원양) 도상연습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조정계수 0.8적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준가격대비当年평균가격 수준 가정 I, II, III)		
		90%	80%	70%
当年생산량대비 신청물량 가정 (1,2,3)	30%	908 (시나리오 I-1)	1,820 (시나리오 II-1)	2,728 (시나리오 III-1)
	50%	1,514 (시나리오 I-2)	3,033 (시나리오 II-2)	4,547 (시나리오 III-2)
	100%	3,028 (시나리오 I-3)	6,065 (시나리오 II-3)	9,093 (시나리오 III-3)

※当年생산량: 11,939톤('08년1월~9월실적), 기준가격: 3,174원/kg
지급단가: 시나리오 I (317원/kg), 시나리오 II (635원/kg), 시나리오 III (952원/kg)

<표 2-73> 민어(원양) 도상연습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조정계수 0.85적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준가격대비当年평균가격 수준 가정 I, II, III)		
		90%	80%	70%
当年생산량대비 신청물량 가정 (1,2,3)	30%	965 (시나리오 I-1)	1,933 (시나리오 II-1)	2,899 (시나리오 III-1)
	50%	1,609 (시나리오 I-2)	3,222 (시나리오 II-2)	4,831 (시나리오 III-2)
	100%	3,217 (시나리오 I-3)	6,444 (시나리오 II-3)	9,661 (시나리오 III-3)

※当年생산량: 11,939톤('08년1월~9월실적), 기준가격: 3,174원/kg
지급단가: 시나리오 I (317원/kg), 시나리오 II (635원/kg), 시나리오 III (952원/kg)

<표 2-74> 민어(원양) 도상연습 소득보전 지불불금 산출(조정계수 0.90적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준가격대비当年평균가격 수준 가정 I, II, III)		
		90%	80%	70%
当年생산량대비 신청물량 가정 (1,2,3)	30%	1,022 (시나리오 I-1)	2,047 (시나리오 II-1)	3,069 (시나리오 III-1)
	50%	1,703 (시나리오 I-2)	3,412 (시나리오 II-2)	5,115 (시나리오 III-2)
	100%	3,406 (시나리오 I-3)	6,823 (시나리오 II-3)	10,229 (시나리오 III-3)

※当年생산량: 11,939톤('08년1월~9월실적), 기준가격: 3,174원/kg
지급단가: 시나리오 I (317원/kg), 시나리오 II (635원/kg), 시나리오 III (952원/kg)

이상의 민어(원양)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한 결과 '08년 기준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당해년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가격하락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별 직불금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시나리오별로 피해신청비율 및 보전비율 수준에 따라 908백만원에서 10,229백만원의 민어(원양)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 산출되었다. 즉, 시나리오 I(당년평균가격이 기준가격대비 90%수준) 908백만원에서 3,406백만원, 시나리오 II(당년평균가격이 기준가격대비 80%수준) 1,820백만원에서 6,065백만원, 시나리오 III(당년평균가격이 기준가격대비 70%) 2,728백만원에서 10,229백만원이 도출되게 된다. 물론, 신청비율이 높고 조정계수가 높을수록 직불금은 많은 금액이 산출된다.

〈표 2-75〉 민어(원양)의 조정계수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조정계수		
		0.80	0.85	0.90
시나리오 I	당년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의 90%수준	908 ~ 3,028	965 ~ 3,217	1,022 ~ 3,406
시나리오 II	당년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의 80%수준	1,820 ~ 6,065	1,933 ~ 6,222	2,047 ~ 6,823
시나리오 III	당년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의 70%수준	2,728 ~ 9,093	2,809 ~ 9,661	3,069 ~ 10,229

※ 직불금의 범위는 시나리오별로 당해연도 생산량 대비 신청물량이 30% ~ 100%인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관련 위원회 기능

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1) 위원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경우, 동법 제16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하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표 2-7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실무위원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법률
이행 지원 위원회	구성	○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 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 하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 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위원회 : 위원장 1인 포함,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어업인 단체·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	법 제16조
	심의 내용	○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 ○ 농어업등 분야 협정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의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실무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 획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를 둠.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봄	법 제17조
	심의 내용	○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 가 있는 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의 차입, 기금의 결산 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심의 내용은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 농어업등 분야 협정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다음으로 실무위원회의 경우는 동법 제17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되어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행지원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16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통상교섭본부장·농림수산식품부 제

1차관, 농어업인단체·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7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농어업인단체·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등이다.

<표 2-77>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분		세부내용	법률
이행 지원 위원회	구성	○ 기획재정부 제2차관·통상교섭본부장·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 농어업인단체·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시행령 제16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	
	기타	○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실무 위원회	구성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으로 함	시행령 제17조
	운영	○ 실무위원회의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 농어업인단체·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봄	

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세부운영 내용

동법 시행령 제2조(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에서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된 농림축수산물,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된 품목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당해 품목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축수산물 등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4조(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에서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어업등 분야(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나, 다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표 2-7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법률
위원회	심의근거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원대상품목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시행령 제2조
	위원회의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심의내용)	○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된 농림축수산물 ○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된 품목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당해 품목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축수산물 ○ 피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때에는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된 품목의 수입증가량 및 증가율, 국내시장점유율, 국내판매가격, 국내수입 및 유통시기, 국내생산 품목의 생산 및 출하시기 등을 고려 ○ 「관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정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	

<표 2-78>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운영 세부내용(계속)

구분		세부내용	법률
위원회	소득보전직 접지불금의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에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의 당해연도 국내생산량과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된 수입량의 비율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품목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 한하여 이를 지급 ○ 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시행령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u>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u> ※ 어업등 분야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상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함 ➔ 품목별 직불금 = 품목별 생산량×지급단가×보전비율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심의비율을 곱하여 산출 ※ 수산분야 심의비율: 80% 적용 ○ 보전비율은 지원대상품목의 가격하락이 전적으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일정비율로 보전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85%)함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에 있어서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어업등 분야에 있어서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및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시행령 제4조

※ 직불금 산출방법, 지급단가 및 보전비율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단서규정에 의해 수산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음

제6절 소득보전 직접불금 지급을 위한 D/B구축 계획(안)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D/B구축 계획(안)은 수산부문이 농수산 식품부로 농업과 통합된 행정체제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추진 방안 검토 및 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수산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농업부문 농업경영체 등록추진 현황

가. 농업경영체등록제 추진 경위

농업부문에서는 '04.2월에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방에 따른 농가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가등록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06.12월에는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의 마련을 통해 고소득 취미농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경영체가 등록 신청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등록시 기본정보(주민, 농지, 축산, 농외소득, 농가유형, 정책)와 상세정보(소득, 교육, 인증 등)를 등록하고, 적용사업은 3단계로 구분(정비기, 성숙기, 정착기)하여 직불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11년 이후 모든 농립사업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등록된 정보의 사후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나 등록기관은 미지정 상태였다.

'07.7월에는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방안 및 시범사업 시행지침」의 마련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주관으로 등록제사업 추진하였다. 농가의 임의등록 및 개인을 우선 등록하고, 법인은 단계적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가가 농업조수입 등을 직접 기재하게 하였다.

'07.8~11월에는 농업경영체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설명회(1,624회), 지역언론홍보(397회), 홍보물 제작·배부(17만매), 기고(53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 및 등록 방식, 등록프로그램 운용, 홍보방법 등에 관하여 해소해야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07.12월에는 소요인력을 확충하였다. 당초 등록제 시범사업 소요인력 261명을 요구하였으나 법령 마련 미비로 농관원 본원에 맞춤형농정팀 5명만 확보하였다.

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제안이유

한·미 FTA 체결, WTO/DDA로 인한 개방 확대와 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 농업·농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영규모화 및 소득안정 지원이 모든 농업인을 대상의 평균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집중될 수 있는 맞춤형 접근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스스로 교육·전문컨설팅을 활용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으로 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도입하며 후계농업인력의 지원, 농업경영체에 경영규모화 및 경영안정 우선 지원, 농가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농업인 은퇴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해산 등 법인제도 운영 및 농업법인의 창업·발전을 지원하며, 농업경영체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교육·컨설팅 지원, 농업회계기준 모범례, 농업경영혁신전문기관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사회의 안정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2) D/B구축과 관련된 주요내용

가) 농업정책의 핵심대상이 될 농업경영체의 기준 조정 및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안 제2조 내지 제7조)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을 정부의 농업생산효율화 지원 및 농업소득의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농업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제한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수준에 알맞은 맞춤형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농업경영체의 범위에 모든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포함하였던 것을 농업인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농업경영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경영규모 등 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생산효율화 또는 농업소득의 안정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업생산효율화 또는 농업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지

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에 집중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안 제14조 내지 제 19조)

한·미 FTA 발효와 DDA타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수입농산물 증가로 인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된다. 급격한 농가소득의 감소는 농업생산 기반의 약화와 국민에 대한 안정된 식량공급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농업경영체단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지급대상자의 기준, 소득안정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약정의 체결,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적립금 납입 및 적립금의 반환 근거, 직불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조수입의 기준, 직불금 지급 기준과 지급절차, 직불금의 회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시장개방의 확대 등 농업경영 환경변화에 불구하고 농업의 핵심주체인 농업경영체가 농가소득의 급격한 하락이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경영혁신과 농업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 수산부문 D/B 계획(안)

가. 목적

수산부문 D/B구축 계획(안)의 목적은 수산부문 D/B 구축을 통해 어업경영체의 규모와 유형에 적합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경영체 단위의 정보 통합관리로 어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나. 등록신청

등록신청 주체는 개인경영체의 경영주 및 법인경영체의 대표로 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한다. 실질적인 경영인이 아닌 어업인은 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되, 임금을 지급받은 어업노동자일 경우는 고용인으로 등록한다.

다. 등록대상 정보

등록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전산정보처리를 최대화하여 어업인 직접 등록신청 정보의 최소화로 어업인 편의를 도모한다. 어업경영체의 일반현황, 어업인력 정보, 어장 정보, 어업생산량 및 소득 정보, 어업외소득 정보, 어업 관련 교육 이수 정보 등이 포함된다. 어업경영체의 일반현황에는 개인경영체의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법인경영체의 유형, 어업시작 년도 및 주어획어종 등이 포함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경우 AGRIX라는 자체전산입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수산부문에 는 유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라. 등록정보의 활용

등록자료는 향후 도입될 FTA 피해보전, 소득직불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 소득과약 없이 소득직불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등록정보의 통계적 분석·활용을 통해 향후 어가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등록자료를 개별 어업의 신청 등에 원용함으로써 어업의 효율성·건전성을 제고한다.

마.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

중장기적으로 미등록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사업 자금 제한을 둔다. 또한 허위등록 및 정보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해서는 직접지불금의 미지급 또는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형벌 제재를 통해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바. 등록절차 및 요령

등록절차는 일괄등록과 상시관리로 등록절차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일괄등록은 시행초기에 모든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등록 추진하고, 상시관리는 신규·변경등록 및 실효성 있는 현지실사로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한다. 일괄등록시 예비신청(경영체)→전산처리(검사원)→본 신청(경영체)→전산등록, 통지(검사원)→정보정정(경영체)의 순서로 진행하며, 등록 경영체는 언제든지 어업경영체 등록 통지서의 발급요청 및 해당경영체의 등록된 정보내용 열람이 가능하다. 향후 상시관리시 신규 등록경영체는 일괄등록 체계와 동일한 절차로 등록하도록 한다.

사. 소요인력 추정 및 확보방안

수산부문 D/B구축 계획(안)의 일괄등록 소요인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에 비해 어업경영체 등록에는 약 1/10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수산부문에 있어 일괄 등록 소요인력의 경우는 수산물품질검사원 직원 1인 당 1일에 3.9어를 조사한다고 가정하여(농업부문 적용), 7만7천 전체어가 등록에는 2년간 총 132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시관리체제 하에서는 최소한의 정규인력을 확보하고 부족인원은 외부인력

을 활용하도록 한다.

<표 2-79> 농업경영체 등록제 고려 수산부문 소요인력 추정

구 분	농업부문			수산부문		
	1농가당 소요시간	1인당 조사농가	2년간 소요인력	적용 가정	1인당 조사어가	2년간 소요인력
합 계	121.9분	3.9호	1,317명		3.9호	132
교육·홍보	32.2	14.9	359명	· 1인당조사어가는 농업부문 준용	14.9	36
신청서 작성지도	61.9	7.8	690명		7.8	69
등록관리	27.8	17.3	269명	· 2년간 소요인력은 규모고려 농업부문 대비 10%적용	17.3	27

주: 등록관리는 예비신청·전산처리(100%), 본신청서 전산등록·정보정정(100%) 포함
 자료: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추진방안(2008.3, 농림수산식품부 소
 득정책과), p.29.

아. 전산관리 체제 확립

어업경영체 정보 입력 및 교차확인 체계를 확립하고, 인력·어장 등 전산처리 대상정
 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전용 통신망 증설 등 전산
 처리 원활화 기반을 정비한다.

자. 개인정보보호

등록정보의 무단유출·악용을 막는 개인정보 보호의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전산시
 스템을 통한 정보유출이 없도록 시스템 보안을 철저히 강화한다.

차. 교육·홍보 계획

중앙단위의 집중적 홍보로 등록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 확보 및 공감대 형성에 주
 력한다. 또한 등록제 관련 일선기관과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방여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3. 소 결

농업부문의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 방안 검토를 통해 제시한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D/B구축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수산부문 D/B구축 계획(안)의 목적은 어업경영체의 규모와 유형에 적합한 정책 추
 진을 뒷받침하고, 경영체 단위의 정보 통합관리로 어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다.

등록신청 주체는 개인경영체의 경영주 및 법인경영체의 대표로 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수산물품질검사원에 신청한다. 등록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전산정보처리를 최대한화하여 어업인 직접 등록신청 정보의 최소화로 어업인 편의를 도모한다. 등록정보에는 어업경영체의 일반현황, 어업인력 정보, 어장정보, 어업생산량 및 소득 정보, 어업외소득 정보, 어업 관련 교육 이수 정보 등이 포함된다. 어업경영체의 일반현황에는 개인경영체의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법인경영체의 유형, 어업시작 년도 및 주어획어종 등이 포함된다. 등록자료는 향후 도입될 FTA 피해보전, 소득직불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 소득과약 없이 소득직불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등록정보의 통계적 분석·활용을 통해 향후 어가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등록자료를 개별 어업의 신청 등에 원용함으로써 어업의 효율성·건전성을 제고한다.

미등록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사업 지원에 제한을 둔다. 또한 허위등록 및 정보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해서는 직접지불금의 미지급 또는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형벌 제재를 통해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등록절차는 일괄등록과 상시관리로 등록절차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일괄등록은 시행초기에 모든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등록 추진하고, 상시관리는 신규·변경등록 및 실효성 있는 현지실사로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한다. 일괄등록시 예비신청(경영체)→전산처리(검사원)→본 신청(경영체)→전산등록, 통지(검사원)→정보정정(경영체)의 순서로 진행하며, 등록 경영체는 언제든지 어업경영체 등록 통지서의 발급요청 및 해당경영체의 등록된 정보내용 열람이 가능하다. 향후 상시관리시 신규 등록경영체는 일괄등록 체계와 동일한 절차로 등록하도록 한다

일괄등록에 소요되는 인력을 추정해보면, 수산물품질검사원 직원 1인당 1일에 3.9 어가를 조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7만7천 전체어가 등록에는 2년간 총 132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소한의 정규인력을 확보하고 부족인원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도록 확보한다.

전산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어업경영체 정보 입력 및 교차확인 체계를 확립하고, 인력·어장 등 전산처리 대상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전용 통신망 증설 등 전산처리 원활화 기반을 정비한다. 또한 등록정보의 무단 유출·악용을 막는 개인정보 보호의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유출이 없도록 시스템 보안을 철저히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D/B구축 계획(안)의 홍보는 중앙단위의 집중적 홍보로 등록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 확보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또한 등록제 관련 일선기관과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방여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표 2-80> 수산부문 D/B구축 계획(안)

구분	내용
목적	○ 어업경영체의 규모, 유형에 적합한 정책 추진 뒷받침 ○ 어업의 효율성 제고
등록신청	○ 개인경영체의 경영주, 법인경영체의 대표 ○ 주민등록지 관할 수산물품질검사원에 신청
등록대상 정보	○ 전산정보처리 최대화를 통한 어업인 직접 등록 최소화 ○ 일반현황, 인력, 어장정보, 생산량 및 소득, 어업외소득,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정보의 활용	○ FTA 피해보전, 소득직불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어가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	○ 미등록 경영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제한 ○ 허위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형벌 제재
등록절차 및 요령	○ 일괄등록과 상시관리로 구분
소요인력 추정 및 확보방안	○ 일괄등록 시 2년간 총 132명 ○ 최소한의 정규인력 확보, 부족인원은 외부인력 활용
전산관리 체제 확립	○ 정보 입력 및 교차확인 체제 확립 ○ 전산처리 원활화 기반 정비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 시스템 보안 강화
교육·홍보 계획	○ 중앙단위 홍보로 인지도 확보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 ○ 현장중심의 교육, 홍보 병행

제3장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제1절 대상품목(업종) 선정기준

1. 평가 기준 선정을 위한 절차

원양어업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원양어업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어업경비의 증가, 어업인력의 감소로 인한 인력난 등의 문제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FTA체결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와 어업자원에 비하여 과도한 어선세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양어업의 경쟁력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축소 또는 철폐시기 이전에 원양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양어선 폐업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업종의 폐업이 보다 더 시급한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는데, 이의 결정을 위해서는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이들의 중요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한 폐업 시 고려요소를 우선 검토한 후, 원양 업종별 위원장 기업 관계자의 간담회를 통해 해당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2. 대상품목 (업종) 선정의 기준

원양 업종별 위원장 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와 이후의 자문을 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한미FTA로 인한 피해, 경영수익성, 연안국 규제, 쿼터확보어려움, 입어료 부담, 조업경쟁여건, 폐업의지를 주요 고려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표 3-1> 업종별 폐업 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 항목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구분	한미FTA	수익성	조업 여건				폐업의지
평가항목	FTA영향 생산감소	경영 수익성	연안국 규제	쿼터확보 어려움	입어료 부담	타어선과 경쟁	폐업 선호도

한편, 실제 폐업 물량을 결정할 때는 어선별 수익성을 고려할 것이며, 그 수익성이 최저기대수익률 (Minimum Required Return, MRR)보다 작을 경우, 우선 폐업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MRR로는 3%를 우선 적용할 것이며, 5%인

경우도 상정할 계획이다.

제2절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산출방법 및 지급절차

1.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가.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연근해 감척사업의 경우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비용 및 어선해체처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입찰을 통하여 낙찰가격을 지급하며, 어선·어구 및 시설물은 평가기관에 의한 잔존가치 평가를 통하여 평가액을 지급하고 있다.

연안어업 어선감척사업의 감척지원조건은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국고보조 80%, 자담 20%이며,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 및 폐선처리비는 국고보조 100%이다. 반면, 2007년 기준 근해어업의 감척지원조건은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해당 어업별·톤급별로 조사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정액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국고 100%로 보조 지원하였다.

※ 연안어업 지원대상 및 조건(2007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02, 2007)

- (1)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비용 및 어선해체처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2) 연안어선 감척지원조건은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이다.
- (3)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수한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근해어업 지원대상 및 조건(2007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근해어선부문), 09, 2007)

- (1) 사업비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선체 확인비용, 위탁관리비 및 어선 해체처리비 등에 사용한다.
- (2) 폐업지원금은 해당 어업별·톤급별로 조사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정액(붙임 1)을 국고 보조로 지원하고,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액(이하 “잔존가치 평가액”이라 한다)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국고 100%로

보조 지원한다.

(3) 폐선처리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고 100%로 보조 지원한다.

(4)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한 어업 여건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척이 이루어지도록 지방비를 확보하여 폐업지원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나. 원양어업폐업지원금 지급기준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은 업종별 어업수익 및 한미 FTA체결에 따른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감척사업시 기존 평가에 의한 방법과 입찰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분석), 그리고 입찰제 도입 후 연안어선감척사업에서의 예산절감 등을 고려할 때 원양어선감척사업은 기존의 평가에 의한 방법이 아닌 입찰제도입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업지원금 지급의 기준금액은 업종별 입찰기초가격이 된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은 해당업종별로 폐업지원금의 입찰기초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 본인이 직접 희망하는 금액을 입찰서로 표시하고, 입찰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감척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비용 및 어선해체처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원양어선의 경우 폐업대상선박을 사업집행주체가 평가 및 처분을 담당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선·어구 처리방안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방법의 검토결과(제 6장 제 5절 참조)를 토대로 1차 감척사업의 대상업종인 북양트롤, 대서양트롤, 인도양트롤에 대하여 <표 3-2>와 같이 제안한다. 표에서 제시한 각각의 방안에서 북양트롤, 대서양트롤, 인도양트롤의 어선규모, 어장특성 및 폐업지원금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표 3-2> 어선·어구 처리방안 및 입찰기준가격 산정방법

방법	내용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만 입찰기초가격에 포함하고 어선·어구는 선주가 임의 처분함.	● 2004년 원양어업감척사업에서 시행한 제도임. 입찰기초가격은 어업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만 산정하여 책정함.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잔존가와 선	● 어업인이 직접 폐선처리 토록하고 선박잔존가와 고철가격의 차액만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입찰기초가

박에 대한 고철가격 차액 부분을 입찰기초가격에 포함하여 산정. 어선·어구는 선주가 고철로 처분함.	격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함(부록 참조). $\text{입찰기초가격} = \text{폐업지원금} + \text{어선·어구잔존가격} - \text{폐어선의 고철가격}$
--	--

<표 3-2>에서 제시한 원양어업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방안은 어업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별 어업인들이 임의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과 어선·어구의 잔존가치와 폐어선처리시 고철가격의 차액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어선·어구잔존가와 고철가격의 차액부분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안은 어선의 규모가 큰 경우 한정된 폐업지원금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규모까지만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본 연구에서는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를 동시입찰하고 정부에서 어선을 처리하는 방안과 폐업지원금은 입찰제로하고,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는 업종별 표준가 정액제로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였다(제 6장 제 5절 참조).

원양어업인 입찰기초가격 결정에 따른 입찰참여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북양트롤의 경우 입찰기초가격이 평균수익의 80%이상일때 응답자의 35.3%가 참여의지를 보였으며, 52.9%는 평균수익의 70%이하에서 불참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대서양트롤의 경우 응답자의 30.2%가 평균수익의 80%이상일때 참여의지를 보인 반면 39.5%가 평균수익의 70%미만에서는 불참의사를 나타내고 70%수준에서 참여의사는 9.3%, 불참의사는 7.0%를 보였다. 인도양트롤의 경우 응답자의 20%가 평균수익의 80%이상일때 참여의지를 보인 반면 53.3%가 평균수익의 70%이하에서는 불참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과거 연근해감척사업 및 원양어업감척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FTA체결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규모는 최소한 수익의 70%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지원금 규모에 따른 대안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수익에 대한 지원금	100%	100%	70%	70%
(어선·어구잔존가-고철가)에 대한 지원금	100%	70%	100%	70%

본 연구에서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표 3-3>에서 4개의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대안 중 최적대안결정은 정부의 원양어업폐업지원금 예산, 기존 원양어업감

척사업과의 형평성, 입찰참가자의 참여의지, FTA체결에 따른 영향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FTA체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한 원양어업폐업지원금 지급은 현행 어족자원보호 및 적정어선세력 유지를 위한 연근해어업어선감척과는 성격이 다르며, 따라서 현행 연근해에서 지급하는 기준보다는 기존 국제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지원금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업지원금 규모를 수익에 대하여 100%(또는 70%)를 기준으로 하여, 원양어업의 지원대상 및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 예시와 같다.

※ 원양어업 지원대상 및 조건(예시)

- (1) 북양트롤은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만 지급하고,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은 개별 어업인이 임의 처분한다.
- (2) 대서양트롤 및 인도양트롤은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최대 600톤(또는 400톤) 까지 어선·어구의 (잔존가치-고철가격)의 차액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600톤(또는 400톤) 초과 선박에 대한 잔존가치는 600톤(또는 400톤)으로 계산 함.
- (3) 폐업지원금의 지급조건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 100%(또는 70%)를 입찰기초가격으로 결정한다. 대서양트롤 및 인도양트롤은 어선·어구의 (잔존가치-고철가격)의 차액금액의 100%(또는 70%)를 입찰기초가격에 포함한다.
- (4) 해당업종별로 폐업지원금의 입찰기초가격이 제시되면 입찰참가자 본인이 직접 희망하는 금액을 입찰서로 표시하여 결정한다.

2.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및 지급절차

2.1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및 지급절차

현재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은 이전의 평가에 의한 방법을 대신하여 입찰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어업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연안어업의 경우 업종별 어선규모별 3년간 평균 수익의 70%를 입찰예정가격으로 책정하고 시행하고, 근해어업은 '07, '08년에는 3년간 업종별 어선규모별 평균수익의 50%를 정액제로 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감척어선에 대한 어선·어구의 잔존가치는 기존의 평가에 의한 방식대로 직접 어선별 평가에 의하여 평가 금액의 100%를 지급하였다. 연안어선감척사업의 추진절차는 <표 3-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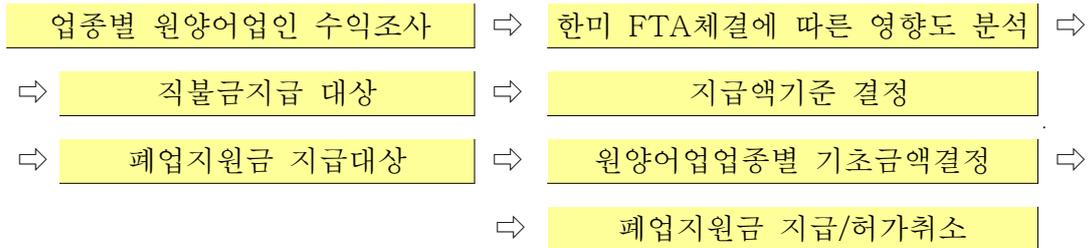
<표 3-4> 연안어업감척사업 추진절차

추진순서	수행기관	소요기간	내용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행정부 주)	즉시	○ 행정부에서 수립하여 사도에 시달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행정부	즉시	○ 시·도별 감척물량 확정 및 소요예산 배정
세부사업집행 지침 수립·시달	시·도	15일 이내	○ 행정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입찰신청자격, 제출서류, 입찰방법,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사업안내 입찰공고 사업홍보	시·도 시·군	30일간	○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에 입찰안내문 발송 ○ 기초가격, 예산,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입찰일시·장소, 입찰방법,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	시·군 시·도	7일간	○ 입찰참가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참가신청서류 접수 ○ 입찰참가자격 유무 확인 후 유자격자에게는 입찰절차 안내
예정가격 작성	시·도 시·군	입찰 5일 전	○ 시·도지사는 기초가격의 ±2%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밀봉 보관
입찰	시·도 시·군	1일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장에 직접방문하여 입찰서를 제출 ○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결정 ○ 유찰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도 예비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 ○ 입찰결과 공개 - ·입찰후 예정가격은 즉시 공개 - 사업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향후 일정 및 포기시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시·도 시·군	30일	○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 ○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관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도 시·군	10일	○ 예산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 최종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시·도 시·군	30일	○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업어선 해체처리 ○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말소,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지급	시·도 시·군	30일	○ 폐업지원금 입찰금액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을 지급
사업 정산	사도	30일	○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후 반납

주 : 행정부는 기존 해양수산부를 지칭하며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됨

2.2 원양어업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및 지급절차

원양어선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지급규모는 업종별 평년수익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및 지급절차는 사업추진 방법(평가에 의한 방식 또는 입찰에 의한 방식) 및 기존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지급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3-1> 원양어업폐업지원금 산출과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원양어업폐업지원금 지급절차는 입찰제를 기초로 <그림 3-2>에서 제시한 순서에 의해 진행한다.

업종별 수익성 및 어선·어구처리방안이 상이하기 때문에 입찰기초가격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업종별 구체적인 가격은 부록에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감척대상 원양어업(북양트롤, 대서양 및 인도양 트롤)에 대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대상업종의 어선규모, 폐업지원금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적으로(예, 북양트롤은 선주임의 처분, 대서양 및 인도양 트롤은 어선·어구 잔존가치와 고철가격의 차액은 입찰기초가격에 반영)또는 동일한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박잔존가와 폐어선 처리시 고철가격의 차액을 입찰기초가격에 반영하는 경우, 선주가 고철 해체한다는 보증서제출 및 선박해체 후 현지 공관장 확인을 득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어선·어구를 어업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는 폐업지원금 지급전에 국적 말소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어선·어구는 선주가 임의로 처리함으로 해체하거나 해외에 판매 또는 합작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그림 3-2> 원양어업폐업지원금 지급절차

추진순서	수행기관	내 용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원양어선 감척물량 및 소요예산 배정
↓		↓
사업 집행지침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 입찰신청자격, 제출서류, 입찰방법,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결정
↓		↓
사업안내/입찰공고/사업홍보	농림수산식품부/원양어업협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 ○ 기초가격, 예산,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입찰서 제출기간·장소, 입찰방법,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		↓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입찰참가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참가신청서류 접수 ○ 입찰참가자격 유무 확인 후 유자격자에게는 입찰절차 안내
↓		↓
입찰서 접수	농림수산식품부	○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
예정가격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 기초가격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밀봉 보관
↓		↓
개찰	농림수산식품부	○ 입찰서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
↓		↓
사업대상자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 입찰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결정 ○ 사업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업종은 제공고 입찰
↓		↓
입찰결과 안내	농림수산식품부	○ 입찰신청자 모두에게 입찰결과를 안내
↓		↓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농림수산식품부	○ 예산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 최종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		↓
어업허가취소	농림수산식품부	○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말소, 어업허가 취소
↓		↓
지원금지급	농림수산식품부	○ 폐업지원금 입찰금액을 지급

제4장 연근해 어선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연구

제1절 기존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분석

1.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배경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업의 어선세력을 적정수준으로 축소/조정하는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대내적인 감척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자연성장률을 초과하는 과잉어획과 해양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생산량 감소→소비자 지불가격 증가로서 소비자 후생이 악화 ● 생산자들도 어업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어선의 노후화 및 어선원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 수지가 악화됨

□ 대외적인 감척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WTO/DDA 협상에서 면세율을 비롯한 수산보조금이 규제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중국 등 외국과의 FTA협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어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정부에서는 연근해 어업자원 회복 및 연근해어업 경영수지제고를 위해서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여왔다. 또한, 중국·일본과의 한일어업협정(1999년 1월 22일 발효), 한중어업협정(2001년 6월 30일 발효)으로 일본 및 중국수역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들이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1999년 9월)”을 마련하여 해당 어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05년까지는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서는 ‘평가를 통한 어업손실액 지원’ 방식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감척사업추진시 사업대상자가 지급액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의 많은 부분이 불용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사업절차상 폐업손실액 산출용역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상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연구

(2005)” 및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연구(2007)”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평가에 의한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감척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입찰제를 도입을 제시하였다.

현재 연안어선감척사업에서의 입찰제는 기존의 평가에 의한 방법보다 감척사업비용,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앙부서의 자체 평가에서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원양어선감척사업에서도 기존의 평가에 의한 방법 보다는 현재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서 도입·운영중인 입찰제에 의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근해어업어선 감척현황분석

가. 연안어업 업종·연도별 감척물량

기존 평가에 의한 감척방법에서 2005년 입찰제도입 이후 연안어업의 감척추진실적 및 2008년 감척예상 규모는 <표 4-1>와 같다.

<표 4-1> 연안어업어선 감척물량('05년~'07년)

년도	목표(척)	04~07	목표대비 실적율 (%)	잔여 감척물량(척)
		실적(척) ¹⁾		
2004		639	4.2	14,691
2005	15,330	841	5.5	13,850
2006		1,598	10.4	12,252
2007		2,836	18.5	9,416
2008 ^{주1)}		3,500	22.8	5,916
계		9,414	61.4	-

자료: 1.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연구(해양수산부, 2007)

2.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08)

주 1) '08년도는 본예산 연안어선 2,000척(1,000억원) 및 추경예산 연안 1,500척(750억원)으로 연안어선 3,500척(1,750억원)예정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해양수산부, 2005)”에서는 연안어업자원회복 측면에서 연안어업의 적정감척물량을 제시하였으며,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연구(해양수산부, 2007)”에서는 기존 연안어업어선감척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로 업종별 최적감척물량을 제시하였다.

현재 연안어업의 구조조정사업에서는 국고 80%, 지방비 20% 분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까지의 감척규모 및 2008년 국고의 연안어선감척사업비를 고려할 때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감척목표치의 약 62% 정도 목표달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안어선의 최종목표물량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에서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03년 기준 연안어선세력의 10% 수준인 6,300척을 1차로 감척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감척에 대한 어업인들의 요구, 업종별 최적감척물량에 대한 감척율, 업종별 어족자원현황, 그리고 한미 FTA체결에 따른 연안어업인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감척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나. 근해어업 업종·연도별 감척물량

근해어업어선 감척사업은 2007년, 2008년 어업별·톤급별로 조사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폐업지원금)의 50%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4-2>은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해양수산부, 2005)”에서 제시한 '08년~'10년까지의 업종별 연도별 근해어선의 감척물량을 나타낸다.

<표 4-2> 근해어선 연도별 감척물량 및 감척예산

업종	우선순위	08년 감척물량		09년 감척물량		10년 감척물량	
		감척수(척)	감척소요예산(천원)	감척수(척)	감척소요예산(천원)	감척수(척)	감척소요예산(천원)
대형기저(외)	1	3	1,744,302	14	8,140,076	3	1,744,302
대형기저(쌍)	1	4	3,526,168	12	10,578,504	4	3,526,168
동해구기선저인망	1	3	1,586,784	16	8,462,848	4	2,115,712
대형트롤	1	3	3,980,430	20	26,536,200	5	6,634,050
동해구트롤	1	2	1,408,716	10	7,043,580	3	2,113,074
기선권현망 1구	1	12	3,054,595	71	18,073,022	18	4,581,893
근해안강망	1	11	4,891,898	64	28,461,952	16	7,115,488
근해장어통발	1	4	1,813,092	25	11,331,825	6	2,719,638
근해기타통발	1	6	2,831,634	35	16,517,865	9	4,247,451
근해연승	1	28	10,679,172	165	62,930,835	41	15,637,359
서남구기저(외)	2			3	2,174,652	14	10,148,376
서남구기저(쌍)	2			2	1,225,199	6	3,675,597
대형선망	2			12	12,304,130	50	51,267,208
근해채낚기	2			26	11,260,808	105	45,476,340
기선권현망 2구	2			5	1,272,749	22	5,600,096
근해자망	2			25	10,626,550	99	42,081,138
잠수기 1구	2			1	274,281	2	548,562
잠수기 2구	2			1	175,026	4	700,104
잠수기 3구	2			9	1,609,227	37	6,615,711
잠수기 4구	2			4	696,708	15	2,612,655
잠수기 5구	2			3	742,734	11	2,723,358
근해형망 1구	2			12	2,344,080	50	9,767,000
근해형망 2구	2			5	976,700	19	3,711,460
소형선망	3					29	4,209,224
근해봉수망	3					1	324,721
근해자리돔들망	3						
근해문어단지	3					5	1,360,010
계		76	35,516,791	540	243,759,551	578	241,256,695

자료: 근해어선 감척사업제도개선에 관한연구(해양수산부, 2007)

<표 4-3>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연도별 감척물량 및 계획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07~’10년)
척수(척)	-	86	484	324	386	1,2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08)

<표 4-3>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근해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연도별 감척계획으로 '08년~'10년까지 총 감척계획은 1,194척이며, 이는 <표 4-2>에서 제시한 '08년~'10년의 목표 감척물량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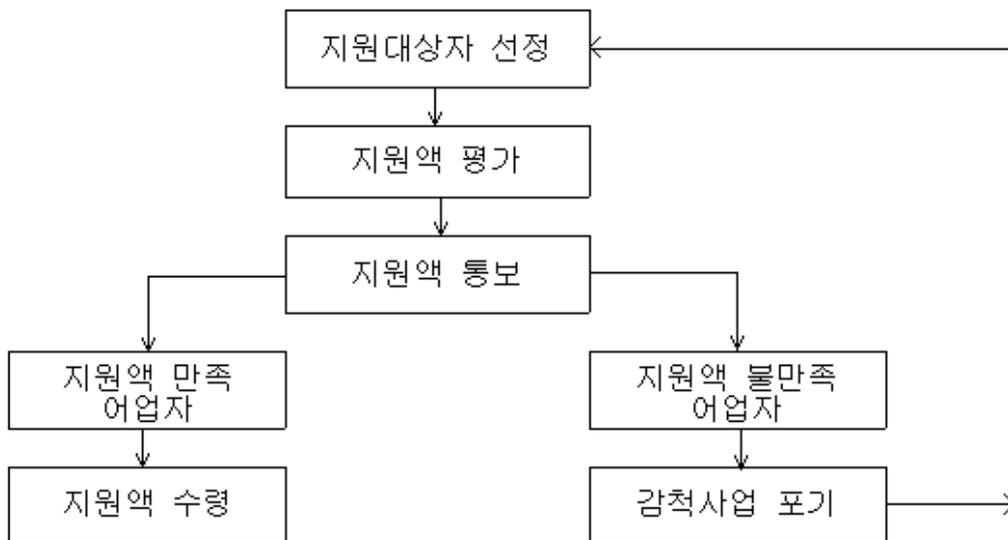
제2절 연근해 어선 폐업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1. 기존 연근해어선감척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 기존 평가에 의한 연근해어선감척체계

입찰제 도입 이전에 기존 연근해어선감척에 따른 어업인들의 폐업지원금은 평가기관이 각 어업인별로 3년간 평년수익을 평가하여 지불하였다. 이러한 평가식 지원액 결정 방법은 경쟁력이 높은 어선 즉, 경영 능력이 우수하거나 선박성능이 양호한 어선이 한계어선보다 지원액이 높게 평가되어 경쟁력이 높은 어선이 퇴출하기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지원액 평가 후에 지원액에 불만이 있는 어업인들이 감척수혜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어업 경영이 어려운 한계 어업인의 조기 퇴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다시 사업희망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새롭게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써 감척사업기간이 당해연도에 끝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결국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기존 연근해어선 감척을 위한 평가에 의한 폐업지원금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4-1> 기존 평가에 의한 연근해 어선감척체계

나. 평가에 의한 연근해어선 감척체계의 문제점분석 및 해결방안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제 도입이전 평가에 의한 연근해어선의 폐업 지원금 지

원 체계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 첫째, 동일업종, 동일규모의 어선에서도 수익에 따라서 10배 이상의 폐업지원금의 차이가 발생함
- 어업인들이 자신이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고, 이에 의존하여 지원금 금액을 결정함으로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
- 지원액 평가 방법이 복잡하여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어민들의 불만이 상존함
- 평가결과에 대해 행정부와 어민간의 상반된 해석, 즉 행정부는 과대평가했다는 입장인 반면 어민은 과소평가 했다는 주장
- 지원액 불만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다시 지원 절차를 시작함으로써 당해년도 사업이 익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이 내재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성 논란이 야기됨
- 어선이 노후하고 수익성이 낮은 어업자들 보다 우수한 어선성능 및 장비를 보유한 선박들이 우선적으로 감척을 희망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상과 같이 기존 연근해어업어선의 감척사업에서 시행한 평가를 통한 매입방식의 감척사업 체계는 어민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과 사업시행 절차의 복잡함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감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척제도 방안의 도입이 요구되며, 기존의 평가에 의한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을 대신하여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해양수산부, 2005)” 및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연구(해양수산부, 2007)”연구에서는 입찰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입찰제의 도입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지원액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어선에 대한 수익 평가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2. 연근해어선감척체계의 입찰제 도입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임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로 현재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법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서는 수익에 대해 어업인들이 예정가격 이하에서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입찰가격이 낮은 순부터 사업대상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 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어업자가 자신의 수령액을 예측하고 대

상자 선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어업자 자신이 지원액을 확정함으로써 감척사업에 대한 불평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경쟁에 의한 지원액 절약으로 감척사업에 다수를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소외자 최소화화, 경영이 어려운 한계어업인의 조기 은퇴, 사업기간 단축 등의 장점들 외에 정부의 예산절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입찰제 도입으로 인한 연안어선감척사업비 절감액내역

구분	2001 ~ 2004년	2005년	비고
감척수(척)	119	748	
어선 톤당 지원금	14,861천원/톤	10,360천원/톤	4,501천원/톤
폐업지원금 평균 수수료 지급액	1,523천원/척	-	

<표 4-5> 연안어선감척사업비 절감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절감내역	절감액 내역			보조율별 절감액9379	
	지원금	수수료	계	국고(80%)	지방비(20%)
'05년도 절감액	13,433	1,139	14,599	11,679	2,920
총 절감액('05 ~ '08)	101,755	8,629	110,384	88,307	22,077

자료: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어선감척) 예산절감 효과분석(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6)

특히, 연안어업은 입찰제 도입으로 2005년 연안어선 감척계획 대비 실적은 계획척수인 390척을 15% 초과달성한 841척을, 2006년은 1,000척 계획 대비 1,598척 감척으로 60% 초과 달성하였고, 2007년은 2,000척 계획 대비 42% 초과달성한 2,836척을 각각 감척하였다.

3. 한미FTA체결에 따른 연근해어업 영향분석

한-미 FTA 협상은 '06년 6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8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 '07년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다.

가. 수산물양허협상결과

수산물관련 양허협상결과 즉시 철폐를 최소화하고, 민감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관세 철폐시기를 장기화하였다. 즉, 대부분의 민감품목(152개, 전체 수산물의 37%)은 10년 또는 10년 이상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표 4-6> 참조).

<표 4-6> 품목별 양허유형

양허 유형	개수	주요 품목	
즉시철폐	58	갯지렁이, 부화용 알, 해덕, 연어류, 산호, 폐각, 경유	
3년 철폐	165	냉동참치, 이빨고기, 열대어, 분·조분, 어란, 파래	
5년 철폐	31	한천, 바다가재, 냉동정어리, 한천, 닭새우류, 유지	
7년 철폐	1	우뭇가사리 기타	
10년 철폐	선형철폐 (균등철폐)	129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어류피레트, 참치통조림
	비선형 철폐	19	냉동아귀, 냉동오징어, 냉동가오리, 꽃게·대게 등
12년 철폐 (8년 유예, 4년 철폐)	1	냉동고등어	
12년 철폐(TRQ) (8년 유예, 4년 철폐)	2	냉동민어, 냉동넙치류	
15년 철폐(TRQ) (10년 유예, 5년 철폐)	1	냉동명태	
계	407		

나. 한미 FTA체결에 따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한미 FTA체결에 따른 영향은 주로 원양어업에서 나타날 것이며 연근해어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널리 소비되면서 가격대가 높은 일부 저서어종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예측하고 있다.

<표 4-7> 어업별 생산 감소액(단위 : 억원)

	연평균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281	234	286	323
원 양	185	165	185	206
연 근 해	54	33	59	71
양 식	38	34	38	42
내 수 면	4	2	4	4

자료: 한미FTA관련 자료집(해양수산부, 2007)

기존 연구인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해양수산부, 2007)”에서는 WTO/DDA/FTA체결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근해어업어선의 업종별감척우선순위 및 적정감척물량을 산정하였다. 한미FTA체결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업종별 직접적인 영향 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요구되나, 현재 추진 중인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미FTA체결에 따른 직접영향권에 있는 업종은 피해액에 대한 직불금지급 또는 추가감척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미FTA체결 영

향에 따른 추가 감척시 감척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기존의 연근해어업어선의 폐업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추가 감척요구가 있을 경우, <표 4-7>에서 제시한 생산감소액 부분만큼의 추가예산 배정을 통하여 감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추진결과 연안어업은 '04년~'07년까지 5,914척이 이미 감척되었고 2008년 까지 3,500척의 추가 감척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연안어선의 감척사업을 '08년에 1차로 마무리 하고 2009년 연구를 통해 감척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04년~2008년 까지의 연안어선 감척수치는 목표량인 15,330척의 약 61%에 해당하는 9,414척에 불과하다. 반면, 근해어업은 2007년까지 2,026척을 감척하였고, 2010년까지 추가로 1,194척 감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해양수산부, 2007)”에서 제시한 감척 목표치의 100%에 해당된다.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해양수산부, 2005)” 및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해양수산부, 2007)”의 연구에서는 최대지속생산량 MSY(Maximum Sustainable Yield) 목표에 기초하여 최적감척 물량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감척물량을 달성할 경우 적정 MSY(Maximum Sustainable Yield)수준 도달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는 MSY(Maximum Sustainable Yield)수준 이상의 감척은 불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해양수산부, 2007)”에서는 FTA체결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근해어선의 감척 우선순위결정 및 감척물량산정을 하였다. 따라서 한미 FTA체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폐업지원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연근해 감척사업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및 <표 4-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미 FTA발효로 인한 연근해 어업의 피해가 원양에 비해 크지 않고,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악화는 이미 대부분 노출되어있으며 이는 기존 감척사업에 반영되어 많은 부분이 해소되어 왔지만 한미 FTA발효로 인한 어업별 생산량 감소액이 19% 차지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연근해 어업인의 추가 감척과 감척지원금의 상향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한미 FTA발효로 인하여 연근해 어업에서 다소의 영향을 받는 업종은 직불제로서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FTA발효로 영향을 받는 연근해어업에 대한 직불제 지원방안은 제 2장 참조). <표 4-8>은 한미 FTA체결에 따른 연근해어업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이다.

<표 4-8> 한미 FTA체결에 따른 연근해어업 지원방안

방안	대상	지원조건	비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어업인이 감척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연근해어선감척사업 과 동일한 조건(폐업지원 금 지급 및 어선·어구 정 부매입)으로 지원함. 이는 기존감척사업자와의 형평 성 유지를 위해 필요함.	한미FTA체결에 따른 연 근해어업 피해추정액 54 억 추가 감척예산으로 배정
연근해어업 직불금지급	직불금 지급대상 이 되는 경우	직불금지원기준 만족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지원함.	

제5장 폐업지원금지급을 위한 추진체계 연구

제1절 과거 원양어선 감척사례 및 추진체계 분석

1. 과거원양어선 감척사례분석

과거 원양어업 감척사업은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신한·일어업 협정 체결에 따라 북해도 트롤, 콩치붕수망 및 오징어채낚기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이 추진되었다.

기존 원양어업감척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법 제11조에 두고 있으며, 어선·어구 및 시설물에 대해 잔존가치 평가액 100%보조, 폐선처리비에 대해 100%보조, 그리고 폐업지원금은 어선당 평년수익액의 3년분 범위 내에서 보조 50%, 용자 30%, 자담 20%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용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상환임).

가. 업종별 구조조정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 북해도 트롤어업

신한·일어업협정('99년도 발효)으로 북해도 연안 15~17해리 외측의 조업어장에서 11척을 철수하였으며, 11척 중 5척은 타업종으로 전업조치하고, 6척은 감척완료('98~'99, 7,654백만원)하였다.

2) 콩치붕수망어업

신한·일어업협정이전에는 북해도 및 산리꾸연안 12해리에서 조업하였으나, 협정이 후에는 조업수역이 연안 35해리로 조정되어 조업어장이 축소되었다. 콩치붕수망 30척(오징어겸업선 26척 포함)중 10척을 감척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잔여척수는 20척(오징어 겸업선 19척 포함)이다.

3) 오징어 채낚기 어업

'92년 UN결의에 의해 북태평양에서 오징어유자망 어업이 전면 금지되므로 우리어선 105척이 전면 철수하게 되었으나, 철수된 오징어 유자망어선의 전업대책인 오징어 채낚기 어업으로 업종전환 되어 어선세력이 과잉 초래되었다.

105척중 오징어채낚기어업으로 40척 전업하였으며, 오징어채낚기 85척(콩치붕수망 겸업선 포함)중 24척을 감척하였다.

나. 원양어업 구조조정 내역

원양어업의 구조조정내역은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원양어업의 구조조정내역(총괄)

(단위 : 척, 백만원)

구분		계	'98-'99년	'00-'01년	'02년	'03년	'04년
계	척	40	6	7	5	3	19
	금액	38,603	7,717	8,211	6,074	3,205	
북해도트롤 ¹⁾	척	6	6				
	금액	7,654	7,654				
꽁치붕수망 ¹⁾	척	10		7	3		
	금액	11,408		8,012	3,396		
오징어채낚기	척	24			2	3	19
	금액	19,155			2,554	3,205	8,588

주 : 1) 북해도트롤 및 꽁치붕수망은 해체처리비(척당 6-7억원)는 제외됨

다. 업종별 구조조정 내역

1) 북해도트롤어업

북해도트롤어업의 1998년~1999년 사이의 구조조정현황은 <표 5-2>와 같다.

<표 5-2> 북해도트롤어업 구조조정현황('98~'99)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선명	톤수	진수일	구조조정 보상비			
				합계	어선매입비	폐업보상비	용자
정화원양	3정화	347.55	'66.10	899	522	236	141
광해산업	화랑호	488.00	'71.12	1,378	841	335	201
극동물산	북양 2	497.61	'75.02	1,383	861	326	196
창진교역	303창진	349.49	'72.08	1,145	613	332	199
성경수산	808태원	370.71	'72.05	1,702	658	653	392
창진교역	501창진	370.71	'72.04	1,147	653	309	185
계		-	-	7,654	4,148	2,191	1,314

2) 꽁치붕수망어업

꽁치붕수망어업의 2000년~2002년 사이의 구조조정현황은 <표 5-3>과 같다.

〈표 5-3〉 콩치붕수망어업 구조조정현황('00~'02)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선 명	톤수	진수일	구조조정 보상비			
				합계	어선매입비	폐업보상비	용자
성경수산	5성경	292	'74.7	1,379	688	430	261
한양어업	77한양	297.83	'64.10	1,151	615	334	202
신창수산	301신창	370.83	'67.2	1,177	736	275	166
대어수산	906대북	355.08	'64.2	897	659	148	90
동원산업	67동원	381.72	'67.7	1,282	704	349	229
사조산업	752오룡	364.62	'74.7	1,013	662	212	139
창진교역	301창진	394.78	'75.4	1,113	679	262	172
하영기업	에피웨이브	342.0	'76.3	1,201	748	283	170
통영산업	9통영	285.21	'73.10	1,139	631	318	190
동원산업	57동원	335.56	'74.11	1,056	676	238	142
계		-	-	11,408	6,798	2,849	1,761

2) 오징어채낚기어업

오징어채낚기어업의 2002년~2003년 사이의 구조조정현황은 <표 5-4>와 같다.

〈표 5-4〉 오징어채낚기어업 구조조정현황 ('02-'03)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선 명)	톤 수	진수일	지 원 내 역					
			합계	폐업보상비			어선어구 매입비	해체 처리비
				소계	보조	용자		
덕명수산 (7덕명)	335	'65. 4	1,134	556	432	124	572	6
서양물산 (89서양)	499	'69. 1	1,404	655	509	146	744	5
동방수산 (39동방)	356	'69.10	991	339	339	-	647	5
상지수산 (1서진)	347	'70. 7	1,040	427	427	-	608	5
부양어업 (88진양)	358	'70.11	1,189	554	554	-	630	5
계	-	-	5,759	2,531	2,261	270	3,201	26

특히, 2004년도에는 당초 3척의 감척계획이었으나 포클랜드 수역의 어획부진으로 내외국인선원 임금체불 등 외교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감척 물량을 20척을 동시에 감척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2004년 감척어선에 대하여 척당 452백만원의 폐업보상비만 지급하였다.

<표 5-5> '04년 감척어선 및 폐업보상비 지급현황

업체명	선박명	총톤수	진수일	폐업금액
동백수산	303동백	497.31	'79.6	452백만원
보고해양산업	21보고	928.61	'67.8	"
삼영수산	태진77	467.26	'71.1	"
삼호F&G	75태백	549.0	'86.6	"
상지수산	11서진	449.68	'74.8	"
선민수산	1은해	449.68	'74.8	"
성경수산	201성경	404.68	'68.11	"
씨월드코퍼레이션	101씨월드	435.15	'75.4	"
원진원양	101원진	515.0	'73.5	"
인성실업	102인성	435.15	'75.2	"
(주)엠에스	11엠에스	443.74	'74.5	"
주압산업	801재성	430.92	'78.10	"
창진교역	601창진	497.06	'64.2	"
삼호F&G	606태백	493.0	'88.8	"
금미수산	3정양	242.99	'64.6	"
금미수산	305금미	241.0	'64.3	"
영신수산	영신3	108.0	'84.6	"
에스앤에이치	12엠에스	448.23	'74.7	"
(주)엠에스	15엠에스	447.14	'78.9	"
계	19척			8,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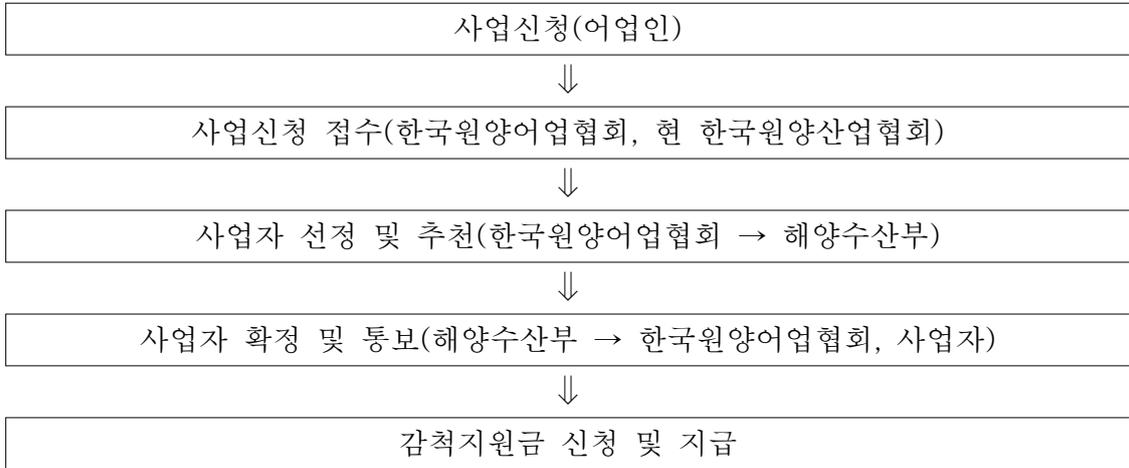
2. 원양어선 감척추진체계 분석

기존의 원양어선 감척추진체계는 연근해어업과 마찬가지로 어선감축에 따른 어업인들의 폐업지원금은 평가기관이 각 어업인별로 3년간 평년수익(평년수익액의3년분)을 평가하여 지불하였다.

기존 원양어선의 감척체계는 입찰제 도입이전의 평가에 의한 연근해어업어선감척체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특성으로 설명된다.

- 어업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선의 감척사업 참여로 정부의 감척사업비용이 증대
-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써 감척사업 시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결국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

원양어업어선 감척을 위한 현재의 평가에 의한 폐업지원금 지원체계(집행기관)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추진된다.



<그림 5-1> 원양어업어선감척을 위한 현재의 평가체계

제2절 폐업 대상자자격조건 및 자격 확인 방안 등 제시

1. 폐업대상자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사업대상자 및 입찰신청자격

원양어선감척사업은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연근해어선감척사업과 성격이 상이하다. 즉, 원양어선감척사업은 FTA 협상결과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등의 폐지로 인해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 및 이들 원양어업업종의 적정 어선세력 유지가 주목적이다.

따라서 폐업대상자는 FTA체결에 따른 직접피해업종에 한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의 신청자격을 두어 기존의 원양어선감척사업 및 연근해어선감척사업과의 형평성을 유지, 현행 관련법령부합 등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분석결과(제 9장 원양어선 업종별 폐업 우선순위 및 물량 연구 참조) 1차년도 원양어업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북양트롤, 대서양트롤, 인도양트롤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원양어업(북양트롤, 대서양트롤, 인도양트롤)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척사업의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며, 이 신청자격은 입찰참가자격과 동일하다.

(1)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어업의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2년 전부터 본인 또는 회사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또는 원양어획물 반입실적보고를 한 자.

①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26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표 5-6>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어업 선령분포

업종	선령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 이상	
	척	%	척	%	척	%	척	%	척	%	척	%	척	%
북양트롤	-	-	-	-	-	-	-	-	1	20	-	-	4	80.0
대서양트롤	-	-	1	2.1	2	4.2	1	2.1	2	4.2	-	-	42	87.5
인도양트롤	-	-	-	-	-	-	-	-	-	-	-	-	9	100

<표 5-6>은 1차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어업의 선령분포를 나타내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양트롤 및 대서양트롤은 전체 어선의 80%이상, 그리고 인도양 트롤은 전체 어선의 100%가 선령 26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5-6>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어업 선령분포 <표 5-8>에서 제시한 강선의 내용연수 및 원양어업어선의 선령분포를 고려하여 폐업대상자에 대한 선령기준을 26년 이상으로 제시한다.

<표 5-7> 원양어업종별 선질분포

업종	강선	목선	F.R.P	기타	계
원양연승어업	194	0	0	0	194
원양트롤어업	176	1	0	0	177
원양선망어업	24	0	0	0	24
원양유자망어업	2	0	0	0	2
원양봉수망어업	8	0	0	0	8
원양채낚기어업	62	0	0	0	62
원양통발어업	7	0	0	0	7
기타원양어업	9	0	0	0	9
계	482	1	0	0	483

<표 5-8> 어선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비

선체구분	내용연수	잔가율	감가상각비					비고
			5년경과	10년경과	15년경과	20년경과	25년경과	
강선	25	20%	0.7248	0.5253	0.3807	0.2759	0.2	
FRP선	20	10%	0.562	0.316	0.178	0.1		
목선	15	10%	0.464	0.215	0.1			

자료: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해양수산부, 200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사업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자격은 입찰참가자격 제외대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1)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하여 감척한 경험이 있는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 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현행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둠).
- (2) 종전에 원양어업 구조조정사업의 대상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후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3)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다만, 일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2000년도,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집행 지침」을 적용받아 감척된 폐업어선을 어선 현대화사업으로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자(어선원부, 어업허가 등의 기재사항이 '99.5.30 이후 소유권 또는 선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다만, 어선·어구를 어업인들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나. 폐업대상자 지원조건

현재 연근해어선의 감척사업에서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비용 및 어선해체처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원양어선의 경우 선박에 대한 직접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기존 원양어업감척사업과의 형평성 및 사업집행주체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폐업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수익에 대한 지원금(또는 수익 + 어선·어구잔존가격)으로 한정하고 어선·어구 처리는 어업인들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능한 대안들 중 최적대안 선택은 업종별 특성 및 기존 국제어업협정체결에 따른 감척사례, 정부의 폐업지원금 예산규모, 어업인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폐업지원금지급 대상업종인 북양트롤, 대서양트롤, 인도양트롤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대안으로 검토하였으며(<표 11-1> 참조), 이들 대안 중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2개 대안, 즉 폐업지원금만 지급하고 어선·어구는 선주가 임의 처분하는 방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어선·어구에 대해서는 어선·어구잔존가와 선박에 대한 고철가격 차액부분만큼 입찰기초가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어선·어구의 선주 임의처분 또는 입찰기초가격에 어선·어구 잔존가격과 고철가격(폐선처리시)의 차액에 대한 포함 여부는 폐업지원금 지급에 대한 예산규모와 기존 원양어선감척사업의 어선·어구 처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북양트롤과 같이 어선규모가 크면 어선·어구에 대한 지원 예산소요가 급증하여 전체 사업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입찰기초가격에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하는 경우도 폐업지원금 예산 및 어업인들의 요구수준을 감안하여 적정규모 까지만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업종별로 폐업지원금의 입찰기초가격이 결정되면 입찰참가자 본인이 직접 희망하는 금액을 입찰서로 표시하여 낙찰된 경우 그 금액을 지원금 규모로 한다.

2. 폐업대상자 자격확인 방법

원양어선 폐업대상자 자격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척사업의 신청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부자격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즉, 폐업대상자는 입찰신청자격에서 규정한 업종 및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자들에 한하며, 입찰시에 필요한 서류확인을 통하여 폐업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한다. 특히, 입찰시 원거리 조업에 따라 제출이 어려운 서류는 한국원양산업협회의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양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입찰참가시) 어업폐지 동의서, 어선감척(어업허가 폐지)에 대한 권리자 동의서, 감척대상 승선원관련 법정채무 부존재 확인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업폐지 동의서

가. 주소 및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어선제원 및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 . . . ()	
어선명		어선번호	. . . ()	
건조일자			어업의 명칭.종류	
선체재질		기관종류	톤 수	
			마력	

상기 본인은 년 한미 FTA영향으로 인한 폐업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입찰결과 감척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위 어선에 허가된 어업을 수산업법 제4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며, 동 사업추진계획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함.

2009. . .
 동의인 주소
 성명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어선감척(어업허가 폐지)에 대한 권리자 동의서

가. 선주주소 및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선박제원 및 각종 권리설정 내역

허가번호			권리의종류	권리의내용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일자				
선체제질				

상기 어선을 정부의 년도 한미 FTA영향으로 인한 폐업지원사업으로 당해 어선에 허가된 어업을 폐지함에 있어 동 어선에 대한 권리 설정자로서 동 사업에 동의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어떠한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 함

2009.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감척대상 승선원관련 법정채무 부존재 확인서

가. 선주 주소 및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어선제원 및 어선원, 법정채무액 현황

허가번호			승선인원	명(내국인 , 외국인 명)		
어선명		어선번호	승선기간			
건조일자			종류	입금	선원송환관련채무	기타
선체제질			법정채무액	없음	없음	없음

위 원양북양트를 어선에 승선하였던 어선원에 대한 법정채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 . .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위원장 (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제3절 최종폐업대상자결정, 지원액 산정 및 지급방법수립

1. 사업대상자선정방법

연근해어업감척사업 및 본 연구를 기초로 원양어선감척사업을 위한 낙찰자(사업대상자)선정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입찰결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가) 업종구분 없이 예정가격과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과의 비율(낙찰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한다. 입찰가격/예정가격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나) 낙찰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업종 입찰 대상척수의 100%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사업대상자(1차 낙찰자)로 결정한다.
 - 다) 1차 낙찰자에서 제외된 입찰자를 통합하여 낙찰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원양어선감척사업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2차 낙찰자)를 결정한다.
 - 라) 1차 낙찰자와 2차 낙찰자를 모두 사업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예비후보자”로 관리 한다.
- 2) 입찰결과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다.
- 3)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입찰 한다.
- 4) 재공고 입찰에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에 의해 사업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이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서열을 부여함

- ①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이 낮은 어업자
- ② 선령이 오래된 어선을 소유한 어업자

2. 폐업대상자 지원액 산정

가. 기존 어선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지원조건 분석

기존 연근해어업폐업지원금사업에 대한 지원조건(폐업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표 5-9> 연근해 및 기존원양어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연안어업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근해어업	① '02년 기준 ● 어선등의 잔존가치평가액 및 폐선처리비는 국고보조 100% ● 폐업지원금은 국고보조 50%, 용자 30%, 자담 20% ● 용자조건은 연리 4.0%, 5년거치 10년상환 ② '07년 기준 ● 어선등의 잔존가치평가액 및 폐선처리비는 국고보조 100% ● 폐업지원금은 국고보조 100%(폐업지원금은 해당 어업별·톤급별로 조사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정액을 국고 보조로 지원)
원양어업	① '03년 기준 ● 폐선처리비는 국고보조 100% ● 폐업지원금은 국고보조 50%, 용자 30%, 자담 20% ● 용자조건은 연리 5.0%, 5년거치 10년상환 ② '04년도 감척사업에서는 폐업지원금만 지급(폐선처리는 선주 임의처분)

자료: 1)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해양수산부, 2002)
2) 2007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해양수산부, 2007)
3) 원양어업 업종별 구조조정 현황(해양수산부, 2007)

나.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기존 연근해어업어선감척사업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표 5-9>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연안어업은 국고보조 80%, 지방비 20%로 구성되며, 근해어업은 2002년 기준에서는 폐업지원금은 국고보조 50%, 용자 30%, 자담 20%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최근('07년) 근해어선감척사업에 대한 기준에서는 이전의 감척사업에서 있었던 용자부분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고 어업별·톤급별로 조사된 평년 수익액의 3년분("폐업지원금")의 50%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정액제") 채택하였다.

원양어업어선감척사업에서 평가를 통한 매입방식에 의한 기존의 감척사업 체계는 어민들의 불만과 사업시행 절차의 복잡함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따라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지원액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입찰제의 도입은 기존의 감척사업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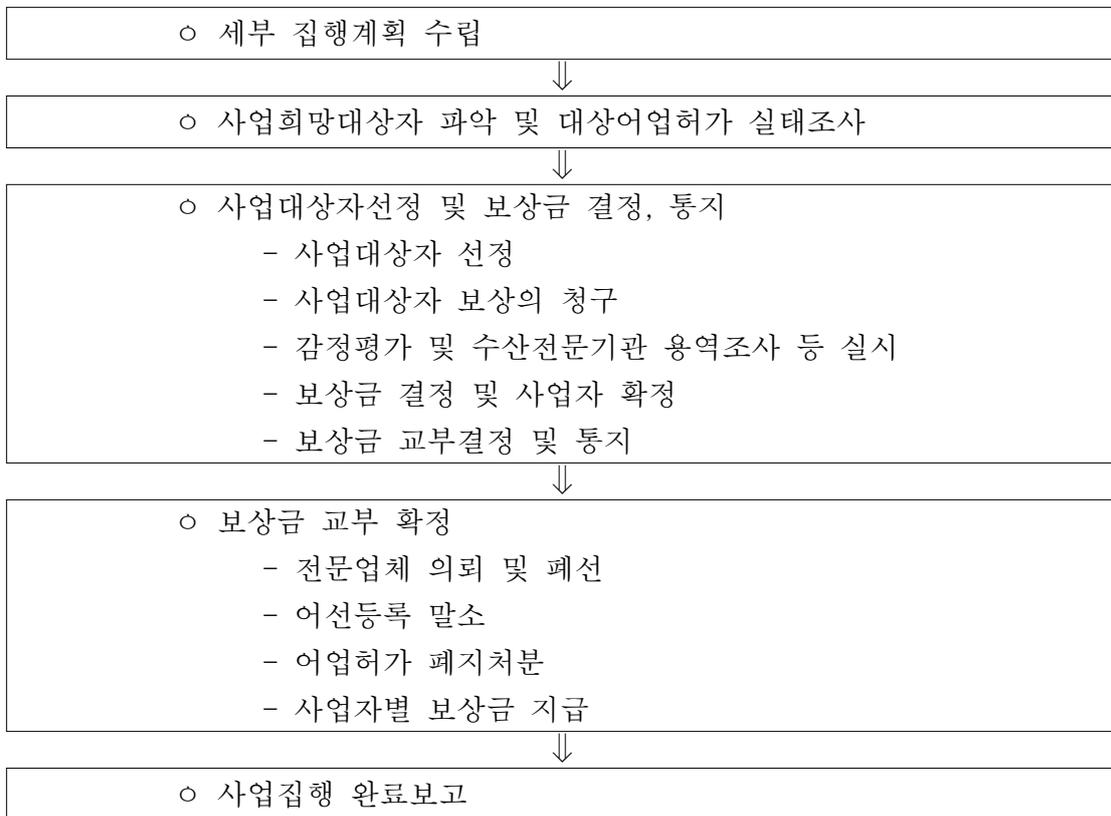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원양어선감척사업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입찰제 도입에 따른 입찰예정가격은 어업별·어장별로 조사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폐업지원금")의 70%, 80%,

90%, 100% 로 각각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입찰기초가격에 대한 최종결정은 정부의 감척예산, 입찰대상자의 참여 의지, 기존 근해어선감척사업과의 형평성, 그리고 이전 원양어업어선감척사업에서 지원한 지원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원금 지급절차 및 방법

가. 사업집행주체 및 사업시행체계

○ 기존 원양어업의 감척사업은 “사업집행주체”를 한국원양어업협회장(현 한국원양산업협회장)으로 하였으며,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별 보상금 결정내용을 기초로 해양수산부장관(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5-2> 기존원양어업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지급절차

※ 기존 원양어업어선 감척사업 시행주체

가. 사업집행주체

- “사업집행주체”는 한국원양어업협회장(현 한국원양산업협회장)으로 한다.
- 국립수산진흥원장(현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수협중앙회장, 선박안전검기술공단 이사장은 사업집행주체로부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98 원양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해양수산부, 1998)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2007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해양수산부)의 사업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되어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수협중앙회장,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찰과 관련된 주요내용(사업집행지침수립·시달,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사업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결과 취합)은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사업대상 업종선정, 입찰집행,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등 주요업무는 시도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및 사업대상업종선정을 제외한 입찰관련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안어업의 감척사업에 대한 구체적 항목별 담당주체는 아래와 같다.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사업집행지침(2007, 해양수산부)

가. 사업집행주체

- (1) 사업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도 사업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
- (2)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수협중앙회장,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은 사업집행주체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 사업시행체계

- (1) 해양수산부
 - (가) 사업집행지침수립·시달
 - (나)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 (다) 사업추진사항 점검·확인
 - (라) 사업결과 취합
- (2)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수협장 협조)
 - (가)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나) 사업대상 업종선정
 - (다) 입찰집행
 - (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 (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바)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3)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 (가), (나)를 제외하고 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사업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하였으며, 기존 평가에 의해 수행되었던 원양어업감척사업에서는 한국원양어업협회장(현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을 사업의 주체로 하였다. 그러나 감척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입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담합 등 입찰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양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척사업의 시행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원양어선감척사업의 사업집행주체 및 사업시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집행주체

(1) 사업집행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한국원양산업협회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사업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

(2) 국립수산과학원장, 수협중앙회장, 선박안전검기술공단이사장은 사업집행주체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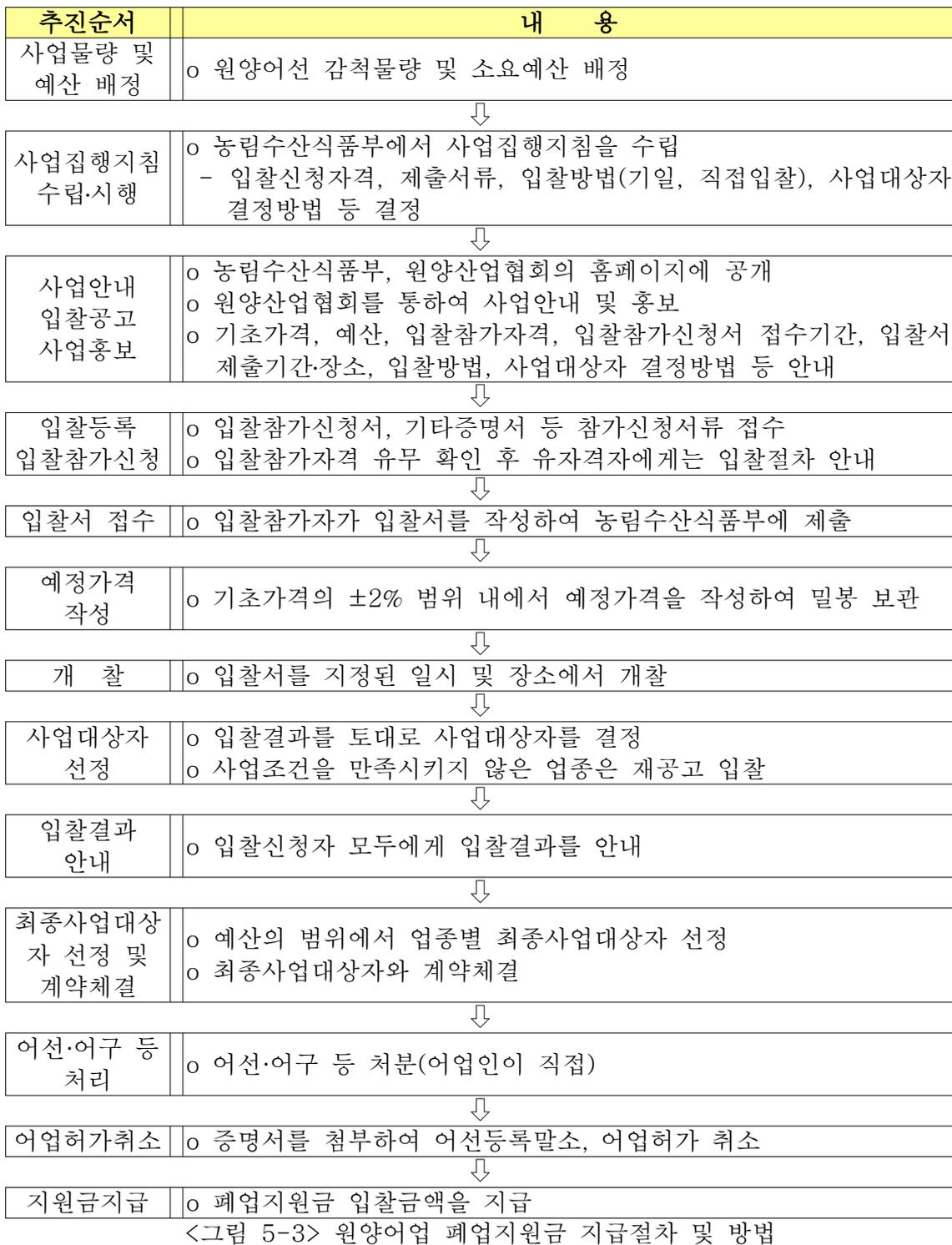
(1) 농림수산식품부

- (가) 사업집행지침수립
- (나) 사업대상 업종선정
- (다)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 (라) 입찰집행
- (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바) 지원금 지급 및 정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를 한국원양산업협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및 방법

기존의 평가를 통한 매입방식에 의한 어선감척사업 체계는 평가결과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과 사업시행 절차의 복잡함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원금 지급방식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지원액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입찰제의 도입을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현재 입찰제를 시행중인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원양어선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6장 폐업지원금 지급방식 연구

제1절 현행 연안 감척사업 방식인 부분 입찰제 분석

1.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입찰제 도입배경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연안어업어선감척에 따른 어업인들의 폐업지원금은 평가기관이 각 어업인별로 3년간 평년 수익을 평가하여 지불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액 결정 방법은 경쟁력이 높은 어선 즉, 경영 능력이 우수하거나 선박 성능이 양호한 어선이 한계 어선보다 지원액이 높게 평가되어 경쟁력이 높은 어선이 퇴출하기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지원액 평가 후에 지원액에 불만이 있는 어업인이 감척수혜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 다시 사업 희망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새롭게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써 감척사업기간이 당해연도에 끝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결국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해수부, 200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평가에 의한 지원금 지급에서 어업인들이 자발적인 지원금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입찰제도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시행결과 정부의 예산절감효과 및 다수의 어업인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구조조정 결과를 얻게 되었다.

기존의 평가에 의한 방법에 비해 아래 같은 장점에 의해 연안어업의 폐업지원금 입찰제를 도입하였다.

- 어업자가 자신의 수령액을 예측하고 대상자 선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어업자 자신이 지원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원사업에 대한 불평을 해소할 수 있음
- 경쟁에 의한 지원액 절약으로 지원사업에 다수를 참여시킴으로써 소외자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어로 활동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어업자가 퇴출되기 쉬운 제도이며 이로써 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합리적으로 수행됨

반면 기존 평가에 의한 감척어업인들과의 형평성문제 발생 가능성, 사업시행초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 야기 우려, 그리고 응찰자들의 담합행위 우려 등

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2. 연안 감척사업의 부분입찰방식

현재 연안어업어선 감척사업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입찰제를 시행하고, 어선어구는 기존의 평가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는 부분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어선어구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기존의 방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요한다.

특히, 일부 어업인들이 어선어구 평가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이 경우 다시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어선어구를 평가하여야 하는 기존의 평가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들은 여전히 지니고 있다.

현재 연안어업의 어선감척사업의 부분입찰제에 따른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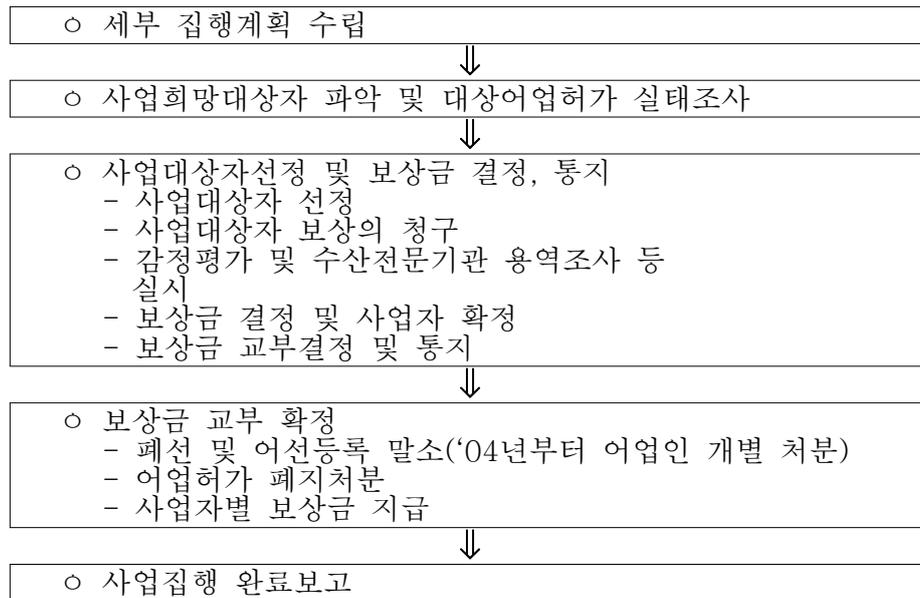
<표 6-1> 연안어업의 어선감척사업의 부분입찰제에 따른 시행절차

구	분	집행주체
○ 세부 집행계획 수립·시달		시·도
- 사업대상업종 지정		
○ 사업(입찰) 안내		시·도 / 시·군·구 / 수협·어촌계
- 사업 홍보		
○ 입찰공고		시·도 / 시·군·구 / 수협·어촌계
○ 입찰등록		시·도 / 시·군·구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 예정가격 작성		시·도 / 시·군·구
○ 입찰		시·도 / 시·군·구
- 낙찰자, 사업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실시		시·도
○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시·도 / 시·군·구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시·도 / 시·군·구
○ 지원금 지급		시·도 / 시·군·구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시·도

제2절 기존 폐업지원금 지급방식인 개별 평가식 분석

1. 기존 폐업지원금 지급방식

현재까지 어선감축에 따른 어업인들의 폐업지원금은 평가기관이 각 어업인별로 3년간 평년 수익을 평가하여 지불하였으며, 현재 원양어업어선 감축사업의 폐업지원금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6-1> 원양어선감축을 위한 현재의 평가체계

2. 개별 평가식 폐업지원금 방식의 문제점

기존 어선감축 사업에서 평가에 의한 폐업지원금 지원시 기존 연근해 어업감축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원양어업 감축사업에서도 상존하는 문제점들로 인식된다.

- 동일업종, 동일규모의 어선에서도 수익에 따라서 폐업지원금 차이가 매우 큼.
- 어업인이 자신이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고 이에 의존하여 지원금 금액결정(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시비 우려).
- 지원액 평가 방법이 복잡하여 수익과 비용산정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 제기.
- 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부와 어민간의 상반된 의견임. 즉, 행정부는 과대평가했다는 입장인 반면 어민은 과소평가 했다는 입장임.
- 지원액 불만자가 지원금 수혜를 거부하면 다시 지원 절차를 시작하고 평가비용을 지출함. 이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이 내재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성 논란이 야기됨.
- 지원액에 대한 어민들의 객관성, 형평성, 합리성에 대한 이의 제기

제3절 영업수익 및 잔존가치 동시입찰제 분석

현재 연근해어업의 어선감척사업의 경우는 어선의 어업수익액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하고 어선·어구는 직접평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수익에 따른 수익지원금에 대한 입찰과 어선·어구 등에 대한 평가로 절차가 2원화되어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부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반면, 어업수익액 및 어선·어구 등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는 기존의 입찰체계에서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치 평가 절차가 생략되고 입찰참가자들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바로 사업대상자(낙찰자)가 선정된다. 따라서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를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 감척사업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양어업의 경우 현재 원거리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하여 정부에서 어선어구를 매입·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2004년 원양어업어선감척사업에서는 감척어업인이 감척어선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원양어업어선감척사업에서의 어선·어구처리방법 및 어업별 특성, 원양어업폐업지원금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어업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만 지급하고 어선·어구는 선주가 의의 처분하는 방안 및 선주가 폐선 처리하되 어선·어구잔존가치(폐선 처리시 고찰가격과의 차액분)를 고려하는 방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전자의 경우는 수익에 대한 지원금만 입찰을 통하여 지급하고, 후자의 경우는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잔존가치(단, 폐선 처리시 고찰가격 제외)를 동시에 입찰가격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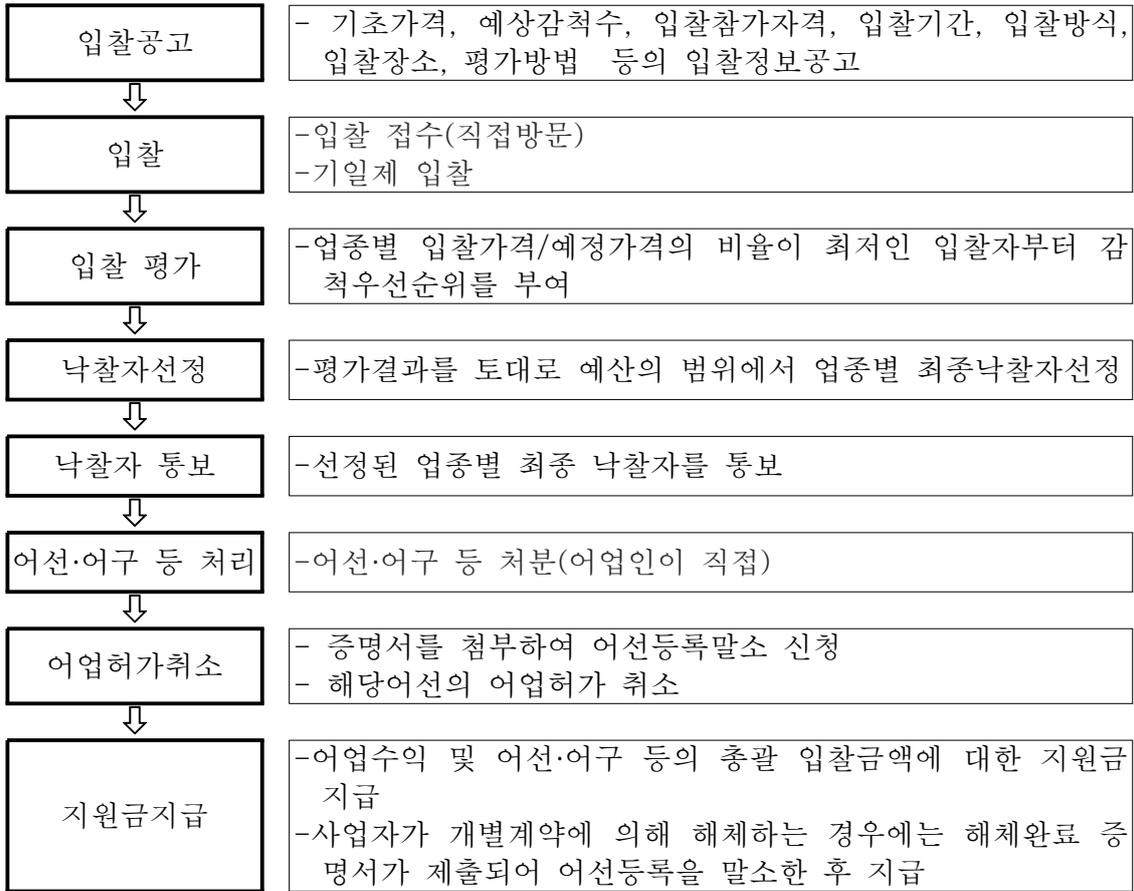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에 대한 지원방법을 4가지 대안(동시입찰, 분리입찰, 혼합입찰, 부분입찰)로 분석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장단점은 <표 6-2>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동시입찰은 어업수익 및 어선·어구잔존가치를 입찰가격에 포함시켜 동시에 입찰하는 방법으로 입찰절차 및 감척에 대한 행정절차의 감소, 그리고 동시에 입찰함으로써 감척비용(어업수익 및 어선·어구잔존가에 대한 감척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낙찰된 어선은 사업시행주체가 직접 처리해야 함으로 원거리의 선박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방법은 향후 연안어업감척사업에서 도입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리입찰은 수익은 입찰제, 어선·어구는 평가제로 하는 방법으로 현재 연안어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동시입찰에 비해 감척비용(어업수익 및 어선·어구잔존가에 대한 감척비용)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동시입찰시 나타나는 어선·어구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혼합입찰은 어업수익과 어선·어구잔존가격에서 폐선 고찰가격이 제외된 가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낙찰 후 어선·어구 처리는 개별 어업인이 담

당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동시입찰이 갖고 있는 장점들 외에 원거리에 있는 어선어구를 사업시행주체가 직접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원양어업어선감척시 도입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입찰에서는 수익은 입찰제로 하고, 어선·어구 선주가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찰절차의 간소화, 어선·어구 평가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낙찰된 선박이 국적을 달리 하여 어업에 재진입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6-2>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 분리 또는 동시입찰의 장단점

구분	방법	장점	단점	비고
동시입찰	수익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를 입찰가격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절차 간소 ● 감척비용 절감(어선·어구 평가비용 절감) ● 어선·어구 평가금액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의 제기 소지 없음 ● 낙찰자가 어선·어구 평가금액 불만족으로 인한 사업포기 가능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어구규모가 상이하여 적정 입찰가격 산정이 어려움 ● 평가를 선호하는 어업인들은 감척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주체가 원거리 조업 중인 원양어선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분리입찰	수익은 입찰제, 어선·어구는 평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연안어업의 입찰제도로 어업인들에게 익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 2원화로 행정업무낭비 및 어선어구 평가비용 초래 ● 어선·어구 평가금액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의 제기소지 가능성(이로 인한 낙찰자 감척사업포기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연근해 감척사업에서 시행 ● 사업시행주체가 원거리 조업 중인 원양어선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혼합입찰	수익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폐선 고찰가 제외)를 입찰가격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절차 간소화 ● 어선·어구 평가비용 절감 ● 어선·어구 평가금액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의 제기 소지 없음 ● 낙찰자가 어선·어구 평가금액 불만족으로 인한 사업포기 가능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어구는 개별어업인들이 처리함으로써 해당 어선의 폐선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이 직접어선을 처리함으로써 원양어업에서 적용가능
부분입찰	수익은 입찰제, 어선·어구 선주 임의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절차 간소화 ● 어선·어구 평가비용 절감 ● 어선·어구 평가금액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의 제기 소지 없음 ● 낙찰자가 어선·어구 평가금액 불만족으로 인한 사업포기 가능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어구는 다시 조업에 활용가능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이 직접어선을 처리함으로써 원양어업에서 적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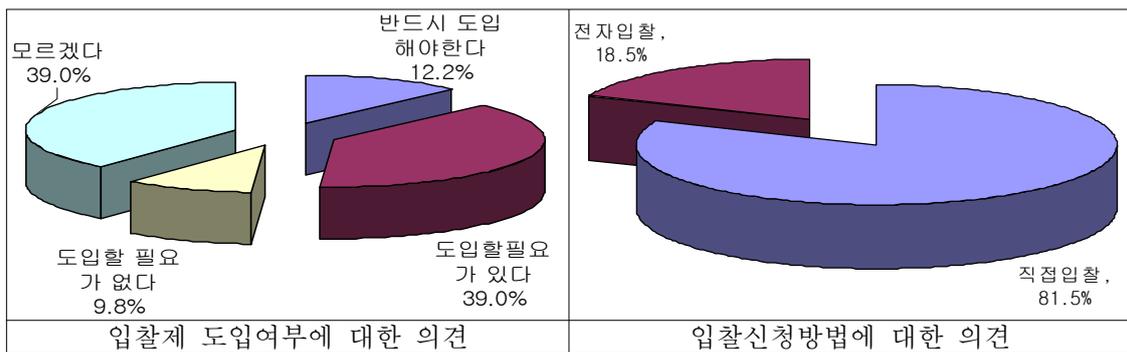
<표 6-3> 혼합(부분)입찰 원양어선감척사업추진 절차



제4절 원양어업 입찰제 도입에 대한 어업인 선호도분석

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이미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서 검증되었으며, 따라서 원양어업의 감척사업 또한 연근해어선감척사업과의 형평성 및 감척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정부의 감척예산절감을 위하여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양어업인들의 입찰제 도입에 따른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입찰제 도입에 대한 어업인들의 생각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절에서 다루고 있는 입찰제 도입에 대한 설문응답자는 감척사업에 참여가능한 원양어업 전체 68개 업체의 60.3%인 41개 업체가 답하였다.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입찰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2%가 도입에 찬성(반드시 도입해야한다 12.2%, 도입할 필요가 있다 39.0%)을 보였으며, 9.8%가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39.0%로 나타났다.



<그림 6-2> 입찰제 도입여부 및 입찰신청방법에 대한 의견

입찰에 반대하는 어업인들은 반대 이유로 주로 국가에서 낮은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제도에 대하여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입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입찰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응답자의 81.5%가 직접입찰을 답하였으며, 나머지 18.5%는 전자입찰을 답하였다. 직접입찰보다는 전자입찰이 여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이나, 원양어업의 경우 입찰참가자수가 많지 않으며 현재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서 직접입찰제도를 시행하고, 또한 어업인들이 직접입찰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양어업감척사업의 입찰제도는 직접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제5절 어선·어구처리방안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방법검토

본 연구에서는 어선·어구처리방안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표 6-4>에서와 같이 4개의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표 6-4> 어선·어구 처리방안

대안	방법	특징	선정
대안 1	폐업지원금만 지급하고 어선·어구는 선주가 임의 처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원양어업감척사업과의 형평성측면에서 유리함(2004년 원양어선감척사업에서는 폐업보상비만 지급함) ● 선주가 임의 처분함에 따라 선박이 다시 조업을 위한 어선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 	○
대안 2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를 동시입찰하고 정부에서 어선을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있는 원양어선을 직접 처리하기위하여 정부의 행정적,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됨. 반면 폐업 후 어선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고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를 동시에 입찰함으로써 입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입찰에 따른 감척사업예산절감효과). ● 정부에서 폐선처리를 해야 함으로 대안4에 비해 행정업무 가중됨. 	
대안 3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입찰제로 하고,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는 업종별 표준가정액제로 지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에서 적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연근해어업에서의 개별어선에 대한 직접평가 대신 업종별 어선·어구의 표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함. ● 어업인이 직접 폐선처리를 하도록 함으로 폐선처리에 대한 사업집행주체의 행정업무 경감. 폐업 후 어업인들이 어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또는 타 국적으로 조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시 폐선처리 협약서를 제출토록하고 사업집행주체는 최종사업자 선정 후 폐선처리여부를 확인토록 함. 	
대안 4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잔존가와 선박에 대한 고철가격차액부분을 입찰가격에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이 직접 폐선처리를 하도록 함으로 대안 3에서와 같은 장단점이 있음. 대안 3에 비해 정부 감척사업비는 절감할 수 있으나 어업인들이 감척시 요구하는 지원금지급 수준과의 큰 차이로 입찰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1차 사업대상 업종·해역인 북양트롤, 대서양트롤, 인도양트롤에 대하여 어선·어구 처리방안은 <표 6-4>와 같이 대안 1과 대안 4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 대안에 대한 최적대안 선정은 폐업지원에 대한 정부 예산, 업종별

선박규모 및 척수, 어선·어구 잔존가, 기존 원양어업의 감척사업시 어선·어구 처리방안, 입찰참여자인 어업인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1차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원양어선의 톤급별 분포를 보면, 대서양트롤은 업종 전체 선박의 92.5% 그리고 인도양트롤은 80.0%가 600톤 이하이고, 그 외는 대부분 900톤 이상으로 규모가 매우 크다. 대안 4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입찰참여가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어선규모가 크면 어선·어구에 대한 지원 예산규모가 급증하여 감척사업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폐업지원금 예산 및 어업인들의 요구수준을 감안하여 적정규모 까지만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어선규모별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가격을 제시하였다.

<표 6-5> 폐업대상어선 톤급별 분포

(단위: %)

업종	톤급														
	100 이하	101 ~ 200	201 ~ 300	301 ~ 400	401 ~ 500	501 ~ 600	601 ~ 700	701 ~ 800	801 ~ 900	901 ~ 1000	1001 ~ 2000	2001 ~ 3000	3001 ~ 4000	4001 ~ 5000	5000 이상
북양트롤					주1)					20.0	20.0	20.0			40.0
대서양	1.9	5.7	34.0	32.1	17.0	1.9			1.9			1.9	1.9	1.9	
인도양			50.0	30.0			10.0			10.0					

주: 1) 북양트롤 301~400톤급 1척은 정상적인 허가어선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아래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가격 산출식] 은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가격산출을 위한 기준식이다. 산출식은 선령 25년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출기준식에 적용한 톤당 어선잔존가 및 톤당 어구잔존가, 고철비율, 톤당 고철가격에 대한 조사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선령 25년 미만의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가격 산출에 대해서도 부록에 별도로 설명하였다.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가격 산출식(선령 25년 이상 기준)]

$$\text{선박톤수} \times \{1,298,200\text{원(톤당 어선잔존가)} + 246,658\text{원(톤당 어구잔존가)}\} - \text{선박톤수} \times 0.6(\text{고철비율}) \times 615,000\text{원(톤당 고철가)}$$

※ 단, 인정하는 최대 선박톤수는 제한을 두며, 이는 폐업지원금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함.

<표 6-6>은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가격 산출식]을 기초로 어선규모별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가격 산출결과 이다. 어선·어구 잔존가치를 반영하여 입찰기초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최대 선박톤수 규모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는 폐업지원금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6> 어선규모별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가격
(단위: 천원)

구분	선박규모							
	100톤	150톤	250톤	350톤	450톤	550톤	650톤	750톤
잔존가치 (A)	154,486	231,729	386,215	540,700	695,186	849,672	1,004,158	1,158,644
고철가 (B)	36,900	55,350	92,250	129,150	166,050	202,950	239,850	276,750
차액 (A-B)	117,586	176,379	293,965	411,550	529,136	646,722	764,308	881,894

제 7 장 원양어선 업종별 수익성 분석

제1절 수역별 수익성 분석

1. 업체별 수익성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계획

원양어선의 업종별 수익성 분석을 위해서 원양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원양 업체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설문 조사의 응답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설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효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즉, 원양어선 업종별 수익성 분석에 적합한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은 표본추출 방법을 비교 검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가. 표본 추출방법의 비교

표본추출 방법은 크게 확률적 추출과 비확률적 추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표 7-1> 표본 추출 방법의 종류

	확률표본추출	비확률표본추출
용도	모집단에 대한 사전정보가 있는 경우	모집단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경우
종류	단순무작위표본 체계적 표본 층화표본 - 비례적 - 불비례적 군집표본 - 지역표본	편의표본 판단표본 할당표본 눈덩이표본

〈표 7-2〉 표본 추출 방법의 장단점

비교기준	확률표본추출	비확률표본추출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	높음	낮음
표본추출 오류계산	가능	불가능
추계통계기법 적용	가능	불가능
비용	높음	낮음
표본추출기법	높은 수준 요구됨	높은 수준 요구되지 않음

나. 원양어선 수익성 분석을 위한 표본 추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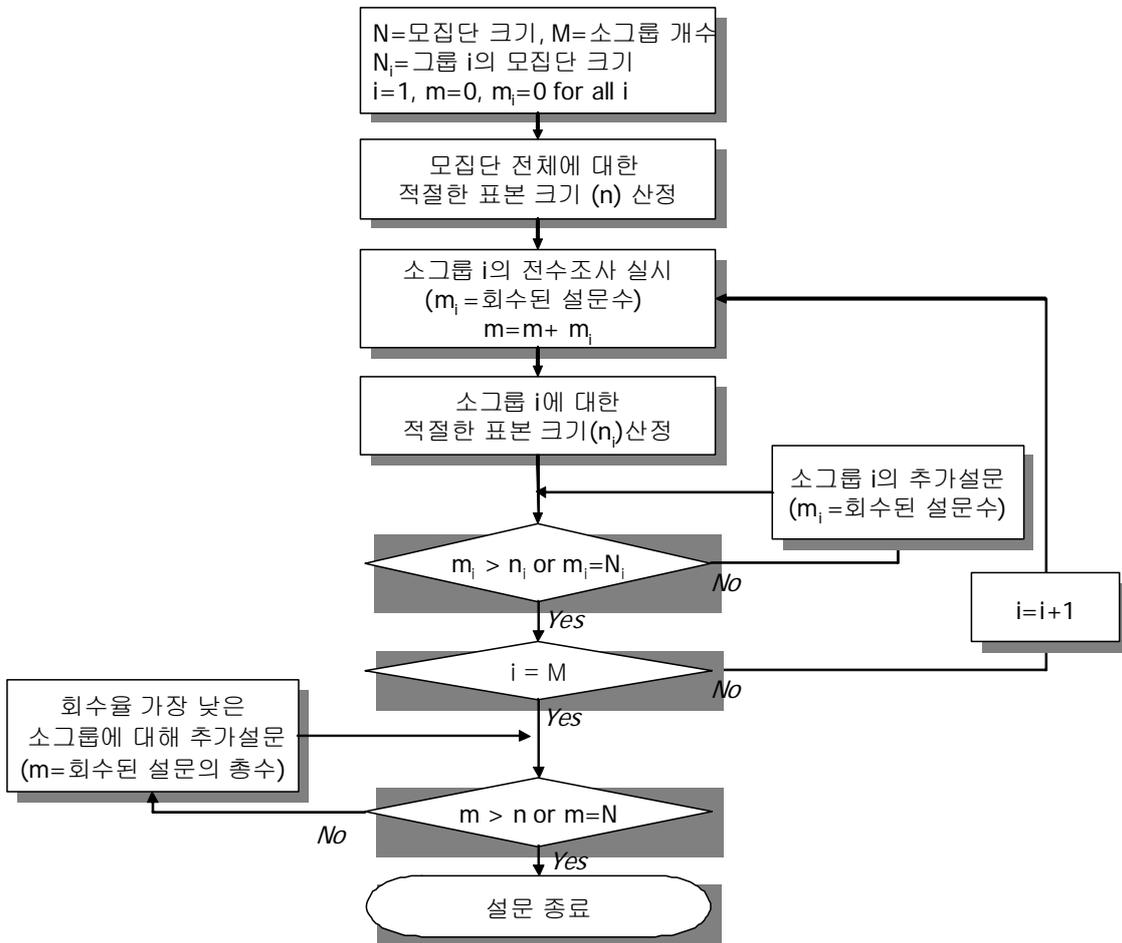
현재 원양어선 모집단에 대한 사전정보, 예컨대 전체 어선들에 대한 수익규모 (톤당 수익)나 폐업의지를 지수화한 값에 대한 개략적인 통계치(평균 또는 표준편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추출하는 비확률적 추출을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이 되는 모집단이 크기 (어선의 수)가 2007년 말 기준 402척 (합작선 16척 포함)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어선별 수익규모나 기업의 폐업의지는 업종이나 해역별로 비슷한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특성이 예상되는 샘플들끼리 그룹화하고(〈표 7-3〉 참조), 이 들 중 일정 비율을 추출하는 할당 표본 추출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402개의 샘플을 소그룹으로 소그룹화 할 경우 개별 그룹의 크기가 매우 작아질 수 있으며, 이렇게 작은 그룹에서 일정 비율만을 추출하는 것은 통계적 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도하지 않았다.

한편, 원양 업체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설문 조사의 응답률이 100%에 달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회수된 샘플의 수가 통계적으로 충분한 것인지를 각 소그룹별, 그리고 모집단 전체에 대해 각각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회수된 설문 결과를 활용해서 업종과 해역별로 구분한 15개의 소그룹, 또는 모집단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통계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확률적 추출법에서 권장하는 샘플 크기를 구한 후, 실제 회수된 샘플의 수가 필요한 샘플 크기를 상회할 경우 설문 결과에 통계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요구되는 샘플 크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림 7-1〉은 이러한 개념에 의거해서 시행될 표본 추출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에서 가장 좌측 박스는 회수된 샘플 수가 개별 소그룹 차원에서 충분할지라도 이들의 합이 전체 모집단 차원에서 필요한 샘플 수보다 적다면 필요한 샘플의 수를 채우기 위해 가장 회수율이 낮은 소그룹에 대해 추가설문을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모집단의 크기가 N 인 경우를 상정해 보자. 여기서 연평균 수익에 대한 표준편차의 추정치(σ)가 $\hat{\sigma}$ 이고 이 값의 허용오차범위가 d 라면, 신뢰수준 α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내기 위한 표본의 크기, n 을 아래의 식 (7-1)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분석에 필요한 표본 크기 n 이 유한모집단 크기(N)의 5%를 초과한다면 n 은 아래의 조정계수(fcf)값을 곱한 값으로 완화될 수 있다.

$$n = Z_{\alpha}^2 \frac{\hat{\sigma}^2}{d^2} \tag{7-1}$$

$$fcf = \frac{N-n}{N} \tag{7-2}$$



<그림 7-1> 설문조사 절차

<표 7-3> 업종별 원양어선 톤급별 세력 분포

(2007년 말 기준)

업종별	톤 급 계 (척)	100	101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2,001	3,001	4,001	5,000	
		이하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1,000	2,000	3,000	4,000	5,000	이상	
북 양 트 롤	5	-	-	-	1	-	-	-	-	-	-	1	1	-	-	2	
북 양 (합작)	16								1			2	1	7	4	1	
기 지 트 롤	116	3	22	37	28	11	2	2	-	2	3	3	1	1	1	-	
(대서양)	53	1	3	18	17	9	1	-	-	1	-	-	1	1	1	-	
(포클랜드)	14	-	-	7	4	1	-	-	-	-	2	-	-	-	-	-	
(인도양)	10	-	-	5	3	-	-	1	-	-	1	-	-	-	-	-	
(인도네시아)	27	2	19	-	4	1	1	-	-	-	-	-	-	-	-	-	
(뉴질랜드)	12	-	-	7	-	-	-	1	-	1	-	3	-	-	-	-	
새 우 트 롤	-	-	-	-	-	-	-	-	-	-	-	-	-	-	-	-	
참 치 연 승	165	-	-	2	70	93	-	-	-	-	-	-	-	-	-	-	
참 치 선 망	28	-	-	-	-	1	-	-	8	2	4	12	1	-	-	-	
오징어 채낚기	49	-	-	3	3	34	7	2	-	-	-	-	-	-	-	-	
대구저연승	3				1	2											
꽂치붕수망 (오징어겸업)	1(19*)	-	-	(2)	(1)	1(12)	(4)	-	-	-	-	-	-	-	-	-	
대서양 외출낚시	9				6	3											
기 타	10	1	2	-	1	3	2	1	-	-	-	-	-	-	-	-	
합계	국내선	386	4	24	42	110	148	11	5	8	4	7	16	3	1	1	2
	북양합작	(16)								(1)			(2)	(1)	(7)	(4)	(1)

* 19척은 오징어를 겸업중인 꽂치붕수망 조업 어선 수를 의미함

2. 설문 회수 결과

가. 설문회수 결과의 업종별 분포

설문에 응답한 총 43개사의 설문에서 확보된 어선정보를 토대로 각 업종별 세력 분포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북양트롤은 전체 5척 중 5척의 자료가 회수되어 100%의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대구저연승이 총 3척 중 2척이 회수되어 67%, 콩치붕수망이 총 20척(오징어 겸업 포함) 중 12척이 회수되어 60%, 대서양트롤은 전체 53척 중 32척이 회수되어 60%의 회수율로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서양외줄낚시 (4척, 44%), 포클랜드 트롤 (6척, 43%), 인도네시아 트롤(11척, 41%), 인도양트롤 (6척, 60%) 순서의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서 회수된 169척의 설문결과는 총 402척의 모집단 중 약 42%에 해당된다. 따라서 회수된 설문수가 통계적으로 충분하지 여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설문의 주된 목적이 톤당 수익의 계산에 있으므로 회수된 설문이 톤당 연평균 수익의 계산에 충분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톤당 수익의 표본 정보를 토대로 톤당 수익의 정확한 값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n)를 계산해 보고, 회수된 설문의 수가 이를 초과하는 지 확인해 보았다.

<표 7-4> 설문회수 결과의 업종 분포

	조업 어선수	설문응답 수	응답 비율
북 양 트 롤	5	5	100%
북 양 (합작)	16	8	50%
기지트롤 (대서양)	53	32	60%
기지트롤 (포클랜드)	14	6	43%
기지트롤 (인도양)	10	6	60%
기지트롤 (인도네시아)	27	11	41%
기지트롤 (뉴질랜드)	12	0	0%
새 우 트 롤	0	0	-
참 치 연 승	165	48	29%
참 치 선 망	28	16	57%
오징어 채낚기	49	13	27%
대구저연승	3	2	67%
콩치붕수망 (오징어겸업)	1(19)	12	60%
대서양 외줄낚시	9	4	44%
기타	10	6	60%
총계	402	169	42%

먼저 개별 업종 집단의 표본수가 해당 업종의 평년 수익을 계산하는 데 충분한지 검증해 보았다. 다음의 <표 7-5>는 이 결과를 나타낸다. 가령, 대서양트롤의 경우를 예로 계산과정을 살펴보겠다.

(대서양 트롤의 추출된 표본)

- 모집단크기 (N)=53, 표본집단 크기 =32
- 표본집단의 표준편차(σ): 22천원/톤

(사용자 지정 매개변수)

- 수익규모(억원/톤) 평균치의 오차 허용 범위: 10천원 (500톤 기준 500만원)
- 신뢰수준: 95%

이 경우 다음 식에 의거해서 n 은 19가 되며, 따라서 현재의 이 수치는 유한모집단 크기(53)의 5%를 초과하므로 수정된 표본크기는 $19 * (53 - 32) / 53 = 12$ 로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지트롤 (대서양)의 경우 회수된 설문 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32개의 설문은 당초 이와 같은 검증과정을 통해 설문의 수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되어 추가적인 설문참여 독려를 통해 확보된 수에 해당된다.

앞서 서술한 방식으로 다른 업종에 대해 필요한 설문의 수를 확인해 보았으며, 평년수익에 대한 오차 허용범위는 업종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북양트롤의 경우 결과적으로 전수조사가 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참치연승, 오징어채낚기, 꽁치붕수망은 톤당 수익의 추정오차를 10천원 이내로 제한을 해도 회수된 설문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지트롤(포클랜드), 기지트롤(인도양), 참치선망, 대구저연승, 대서양외줄 낚시는 추정오차의 한계를 20천원으로 완화한다면 회수된 설문수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북양합작, 기지트롤(인도네시아), 기지트롤 (포클랜드) 업종은 회수된 설문수가 통계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9장의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이들 업종은 한미FTA와 관련이 거의 없어서 이들 업종에 대한 설문조사 회수율이 낮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전 업종을 망라한 경우를 보면 맨 아래 행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회수된 설문의 수가 통계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5> 설문회수 결과의 업종 분포

업종	조업 어선수	설문 응답 수	표본집단의 표준편차	평균수익예측의 허용오차범위 (천원/톤)	필요한 설문 수	설문수 충분 여부
북 양 트 롤	5	5	138	10	-	O
북 양 (합작)	16	8	64	20	N/A	X
기지트롤 (대서양)	53	32	22	10	12	O
기지트롤 (포클랜드)	14	6	32	20	5	O
기지트롤 (인도양)	10	6	18	20	4	O
기지트롤 (인도네시아)	27	11	125	20	N/A	X
기지트롤 (뉴질랜드)	12	0	-	-	N/A	X
새 우 트 롤	0	0	-	-	-	-
참 치 연 승	165	48	21	10	15	O
참 치 선 망	28	16	45	20	6	O
오징어 채낚기	49	13	17	10	9	O
대구저연승	3	2	14	20	1	O
꽁치봉수망 (오징어겸업)	1(19)	12	7	10	2	O
대서양 외출낚시	9	4	26	20	2	O
계	402	169	62	10	151	O

나. 설문결과 분석

본 설문조사를 통한 수익성 분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 업종에 대한 선박별 폐업지원액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전체되어야 할 사항은 설문조사표의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표의 우편발송을 통하여 시도한 조사는 일반적인 우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매우 저조한 회송 결과를 보여 전화를 통한 협조요청에 더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업종별 위원회를 개최토록 요청하고 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서를 회수하였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회수된 설문조사서의 업종별 분포는 <표 7-5>와 같으며, 수익성 분석을 위한 조업경비자료를 확보하였다. 즉, 어로경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성되는 당기어료원가와 어획물매출액을 2005년 이후 2007년까지의 3년간의 선박별 자료를 확보하였다.

확보된 3년간의 어로원가와 어획물매출액을 업종별로 재분류하여 3년간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산정하였다. 결과는 처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산출되었다. 즉, 인건비의 상승,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등의 조업활동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수익률이 과거보다 현저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 어렵다고 폐업이 거론되던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타났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에 착수하여,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설문조사표의 내용은 업체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업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둘째, 업체는 수산업법상의 보상 기준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었던 터라 보다 많은 지원금을 목적으로 실제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되도록 조사표상에 기록하였을 것이다.

<표 7-6> 업종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업종	'02~'04 평균	'05~'07 평균	증감
북양트롤	17.92	25.30	7.38
북양(합작)	-	25.18	-
기지트롤(대서양)	6.32	10.54	4.22
기지트롤(포클랜드)	-	7.98	-
기지트롤(인도양)	5.48	12.74	7.26
기지트롤(인도네시아)	-	11.89	-
참치연승	20.78	-2.98	-23.76
참치선망	-	31.67	-
오징어채낚기	21.13	9.36	-11.77
대구저연승	8.36	19.59	11.23
꽁치봉수망(오징어겸업)	-0.23	3.27	3.50
대서양외줄낚시	-	9.10	-

*'02~'04 평균: 원양어업 경영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 2005)

**'05~'07 평균: 설문조사서로 작성

이러한 수익률 수치와 추세는 2005년 12월의 '원양어업 경영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3년간에 대하여 수익성 분석을 한 결과와도 그 수치와 추세에서 동떨어진 결과를 보여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한 경우에는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연구보고서의 대상기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3년 평균 수익률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 평균수익률이 배가 넘게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많은 고민 끝에 전문가 자문회의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방법인 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실증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연구자료 수집방법이다.

제2절 수익성분석을 위한 추가자료 수집

1. 추가자료 수집과 분석

앞 절의 설문회수결과분석에서 보았던 바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설문조사표상의 자료만으로 목적하였던 분석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이용가능한 자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자료를 구입하였다. 먼저 원양산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 중에서 재무제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원양업체가 대상이 되었다.

72개의 회원사 중에서 재무제표를 확보할 수 있는 38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재무제표를 확보하여 수익성 분석을 행하였다. 조사대상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간이며, 38개사의 3년간의 자료를 주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원양어업에 있어서 수익성을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통상의 경영분석 방법의 하나인 재무비율을 통한 수익성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재무비율은 일반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유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 생산성비율, 시장가치비율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이후의 목적에 합당한 분석은 수익성 비율이라 할 것이다.

비율분석을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시점에서 한 비율을 동일시점의 산업평균비율과 비교하거나, 특정비율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검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또한 각종 비율분석을 통한 동일한 경영분석에 있어서도 그 구분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즉 수역별로 아니면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수익성은 기업의 존속은 물론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수익성은 수익성비율에 의하여 예측되는데, 이 비율은 기업의 총괄적인 경영성과와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준다. 대부분의 수익성비율의 경우 분자에는 이익항목이, 분모에는 투자액 또는 매출액이 들어간다. 따라서 수익성비율은 기업이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영업성과를 올렸는지, 또 기업이 생산·판매·자금조달 등의 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수익성비율은 기업의 경영자, 채권자, 주주, 종업원, 세무당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무비율이다. 경영자는 사업확장이나 신규사업 참여시의 판단기준으로, 채권자는 장기적 안정성의 판단기준으로, 주주는 주식선택의 기준으

로, 종업원은 채금교섭의 기준으로, 세무당국은 담세능력가치의 기준으로 수익성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가.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영업성과를 올렸는가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익성비율의 대표가 된다. 이 비율은 세후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분석기간 중 자산규모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기초의 총자산과 기말의 총자산의 평균을 분모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text{총자산순이익률} = \frac{\text{세후총이익}}{\text{총자산}}$$

한편 총자산순이익률은 투자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투자수익률은 세후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매출액순이익률과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회전율의 곱으로 구성된다.

ROI(Return on Investment)를 구성요인으로 분해하여 경영·계획 및 통제에 활용하는 ROI기법은 재무통제의 주요기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듀폰사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한편 일정한 ROI라 하더라도 ROI를 구성하는 각 요인은 업종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면, 거액의 고정투자를 요하거나 생산기간이 긴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낮은 총자산회전율과 높은 매출액순이익률은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진부화의 속도가 빠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높은 총자산회전율과 낮은 매출액순이익률을 갖게 된다.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기업소유주가 공급한 자본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세후순이익을 자기자본의 기말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업이 부채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레버리지효과에 의하여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총자산순이익률에 비하여 확대된 값을 갖게 된다.

$$\text{자기자본순이익률} = \frac{\text{세후순이익}}{\text{자기자본}}$$

다.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매출액경상이익률은 경상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인데, 경영활동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경상이익률과의 차이는 이자비용 등 영업외손익의 크기에 의존한다.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총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된다.

$$\text{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ext{매출액경상이익률} = \frac{\text{경상이익}}{\text{매출액}}$$

$$\text{매출액순이익률} = \frac{\text{세후순이익}}{\text{매출액}}$$

2. 추가수집 자료의 분석결과

신용평가기관을 통하여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수익성 비율분석을 행한 결과가 <표 7-7>이다.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영업성과를 올렸는가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총자산수익률은 모든 업종에 걸쳐 그리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기업소유주가 공급한 자본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본순이익률은 총자산수익률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임을 볼 수 있다.

<표 7-7> 업종별 수익성 비율

업종	총자산 순이익률	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북양트롤	2.55%	12.52%	4.80%	2.27%	1.74%
기지트롤(대서양)	1.45%	8.66%	0.78%	1.16%	1.04%
기지트롤(포클랜드)	2.79%	10.23%	-1.02%	1.58%	1.48%
기지트롤(인도양)	2.80%	11.29%	1.07%	1.09%	1.18%
기지트롤(인도네시아)	10.83%	10.48%	8.78%	8.88%	8.00%
기지트롤(뉴질랜드)	4.28%	8.55%	5.07%	2.78%	2.11%
참치연승	0.65%	1.97%	0.87%	0.66%	0.68%
참치선망	6.48%	12.16%	7.89%	10.10%	7.23%
오징어채낚기	3.12%	18.47%	2.67%	3.41%	3.40%
대구저연승	6.97%	20.03%	2.56%	3.03%	3.98%
꽁치봉수망(오징어겸업)	5.09%	9.96%	3.15%	4.77%	3.57%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을 살펴보면 원양어업계의 경영성과가 매우 저조함을 볼 수 있다. 즉, 어족자원의 고갈로 단위당 어업획득물은 과거에 비하여 감소하고, 연료가격의 급등과 같은 조업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기울인 노력에 비하여 작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3절 업종별 수익성 분석

1. 폐업지원 대상 업종의 선택

앞에서 추가로 수집한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로 수익성 비율을 산정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원양업계의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 동안 관세를 통하여 보호되던 부분마저 경쟁력을 잃게 되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FTA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업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비책의 첫 단계는 한미FTA로 인하여 어느 업종이 피해를 입게 되는가이다. 물론 대부분의 업종이 영향을 받을 것이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심한 업종에 대하여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된 피해 업종이 선정된 이후에는 당해 업종의 수익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에 다루어질 입찰방식에 의한 폐업지원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폐업지원 대상 업종은 한미 FTA에 따른 생산감소로 지속적인 어업경영에 결정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① 어업수익률이 한미 FTA로 인한 수익률 저하효과로 인하여 최저기대수익률(MRR, Minimum Required Return) 아래로 감소한 경우
- ② 적자상태는 아니나 MRR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한미 FTA로 인하여 적자상태가 되거나 적자상태에 근접하게 되는 경우

그러나 이미 수익률이 적자상태로 만성적인 경영압박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폐업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폐업지원 업종 대상 선정은 하는 것은 그 주목적이 한미 FTA로 인한 직접 피해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폐업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자본수익률, MRR, 한미 FTA 후의 자본수익률을 필요로 한다. 업종별 자본수익률은 <표 7-7>에서 보는 바와 같고, MRR은 어느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즉,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률 또는 이자율의 의미는 완전하게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거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나 국공채의 수

익률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 사업을 포기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록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직접피해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여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나 이러한 재원 역시 한정된 자원 내에서의 확보인지라 MMR 3%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므로 제한된 자원에서의 활용이라는 점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MMR 3% 기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의 평균 수익률 5.4%였으나 MRR은 3%로 정하고 폐업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한 것이다.

<표 7-8> 한미 FTA로 인한 업종별 생산 피해 규모

원양생산(톤)		한미FTA로 인한 생산감소(억원)	평 균(억원)	비 고
북양트롤		29-46	37	
북양트롤 (합작)		163-263	213	
해외 기지트롤	대서양	52-85	68	
	포클랜드	2-3	2	
	인도양	1-2	2	
	인도네시아	7-12	9	
	뉴질랜드	0-1	1	
새우트롤		-	-	
참치연승		-	-	
참치선망		-	-	
오징어채낙기		1-1	1	
대구저연승		12-20	16	
꽁치봉수망		4-5	4	
대서양 외줄낙시		8-13	10	

또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한미 FTA 후의 자본수익률을 구하였다.

- ① 한미 FTA 전의 업종별 자본수익률 산정
- ② 한미 FTA로 인한 업종별 피해규모 산정
- ③ 피해액을 차감한 한미 FTA 후의 업종별 자본수익률 산정

여기서 한미 FTA로 인한 업종별 피해규모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7)에서 산정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표 9-3> 내지 <표 9-7>에

서 보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미 FTA로 인한 업종별 피해규모를 <표 7-8>과 같이 산정하였다. 이제 이렇게 업종별로 산정된 피해액을 차감한 후의 자본수익률, 즉 한미 FTA 후의 자본수익률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자본수익률을 폐업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MRR과 비교하여 대상 업종을 선정하게 된다.

<표 7-9> 폐업지원 대상 업종 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FTA전 자본수익률 A	추정 피해규모 B	조사비율 C	조정 피해규모 D	FTA후 자본수익률 E
북양트롤	12.52%	3,700	60.0%	2,220	1.68%
기지트롤(대서양)	8.66%	6,800	37.7%	2,566	-26.40%
기지트롤(포클랜드)	10.23%	200	85.7%	171	9.97%
기지트롤(인도양)	11.29%	200	50.0%	100	2.61%
기지트롤(인도네시아)	10.48%	900	17.3%	156	7.15%
기지트롤(뉴질랜드)	8.55%	100	25.0%	25	8.24%
참치연승	1.97%	-	33.9%	-	1.97%
참치선망	12.16%	-	46.4%	-	12.16%
오징어채낚기	18.47%	100	10.2%	2	19.79%
대구저연승	20.03%	1,600	100%	1,600	17.06%
꽁치붕수망(오징어겸업)	9.96%	400	24.6%	98	9.76%
대서양의줄낚시	9.10%	1,000	100%	1,000	4.78%

*대서양의줄낚시의 FTA전 자본수익률은 '05~'07년의 매출액수익률을 대용함.

A: '05-'07의 평균자본수익률

B: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산정한 어종별 피해액을 업종별로 변환한 업종별 추정피해액

C: (자본수익률 산정에 활용한 업체수/원양산업협회 등록된 업체수)비율,

D: B×C

E: 한미FTA전 자본수익률(A)을 구하는 산식에서 자본 등은 변화없이 이익만 D만큼 감소시켜 한미FTA후 자본수익률(E) 산정

이상의 산정과정 결과를 집계해 놓은 것이 <표 7-9>이며, 표에서 추정피해규모는 한미 FTA로 인한 해당업종 전체의 피해규모이고, 조정피해규모는 업종 전체의 피해규모에 업종별 조사 선박 비율을 적용하여 수정한 피해 규모이다. 그리고 자본 등의 다른 여건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오직 이익만 한미 FTA로 영향 받았다고 보고 조정피해규모를 차감하여 자본수익률을 산정한 것이 FTA 후 자본수익률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MRR 3% 기준을 적용하면 북양트롤, 대서양트롤, 인도양트롤이 대상 업종이 됨을 알 수 있다.

2. 폐업지원 대상 업종의 수익성 분석

MRR 3% 기준으로 선정된 업종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평균 연간 어획물 매출액과 조업경비자료 조사표에 의한 평년어업경비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출수익에서 어업경비원가를 차감하여 평년이익을 산출하게 된다.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의2에 의하면 이렇게 산출한 평년이익의 3년분을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액으로 하게 된다.

$$\text{업종별 평년수익액} = \text{평균연간어획금액} - \text{평년어업경비}$$

$$\text{3년 평균 영업수익액} = \text{평년수익액} \times 3$$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값으로 분석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구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업종별 평년수익액의 계산을 어획금액에 구입한 신용평가자료를 통하여 산정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결정되었다.

<표 7-10>이 이상과 같은 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톤당 수익액, 평년수익액 및 3년 평균 영업수익액이다. 즉, 대서양트롤로 보면 보유선박수가 53척으로 300톤 미만/300톤 이상이 22척/31척 중 11척/18척이 조사에 응하였고, 이때 평균톤수는 212톤/375톤이고, 연간어획금액은 2,041,650천원/2,915,580천원이었다. 따라서 이 연간어획금액에 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통하여 산정한 대서양트롤 업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0.78%를 적용하고 평균 톤수 212톤/375톤으로 나누어 톤당 수익액 75,117원/60,644원을 얻는다.

톤당 수익액에 평균톤수 212톤/375톤을 적용하면 평년수익액 15,925천원/22,742천원을 산정할 수 있고, 이 평년수익액에 대하여 3년을 적용하면 바로 3년 평균 영업수익액 47,775천원/68,225천원이 결정된다. 북양트롤 및 인도양트롤에 대한 산정방법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폐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선정된 3개의 대상 업종, 즉 대서양트롤, 북양트롤 및 인도양트롤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서양트롤 300톤 미만은 톤당 이익이 7만 5천원 정도이고, 300톤 이상은 6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북양트롤에 있어서는 3000톤 미만이 13만원 정도임에 비하여 3000톤 이상은 6만 4천원 정도에 불과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인도양트롤 300톤 미만은 7만 5천원 정도이고, 300톤 이상은 4만 3천원 정도이다. 폐업지원 대상업종 모두에서 선

박의 규모가 클수록 단위당 수익성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7-10> 폐업지원 대상 업종의 3년 평균 영업수익액
(단위 : 천원)

어업종류	보유척수	톤급구분	톤급별 보유척수	톤급별 조사척수	평균톤수 A	연간어획금액 B
대서양트롤	53	300 미만	22	11	212	2,041,650
		300 이상	31	18	375	2,915,580
북양트롤	5	3000 미만	3	3	1806	4,911,520
		3000 이상	2	2	5380	7,271,220
인도양트롤	10	300 미만	4	2	285	2,004,830
		300 이상	6	2	712	2,910,900

어업종류	톤급구분	매출액 영업이익률 C	톤당수익액 D=(B/A)×C	평년수익액 E=A×D	3년평균 영업수익액 F=E×3
대서양트롤	300 미만	0.78%	75.117	15,925	47,775
	300 이상		60.644	22,742	68,225
북양트롤	3000 미만	4.80%	130.539	235,753	707,259
	3000 이상		64.873	349,019	1,047,056
인도양트롤	300 미만	1.07%	75.269	21,452	64,355
	300 이상		43.745	31,147	93,440

※ 매출액 영업이익률(C)은 신용평가자료의 비율로 산출
(C =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100%)

제 8장 원양어업 업종별 폐업 정성적 요인 분석

제1절 연안국의 입어 정책 요인

본 절에서는 원양어업 폐업시 고려할 요인으로 선정된 정성적 요인 중 업체별 설문조사 결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주요 연안국의 입어정책 요인을 살펴보고, 업체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한 나머지 정성적 고려 요인은 제2절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다.

연안국 입어 정책 요인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는 연안국의 외국어선의 조업에 관한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연안국의 외국어선에 관한 조업에 관한 발췌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호주

호주의 「어업관리법(1991년 법률 제162조)」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어선에 어망, 함정어구 및 기타 어로 장비를 장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 어선의 사용 또는 위치하도록 외국인어업허가나 출입항허가를 받은 경우 ㉡ 그 어선에 대하여 유효한 조약 허가를 받은 경우 ㉢ 어망, 함정어구, 기타 어로장비가 격납되어 있으며, AFMA(Australia Fisheries Management Agreement) 혹은 기타 규정에 의해 AFZ(Australia Fisheries Zone)에의 출입이 허가된 경우 ㉣ 어망, 함정어구, 기타 어로장비가 격납되어 있으며, AFZ 외부수역의 한 지점에서 AFZ를 통과하여 AFZ 외부수역의 한 지점으로 향하는 최단거리 항로를 항행중인 경우 ㉤ 그 수역에서 과학조사허가에 의거 과학조사 목적으로 그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2. 쿡 제도

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쿡제도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1977년 법령 제16호)」은 어업허가증의 교부 (제13조)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본 조 제2항에 따라, 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외국 어선들에게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장관은 본 조에 의거,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본 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업기간 동안 허가받은 외국어선들에 의한 특정 어종의 전체 어획량이 이 법 제10조에 의해 산정된 외국어선들의 해당 어종에 대한 허용어획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본 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특정국가의 허가된 어업기간 동안 특정 어종의 전체어획량이 이 법

제11조에 의거 하여 해당국가에 배분된 어획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㉔ 본 조에 따라 허가를 교부할 경우에, 장관은 다음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음의 경우란 ㉑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장의 지정 ㉒ 어업허가 기간 동안의 어기, 그리고 특정 향차의 한정 ㉓ 어획이 가능한 어종, 체장, 나이 및 어획량 ㉔ 어법 ㉕ 외국 어선들이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크기 및 양, 또한 그러한 어구들의 미사용 시의 보관방법 ㉖ 어획물의 사용, 이동, 전재, 양륙 및 가공 ㉗ 어획량 검사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본국 항구에 대한 외국어선의 입항 ㉘ 외국어선이 다른 어선 또는 다른 어선의 어구, 어업이나 수산자원 또는 쿡 제도의 기타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준 경우에 본국 주민 또는 정부에 대한 배상 지불 ㉙ 외국어선이 경제 및 천연자원부에 대하여 어획량, 어획 노력량 및 해당어선의 위치보고를 포함한 통계 및 기타 정보의 보고 ㉚ 특정 어업조사 프로그램을 위한 외국어선의 활동 ㉛ 외국어선이 사용하는 어법에 대한 본국 주민의 훈련 및 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전수 ㉜ 외국어선의 어업허가증 선상내 비치 ㉝ 외국어선의 표지 및 식별 방법 ㉞ 외국어선이 준수해야 할 쿡 제도 정부선박이나 항공기가 통지하거나 내릴 수 있는 지침, 지시 및 요구 사항들 ㉟ 본국 옵서버들의 외국어선 배승에 대한 비용의 부담 ㊱ 외국어선의 위치확인 및 식별을 위한 송수신기 또는 기타 장비, 그리고 어선자체의 선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㊲ 특정 해도의 선내 비치 ㊳ 장관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등이다.

나. 해양자원법

「해양자원법(1991년)」에서는 유자망어업의 금지(제15조)를 규정하고 ㉑ 쿡 제도 또는 어업수역에서는 어떤 어선도 유자망어업에 종사하거나 유자망어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㉒ 쿡 제도 또는 어업수역에서는 누구도 유자망어업에 종사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㉓ 쿡 제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은 유자망어업에 종사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㉔ 쿡 제도의 국민은 유자망어업에 종사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업허가의 조건(제20조)의 규정에서는 일반적인 조건과 특수조건에 따라 장관 또는 차관이 발급한다. 장관은 관보를 통하여 모든 어업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일반적인 규정, 어기의 지정에 따른 조건, 금어구역, 최소 그물코 크기 및 최소포획체장 등에 대한 조건은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차관 또는 외국인 어업에 대하여 장관은 아래의 조건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조건을 어업허가에 부가할 수 있다. ㉠ 어법 또는 허용되는 관련활동 ㉡ 어획 또는 관련 활동이 허용되는 어장 ㉢ 부수어획의 제한을 포함하여 포획이 허용되는 목표 어종 및 어획량 등이다.

차관(외국인어업허가 또는 국내기지 외국어선의 경우는 장관)은 언제든지 어업허가에 어업수역의 적절한 어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정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장관 또는 차관은 어업허가에 부가한 특정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특정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소지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지

피지의 「해양수역법(1977년 법률 제18호; 발효 1978. 4. 21)」에서는 외국어선에 대한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장관은 외국어선에 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을 승인하는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이 조에 따라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장관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이 조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외국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느 어종을 해당기간 동안 어획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어획량이 산출된 당해 어종의 외국어선에 대한 허용어획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이 조에 따라 허가받은 특정국가의 모든 외국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느 어종을 해당기간 동안 어획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어획량이 당해국가에 대한 배분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는 신청자가 소정의, 입어료를 지불한 뒤에 허가에 명시된 특정 선박의 소유주에게 발급되며, 일반적으로 조업을 승인하거나,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과하여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 어업이 허용되는 수역 ㉦ 어업이 허용되는 어기, 횡수 또는 특정항차 ㉧ 어획할 수 있는 어류의 종류 및 양 ㉨ 어법 ㉩ 사용할 어업기구의 형식 및 사용하지 않는 동안의 보관방법 ㉪ 어획물의 사용, 운송, 전재, 양륙 및 가공 ㉫ 당해 선박의 피지 항구에의 입항 ㉬ 당해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어획물, 또는 어족 자원이나 피지의 이익에 대해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 지불해야 할 배상액 ㉭ 어획물과 어획노력량 통계 및 선박 위치보고 등의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요구되는 통계 및 기타정보 ㉮ 수산업 연구 프로그램의 수행 ㉯ 당해선박에 고용된 피지인에 대한 어법의 훈련 및 어업기술의 전수 ㉰ 수산관의 요청에 따른 어업허가의 연장 ㉱ 선박의 식별 표지에 관한 사항 ㉲ 피지 읍서버의 해당 선박 배치 등이다.

「해양수역(외국어선)규칙」에서는 어구의 격납(제30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외국어선상의 모든 어로장비는 피지 어업수역 내에서는 어업에 즉시 사용될 수 없도록 격납되어 있어야 한다 ㉡ ㉠항의 규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어선이 허가받은 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마셜공화국

마셜공화국의 「해양자원법」에서는 제63조에 전재(轉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어떠한 경우에도 해상에서 전재할 수 없다. ㉡ 선내의 어획물 전재의 요청은 72 시간 전에 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명, 국제무선신호부자, 위치, 어종별 어획량, 시각 및 전재할 항구 그리고 마셜공화국 법에 따른 모든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 전재담당관이 정한 장소와 시각에만 전재할 수 있으며, ㉣ 당국이 요구하거나 규칙이 정한 양식에 작성한 전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어업수역에서 전재하는 동안 외국과 각 선박의 운항자는 오수저장탱크 등과 관련한 환경보호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수산업법(1996년)」에서는 허가증의 발급(제83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하고자 하는 외국어선의 운항자는 승인된 양식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신청서는 수석행정관이 관보에 고시하여 지정한 당해 부처의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정된 수수료를 동봉하여야 하며, 장관이 관보 고시를 통하여 수시로 요구하는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 ㉡ 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을 외국어선 운항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 이 조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장관은 어선의 운항자, 선주, 선장, 승무원의 전과기록 등을 보관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어업허가수역 ㉡ 어기, 횃수 및 어업이 허가된 기간 동안의 특정 항차 ㉢ 채포할 어류, 수중생물 혹은 해조류의 종류, 체장, 연령, 양 ㉣ 어류, 수중생물 또는 해조류의 채취방법 ㉤ 사용될 어구 및 어로장비의 형식, 규모, 양, 그러한 어구 및 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격납 방식 ㉥ 채포한 어류, 수중생물, 해조류 등의 사용, 운반, 전재, 양륙, 취득, 가공 ㉦ 어류, 수중생물, 해조류 등을 어획한 장소, 어획물의 종류 및 어획량에 관련한 절차 및 제한을 포함하여 당해 어선이 채포한 어류, 수중생물, 해조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요건 ㉧ 어획물의 검색 또는 기타 목적으로 뉴질랜드 항구에 입항 ㉨ 당해 어선이 타 어선 또는 타 어선의 어구, 설비, 어획물을 훼손하거나, 관선 또는 해저전선을 파손하거나, 기타 뉴질랜드에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뉴질랜드 시민 또는 국왕에 대한 보상 ㉩ 행정장관이 허가소지자에게 요청하는 어획량, 어선의 위치 등에 보고서 또는 정보를 수집한다.

동법 제19조 금지어법에서는 ㉠ 유자망의 소지 및 관리, 어업의 실시 ㉡ 어업수역에서 폭발물, 독극물,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어획을 위하여 사용 ㉢ 이를 위반하고 체포한 어획물을 양륙, 판매, 처분, 매수, 소지를 금하고 있다.

동법 제29조 허가의 일반조건에서는 입어협정의 발효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허가에 적용되는 일반조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어기의 개시일과 마감일 ㉡ 금어구 ㉢ 최소망목 또는 어망 ㉣ 어획물의 최소체장 ㉤ 옹서버 장비 ㉦ 기타 내각이 정하는 일반조건 ㉧ 고의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장의 승인 없이 어선의 관측장치를 파괴, 훼손하거나, 작동오류를 일으키거나, 작동을 방해하는 자는 유죄이다.

6. 팔라우

팔라우의 「어업수역과 외국인 어업의 규칙」에서는 어업허가 및 신청절차(제168조)를 규정하고, ㉠ 외국어업협정에 따라서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협정당사국은 관리국이 정한 서식으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어업허가 신청을 받은 국장 또는 피지명자는 house of Olbil Era Kelulau, 상·하원, 해양자원국장, 수산관련법 집행국장 및 요청하는 자 또는 기구에 외국어업협정의 허가신청서의 부분을 관련 단체에 송부해야 한다. ㉢ 관리국은 신청을 검토하고, 공화국 관련자의 의견을 수령하고, 공개청문회를 개최한 후, 적절한 조건과 제한을 정하여 어업허가를 승인할 수 있다. ㉣ 관리국이 허가발급을 불허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피지명인은 외국 신청자에 그러한 불허사실 및 불허사유를 통지해야하며, 당해 외국신청자는 당해 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당해 외국신청자가 허가신청과 허가에 관하여 기간, 조건 및 제한을 수락하는 통보를 한 때에 청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당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어업허가 부분에서미끼 어류(제172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도회유성어종 어업을 위한 미끼어류어획은 관리국이 발급하는 특별 미끼어업허가의 기한 및 조건에 따라 외국어선에 허가될 수 있다. 당해 특별미끼어업허가는 미끼 어류의 어획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공화국의 영해, 내수, 배타적 어업수역 및 확장된 어업수역 이내의 미끼 어종 및 기타 생물자원, 산호초 어류, 간출산호초의 개체군수의 장기지속성 및 건전성을 보장하는 조건, 제한에 의거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7. 파푸아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의 「어업관리법(1998년)」에서는 어업 금지(제30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이 조는 모든 사람, 모든 선박, 모든 어업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 항시 또는 지정된 기간동안 어업수역내의 지정된 구역에서 어류 또는 지정된 어종에 포함된 어류, 갑각류 중 지정된 종에 대하여, 산란기의 암컷 및 지정 구역에서 당해 어류를 선상가공, 전 어업수역에서 지정된 어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어류의 채포를 금지, 전 어업수역에서 어류 또는 지정된 어종에 속하는 어류를 지정된 어법 또는 어구, 지정된 자 이외의 사람, 지정된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해 금지한다. ㉢ 어류 또는 지정된 어종에 속하는 어류의 매매, 양륙, 판매, 구매, 소지 또는 수출을 금지 ㉣ 전어업수역에서 선상에 격납되어 있지 아니한 지정된 어구의 소지, 관리 ㉤ 전어업수역에서 당해 고시에 지정된 또는 당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량 이상의 어로장비의 선내 사용, 소지, 관리를 금지한다.

금지어법(제32조)에서는 ㉠ 화학물질, 독극물, 유해물질 또는 제조물질 또는 천연물질 ㉡ 어류를 살상, 채포, 기절, 마비, 무력하게 하기 위한 또는 어류를 보다 쉽게 어획하기 위한 다이너마이트 또는 폭발물, 폭발장치 등을 모든 사람에게 금지한다.

어구의 격납(제38조)에서는 어업수역을 통항하는 외국어선의 운항자는 당해어선이 이 법 및 관련 입어협정에 따라 어업수역에서 어업하도록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선상의 어구를 조업에 즉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항시 격납해두어야 한다.

8. 솔로몬제도

솔로몬제도의 「수산업법(1998년)」에서는 외국어선 어구의 격납(제20조)에 대해 규정하고, ㉠ 솔로몬제도 구역에서 외국어선내의 모든 어구는 어업에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격납되어 있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어업허가 또는 지역어업허가에 따라 조업이 허가된 솔로몬제도의 구역에 있는 외국어선 또는 어업연구 또는 조사활동이 승인된 구역 또는 상업적 유어가 허가된 솔로몬의 어업수역에 있는 외국어선 ㉢ 유어에만 사용되는 외국어선의 손줄납시 등이다.

외국선박의 유어(제22조)에서는 관습적 어업권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외국어선은 관습적 어업권 소지자의 동의 없이 유어에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한 자에게는 일정한 벌금이 주어진다.

어업허가(제24조)의 규정에서는 모든 어업허가증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지정된 일반조건 또는 특별조건에 따라야 하며, 그 조건은 ㉠ 어획 또는 관련 활동의 종류 및 방법 ㉡ 그러한 어획 또는 관련활동이 승인된 구역 ㉢ 목표어종 및 부수어종어획의 제한 등을 포함한 허용 어획량 등이다.

또한 솔로몬제도에서도 다른 나라와 같이 유자망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 또는 국내 어선은 어획물을 전채, 양륙, 가공할 수 없으며, 항구나, 항만시설에 진입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9. 통가

통가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에서는 어업허가(제14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관은 외국 어선의 선주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 허가를 수여할 수 있으며,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업허가어선의 허용어획량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11조에 따라서 결정된 당해 어업에 대한 외국어선의 허용어획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국가의 모든 허가 어선의 허용어획량은 이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당해 국가의 할당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허가를 발급 할 때 장관은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한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허가 어장, 어업이 승인된 어기, 횡수, 항차, 어획어종, 체장, 연령, 어획량, 어법, 사용 또는 운반 어구의 종류, 크기 및 양, 사용하지 않는 어구의 적재 방법, 채포한 어류의 사용, 양도, 전채, 양륙 및 가공 등이다.

「수산업법」 11조에서는 외국어선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승인된 과학적 해양연구 및 조사활동을 제외하고는, 다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어선이 어업수역에서 어업할 수 없다. ㉠ 이 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외국어선허가 ㉡ 발급된 상업적 유어어선허가 ㉢ 다자간 협정 또는 약정 및 명시된 관련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외국어업은 허가한다.

어구의 격납(제13조) 사항에 대해서는 어업수역 내에서 외국어선상의 모든 어구는 어업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격납하여야 한다.

어업허가의 조건(제15조)에 대한 규정에서는 장관은 관보에 명령을 공표하여 모든 종류의 어업허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금어기 설정, 어업금지구역, 최소망목, 최소어류체장 등에 관한 조건에 더하여 일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등록담당관, 또는 외국어선허가의 경우 장관은 어업허가에 다음과 같은 특별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 승인된 어업 또는 관련 활동의 종류 및 방법 ㉡ 당해 어업 및 관련 활동의 허가 구역 ㉢ 허가된 목표어종 및 부수적 어획의 제한 등과 허용어획량

등록담당관 또는 외국어선허가의 경우 장관은 어업수역 내의 적절한 어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 경우 어업허가에 첨부된 특별조건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또한 장관 및 등록담당관이 어업허가에 첨부된 특별조건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 신속히 그러한 변경 사항을 허가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지어법(제21조)의 규정에서는 ㉠ 어류를 살상, 기절, 무력, 또는 채포하기 위하여 또는 보다 쉬운 어획을 위하여 폭발물, 독극물, 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허락하는 자,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을 시도한 자 ㉡ 폭발물, 독극물,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운반, 소지, 관리하는 자. ㉢ 어선 내에서 발견된 폭발물, 독극물 또는 유해물질은 반대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와 같이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한다.

어업보존수역(제22조) 규정에서는 장관은 관보에 명령을 공표하여 생계형 어업을 위한 어업보존수역을 선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존수역에서 어업이 허가되는 어선의 종류 및 어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금지어구의 소지(제23조) 규정에서는 ㉠ 당해 어망에 대하여 지정된 최소망목 이하의 망목을 가진 어망 ㉡ 당해 어구에 대하여 지정된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어구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칙에 의해 금지된 어구를 금하고 있다.

10. 투발루

투발루의 「어업법(1990년)」에서는 외국어선의 어업수역 진입과 어업(제5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외국어선은 법령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다. ㉠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어업수역에 진입 ㉡ 어업수역에서 어획하거나 어획을 시도하는 행위 ㉢ 어업수역에서 어획물을 양륙, 적하, 또는 전재하는 행위 ㉣ 어업수역에서 연료나 보급물을 양륙 또는 적하하는 행위 ㉤ 이 법의 허가 없이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어업수역에 출입한 외국어선은 당해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어업수역에서 출역하여야 한다.

협정 및 조약에 의한 허가(제5A조)에서는 외국어선 어업과 관련되고, 투발루가 회원국인 협정 또는 다자간 혹은 양자간 조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장관은 그 협정 또는 조약에 따라 발급된 어업허가는 명령할 수 있다.

그 명령은 투발루에서 일부분 혹은 전체, 또는 한 척 이상의 외국어선에 대한 허가의 취소,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그 명령이 적용되는 협정이나 조약과 관련한 외국어선에 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명시하여야 한다.

명령에 지정된 협정 또는 조약에 따른 기타 성문법 또는 법원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어업허가 혹은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승인된 외국어선에 관하여 그 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당해 어선의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승무원이 해당 조약이나 협정을 위반하여 재판 전 구금에 처해진 경우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적당한 보석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담보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보석 또는 서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 어선과 그 시설, 비품 및 화물이 당해 협정 또는 조약의 위반으로 압수된 경우, 당해 어선의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기타 관련자가 합리적인 보석이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그 선박 및 시설, 비품 등은 감독관의 억류로부터 즉각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며, 선박의 석방은 보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 어선의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기타 승선원은 이 법 혹은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유죄선고가 되었을 시라도 투옥되어서는 안 된다.

명령에서 읍서버가 이 법에 따른 감독관 또는 허가공무원이거나 투발루의 공무원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령에 지정된 협정 또는 조약에 따라 외국어선의 읍서버를 승인할 수 있다. 그 명령에 따라 당해 조약이나 협정에 따른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헌법, 이 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유자망어업의 금지(제14A조)에 관해서는 어업수역에서 유자망어업을 실시하거나 시도한 자, 이를 시도한 외국어선이나 국내어선의 선장, 선주, 용선자는 일정한 벌금형에 처한다.

11. 웨스턴사모아

웨스턴사모아의 「수산업법(1988년)」은 여타 남태평양 국가와 같이 어구의 격납에 대해 지정된 방법으로 격납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제11조)의 규정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 ㉠ 지정된 수수료를 납부, 외국어선의 경우 입어협정이나 장관이 정하는 기타 비용을 납부 ㉡ 지정된 일반 허가조건 ㉢ 입어협정에 따른 조건 ㉣ 국장, 외국어선의 경우 장관이 첨부하는 특별 조건, 또는 입어협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대하여 입어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발급시에 정하는 특별조건, 즉 어업 또는 관련활동의 종류와 방법, 어업이나 관련활동의 승인 구역, 목표어종, 허가 어획량 및 제한, 국장, 외국어선의 경우 장관은 적절한 어업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편의상 필요한 때에 수시로 그가 발급 할 수 있는 어업허가에 첨부된 특별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2.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수산업법(1998년, 법률 제 24-922호)」 제37조는 국제어업협정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어업활동을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할당받은 허용어획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아르헨티나 관할수역에서 생산된 어획물에 대한 협정 당사국의 수입관세 면제 ㉡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기타 수산자원 보호 ㉢ 협정 당사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아르헨티나 선박의 조업우선권 부여. 협정 당사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잉여수산자원에 대한 아르헨티나 선박의 어업활동은 해양생태계의 구조적인 조절차원에서만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동법 38조에서는 외국어선에 대한 어획할당량은 국내어선의 어획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업기간의 한정 ㉡ 이 법에 의거한 외국어선의 어업 및 회사법에 따라 아르헨티나 회사에 의해 운영 ㉢ 조업가능지역의 제한 ㉣ 어구, 어선수, 어선규모, 조업방법에 관한 규정 ㉤ 어종, 연령 및 크기에 관한 규정 ㉥ 외국어선이 어획물 전채시 아르헨티나 부두에서 양륙할 의무 ㉦ 국내어선과 동일한 항해규범 및 노동법의 준수 ㉧ 이 법 B항에 의거 선명, 선원명단 및 어업협정의 신고 ㉨ 해당 입어료의 납부 ㉩ 외국수산회사는 당국의 선박검사 허용 ㉪ 이들 수산물은 재수출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국제가격으로 본국에 수출 ㉫ 승선인원 중 최소 50% 이상 아르헨티나 선원의 고용 ㉬ 당국은 운영업체(아르헨티나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규범 제정 ㉭ 상기 제도에 의하여 생산된 어획물은 수출장려금이나 부가세 환급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13. 캐나다

캐나다의 「연안어업보호법(2000년)」에서는 외국어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제4조). ㉠ 어획 또는 어획준비 ㉡ 어획물, 의장품 또는 보급품을 선적, 양륙 또는 전채 ㉢ 승무원 또는 기타 사람을 승선 또는 하선 ㉣ 미끼, 보급품 또는 의장품을 구입하거나 취득 ㉤ 해조류를 채취 또는 채취할 준비 등이다.

또한 캐나다 어선의 승선자는 규칙에 따라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어선에 의해 캐나다 어업수역 외측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캐나다 어업수역으로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제5조).

또한 동법 제7조에서는 보호관의 승선에 대해 규정하고, ㉠ 이 법 및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캐나다 어업수역 또는 북서대서양어업기구 규제수역 내에서 발견된 어선에 승선 및 검색할 수 있다. ㉡ 영장을 발부받아 캐나다수역 또는 북서대

서양어업기구 규제수역에서 발견된 어선 및 그 화물을 수색할 수 있다.

동법 제8조에서는 보호관의 무력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어선을 통제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보호관이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타 책임자를 합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 보호관이 당해 선장 또는 책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력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14. 인도

인도의 「해양수역(외국어선어업규제)법(1981년 법률 제42호)」에서는 외국어선의 인도 해양관할수역에서 어업의 금지를 규정하고, 중앙정부가 발급한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단, 면허의 발급은 ㉠ 외국어선의 선주 또는 인도의 해양관할수역에서 외국어선으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정부에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모든 신청서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면허는 중앙정부가 공공이익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고,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후에, 면허의 발급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한, 발급되지 아니한다. ㉣ 면허의 발급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의 모든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동법 제7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유효한 면허 또는 허가 없이 인도 해양관할수역에 진입한 외국어선은 당해 수역에 있는 동안 항시 지정된 방법으로 어구를 격납하여야 한다. 또한 제9조에서는 연안경비대법에 의해 조직된 연안경비대 소속 대원 또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정부의 기타 공무원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장의 발부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할 수 있다. ㉠ 인도의 해양관할수역 내의 외국어선의 정선, 승선, 그러한 어선의 어획물 및 어업에 사용하였거나 어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조사 ㉡ 당해 어선의 선장에게 선박과 관련된 면허증 및 허가증, 항해일지 또는 기타 문서, 그리고 그러한 면허증 및 허가증, 항해일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외국어선이 이 법의 위반에 사용되었거나 또는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할 수 있다. ㉠ 당해 어선에 부착되거나 선내에서 발견된 어구, 어획물, 장비, 보관품, 화물을 포함하여 선박을 압류 또는 억류, 그리고 당해 어선이 투기한 어구의 압류 또는 억류 ㉡ 억류 또는 압류된 선박을 지정된 항구로 이동하도록 선장에게 요구 ㉢ 어업감독공무원이 위반을 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자의 체포 등이다.

1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EEZ 내 어선운항규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포고령 (2001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의 운항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제2조), 그 적용은 합작사업, 외국어선의 신용구매, 어업허가 등이 해당된다.

합작투자방식으로 하는 어선운항규칙은 외국자본투자에 관한 법규에 따라 합작수산회사가 외국어선을 참여시킴으로써 시행되며, 합작수산회사는 신용구매를 통해 어선을 확보할 수 있다(제4조). 합작수산회사가 어선을 구매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 20척 이상의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합작수산회사는 운항하는 전체 어선의 선가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육상가공시설을 먼저 설립하여야 하며, 합작수산회사에 관하여 인도네시아의 첫째 자본참여는 예탁된 전체 자본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동법 제11조에서는 신용구매방식을 통한 어선운항절차를 규정하고, 신용구매방식을 통한 어선운항절차는 외국어선을 신용구매하고자 하는 수산회사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행된다. 그리고 신용구매방식으로 어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산회사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된 승인은 TAC의 잉여분인 이용가능량에 따라 부여된다.

동법 제18조에서는 허가어선 운항규칙을 정하고, 허가어선 운항규칙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IEEZ 내에서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규정된 바의 허가를 받아 IEEZ 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국 정부간에 체결된 양자협정 ㉡ 사용되는 어선의 국적과 외국인 또는 법인의 국적은 동일할 것 ㉢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잉여분이다.

동법 제31조에서는 IEEZ내에서 조업을 위한 어선운항에 대해 규정하고, IEEZ 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합작, 신용구매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는 다음과 같다. ㉠ 연승 ㉡ 단선식 선망 ㉢ 선단식 선망 ㉣ 저인망 ㉤ 자망 ㉥ 오징어채낚기 ㉦ 새우트롤 등이다. 여기에서 유자망의 길이는 2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새우트롤 및 저인망은 동시에 2척을 사용할 수 없다.

16.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수산업법(1985년 법률 제317호)」는 자국 어업수역에서의 외국어선에 의한 어업활동을 규정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와 선박이 등록된 외국 정부간 또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선박이 소속된 국제기구간의 국제어업협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어업의 기술경제학적 연구 또는 조사의 수행을 할 수 없다. 또한 외국어선은 청장의 서면승인 없이 말레이시아 어업수역에서 어류, 연료, 보급품의 양륙, 적하 또는 전재해서는 아니 된다(제15조).

그러나 ㉠ 말레이시아 시민과 외국어선에 속한 자 사이에 그러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 청장의 일반 지시에 따라 그러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그러한 연구 및 조사의 자료 및 결과를 청장에게 규정된 횟수와 방법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범위안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동법 제19조에서는 말레이시아 어업수역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어선에 관한 허가의 발급신청은 그 선박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말레이시아 대리인을 통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이 부과한 조건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 어업이 승인된 구역 ㉡ 어업이 승인된 기간 ㉢ 외국어선의 선내에 보관, 또는 말레이시아에 양륙 또는 전재할 수 있는 어획물의 어종, 연령, 체장, 체중, 수량 ㉣ 어법 등이다.

17. 미얀마

미얀마는 「외국어선의 어로조업권에 관한 법률(1989년)」을 제정하고, 미얀마 영해 이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된 형식으로 수산청에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기타의 어업수역에서의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6조).

사업자의 의무(제8조)는 ㉠ 허가수수료, 활어관세, 보증금, 등록수수료, 연체료, 기타 납부금 및 요금을 지정된 외국환으로 납부 ㉡ 수산청이 지정한 규제, 규칙, 지시 등의 준수 ㉢ 미얀마의 어업수역에서 어업관련 조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허가 획득 ㉣ 수산청이 외국선박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임명한 자, 또는 옵서버 및 직업훈련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미얀마인이 어부 또는 선원으로 외국어선에 승선하도록 지명된 경우 그 명단을 수산청에 제출 등이다.

18. 페루

페루의 「일반어업법(1992년, 법률 제 25-977호)」 제47조에서는 외국인 어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페루 영해 내에서의 외국선박의 활동은 해양생물자원의 총허용어획량 내에서 국내 기존 선단에 의해 활용되지 아니하는 잔여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개발 및 감독·통제절차에 관한 국내법의 조항 및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외국선박은 다음의 경우, 페루 영해 내에서 조업할 수 있다(제48조). ㉠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및 조건 하에서 행해지는 시험어업 ㉡ 수산부가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포획을 위해 페루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선박의 경우 ㉢ 조업허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산부가 정한 고도회유성 수산자원 또는 저개발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경우 ㉣ 페루가 타국 또는 타국의 지역사회와 체결한 어업협정에 의거, 국내 기존 선단에 의해 활용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잉여분에 대한 어업 ㉤ 수산부와 외국 민간기구 간에 체결된 기본협정에 의해 고도회유성 수산자원 또는 저개발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경우 등이다.

19. 러시아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연방법률(1998년)」에서는 생물자원 이용권의 부여(제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물자원 이용권은 러시아연방 국민은 물론 외국인과 외국법인, 외국 및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부여하고, 다음의 자는 생물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그 생활양식·생계·경제를 의존해 온 러시아연방의 북부와 극동지역의 소규모 토착민과 소수민족공동체의 대표자 ㉡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그 생활양식·생계·경제를 의존해 온 러시아연방의 북부와 극동지역 주민과 연안에 인접한 영토의 토착 주민 ㉢ 생물자원의 인공번식을 위한 해양생물 과학조사 및/또는 조치를 수행하는 러시아 신청인 ㉣ 연방 및 지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에 종사하는 러시아 신청인 등이다.

또한 외국 신청인은 러시아 신청인의 모든 신청이 검토된 후 과학적·상업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러시아 신청인이 특정 상업적 어로수역에서 문제의 생물자원의 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을 어획할 능력이 없어야 하며, 또한 러시아연방이 그러한 외국 신청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등록된 국가와 체결한 국제조약 그리고 이 연방법률과 러시아연방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동법 제10조에서는 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목적의 허가신청절차와 조건을 명시하고, 러시아 및 외국 신청인은 생물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허가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러시아어와 외국 신청인의 언어로 각각 작성된 신청서를 특별히 권한이 부여된 어업담당 연방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인에 관한 정보와 어선의 척수·법정 주소·보험 약정 등 그의 물적·재정적 재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대한 책임자에 관한 정보 ㉡ 신청인이 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종사할 경우 선박의 위치에 관한 자료의 자동전송을 허용하는 신청인의 선내의 통신장비의 이용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 ㉢ 허가증 발급사유(러시아 신청인의 경우 배정된 할당량; 외국 신청인의 경우 국제조약 및 배정된 할당량) ㉣ 생물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의 특정 유형과 선명, 톤수, 형태와 선급, 전파통신 장비, 그리고 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사용될 어로장비에 관한 정보 등 그 개발방식에 대한 기술 ㉤ 생물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의 수역과 기간, 그 어종 그리고 각 선박에 할당될 생물자원의 어획 톤수 ㉥ 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관한 기타 자료 ㉦ 법인은 전술한 신청서와 함께 그 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미국

「맥너슨-스티븐스법(1996, 연방법규 제50장 야생생물 및 어업)」의 제600.501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거 조업하는 각 외국어선은 유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을 반드시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가 외국어선이나, 외국인들로 하여금 해양 포유동물을 괴롭히거나, 포획하거나 또는 살해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 당해 어선이 해양포유동물 보호법에 따른 현재 유효한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조업 과정에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할 수 없다.

미국 연방해양대기청, 연방해양어업국의 수산담당차장은 동법에 따라 미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어선만 활동코드 1에서 10에 대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 활동코드 1 - 어획, 어탐, 가공, 전재 및 외국선박의 지원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선박이 어획한 어획물 또는 어획하는 것에 한한다) ㉡ 활동코드 2 - 가공, 어탐, 전재 및 외국선박의 지원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선박이 어획한 어획물 또는 어획하는 것에 한한다) ㉢ 전재, 어탐 및 외국선박의 지원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선박이 어획한 어획물 또는 어획하는 것에 한한다) ㉣ 활동코드 4 - 가공, 어탐, 전재 및 외국선박에 어획물을 운반하는 미국어선의 지원(미국선박이 채포한 가공되지 아니한 어획물의 취득 또는 미국어선이 채포하는 것에 한한다) ㉤ 활동코드 5 - 전재, 어탐 및 외국어선의 지원 (전재는 미국어선으로부터의 어획물을 가공하는 외국어선으로부터 취득한 어획물 또는 그러한 취득에 한한다) ㉥ 활동코드 6 - 전재, 어

탐 및 미국어선의 지원 (전재는 미국어선의 선내에서 가공된 미국어선 채포 어획물에 한한다) ㉔ 활동코드 7 - 가공, 전재 및 외국어선의 지원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쪽에서 외국어선이 어획한 어획물 또는 외국어선의 어획에 한한다) ㉕ 활동코드 8 - 전재와 외국어선의 지원(외국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쪽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어획하는 것에 제한하거나 각 주의 내수에서 가공이 허가된 어획물에 제한한다) ㉖ 활동코드 9 - 미국어선, 미국 가공선 등 허가된 외국어선의 지원 ㉗ 활동코드 10 -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주정부 관할수역, 주정부 경제수역에서 미국 이원어로 어획물 또는 어류가공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전재 등이다.

동법 제600.506조의 업서버 규정에서는 ㉘ 일반. 과학적, 준수감독 및 기타 맥너슨-스티븐스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행정관이나 과학연구관은 외국어선에 미국 업서버를 배정할 수 있다. 맥너슨-스티븐스법 제201조 모든 외국어선은 미국 업서버를 승선시키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없다. ㉙ 어업노력계획.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희망하는 외국어선의 선주 및 운항자는 이 조에 의한 업서버 승선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행정관 또는 과학연구관 및 연방해양어업국의 재정지원과장(East West Highway, Silver Spring, MD 20910)에게 어획노력계획을 매 분기 개시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㉚ 업서버에 대한 협조. 업서버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기 위하여, 업서버가 배정된 외국어선의 선주 및 운항자는 업서버에게 당해 선박의 사관에 준하는 숙박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업서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00.507조에 의하면, 기록의 보존에 대해 규정한 바에 따르면, 통신일지, 양도일지, 어로조업일지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21. 베트남

베트남의 「외국인 및 외국자본의 어업활동 관리에 관한 법령(1978)」에서는 제6조에 ‘베트남의 관련기관이 승인하고 발급한 어업관련 투자면허, 과학조사 및 협력, 과학 및 기술협력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외국기구나, 외국인은 베트남 수산자원부에 선박의 특정활동에 대하여 등록하고, 베트남 해역에 당해 선박이 진입하기 전에 어업활동 등록서(이하 등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0조에서는 베트남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및 선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베트남 수산자원부는 베트남 감독관을 임명하여 외국선박에서 감독하고, 당해 선박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외국선박의 소유자는 그러한 감독관의 작업환경 및 생활조건을 당해 선박의 고급 사관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하고, 선박 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베트남의 관련 기관과 통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베트남 해양통제관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22. 연안국 입어정책 요인에 대한 요약 및 결론

위에서 연안국의 외국어선 조업에 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주요 연안국의 입어정책 요인을 파악해 보았다.

각 연안국은 어업관리법,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자원법, 해양수역법, 수산업법, 어업수역과 외국인 어업의 규칙, 어업법, 연안어업보호법, 외국어선의 어로조업권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연방법률, 맥너슨-스티븐슨법, 외국인 및 외국자본의 어업활동 관리에 관한 법령 등 다양한 법체계로 외국어선의 입어를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연안국의 입어정책은 일차적으로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자원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매우 폐쇄적인 입어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조업수역, 어업기간, 어종, 허용어획량, 입어료의 납부, 읍저버의 승선 및 대우 등은 물론 일정한 어로장비의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또한 어획물의 사용, 운송, 전재, 양륙 및 가공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항해규범, 노동법의 준수, 선박검사, 채수출 제한, 일정비율의 자국선원의 의무적 고용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심한 규제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합작수산회사에 대해 어선의 구매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체 어선선가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20%)의 육상가공시설을 먼저 설립해야 하는 등 자본참여에 대해 심한 규제를 내걸고 있다.

이와 같은 연안국의 외국선박에 대한 심한 규제는 우리나라 원양어업경영에 대한 경쟁력과 수익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원양어업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폐업의 정성적 요인

1. 폐업의 정성적 요인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과 업종별 위원장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원양어선 폐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 8-1>은 폐업의 고려 요인으로 선정된 항목들이다. 이 항목 중 FTA로 인한 업종별 피해는 본 연구 과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량적 요소이며, 여기에 경영수익성을 또 하나의 계량적 평가 요소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연안국 규제, 쿼터확보 어려움, 입어료부담, 조업경쟁여건, 폐업의지의 5개 요소를 정성적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7개 고려 요소의 평가 방법은 항목의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르다. 가령 FTA의 피해영향은 제9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만 기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7)¹⁾에서 분석한 한미FTA로 인한 어종별 피해금액을 토대로 업종별 피해 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경영수익성은 제7장의 업종 및 수역별 수익성 분석결과를 인용하였다. 연안국 규제, 쿼터확보 어려움, 입어료부담, 조업경쟁여건의 정성적 요인은 <표 8-2>양식의 업체별 설문결과를 활용하였으며, 폐업요구는 <표 8-2>의 설문과 <표 8-3>의 설문 결과를 종합해서 산정하였다.

<표 8-1> 폐업의 고려 요인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폐업 시 고려요인	FTA영향 생산감소	경영 수익성	연안국 규제	쿼터확보 어려움	입어료 부담	조업 경쟁여건
분석방법	기존 보고서 재분석	제7장 참조	<표 8-2>양식의 설문				<표 8-2> & <표 8-3> 양식의 설문

2. 폐업의 정성적 요인에 대한 업종별 영향도

각 업종이 폐업의 고려 기준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지 <표 8-2>의 양식과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화하였다. 이 값은 영향도가 최소일 경우 1, 최대일 경우를 5로 입력하여 평균한 값이다.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한미FTA 수산분야 예상피해- 주요 품목 설명자료

<표 8-2> 폐업 고려요소에 대한 업종별 영향도 설문양식

폐업의 고려요소 업종	FTA 생산 피해	경영 수익성	연안국 규제	쿼터 확보 어려움	입어료 부담	조업 경쟁여건	폐업 요구 (A)
북양트롤							
북양트롤 (합작)							
기지트롤 (대서양)							
기지트롤(포클랜드)							
기지트롤(인도양)							
기지트롤(인도네시아)							
기지트롤(뉴질랜드)							
새우트롤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채낚기							
대구저연승							
꽁치봉수망							
대서양 외줄낚시							
평균							

주) 1: 전혀 무관, → 5: 매우 관련 있음, FTA로 인한 업종별 생산감소규모와 업종별 경영수익성은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므로 본 설문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3. 업계의 폐업 의지 분석

<표 8-2>의 맨 우측 열을 통해 집계된 업계의 폐업요구 값(A)을 평균할 경우 업계의 폐업의지에 대한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차 회수된 설문결과에서 다수의 업체가 자사와 관련한 업종의 폐업요구를 일방적으로 크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폐업의지 항목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각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몇 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고 연차별로 몇 척씩 폐업할 의지가 있는 지를 추가적인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앞서 구한 <표 8-2>의 결과를 종합해서 업계의 최종적인 폐업 의지로 간주하였다.

<표 8-3> 연도별 폐업희망 어선 수 통계

업종	톤급 (톤)	조업 선박수	연도별 희망 폐업어선 수						20012년 이전 폐업요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이후	어선 척수	비율
북양트롤	3000톤 미만	3	1	1	-	-	-	-		
	3000톤 이상	2	1	1	-	-	-	-		
	계	5	2	2	-	-	-	-	4	80%
북양트롤 (합작)	3000톤 미만	4	-	1	-	-	-	1		
	3000톤 이상	12	-	-	3	-	-	2		
	계	16	-	1	3	-	-	3	4	25%
기지트롤 (대서양)	300톤 미만	22	5	4	3	-	-	1		
	300톤 이상	31	19	2	-	-	-	-		
	계	53	24	6	3	-	-	1	33	62%
기지트롤 (포클랜드)	300톤 미만	7	-	-	-	1	1	1		
	300톤 이상	7	1	-	-	-	-	-		
	계	14	1	-	-	1	1	1	3	21%
기지트롤 (인도양)	300톤 미만	4	1	-	-	-	-	-		
	300톤 이상	6	1	2	-	-	-	-		
	계	10	1	1	-	-	-	-	4	40%
기지트롤 (인도 네시아)	300톤 미만	21	2	2	2	-	-	1		
	300톤 이상	6	-	2	2	-	-	-		
	계	27	2	4	4	-	-	1	10	37%
기지트롤 (뉴질랜드)	500톤 미만	7	-	-	-	-	-	-		
	500톤 이상	5	-	-	-	-	-	-		
	계	12	-	-	-	-	-	-	-	0%
새우트롤	100톤 미만	-	-	-	-	-	-	-		
	계	-	-	-	-	-	-	-	-	-
참치연승	300~400톤	72	1	1	2	1	-	-		
	400톤 이상	93	-	2	2	3	2	-		
	계	165	1	3	4	4	2	-	14	8%
참치선망	500~1000톤	15	-	-	-	-	1	2		
	1000~2000톤	13	-	-	-	-	1	2		
	계	28	-	-	-	-	2	4	2	7%
오징어 채낚기	200~500톤	40	2	1	2	1	-	-		
	500~1000톤	9	-	-	1	-	-	-		
	계	49	2	1	3	1	-	-	7	14%
대구 저연승	300~500톤	3	-	-	1	-	-	-		
	계	3	-	-	1	-	-	-	1	33%
꽂치붕수망	300톤 미만	2	-	-	-	-	-	-		
	300톤 이상	18	1	3	4	1	-	1		
	계	20	1	3	4	1	-	1	9	45%
대서양 외줄낚시	300~500톤	9	1	2	-	-	1	-		
	계	9	1	2	-	-	1	-	4	44%

<표 8-5>는 업계의 폐업의지에 대한 추가설문 결과로서, 설문에 응한 총 43개 업체의 톤급별 보유선박수와 향후 5년간의 희망 폐업 어선수를 정리한 것이다. 한편, 여기 분석된 결과는 총 95개 설문대상 업체 중 43개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이것이 업계 전체의 의견을 완벽하게 나타낸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각 업계에 대한 동일한 조건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각 업계별로 보유 어선 수 대비 희망 폐업 어선수의 비율을 통해 각 업종별로 폐업의지의 상대적인 크기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폐업의 시급성을 감안하기 위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3년 이후의 폐업희망 어선수에 각각 130%, 120%, 110%, 100%, 90%, 80%, 10%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가중 합계하고 이를 총 어선수로 나눠 2차 폐업희망지수의 기초가(B)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수에 5를 곱해 대략 (1-5)범위로 정규화(C)하고, 이 값을 다시 <표 8-4>에서 조사된 1차 폐업희망지수(A)와 종합해서 (1-5)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한 값을 최종적인 폐업희망 지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원양업계는 대서양외줄납시, 기지트롤(대서양), 북양트롤, 기지트롤(인도네시아) 등의 폐업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4> 폐업희망 어선수를 토대로 한 업종별 폐업 희망 지수

업종	1차 폐업희망지수(A)	2차 폐업희망지수		최종 폐업희망 지수 (D)
		기초값 (B)	정규화 (C)	
북양트롤	4.0	1.02	5.08	4.4
북양트롤 (합작)	3.7	0.56	2.81	3.2
기지트롤(대서양)	3.6	1.19	5.93	4.7
기지트롤(포클랜드)	3.7	0.52	2.58	3.0
기지트롤(인도양)	2.5	0.63	3.13	2.7
기지트롤(인도네시아)	4.8	0.96	4.79	4.6
기지트롤(뉴질랜드)	N/A*	N/A*	N/A*	1.0**
새우트롤	N/A*	N/A*	N/A*	1.0**
참치연승	3.3	0.29	1.47	2.3
참치선망	1.5	0.13	0.63	1.0
오징어채낚기	4.4	0.59	2.96	3.6
대구저연승	2.0	0.50	2.50	2.2
꽁치봉수망	4.5	0.83	4.13	4.1
대서양 외줄납시	5.0	1.05	5.25	5.0

* N/A: Not available,

** : 해당 업종의 설문응답 결과가 없어서 최저 수준의 값을 임의 할당함

<표 8-5>는 폐업선호도 조사와 제10장의 입찰기초가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요약이다.

<표 8-5> 입찰기초가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입찰기초가	폐업의지				
		반드시 참여	가급적 참여	보통	가급적 불참	반드시 불참
북양트롤	3년간평균수익*90%이상	1	3	0	0	0
	3년간평균수익*80%	0	2	1	0	0
	3년간평균수익*70%	0	0	1	2	0
	3년간평균수익*60%	0	0	0	1	2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0	4
북양트롤 (합작)	3년간평균수익*90%이상	0	4	1	0	0
	3년간평균수익*80%	0	3	2	0	0
	3년간평균수익*70%	0	0	3	2	0
	3년간평균수익*60%	0	0	0	2	3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0	5
기지트롤 (대서양)	3년간평균수익*90%이상	7	1	1	0	0
	3년간평균수익*80%	2	3	2	1	0
	3년간평균수익*70%	2	2	3	1	2
	3년간평균수익*60%	0	1	0	2	5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1	0	7
기지트롤 (포클랜드)	3년간평균수익*90%이상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80%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70%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60%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0	0
기지트롤 (인도양)	3년간평균수익*90%이상	1	1	1	0	0
	3년간평균수익*80%	0	1	1	1	0
	3년간평균수익*70%	0	0	1	0	2
	3년간평균수익*60%	0	0	0	0	3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0	3
기지트롤 (인도네시아)	3년간평균수익*90%이상	4	2	0	0	0
	3년간평균수익*80%	1	2	1	0	0
	3년간평균수익*70%	0	1	2	1	0
	3년간평균수익*60%	0	0	0	1	3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0	4
기지트롤 (뉴질랜드)	3년간평균수익*90%이상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80%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70%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60%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0	0
새우트롤	3년간평균수익*90%이상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80%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70%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60%	0	0	0	0	0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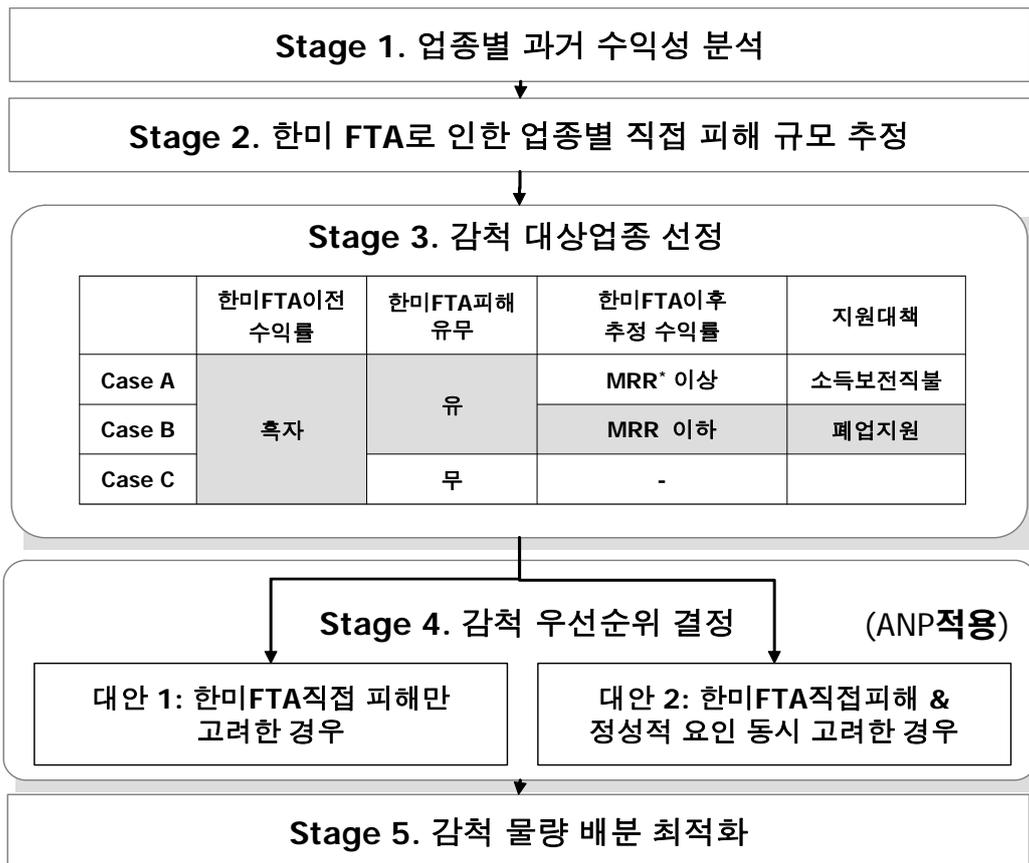
〈표 8-5〉 입찰기초가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계속)

	입찰기초가	폐업의지				
		반드시 참여	가급적 참여	보통	가급적 불참	반드시 불참
참치연승	3년간평균수익*90%이상	2	0	0	0	0
	3년간평균수익*80%	1	1	0	0	0
	3년간평균수익*70%	0	1	0	0	1
	3년간평균수익*60%	0	0	1	0	1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1	0	1
참치선망	3년간평균수익*90%이상	0	0	1	0	0
	3년간평균수익*80%	0	0	0	1	0
	3년간평균수익*70%	0	0	0	1	0
	3년간평균수익*60%	0	0	0	0	1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0	1
오징어채낚기	3년간평균수익*90%이상	3	0	1	0	0
	3년간평균수익*80%	0	1	0	1	0
	3년간평균수익*70%	0	0	1	0	1
	3년간평균수익*60%	0	0	1	0	1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1	1
대구저연승	3년간평균수익*90%이상	0	1	0	0	0
	3년간평균수익*80%	0	0	1	0	0
	3년간평균수익*70%	0	0	1	0	0
	3년간평균수익*60%	0	0	0	1	0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0	1
꽁치봉수망	3년간평균수익*90%이상	3	2	1	1	0
	3년간평균수익*80%	0	3	1	1	0
	3년간평균수익*70%	0	0	3	1	1
	3년간평균수익*60%	0	0	1	0	4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1	4
대서양 외줄낚시	3년간평균수익*90%이상	2	0	0	0	0
	3년간평균수익*80%	1	1	0	0	0
	3년간평균수익*70%	0	0	1	0	1
	3년간평균수익*60%	0	0	0	0	2
	3년간평균수익*50%이하	0	0	0	0	2

제9장 원양어선 업종별 폐업 우선순위 및 물량 연구

제1절 폐업 우선순위 및 물량 결정을 위한 절차 개요

본 연구에서는 <그림 9-1>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업종별 폐업 우선순위와 폐업 물량을 결정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 7장에 기술된 업종별 수익성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 2단계에서는 한미FTA로 인한 업종별 직접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3단계에서 한미FTA로 인한 수익률 변화를 토대로 폐업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즉, 한미FTA로 인해 흑자상태인 업종에 한해 우선 지원을 한다는 원칙하에 폐업대상 업종과 소득보전 직불 대상 업종을 선별한다. 다음 4단계에서는 폐업대상 업종에 대한 폐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5단계에서는 폐업 우선 업종을 대상으로 혼합정수계획(Mixed Integer Programming)모형을 활용한 최적화기법을 통해 연도별 폐업 물량을 배분한다. 위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2절부터 기술되어 있다.



<그림 9-1> 폐업 물량 결정을 위한 연구 절차

제2절 단계1-업종별 과거 수익성 분석 결과

아래의 <표 9-1>은 제7장의 <표 7-7>을 재인용 한 것으로, 신용평가기관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수익성 비율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해당한다.

<표 9-1> 수익성 분석 결과 요약

업종	총자산 순이익률	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북양트롤	2.55%	12.52%	4.80%	2.27%	1.74%
기지트롤(대서양)	1.45%	8.66%	0.78%	1.16%	1.04%
기지트롤(포클랜드)	2.79%	10.23%	-1.02%	1.58%	1.48%
기지트롤(인도양)	2.80%	11.29%	1.07%	1.09%	1.18%
기지트롤(인도네시아)	10.83%	10.48%	8.78%	8.88%	8.00%
기지트롤(뉴질랜드)	4.28%	8.55%	5.07%	2.78%	2.11%
참치연승	0.65%	1.97%	0.87%	0.66%	0.68%
참치선망	6.48%	12.16%	7.89%	10.10%	7.23%
오징어채낚기	3.12%	18.47%	2.67%	3.41%	3.40%
대구저연승	6.97%	20.03%	2.56%	3.03%	3.98%
꽁치봉수망(오징어겸업)	5.09%	9.96%	3.15%	4.77%	3.57%

제3절 단계2-한미FTA로 인한 각 업종별 직접피해 산정

한미 FTA 양허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수산업의 생산액은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 다음의 <표 9-2>는 한미 FTA로 인한 각 품목별 양허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¹⁾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각 품목별 생산감소 규모를 관세철폐를 가정해서 추정하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활용해서 각 업종별 생산감소 규모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원양업 뿐 아니라 수산업 전체에 대한 피해금액으로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원양업 위주로 주요 어종별 피해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표 9-2> 한미FTA의 각 품목별 양허결과

대상 품목		양허 결과	관세율 (2006년)
어종	품목(HS)		
민어	냉동	12년(T*)	63%
명태	냉동	15년(T)	30%
기타넙치	냉동	12년(T)	10%
	활어		
오징어	냉동	10년(비**)	24%
		10년(비)	
대구	신냉	10년(비)	10%
	냉동	5년	
가오리	냉동	10년(비)	10%
볼락	냉동	10년(비)	10%
	활어	10년(비)	10%
홍어	냉동	10년	10%
뱀장어	활어	10년(비)	30%
꽃게	신냉	10년(비)	14%
	냉동	10년(비)	
고등어	냉동	12년	10%
게류	냉동	10년(비)	20%
임연수어	냉동	10년	10%
아귀	냉동	10년(비)	10%
꽁치	냉동	10년(비)	36%
가자미	냉동	10년(비)	10%
떡장어	냉동	10년	10%
돔	냉동	10년(비)	10%
개아지살	냉동	10년(비)	20%

*Tariff Rate Quota (TRQ) : 관세할당제

**비: 비선형철폐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한미FTA 수산분야 예상피해- 주요 품목 설명자료

<표 9-3>과 <표 9-4>는 한미FTA로 인한 업종별 생산감소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된 자료이며 <표 9-5>는 한미 FTA로 인한 수산업 전체 피해 중 원양업이 차지하는 금액을 각 어종별로 추정한 결과이다. 즉, 이 표의 맨 우측의 값이 각 어종별 원양업의 생산감소 금액의 추정값으로서, 각 어종별 원양업의 비율(A)과 해당 어종의 생산감소액(B)의 곱으로 구한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고등어, 넙치, 가자미, 게류, 꽃게 등의 경우 수산업 전체적으로는 한미FTA로 인한 생산 감소가 큰 편이지만, 이들 어종이 대부분 연근해에서 획득되는 관계로 원양업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원양업의 경우는 명태, 민어, 대구, 오징어, 꽁치, 서대가 주요 피해 어종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9-3> 주요 어종의 생산규모 분석 (생산량 기준)

	연근해	원양	원양(합작)	양식	합계(톤)
명태	110	22,634	131,371	-	154,115
민어	1,192	20,564	-	2	21,758
고등어	147,305	509	-	45	147,858
넙치	1,883	10	-	35,578	37,471
대구	2,913	3,151	-	-	6,064
가자미	13,488	194	-	-	13,682
게류	32,442	120	-	54	32,616
꽃게	5,292	-	-	-	5,292
오징어	211,713	91,159	-	-	302,873
아귀	11,273	-	-	-	11,273
뱀장어	-	-	-	5,116	5,116
키조개	2,789	-	-	2,577	5,366
꽁치	3,619	31,451	-	-	35,070
불락	5,263	335	-	21,761	27,359
서대	976	1,620	-	-	2,596
가오리	2,444	6,710	-	-	9,154
돔류	2,941	7,182	-	8,040	18,163

<표 9-4> 주요 어종의 생산규모 분석 (생산금액 기준)

	연근해	원양	원양(합작)	양식	합계(천\$)
명태	817	23,930	103,960		128,707
민어	10,153	79,313		21	89,488
고등어	186,381	17		349	186,748
넙치	23,990	6		350,507	374,503
대구	13,281	1,596			14,877
가자미	92,003	573			92,576
계류	110,570	92		1,593	112,256
꽃게	77,640				77,640
오징어	407,372	111,751			519,123
아귀	26,595				26,595
뱀장어				71,691	71,691
키조개	8,705			5,389	14,094
꽂치	6,215	25,842			32,057
불락	41,478	62		181,932	223,472
서대	6,113	4,056			10,169
가오리	13,864	7,142			21,007
돔류	31,405	29,955		78,145	139,506

<표 9-5> 원양 품목 별 한미FTA의 피해 규모 추정

	원양업의비중			한미FTA로 인한 생산감소					원양업의생산감소(억원)(A*B)
	전체생산(천\$)	원양업생산(합작포함)(천\$)	원양업비중(A)	수입증가량(톤)	가격하락분(원/kg)	생산감소량(톤)	생산액감소*(억)	평균생산감소(억)(B)	
명태	128,707	127,890	99.4%	7,600	173	7,220	192~309	251	249
민어	89,488	79,313	88.6%	3,100	411	775	73~116	95	84
고등어	186,748	17	0.0%	900	57	675	58~93	76	0
넙치	374,503	6	0.0%	1,270	69	445	44~70	57	0
대구	14,877	1,596	10.7%	1,410	213	1,340	27~43	35	4
가자미	92,576	573	0.6%	1.05	162	263	24~39	32	0
계류	112,256	92	0.1%	900	84	225	19~31	25	0
꽃게	77,640	-	0.0%	280	338	42	15~23	19	-
오징어	519,123	111,751	21.5%	300	3	15	6~10	8	2
아귀	26,595	-	0.0%	400	63	100	5~9	7	-
뱀장어	71,691	-	0.0%	35	165	2	5~8	7	-
키조개	14,094	-	0.0%	60	114	30	4~7	6	-
꽂치	32,057	25,842	80.6%	50	2	18	4~6	5	4
불락	223,472	62	0.0%	170	19	4	3~5	4	0
서대	10,169	4,056	39.9%	70	92	18	2~3	3	1
가오리	21,007	7,142	34.0%	170	11	4	1	1	0
돔류	139,506	29,955	21.5%	50	6	1	1	1	0

다음은 <표 9-6>의 맨 우측열에 나타난 각 어종별 피해 규모를 토대로 각 어종과 세분화된 업종간의 관련도를 종합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각 업종별 피해액을 산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표 9-6>과 같이 각 어종이 어떤 어업 방식으로 획득되는지, 즉 어떤 업종과 연관이 있는지 관계를 분석한 매트릭스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매트릭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원양생산통계 중 2005-2007년의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표 9-6> 주요 어종-업종 간 관련도

		명태	민어	대구	오징어	꽁치	서대	가오리	돔류
총생산(톤)		154,115	21,758	6,064	302,873	35,070	2,596	9,154	18,163
원양생산(톤)		154,005	20,564	3,151	91,159	31,451	1,620	6,710	7,182
북양트롤		14.7%	-	1.4%	-	-	-	-	0.3%
북양트롤 (합작)		85.0%	-	-	-	-	-	-	-
해외 기지트롤	대서양	-	71.3%	-	-	-	59.5%	7.1%	0.5%
	포클랜드	-	1.0%	0.7%	9.3%	-	0.5%	35.1%	-
	인도양	-	1.7%	-	0.6%	-	-	-	18.0%
	인도네시아	-	9.8%	-	0.3%	-	2.4%	17.3%	-
	뉴질랜드	-	-	-	5.1%	-	-	1.7%	16.1%
새우트롤		-	-	-	-	-	-	-	-
참치연승		-	-	-	-	-	-	-	-
참치선망		-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14.8%	-	-	-	-
대구저연승		-	-	49.9%	-	-	-	12.1%	-
꽁치봉수망		-	-	-	-	89.7%	-	-	-
대서양 외줄낚시		-	10.8%	-	-	-	-	0.1%	4.8%
기타 (비원양업)		0.3%	5.5%	48.0%	69.9%	10.3%	37.6%	26.7%	60.5%

<표 9-7>은 한미FTA로 인한 각 업종별 피해금액을 추정한 결과값으로, <표 9-5>과 <표 9-6>의 내용을 종합해서 산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맨 우측 열은 한미FTA로 인한 피해규모를 (1~5)범위로 정규화한 것이다.

<표 9-7> 한미 FTA로 인한 업종별 생산 피해 규모

원양생산(톤)	한미FTA로 인한 생산감소 (억원)	평균 (억원)	한미FTA영향 지수 (정규화)	피해액 순위그룹	
북양트롤	29-46	37	2.40	1	
북양트롤 (합작)	163-263	213	5.00	-	
해외 기지트롤	대서양	52-85	68	3.56	1
	포클랜드	2-3	2	1.09	3
	인도양	1-2	2	1.07	3
	인도네시아	7-12	9	1.35	2
	뉴질랜드	0-1	1	1.02	3
새우트롤	-	-	1.00		
참치연승	-	-	1.00		
참치선망	-	-	1.00		
오징어채낙기	1-1	1	1.04	3	
대구저연승	12-20	16	1.59	2	
꽁치붕수망	4-5	4	1.17	3	
대서양 외줄낙시	8-13	10	1.38	2	

제4절 단계3-폐업 대상 업종 선정

폐업 대상 업종의 주된 선정기준은 한미FTA시행 전후의 수익률 변화이다. 즉, FTA이전에 이미 적자상태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한미 FTA로 인해 흑자상태인 업종에 한해 지원을 한다는 원칙하에 한미FTA이후의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기준수익률, 즉 최저기대수익률(Minimum Required Return, MRR) 이하의 수익률이 예상되는 업종을 폐업지원, 기준 수익률 초과 업종을 소득보전직불제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최저기대수익률로는 3%를 기본 안으로 적용했으며, 추가적으로 5%가 적용될 경우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북양합작은 국내선이 아니므로 한미FTA영향과 관계없이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표 9-8>은 제7장에서 분석된 한미FTA로 인한 업종별 수익률 변화의 추정결과를 발췌한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한미FTA이전 모든 업종이 흑자 상태였으나 FTA가 시행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 영향으로 기지트롤(대서양), 북양트롤, 그리고 기지트롤(인도양)의 수익률이 3%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이들 3개 업종을 폐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 중 대구저연승, 대서양외줄납시, 기지트롤(포클랜드), 콩치붕수망, 기지트롤(인니), 기지트롤(뉴질랜드), 오징어채낚기 업종은 한미 FTA이후에도 3%이상의 수익률이 예상되지만, FTA로 인한 직접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득보전직불방식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9-8> 한미 FTA로 인한 업종별 수익률 변화 추정

주 업종	자기자본 순이익율	추정피해액 (백만원)	조정피해액 (백만원)	FTA후 추정수익율	폐업지원 여부 (3%기준)	폐업지원 여부 (5%기준)
북양트롤	12.52%	3,700	2,220	1.68%	지원	지원
기지트롤(대서양)	8.66%	6,800	2,566	-26.4%	지원	지원
기지트롤(포클랜드)	10.23%	200	171	9.97%		
기지트롤(인도양)	11.29%	200	100	2.61%	지원	지원
기지트롤(인니)	10.48%	900	156	7.15%		
기지트롤(뉴질랜드)	8.55%	100	25	8.24%		
참치연승	1.97%	-	-	1.97%		
참치선망	12.16%	-	-	12.60%		
오징어채낚기	18.47%	100	2	19.79%		
대구저연승	20.03%	1,600	1,600	17.06%		
콩치붕수망	9.96%	400	98	9.76%		
대서양외줄납시	9.10%	1,000	1,000	4.78%		지원

제5절 단계4-폐업 우선순위 결정 절차

폐업 우선순위는 <그림 9-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미FTA의 직접피해만을 고려한 경우와 여타의 정성적 요소까지 모두 고려한 경우로 나눠 우선순위를 산정할 수 있다.

1. 한미FTA 직접 피해만 고려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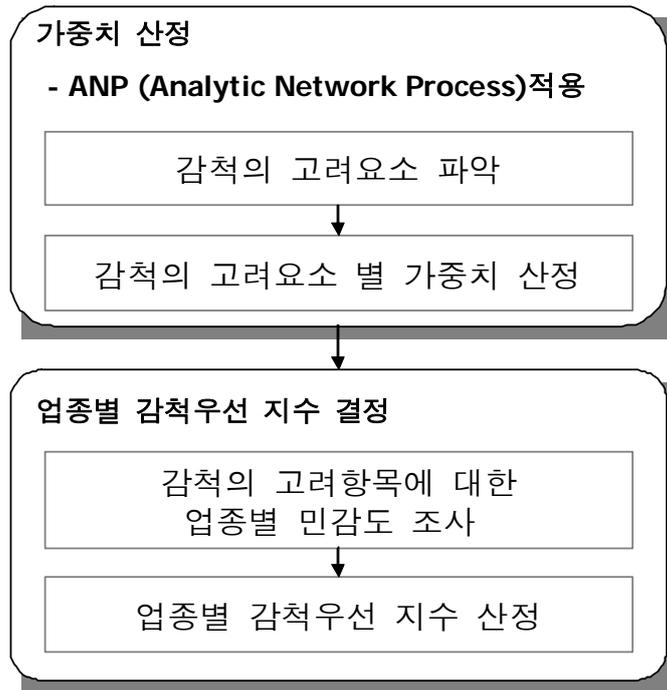
한미FTA의 직접피해만을 고려할 경우의 우선순위는 비교적 간단하게 정할 수 있다. 즉, <표 9-8>에 나타난 바와 폐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북양트롤, 기지트롤(대서양), 기지트롤(인도양) 중, <표 9-7>에 나타난 한미FTA의 영향지수를 토대로 정하였다. 그 결과 MRR로 3%를 적용할 경우 기지트롤(대서양), 북양트롤, 기지트롤(인도양)의 순서, MRR로 5%를 적용할 경우는 기지트롤(대서양), 북양트롤, 기지트롤(인도양), 대서양외줄납시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표 9-9> 업종별 폐업우선순위 (한미FTA피해만 고려)

구분	MRR 3% 적용 시	MRR 5% 적용 시
1순위	기지트롤 (대서양) > 북양트롤 > 기지트롤 (인도양)	기지트롤 (대서양) > 북양트롤 > 기지트롤 (인도양)
2순위		대서양 외줄납시

2. 한미FTA 직접 피해 & 정성적 요인 동시에 고려한 경우

한미FTA의 직접피해 뿐 아니라 폐업관련 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업종별 폐업 우선순위를 산정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업종별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 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등의 모형을 검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적용한 바 있고 이해가 쉬운 방법, 즉,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별도로 산정하고 이들 토대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절차를 적용해 보았다. 이 과정은 정성적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림 9-3>과 같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각 단계를 구분하면 폐업 우선순위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선정하는 단계, 각 기준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는 단계, 폐업관련 고려기준에 대한 각 업종의 민감도를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폐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9-2> 폐업 대상 업종 결정을 위한 절차

가. 단계 4.1 - 폐업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 기준 선정

제8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폐업 시 고려해야 할 고려요소로 한미FTA로 인한 피해, 경영수익성, 연안국 규제, 쿼터확보어려움, 입어료 부담, 조업경쟁여건, 그리고 업계의 폐업의지가 선정되었다.

<표 9-10> 폐업 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 기준

구분	한미FTA	수익성	조업 여건				폐업의지
평가 기준	FTA영향 생산감소	경영 수익성	연안국 규제	쿼터확보 어려움	입어료 부담	타어선과 경쟁	폐업 희망지수

나. 단계 4.2 - 폐업대상 업종 선정 기준에 대한 가중치 산정

폐업대상 업종의 선정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의사결정 기법이 활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사결정 (Analytic Network Process, ANP)을 활용하였다. ANP는 유사한 여타 연구에서 흔히 사용된 계층의사결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ANP는 AHP가 가정하는 평가 요소 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앞서 소개한 폐업 고려 기준의 경우 경영

수익성은 FTA피해, 연안국 규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각 기준 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요소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수 있는 ANP를 활용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ANP의 개념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유수현, 김승권 (1999)²⁾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1) ANP의 기본개념

ANP는 AHP 기법을 일반화한 개념으로 AHP 기법이 각 구성 요소 간에 상호 독립적이며 한다는 공리가 필요한 반면, ANP 기법은 각 구성 요소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ANP는 AHP보다 다소 복잡한 개념을 토대로 하며 개념 파악을 위해 다음에 소개할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Node Comparison과 Cluster Comparison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즉, 요소(node)들 간의 영향관계를 쌍대 비교하는 것을 Node Comparison이라고 하고, 군집(cluster)간의 영향관계를 쌍대 비교하는 것을 Cluster Comparison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Unweighted Supermatrix와 Cluster Matrix는 대행렬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행렬이 된다.

이 대행렬은 ANP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렬로서 ANP 기법의 핵심 역할을 한다. 대행렬은 전체 시스템의 최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구성되는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는데 이용되며 각 구성요소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소행렬들로 구성된다. 의사결정 네트워크의 성분을 $C_h (h=1, 2, \dots, m)$ 라 하고, 각 성분은 n_h 개의 요소를 가지며, 이는 $e_{h1}, e_{h2}, \dots, e_{hn_h}$ 로 나타낸다. 한 성분내의 요소들 간의 영향은 AHP에서처럼 쌍대비교로부터 도출되는 우선순위 벡터로 표현된다. 즉, 이는 다음의 대행렬 W 와 같이 표현된다.

$$W_{ij} = \begin{bmatrix} W_{i_1j_1} & W_{i_1j_2} & \cdots & W_{i_1j_n} \\ W_{i_2j_1} & W_{i_2j_2} & \cdots & W_{i_2j_n}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W_{i_nj_1} & W_{i_nj_2} & \cdots & W_{i_nj_n} \end{bmatrix}$$

2) 유수현, 김승권 (2000), 지능형 빌딩 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s)의 등급 결정을 위한 ANP(Analytic Network Process) 모형, IE Interfaces, Vol 13, No.2, pp.234~245

$$W = \begin{matrix} & & C_1 & C_2 & \dots & C_m \\ & & e_{11}e_{12}\dots e_{1n_1} & e_{21}e_{22}\dots e_{2n_2} & \dots & e_{m1}e_{m2}\dots e_{mn_m} \\ C_1 & \begin{matrix} e_{11} \\ e_{12} \\ \vdots \\ e_{1m_1} \end{matrix} & \begin{bmatrix} W_{11} & W_{12} & \dots & W_{1m} \\ W_{21} & W_{22} & \dots & W_{2m}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W_{m1} & W_{m2} & \dots & W_{mm} \end{bmatrix} \\ C_2 & \begin{matrix} e_{21} \\ e_{22} \\ \vdots \\ e_{2n_2} \\ \vdots \end{matrix} & \\ C_m & \begin{matrix} e_{m1} \\ e_{m2} \\ \vdots \\ e_{mn_m} \end{matrix} & \end{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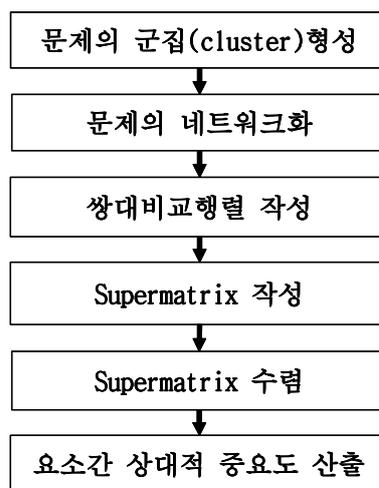
W_{ij} 의 각 열은 네트워크의 j 번째 성분에 있는 한 요소에 대한 i 번째 성분에 있는 요소들의 영향을 나타내는 주 고유벡터이다. 행렬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영향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고유벡터를 도출하기 위해 쌍대비교를 행하는 경우 성분에 있는 모든 요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0이 아닌 영향도를 갖는 요소만 이용하면 된다.

이 대행렬의 형태에 따라 그 해법이 달라질 수 있어 대행렬의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 대행렬의 형태로 첫 번째 Irreducible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구성요소(네트워크 모형에서 각각의 노드)를 네트워크에 표현하였을 때, 구성요소들이 Strongly Connected된 상태를 의미한다. Strongly Connected란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하는 방향성이 있는 모든 아크가 최소 하나의 주기(cycle)안에 포함되는 경우를 뜻한다. 주기란 어느 한 노드에서 출발하여 다시 자신의 노드로 돌아오는 길을 말하는데, 주기의 길이는 주기를 포함하는 아크의 개수로 표현된다. 두 번째는 Reducible이다. 이것은 Irreducible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네트워크 상의 각 구성요소가 Strongly Connected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Primitive인 경우이다. 이것은 행렬의 주기가 1이고, 행렬을 무한대로 곱하였을 때 행렬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되는 경우를 말한다. 네 번째는 Imprimitive인 경우이다. 이것은 행렬의 주기가 2 이상이고, 행렬을 무한대로 곱하였을 때 행렬이 여러 개의 값으로 수렴될 경우를 의미한다.

(2) ANP 기법의 특징과 수행절차

ANP는 AHP 기법을 일반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요소들이 네트워크(network) 구조를 형성하므로 단순히 계층(hierarchy)구조를 갖는 AHP 기법에 비하여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해를 구하는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대다수가 구성 요소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ANP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AHP의 계층구조에서 한 계층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위계층이나 하위계층의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 받거나 동일한 계층을 구성하는 요소 간에도 영향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AHP 기법은 구성요소 간에 독립성이 존재하고 피드백이 없는 단방향 흐름을 가정한 반면, ANP 기법은 이들간의 내부종속성(inner-dependence), 외부종속성(outer-dependence), 계층 간 피드백(feedback)까지 고려하는 차이가 있다. AHP는 피드백이나 내부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각 계층별로 쌍대비교하여 가중치를 구한 후 결과를 곱해서 결과를 쉽게 도출할 수 있지만, 모든 현실적인 의사 결정 문제를 계층구조로 모형화함과 동시에 계층별 구성요소 간에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HP 가정에 충실하도록 세심한 설문을 작성하여 평가해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 간 애매한 상충관계를 고려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리하게 계층구조를 고집하여 분석하면 의사결정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 반면에 ANP에서는 네트워크 형태로 문제를 구성하고 대행렬(Supermatrix)을 활용해서 관계를 설정, 분석하므로 외부종속성 뿐만 아니라 내부종속성, 피드백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9-3>은 Saaty (1996)가 제안한 ANP의 수행절차이다.



<그림 9-3> ANP의 수행절차

(3) 가중치 계산 방법

대행렬의 수렴여부와 수렴값은 <그림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P수행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된다. 특히 대행렬의 수렴값을 구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절차이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문헌(Saaty, 1996)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대행렬의 수렴값을 구하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한 간략한 계산방법을 첨부한다.

첫 번째는 ‘Irreducibility’를 만족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대행렬이 Irreducible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모든 구성요소들을 네트워크 구조로 표현하였을 때 비음인 대행렬이 Strongly Connected된 상태이어야 한다. 즉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하는 방향성이 있는 모든 아크가 최소 하나의 주기에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의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W 가 비음이고 Irreducible한 행렬이면 이 행렬의 고유치(principle eigenvalue)는 이 행렬의 특성방정식(characteristic equation)의 단근(simple root)이어야 하며, W^T 의 고유치와 같아야 한다. 셋째, W 가 비음의 Irreducible한 행렬이면 고유치의 고유벡터(eigenvector) w 는 어떤 양 벡터의 스칼라 곱이고, 그 요소들의 합은 $1(\sum_{i=1}^n w_i = 1)$ 이다.

대행렬이 수렴하기 위한 두 번째 경우는 ‘Primitivity’인 경우이다. 우선 네트워크 구조가 Primitive하다면 Irreducible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구조가 Irreducible하다고 항상 Primitive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조의 Irreducible을 조사한 후 Primitive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비음인 W 가 Primitive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어떤 양의 정수 m 에서 $W^m > 0$ 이고, n 이 행렬 W 의 차원이라고 하면 $m < n^2 - 2n + 2$ 를 만족하는 것이다. Irreducible한 행렬의 $trace > 0$ 이거나 주대각(main diagonal)요소가 0이 아니면 Primitive하다.

세 번째 경우는 ‘Reducibility’인 경우이다. 대행렬이 Reducible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대행렬의 수반행렬(adjoint matrix)에 있는 주대각요소 중에서 하나의 요소가 0이어야 한다.

네 번째 경우는 ‘Imprimitivity’인 경우이다. 주기가 c 인 대행렬이 Imprimitivity하면 c 개 고유치의 절대값은 최대 고유치(λ_{\max})의 값과 같다.

<표 9-11> Irreducible Stochastic인 경우 대행렬의 수렴

Irreducible Stochastic ($\lambda=1$ is a simple root)		
$W^\infty =$		
분류	$c=1$ 인 경우 (Primitive)	$c\geq 2$ 인 경우 (Imprimitive)
Case	Case A	Case A'
$\lambda=1$ simple	$Trace(W) > 0$ 이면 Primitive이다. W 를 무한대로 곱한다($\lim_{k \rightarrow \infty} W^k = w > 0$). 모든 열의 값이 같으므로 W 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해는 하나의 열이 된다.	$\frac{1}{c}(I + W + \dots + W^{c-1})(W^c)^\infty$ $c \geq 2$

<표 9-12> Reducible Stochastic인 경우 대행렬의 수렴

Reducible Stochastic		
$W^\infty =$		
분류	$c=1$ 인 경우	$c\geq 2$ 인 경우
Case	Case B	Case B'
$\lambda=1$ simple	$\frac{(I-W)^{-1} \Delta(1)}{\Delta'(1)} = \frac{Adjoint(I-W)}{\Delta'(1)}$	$\frac{1}{c}(I + W + \dots + W^{c-1})(W^c)^\infty$ $c \geq 2$
Case	Case C	Case C'
$\lambda=1$ multiple	$n_1 \sum_{k=0}^{n_1} (-1)^k \frac{n_1!}{(n_1-k)!} \frac{\Delta^{(n_1-k)}(\lambda)}{\Delta^{(n_1)}(\lambda)} (\lambda I - W)^{k-1}$	$\frac{1}{c} \sum_{i=1}^{c-1} (I + W + \dots + W^{c-1})(W^c)^\infty$ $c \geq 2$

(단, $\Delta'(1)$ 은 $\Delta(1)$ 의 미분값, $\Delta(1)$ 은 $(\lambda I - W)$ 의 determinant, n_1 은 중복해의 개수, k 는 W 의 제곱수를 나타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NP는 구성 요소 간에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층화 구조를 갖는 AHP 기법에 비하여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해를 구하는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 대다수가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ANP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AHP보다 더 만족한 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9-13>은 폐업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ANP로 분석한 결과다. 이 표에서 세 번째 열이 수렴된 Limiting Probability이며 이를 각

기준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13> 폐업의 고려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

구분		가중치
클러스터	노드	Limiting Probability
FTA	FTA로 인한 생산 감소	0.209
수익성	수익성 확보	0.253
조업여건	연안국규제	0.074
	입어료	0.044
	쿼터 확보	0.118
	타어선과 경쟁	0.032
폐업의지	폐업선호도	0.269

다. 단계 4.3 - 폐업대상 업종 선정 기준에 대한 각 업종의 민감도 분석

이 단계에서는 폐업 시 고려해야 할 7개 기준에 대해 각 업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지 정량화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량적 절차를 수행하였고, 계량적 분석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 8-2>양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즉, 업종별 한미FTA피해 규모는 <표 9-7>에서 산정된 값을 사용하였으며, 경영수익성은 제7장의 자료를, 폐업희망지수는 제8장의 <표 8-4>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업종별 수익성 지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부연하면, 수익률이 낮은 업종을 폐업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톤당 수익에 역수를 취한 후, (1~5)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설문이 회수되지 않은 기지트를 (뉴질랜드)와 새우트롤의 경우는 최저값인 1.0을 임의로 부여하였다. <표 9-14>는 업종별 수익성 지수의 산정 결과이다.

<표 9-14> 업종별 경영 수익성

업종구분		경영 수익성지수
북양트롤		2.68
북양트롤 (합작)		1.49
해외 기지트롤	대서양	3.12
	포클랜드	1.81
	인도양	3.70
	인도네시아	1.11
	뉴질랜드	1.00*
새우트롤		1.00*
참치연승		5.00
참치선망		1.00
오징어채낙기		1.94
대구저연승		1.43
꽁치봉수망		2.21
대서양 외줄낙시		1.56

* 설문자료를 획득하지 못한 관계로 임의로 최저값을 부여함

<표 9-15>는 43개 업체에서 회신한 설문응답을 토대로 폐업의 고려요소별로 업종별 영향도를 종합한 결과이다. 여기서, 업종별 연안국 규제, 쿼터확보어려움, 입어료 부담, 조업경쟁여건의 영향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것이다.

<표 9-15> 폐업 고려요소에 대한 업종별 영향도

폐업의 고려요소 업종	FTA 피해 ¹⁾	경영 수익성 ²⁾	연안국 규제	쿼터확보 어려움	입어료 부담	조업 경쟁여건	폐업 희망지수 ³⁾
북양트롤	2.40	2.68	2.60	5.00	4.73	1.80	4.43
북양트롤 (합작)	5.00	1.49	1.40	4.29	3.99	1.00	3.14
기지트롤 (대서양)	3.56	3.12	3.40	2.32	2.87	4.00	4.66
기지트롤 (포클랜드)	1.09	1.81	2.33	4.76	4.11	1.67	3.03
기지트롤 (인도양)	1.07	3.70	3.67	1.94	2.24	4.33	2.64
기지트롤 (인도네시아)	1.35	1.11	4.60	1.33	1.56	2.56	4.61
기지트롤 (뉴질랜드)	1.02	1.00 ⁴⁾	1.00 ⁴⁾	1.00 ⁴⁾	1.00 ⁴⁾	1.00 ⁴⁾	1.00 ⁴⁾
새우트롤	1.00	1.00 ⁴⁾	1.00 ⁴⁾	1.00 ⁴⁾	1.00 ⁴⁾	1.00 ⁴⁾	1.00 ⁴⁾
참치연승	1.00	5.00	1.00	1.00	1.00	4.33	2.32
참치선망	1.00	1.00	3.00	2.18	1.93	5.00	1.00
오징어채낚기	1.04	1.94	2.14	2.68	5.00	4.71	3.59
대구저연승	1.59	1.43	5.00	4.29	4.73	1.00	2.17
꽁치붕수망	1.17	2.21	3.80	4.72	3.99	4.40	4.09
대서양 외출납시	1.38	1.56	2.10	1.67	3.32	3.00	5.00

주) ¹⁾:<표 9-7>인용, ²⁾:<표 9-14>인용, ³⁾:<표 8-4>인용, ⁴⁾:설문자료를 획득하지 못한 관계로 해당 요소의 최저값을 부여함.

라. 단계 4.4 - 업종별 폐업우선 순위 결정

업종별 폐업우선지수는 <표 9-13>에 있는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와 각 요소별로 업종별 영향도값을 종합해서 구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한미FTA 직접피해만 고려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업의 1순위 그룹으로 기지트롤(대서양)과 북양트롤, 그리고 기지트롤(인도양)을 꼽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미FTA 직접 피해만 고려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표 9-16> 폐업 고려요소에 대한 업종별 영향도

	폐업 지원대상 여부	폐업 고려 요인							감척 우선지수 (총합) (중 ₃)	우선 순위 위그 룹
		FTA 피해	경영 수익성	연안국 규제	쿼터 확보 어려움	입어료 부담	조업 경쟁 여건	업계의 희망 지수		
가중치		0.209	0.253	0.074	0.118	0.044	0.032	0.269		
북양트롤	지원 ¹⁾	2.40	2.68	2.60	5.00	4.73	1.80	4.43	3.42	1
북양트롤 (합작)		5.00	1.49	1.40	4.29	3.99	1.00	3.14	3.09	
기지트롤 (대서양)	지원 ¹⁾	3.56	3.12	3.40	2.32	2.87	4.00	4.66	3.57	1
기지트롤 (포클랜드)		1.09	1.81	2.33	4.76	4.11	1.67	3.03	2.47	
기지트롤 (인도양)	지원 ¹⁾	1.07	3.70	3.67	1.94	2.24	4.33	2.64	2.61	1
기지트롤 (인니)		1.35	1.11	4.60	1.33	1.56	2.56	4.61	2.45	
기지트롤 (뉴질랜드)		1.0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새우트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참치연승		1.00	5.00	1.00	1.00	1.00	4.33	2.32	2.47	
참치선망		1.00	1.00	3.00	2.18	1.93	5.00	1.00	1.46	
오징어 채낚기		1.04	1.94	2.14	2.68	5.00	4.71	3.59	2.53	
대구 저연승		1.59	1.43	5.00	4.29	4.73	1.00	2.17	2.40	
꽂치 봉수망		1.17	2.21	3.80	4.72	3.99	4.40	4.09	3.06	
대서양 외줄낚시	지원 ²⁾	1.38	1.56	2.10	1.67	3.32	3.00	5.00	2.63	2

1): MRR 3%, 5%일 경우 모두 지원 대상, 2): MRR 5%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
 3): 감척우선지수(총합)는 (고려 요인별 가중치×각 고려요인별 점수)의 가중합계

<표 9-17> 업종별 폐업우선순위 (한미FTA피해& 정성적요인 동시고려)

구분	MRR 3% 적용 시	MRR 5% 적용 시
1순위	기지트롤 (대서양), 북양트롤 기지트롤 (인도양)	기지트롤 (대서양), 북양트롤 기지트롤 (인도양)
2순위	-	대서양 외줄낚시

3. 폐업지원 대상 업종 선정

앞서 한미FTA영향만을 고려한 경우와 기타 정성적 요인까지 동시에 고려한 경우 각각에 대해 폐업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폐업 우선업종에 대해 실제 폐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먼저 <표 9-7>을 보면 기지트롤(대서양)과 북양트롤은 한미FTA로 인한 피해규모가 연간 52-85억원과 29-46억원 수준으로 폐업대상이 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척 우선순위가 2순위에 있는 기지트롤 (인도양)의 경우는 한미FTA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약 1-2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지 결정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지트롤 (인도양)은 기지트롤 (대서양)과 조업여건이 매우 유사해서 대서양트롤과 마찬가지로 폐업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지트롤(인도양) 역시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폐업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결국 한미FTA직접 피해만 고려한 경우와 여타 정성적 요인까지 동시에 고려한 경우에 차이는 없었으며, MRR로 3%를 적용할지 또는 5%를 적용할 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9-18> 폐업지원 대상 업종 선정결과 (한미FTA피해& 정성적요인 동시 고려 시)

구분	MRR 3% 적용 시	MRR 5% 적용 시
1순위	기지트롤 (대서양), 북양트롤	기지트롤 (대서양), 북양트롤
2순위	기지트롤 (인도양)	기지트롤 (인도양), 대서양 외줄낙시

제6절 수역별, 업종별, 연도별 폐업 물량

1. 업종별 현황 파악

가. 업종별 어선세력

원양어업 업체수 및 어선척수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 505척, 2003년 482척, 2005년 428척, 2006년 410척, 2007년도는 402척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01년도에 비하여 약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9> 원양어업 업종별 현황

(단위 : 척)

연도 업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북양트롤	30	23	11	8	7	7	5
북양트롤 (합작)			19	19	19	18	16
기지트롤 (대서양)	59	57	59	55	54	52	53
기지트롤 (포클랜드)	11	8	11	11	11	15	14
기지트롤 (인도양)	19	20	20	19	12	8	10
기지트롤 (인도네시아)	46	45	39	39	31	28	27
기지트롤 (뉴질랜드)	12	12	12	12	12	12	12
새우트롤	2	1	1	1	1	1	-
참치연승	193	193	190	182	177	169	165
참치선망	27	26	27	28	28	28	28
오징어 채낚기	85	75	70	50	50	50	49
대구저연승	7	7	7	7	6	2	3
꽁치 봉수망 (오징어겸업)	2(21)	1(19)	1(19)	1(19)	1(19)	1(19)	1(19)
대서양외줄낚시	3	4	4	6	7	8	9
기타	11	10	12	14	13	12	10
합계	505	481	482	451	428	410	402

나. 업종별 선령 현황

어선 폐업 시 어선의 선령은 참고할 만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원양어선의 선령 현황을 2007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기지트롤 (인도

양), 대서양외줄납시, 기지트롤 (대서양), 북양트롤 업종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0> 원양어업 업종별 선령 현황 (합작선 제외)

(단위 : 척)

선령 업종	5년 이하	6- 10년	11- 15	16- 20	21- 25	26- 30	31년 이상	31년 이상 비율
북양트롤				1			4	80%
기지트롤 (대서양)		1	2	2	3		45	85%
기지트롤 (포클랜드)					2	6	6	43%
기지트롤 (인도양)							10	100%
기지트롤 (인도네시아)				2	6	8	11	41%
기지트롤 (뉴질랜드)					5	1	6	50%
새우트롤								
참치연승		2	1	90	54	15	3	2%
참치선망	1	1		4		18	4	14%
오징어 채낚기				11	6	8	24	49%
대구저연승				1			1	50%
꽁치 봉수망*							1	100%
대서양외줄납시				1			8	89%
기타			1		2	4	4	36%
계	1	4	4	112	78	60	127	33%

*: 꽁치봉수망 업종 중 오징어 겸업은 오징어 채낚기에 포함시켜 분류함

다. 원양어업 구조조정 추진 실적

원양어업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은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신 한·일어업 협정 체결에 따른 북해도 트롤, 꽁치 봉수망 및 오징어채낚기어선에 대해 추진되었으며, 농어촌 발전특별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다. 그 동안의 실적을 요약하면 '98~'04년까지 북해도트롤 6척, 꽁치봉수망 10척, 오징어채낚기 24척 등 40여척이 폐업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원양어업 중장기 폐업계획('04~'13)에 반영되어 있는 오징어채낚기어선 20척 폐업 추진 중에 있다. 지원조건은 폐업보상비는 척당 452 백만원('02~'03기간 중 평균지급액) 균등지급 하였고, '04년도는 사업자가 자체처분 한바 있다.

<표 9-21> 원양어업 업종별 연차별 폐업 추진실적
(단위 : 척, 백만원)

구 분		계	'98-'99년	'00-'01년	'02-'03년	'04년
계	척	40	6	7	8	19
	금액	34,421	7,717	8,211	9,905	8,588
북해도트롤	척	6	6			
	금액	7,717	7,717			
꽁치붕수망	척	10		7	3	
	금액	11,731		8,211	3,520	
오징어채낚기	척	24			5	19
	금액	14,973			6,385	8,588

2. 물량배분 시 고려할 제약 조건

폐업 물량 배분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각 업종별로 개별 어선의 수익률 수준과 정부의 재정지원계획, 특히 폐업 지원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9-23>은 한미 FTA관련 수산부문의 재정지원계획으로, 본 연구에서는 폐업지원 보조금을 활용하였을 경우의 폐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표 9-22> 한미FTA 수산 부문 재정지원 계획

(단위 : 억원)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계	492	733	813	947	906	790	645	645	645	646	7,262
보 조	425	646	716	840	797	720	645	645	645	646	6,725
용 자	67	87	97	107	109	70					537
1. 수산발전기금	199	208	224	257	263	155					1,306
< 신규사업 >	199	208	224	257	263	155					1,306
▪ 소득보전직불(보조)	51	30	25	20	20	85					231
▪ 폐업지원(보조)	80	90	100	130	134						534
▪ 품목별 경쟁력강화	68	88	99	107	109	70					541
- 관리회사제도입	50	40	40	40	32						202
- 원양어선설비현대화	10	30	40	50	60	50					240
- 활어운반선건조	-	10	10	10	10	20					60
-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7	7	7	7	7						35
- 활어 수출확대 관련 지원	1	1	2								4
2. 기존회계 · 기금	293	525	589	690	643	635	645	645	645	646	5,956
< 신규사업 >	52	227	306	374	302	282	284	284	284	285	2,680
< 기존사업 >	241	298	283	316	341	353	361	361	361	361	3,276

3. 연도별 폐업 물량배분 최적화

한정된 예산 제약 하에서 업종별 폐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현실여건을 모두 고려해서 폐업사업의 전체 만족도가 최대가 되도록 최적화 기법 중 하나인 혼합정수계획법을 활용해 보았다. 혼합정수계획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현실 여건에 해당하는 제약조건과 추구하는 목적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폐업 물량 배분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실험계획

폐업 물량 배분은 한미FTA만 고려해서 폐업우선순위를 정한 경우와 한미FTA와 정성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 각각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표 9-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미 FTA직접 피해만 고려한 경우나 한미FTA와 여타 정성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 간의 폐업대상 업종 선정결과의 차이가 없어서 두 경우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대신 입찰 기초가를 최근 3년간 수익의 70%와 100%로 설정한 두 가지 경우를 우선 고려해 보았다. 그리고 북양트롤에 대해서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을 계획할 지 아닐 지의 경우를 상정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 9-23>과 같은 물량 배분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었다.

<표 9-23> 폐업 물량 배분 시나리오 구분

3년 수익에 대한 고려비율 북양트롤의 어선·어구 잔존가에 대한 보상여부	70%	100%
보상하지 않음	Case <A-1>	Case <A-2>
보상함	Case <B-1>	Case <B-2>

나. 폐업물량 배분을 위한 수학적모형

(1) 제약조건

- 연도별 예산 배정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폐업의 시급성 지수가 높은 업종을 낮은 업종보다 먼저 폐업에 착수함
- 연도별 예산을 최대한 사용함

(2) 목적함수

- 폐업 어선의 전체 톤수의 총합을 최대화
- 폐업 어선의 전체 수를 최대화

다. 폐업물량 배분문제의 해법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폐업 물량을 배분하는 문제는 최적화 모형으로 수식화할 수 있으며, 대상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수식 형태 (formulation)를 가질 수 있다. 즉, 정수변수나 비선형식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선형 계획, 정수 계획, 혼합 정수 계획, 비선형 계획 모형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 모형의 해법 절차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폐업물량 배정 문제는 폐업여부를 결정하는 이산적 (discrete) 변수가 포함되는 혼합정수계획법으로 모형화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분지한계법 (Branch & Bound)가 기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분지한계법은 1960년 Land 와 Doig에 의해 제안되었고 Dakin등에 의해 발전된 방법으로 모든 가능해를 계산하는 열거식(Enumeration algorithm)의 일종이지만 해를 분지하면서 상한(upper bound)과 하한(lower bound)을 사용하여 해의 타당성을 빨리 판별하고 가능한 가능해를 적게 열거하는 부분 열거식(Partial enumeration method)에 해당된다. 분지한계법의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1 : 초기화

- (i) $z^0 = -\infty$ 으로 둔다. 단, 최대화 문제로 가정, z^t : t회에서의 하한
- (ii) 원 문제의 선형계획 완화문제(LP-relaxation)를 선형계획법으로 푼다. 비가능해(infeasible solution)이면 원 문제는 풀리지 않음(Infeasible)을 의미하므로 끝낸다. 그리고 정수해이면 도출된 해가 원래 문제의 최적해임을 의미하므로 끝낸다.

단계2 : 분지(branching)

- (i) 최적해에서 정수가 아닌 변수 x_j 를 선택한다.
- (ii) 원문제에 다음 제약식을 추가한 두 개의 새로운 문제를 문제목록 (master list)에 등록한다.

a. $x_j \leq \lfloor x_j \rfloor$

b. $x_j \geq \lceil x_j \rceil + 1$

단계3 : 탐색(search)

문제목록에서 문제 하나를 선택한다. 만일 비어 있으면 끝낸다.

이 때 z^t 를 최적값으로 가지는 문제의 해가 최적정수해이다.

단계4 : 한계(bounding)

- (i) 선택된 문제를 푼다. 만일 비가해이면 $z^{t+1} = z^t$ 로 두고 단계 3으로 간다.
- (ii) 해의 값이 z^t 보다 작거나 같으면 $z^{t+1} = z^t$ 라고 두고 단계 3으로 간다.

(iii) 해가 정수이고 z^* 보다 크면 이것을 기록해 두고 z^{*+1} 를 현 최적해 값으로 수정하고 단계 3으로 간다.

※(i), (ii)와 (iii)의 경우를 분지 끝 (fathomed)이라고 부른다.

(iv) 해가 정수가 아니고 해의 값이 z^* 보다 크면 단계 2로 간다.

최근의 경우 비약적인 컴퓨팅 능력의 향상에 따라 뛰어난 성능의 최적화 프로그램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해의 도출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감소하는 추세다. 따라서, 수학적 모형을 실제로 응용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수고를 하는 대신, 문제의 특성에 적합한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고, 이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분지한계법은 현재 다수의 상용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프로그램 중 ILOG CPLEX³⁾을 활용하였다.

라. 폐업물량 최적 배분 결과

폐업 물량은 입찰기초가 설정 시 3년 수익에 대한 인정 비율 외에도 당해 연도에 감척되는 어선의 선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표 9-20>에서 알 수 있듯이 기지트롤(대서양), 북양트롤, 그리고 기지트롤(인도양)에서 25년 이상의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3%, 85%, 100%에 달해 노후도가 큰 상태임을 고려할 때 평균 선령을 25년으로 설정해서 감척 소요예산의 최대치를 파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연도별 감척 물량을 보수적으로 적게 산정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 9-24>와 <표 9-25>는 입찰기초가를 3년 수익의 70%로 가정하고, 북양트롤의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의 폐업 예상 시나리오이다. 이 결과는 <표 9-18>에서 선정된 기지트롤(대서양)과 북양트롤, 그리고 기지트롤(인도양)을 폐업 대상 업종으로 했을 경우,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폐업 어선과 예산을 배분한 하나의 대안이다. 그 아래 <표 9-26>을 통해 주요 업종의 폐업 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상으로는 3개 업종 어선 전체의 폐업도 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7>과 <표 9-28>은 입찰기초가를 3년 수익의 100%로 가정하고, 북양트롤의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의 폐업 예상 시나리오이다. <표 9-29>을 통해 주요 업종의 폐업 비율을 살펴보면 이 경우에도 <Case A-1>과 마찬가지로 3개 업종의 어선 전체의 폐업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0>, <표 9-31>, <표 9-32>는 입찰기초가를 3년 수익의 70%로 가정하고, 북양트롤의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경우의 폐업 예상 시나리오이며, <표 9-33>, <표 9-34>, <표 9-35>는 입찰기초가를 3년 수익의 100%로 가정하고, 북양트롤의 어

3) ILOG (2003), ILOG CPLEX C++ API 9.0 Reference Manual

선·어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경우의 예상 시나리오이다. 한편, 폐업에 소요되는 연도별 예산은 평균톤수 급의 어선이 감척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당해 연도에 실제 몇 톤급의 어선이 입찰에서 낙찰되느냐에 따라 연도별 소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감척되는 어선의 선령에 따라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금액이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다. 다만 5개 연도에 대한 전체 예산은 아래 표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24> 폐업 시나리오-개괄 <A-1>

업종	평균톤수	톤당수익 (천원)	폐업어선수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지트롤(대서양)	313	64	16	18	19	-	-
북양트롤	3,114	85	1	1	2	1	-
기지트롤(인도양)	458	46	1	1	1	7	-
연도별 소계	폐업 어선수		18	20	22	8	-
	폐업지원금액 (백만원)		7,706	8,527	9,494	4,638	-
5개년도 총계	폐업 어선수		68				
	폐업지원금액 (백만원)		30,365				

<표 9-25> 폐업 시나리오-상세 <A-1>

업종	평균톤수	톤당수익	폐업지원-3년수익보상 (백만원)					폐업지원-어선·어구가 보상 (백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지트롤(대서양)	313	64	677	761	804	-	-	5,889	6,626	6,994	-	-
북양트롤	3,114	85	557	557	1,114	557	-	-	-	-	-	-
기지트롤(인도양)	458	46	44	44	44	311	-	539	539	539	3,770	-
연도별소계			1,278	1,363	1,962	868	-	6,428	7,164	7,532	3,770	-
5개년도합계(부문별)			5,471					24,895				

<표 9-26> 폐업 시나리오 <A-1>에 따른 폐업업종의 폐업 비율

업종	어선수	폐업계획	총어선수 대비 비율
기지트롤 (대서양)	53	53	100%
북양트롤	5	5	100%
기지트롤 (인도양)	10	10	100%

<표 9-27> 폐업 시나리오-개괄 <A-2>

업종	평균톤수	톤당수익 (천원)	폐업어선수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지트롤(대서양)	313	64	15	17	19	2	-
북양트롤	3,114	85	1	1	1	2	-
기지트롤(인도양)	458	46	1	1	1	7	-
연도별 소계	폐업 어선수		17	19	21	11	-
	폐업지원금액 (백만원)		7,825	8,683	9,540	6,662	-
5개년도 총계	폐업 어선수		68				
	폐업지원금액 (백만원)		32,710				

<표 9-28> 폐업 시나리오-상세 <A-2>

업종	평균톤수	톤당수익	폐업지원-3년수익보상 (백만원)					폐업지원-어선·어구가 보상 (백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지트롤(대서양)	313	64	907	1,027	1,148	121	-	5,521	6,257	6,994	736	-
북양트롤	3,114	85	796	796	796	1,591	-	-	-	-	-	-
기지트롤(인도양)	458	46	63	63	63	444	-	539	539	539	3,770	-
연도별소계			1,766	1,886	2,007	2,156	-	6,060	6,796	7,532	4,506	-
5개년도합계(부문별)			7,815					24,895				

<표 9-29> 폐업 시나리오 <A-2>에 따른 폐업업종의 폐업 비율

업종	어선수	폐업계획	총어선수 대비 비율
기지트롤 (대서양)	53	53	100%
북양트롤	5	5	100%
기지트롤 (인도양)	10	10	100%

<표 9-30> 폐업 시나리오-개괄 <B-1>

업종	평균톤수	톤당수익 (천원)	폐업어선수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지트롤(대서양)	313	64	7	9	12	19	6
북양트롤	3,114	85	1	1	1	1	1
기지트롤(인도양)	458	46	1	1	1	1	6
연도별 소계	폐업 어선수		9	11	14	21	13
	폐업지원금액 (백만원)		7,675	8,496	9,727	12,599	10,179
5개년도 총계	폐업 어선수		68				
	폐업지원금액 (백만원)		48,676				

<표 9-31> 폐업 시나리오-상세 <B-1>

업종	평균 톤수	톤당 수익	폐업지원-3년수익보상 (백만원)					폐업지원-어선·어구가 보상 (백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지트롤 (대서양)	313	64	296	381	508	804	254	2,577	3,313	4,417	6,994	2,209
북양트롤	3,114	85	557	557	557	557	557	3,662	3,662	3,662	3,662	3,662
기지트롤 (인도양)	458	46	44	44	44	44	266	539	539	539	539	3,232
연도별소계			897	982	1,109	1,405	1,077	6,777	7,513	8,618	11,194	9,102
5개년도합계(부문별)			5,471					43,205				

<표 9-32> 폐업 시나리오 <B-1>에 따른 폐업업종의 폐업 비율

업종	어선수	폐업계획	총어선수 대비 비율
기지트롤 (대서양)	53	53	100%
북양트롤	5	5	100%
기지트롤 (인도양)	10	10	100%

<표 9-33> 폐업 시나리오-개괄 <B-2>

업종	평균톤수	톤당수익 (천원)	폐업어선수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지트롤(대서양)	313	64	6	8	11	17	11
북양트롤	3,114	85	1	1	1	1	1
기지트롤(인도양)	458	46	1	1	1	1	6
연도별 소계	폐업 어선수		8	10	13	19	18
	폐업지원금액 (백만원)		7,631	8,488	9,773	12,345	12,783
5개년도 총계	폐업 어선수		68				
	폐업지원금액 (백만원)		51,020				

<표 9-34> 폐업 시나리오-상세 <B-2>

업종	평균 톤수	톤당 수익	폐업지원-3년수익보상 (백만원)					폐업지원-어선·어구가 보상 (백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지트롤 (대서양)	313	64	363	483	665	1,027	665	2,209	2,945	4,049	6,257	4,049
북양트롤	3,114	85	796	796	796	796	796	3,662	3,662	3,662	3,662	3,662
기지트롤 (인도양)	458	46	63	63	63	63	380	539	539	539	539	3,232
연도별소계			1,222	1,343	1,524	1,886	1,841	6,409	7,145	8,250	10,458	10,943
5개년도합계(부문별)			7,815					43,205				

<표 9-35> 폐업 시나리오 <B-2>에 따른 폐업업종의 폐업 비율

업종	어선수	폐업계획	총어선수 대비 비율
기지트롤 (대서양)	53	53	100%
북양트롤	5	5	100%
기지트롤 (인도양)	10	10	100%

마. MRR 5% 적용 시 추가 소요예산

앞서 <표 9-18>의 결과를 보면 MRR로 5%를 적용할 경우 대서양외줄납시가 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서양 외줄납시에 대한 폐업지원 시 소요예산을 추가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서양 외줄납시 업종에서는 총 9척이 조업 중으로 평균 톤수가 404톤, 최근 3년간의 톤당 이익이 297천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현황 자료를 토대로 3년간 수익의 70%와 100%를 가정하고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까지 고려할 경우의 폐업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즉, 대서양 외줄납시 업종의 전체를 감척한다고 가정해 보면, 3년 수익의 70%를 고려할 때 6,547백만원, 3년 수익의 100%를 고려할 경우는 최대 7,52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9-36> MRR 5% 고려 시 추가 소요예산 (3년 수익의 70% 고려)

대서양 외줄납시의 감척 대안		소요예산 (백만원) (평균톤수: 404톤, 톤당이익: 297천원 적용)		
감척 어선수	전체 어선수 대비 비율	3년 수익에 대한 보상액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액	합계
3	33%	757	1,425	2,507
4	44%	1,009	1,900	2,910
5	56%	1,262	2,376	3,637
6	67%	1,514	2,851	4,365
7	78%	1,767	3,326	5,092
8	89%	2,019	3,801	5,820
9	100%	2,271	4,276	6,547

<표 9-37> MRR 5% 고려 시 추가 소요예산 (3년 수익의 100% 고려)

대서양 외줄납시의 감척 대안		소요예산 (백만원) (평균톤수: 404톤, 톤당이익: 297천원 적용)		
감척 어선수	전체 어선수 대비 비율	3년 수익에 대한 보상액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액	합계
3	33%	1,082	1,425	2,507
4	44%	1,442	1,900	3,343
5	56%	1,803	2,376	4,178
6	67%	2,163	2,851	5,014
7	78%	2,524	3,326	5,849
8	89%	2,884	3,801	6,685
9	100%	3,245	4,276	7,521

제 10 장 폐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금산정

제1절 입찰제 도입방안 연구

1. 입찰제도의 장단점분석

입찰은 경쟁매매의 한 방법으로, 매수자가 한 사람일 때 2명 이상의 매도자가 각자의 최저 매도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하거나, 매도자가 1명일 때 2명 이상의 매수자가 각자의 최고구입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최저 판매가격을 제시한 자가 매도자로 결정되고, 후자의 경우는 그 가운데에서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가 매수자로 결정된다. 이 때 매수자로 결정된 자를 낙찰자라고 한다. 사전에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지정입찰)와 공모하는 경우(공고입찰)가 있다. 또 낙찰 결정기준으로서 가격에 대하여 미리 최고 또는 최저금액을 지정해 두는 경우와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입찰매매는 다수인이 서면에 의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표시하므로 상대매매(매도자와 매수자의 두 사람 교섭에 의한 매매)에 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찰 절차는 공고, 예정가격(지정가)의 결정,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개찰 등으로 되어 있다.

어선감척사업에서의 입찰제도는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해수부, 200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5년부터 연안어선감척사업에서 입찰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근해어업어선 감척사업도 입찰제를 통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원양어업폐업지원사업에서도 기존 평가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또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에서 시행중인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양어업폐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입찰제를 도입 할 경우 다음의 장단점이 예상되며, 이는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제 도입시 나타나는 장단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10-1> 입찰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가 자신의 수령액을 예측하고 대상자 선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어업자 자신이 지원액을 확정함으로써 감척사업에 대한 불평을 해소할 수 있음 ● 경쟁에 의한 지원액결정으로 예산절감이 기대되며, 따라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척사업에 다수를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소외자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어로 활동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어업자가 퇴출되기 쉬운 제도이며, 따라서 어선감척사업이 합리적으로 수행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평가에 의한 감척어업인 들과의 형평성문제 발생 가능 ● 사업시행초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 야기 우려 ● 응찰자들의 담합행위 우려 ● 기존의 평가방식보다 지원금이 적을 경우 사업 참가자 없어 사업실패 가능성이 있음

지금까지 원양어선감척사업은 평가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현재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서 시행중인 입찰제를 원양어업폐업지원금사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찰제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에 의한 지원금지급방식 대신 입찰제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업폐업지원사업 추진시 다음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 첫째, 입찰기초가격 산정시 기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위해 어업인들에게 지급되었던 폐업지원금수준 및 이전 원양어선감척사업에서의 지원금 수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 둘째, 사업시행초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일부 어업인들이 입찰제도 보다는 기존 평가에 의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제의 장점을 어업인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입찰제 도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 셋째, 특히 원양어선은 대상척수가 적어 어업인들간의 담합이 연근해어선에 비해 쉬울 수 있으며, 따라서 응찰자들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어업인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여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입찰절차 및 방법

연안어업어선 감척사업에서는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해수부, 2005)”

의 연구를 토대로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기존의 평가제에서 입찰제를 도입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해수부, 2007)”을 토대로 2008년부터 근해어업에 대해서도 입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0-1>은 연안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절차를 나타낸다.

입찰절차	내 용
입찰안내/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에 입찰안내문 발송 ○ 기초가격, 예산,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입찰일시·장소, 입찰방법,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참가신청서류 접수 ○ 입찰참가자격 유무 확인 후 유자격자에게는 입찰절차 안내
↓	
예정가격 작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기초가격의 ±2%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밀봉 보관
↓	
입찰 및 낙찰 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장에 직접방문하여 입찰서를 제출 ○ 예비 사업대상자(낙찰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결정 ○ 유찰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도 예비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
↓	
입찰결과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후 예정가격은 즉시 공개 ○ 사업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향후 일정 및 포기시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

<그림 10-1> 연안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절차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입찰관련 안내(기초가격, 예산,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입찰일시·장소, 입찰방법,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를 받고 입찰전에 미리 입찰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받는다. 입찰에 앞서 사업집행주체(시·도지사)는 기초가격의 ±2%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밀봉 보관하도록 하고, 입찰참가신청자는 지정일(연안어업은 지정된 특정일에 입찰하는 기일입찰제 임)에 지정된 입찰장소에 직접방문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결정방법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도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 후 미리 작성한 예정가격은 즉시 공개하며, 입찰결과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향후 일정 및 포기시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를 대상으로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지원금지급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

현행 연안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절차는 일반적 입찰절차(입찰공고->입찰->낙찰자결정)를 따르고 있으며, 입찰유형(기일/기간입찰, 직접/우편/전자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최저가/최고가 입찰) 등은 연안어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입찰절차	내 용
↓	
입찰안내/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에 입찰안내문 발송 ○ 기초가격, 예산,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입찰일시·장소, 입찰방법,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참가신청서류 접수 ○ 입찰참가자격 유무 확인 후 유자격자에게는 입찰절차 안내
↓	
예정가격 작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기초가격의 ±2%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밀봉 보관
↓	
입찰 및 낙찰 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장에 직접방문하여 입찰서를 제출 ○ 예비 사업대상자(낙찰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결정 ○ 유찰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도 예비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
↓	
입찰결과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후 예정가격은 즉시 공개 ○ 사업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향후 일정 및 포기시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

<그림 10-2> 연안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절차

현행 연근해어업어선 감척사업의 입찰절차 및 입찰방법을 기초로 하고, 원양어업어선의 특성 및 연구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원양어업감척사업을 위한 입찰절차 및 방법은 다음 <그림 10-2>와 같다.

입찰절차	내 용
입찰안내/ 공고	○ 입찰기초가격, 예산,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입찰서 제출기간·장소, 입찰방법,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참가신청서류 접수 ○ 입찰참가자격 유무 확인 후 유자격자에게는 입찰절차 안내
입찰서 접수	○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예정가격 작성	○ 기초가격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밀봉 보관
개찰	○ 입찰서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
사업대상자 선정	○ 입찰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결정 ○ 사업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업종은 재공고 입찰
입찰결과 안내	○ 입찰신청자 모두에게 입찰결과를 안내

〈그림 10-3〉 원양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절차

〈표 10-2〉 원양어업감척사업의 입찰관련 내용

<p>가. 입찰안내</p> <p>(1) 사업집행주체는 입찰공고 이전에 “세부사업집행계획”,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등 어업인들이 사업참가요령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대상 허가 어업자, 관련행정기관, 원양어업협회 및 각 업종별 위원장사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p> <p>(2) 사업집행주체는 원양어업인 대상 사업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p> <p>나. 입찰공고</p> <p>(1) 입찰은 입찰공고문에 의하되 사업집행주체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원양산업협회 및 각 업종별 위원장사 등에 문서로 발송하여 사업대상 어업인들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입찰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p>(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p> <p>(나) 입찰방법</p> <p>(다) 입찰등록 접수일시 및 장소</p> <p>(라) 개찰일시 및 장소</p> <p>(마) 계약체결방법</p> <p>(바) 입찰참가자격</p> <p>(사) 입찰참가신청서류</p> <p>(아) 폐업지원금의 업종·해역별, 톤급별 기초가격</p> <p>(자) 어선·어구처리방안</p>

- (차) 감척 소요 예산
- (카)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3) 입찰공고문은 표준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 신청

- (1) 입찰참가는 입찰참가신청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통합하여 입찰대상 업종별로 입찰대상척수의 1.1배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등록하여야 입찰이 성립된다.
 - (가) 입찰대상척수와 등록인원의 비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한다.
 - (나) 업종별로 통합하여 1.1배 이상의 유효한 입찰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업종별로 입찰을 재공고한다.
- (2) 입찰참가신청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단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생략)
 - (라) 선박증서 사본 1부
 - (마) 어선원부 1부
 - (바) 어업허가폐지동의서 1부
 - (사) 신체사진(전·후·좌·우 각 1장)
 - (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라. 입찰등록

- (가) 사업집행주체는 본 사업의 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등록서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 (나) 입찰등록은 등록마감일 일과시간이내(18시)로 하며, 입찰신청시 제출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예정가격 작성 비치

- (1) 농림수산식품부는 업종·해역별, 톤급단위별 기초가격의 $\pm 2\%$ 범위 내에서 단일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5개를 선정하여 산정된 평균가를 최종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2)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은 밀봉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입찰집행

- (1) 입찰서의 제출은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입찰참가자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사업집행주체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서를 개찰한다.
- (3) 사업집행주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 결과를 토대로 낙찰자(사업대상자)를 결정한다.
- (4) 입찰서 개봉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사. 낙찰자(사업대상자)결정방법

- (1) 각 업종·해역별로 예정가격과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과의 비율(이하 '낙찰율'이라 한다)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해당업종 입찰대상척수의 100%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사업대상자(1차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산정한다.

- (2) 1차 낙찰자가 아닌 모든 입찰자를 통합하여 낙찰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전체 감척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2차 낙찰자)로 결정한다.
- (3) 1차낙찰자와 2차낙찰자를 모두 사업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예비후보자”로 관리 한다.
- (4) 입찰결과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다.
- (5)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업종별로 재공고입찰 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에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에 의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아. 입찰보증금 및 사업 포기자 제재사항

- (1) 낙찰자 입찰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및 기타 입찰보증금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
- (2)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정부에 귀속하고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자. 입찰결과 안내

- (1) 사업집행주체는 입찰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원양어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2) 사업집행주체가 입찰결과를 통보할 때 사업의 집행절차,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차. 기타

- (1)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의 “입찰유의서”에 의한다.

3. 입찰방식 비교검토

입찰은 신청방식에 따라 직접입찰, 우편입찰, 전자입찰로 그리고 입찰기간에 따라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등으로 구분된다.

기간입찰제는 지정된 기일에 입찰하는 기일입찰제와는 달리 보통 1주일이상 1개월 이하의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하게 하고 입찰기간 종료 후 1주일 내에 기일을 정하여 개찰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 방식이다. 기간 내 입찰하는 만큼 우편입찰(등기우편에 한함)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이 아니라 입금증이나 보증보험의 보험증서로 대체할 수가 있다. 특히, 우편입찰을 이용할 경우 입찰자들이 거리나 교통편에 구애됨이 없이 입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최근까지 모든 입찰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입찰신청을 하였으나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현재 조달청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연근해어업어선감척을 위한 입찰은 직접방문입찰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어업인 들에게 입찰서 작성 및 입찰에 관련된 많은 내

용을 담당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어 기록 오기로 인한 입찰무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표 10-3> 입찰신청접수에 따른 입찰구분

입찰구분	방법	장점	단점	선정
방문입찰	입찰인 이 직접 방문 입찰 하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함으로 신청접수가 확실 입찰관련 질의 답변이 신속 입찰서 작성 오류 최소화 현행 연안어업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어업인들에게 친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참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 초래 	○
우편입찰	우편을 통찰 하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참가자의 시간과 경비 절감 입찰 장소의 거리에 대한 제약이 없음 담합 또는 부정부패의 요인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의 분실 우려가 있음 필요한 질의에 대한 내용전달이 곤란 입찰서 작성 오류로 입찰무효화 비율이 높을 수 있음 	
전자입찰	인터넷을 입찰 하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참가자의 시간과 경비 절감 입찰 장소의 거리에 대한 제약이 없음 담합 또는 부정부패의 요인 최소화 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어업인들에게 불편 입찰을 위한 Web Site 구축이 요구 	

현재 연안어업의 감척사업에서 직접방문에 의한 기일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원양어선감척사업은 입찰참여 대상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양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제도 직접 방문을 통한 기일입찰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담합방지 방안 및 낙찰자 계약포기에 대한 대책방안

가. 담합방지 방안

담합이란 경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간의 행동을(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의 입찰시 가격담합은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정부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 사용되어 정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담합은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유인구조를 잘 살펴보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해야 한다. 즉, 담합을 강화시키는 요소들은 제거하고 반대로 약화시키는 요소들은 적절히 이용해야 효과적인 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

어선감척사업 입찰제 도입과 관련된 응찰자들의 담합유형은 입찰자들이 미리 모여 최저입찰가격 합의 또는 입찰여부를 공모하는 방식 등의 행태가 예상된다. 따라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합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시행 전에 담합시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담합방지용 각서를 입찰시 제출토록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각 서

입찰공고번호 :

입찰건명 :

본인은 상기입찰에 있어 일체의 담합입찰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담합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09 . . .

각 서 인 :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 하

<그림 10-4> 담합방지용 각서(예시)

나. 낙찰자 계약포기에 대한 대책방안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시 계약의 체결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납부하는 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현재 연근해어업어선감척사업의 입찰제에서는 입찰보증금납부 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원양어업에서는 어업감척사업에서 낙찰자의 계약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양어선감척사업은 입찰참가자들에 대한 입찰보증금제도입과 더불어 낙찰자의 계약포기방지를 위해 현행 연근해어업에서 시행중인 향후 일정기간동안 감척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도입하여 해당 사업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현재 연안어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근해어업에서는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양어업은 입찰보증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낙찰자의 최종 사업포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연안어업의 기준인 향후 5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2절 입찰 기초가격 산정

1. 기존 원양어선감척사업 지원조건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양어선감척사업에서 어업수익에 대한 정부의 지원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입찰기초금액 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기존 원양어업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지원조건(폐업지원금)은 어업수익 100%에 대한 분담비율은 국고보조 50%, 용자 30%, 자담 20% 이었다. 용자조건은 연 5.0% 이자율의 만기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년 동안 이자만 부담하고 5년 후 10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가정).

1) 용자부분에 대한 어업인들 수익 고려

한국개발원(KDI)에서 공공투자분석의 경제성평가 기준인 사회적 실질할인을 6.5%를 적용하여 그 차익부분만큼 어업인들에게 주어진 수익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자율 차이 1.5%에 대한 어업인들의 수익 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식 (1)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의 경우 15년 후의 이자수익률 산출 식을 나타낸다.

$$\sum_{n=1}^{15} A_0(1+r)^n - \left(\sum_{n=1}^9 \frac{A_0}{10}(1+r)^n + \sum_{n=1}^8 \frac{A_0}{10}(1+r)^n + \dots + \sum_{n=1}^2 \frac{A_0}{10}(1+r)^n + \frac{A_0}{10}(1+r)^n + 1 \right) \quad (1)$$

여기서 A_0 = 초기년도 수익(수익평가액의 30%), r = 이자율 (본 연구에서는 이자율 차이)을 나타낸다.

다음 식 (2) 는 15년 후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식이다.

$$P_0 = \frac{P_n}{(1+r)^n} \quad (2)$$

여기서 P_0 = 현재수익, P_n = n 년 후의 수익, r = 할인율(KDI 기준 6.5%를 적용), n =년도(15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년도 수익평가지금액의 용자분(수익평가액의 30%)을 100%로 가정하여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따른 이자수익률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수익평가지금액 용자분의 7.0%를 기준년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이는 수익

평가액의 2.1%에 해당함).

2) 입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율을 고려

2006년 연안어업어선감척사업의 경우 입찰예정가격 대비 평균 낙찰율은 74%로 나타났다.

<표 10-4> 06년 연안어업감척사업의 입찰예정가대비 낙찰율

업종	복합	선망	자망	통발	평균
입찰기초가격(천원)	18,380~ 40,000	11,323~ 40,000	17,735~ 40,000	18,380~ 40,000	-
평균낙찰가(천원)	19,346	29,755	21,243	23,260	23,401
평균낙찰율(%)	68.2	74.4	76.3	78.7	74.0

평균 낙찰율을 고려할 때 기존의 평균 수익액의 50% 현금, 30% 용자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입찰예정금액은 어업인 평균 수익금의 70.4%이어야 한다(식 (3) 참조).

$$x = \frac{(s_1 + s_2)}{r} \quad (3)$$

여기서, x =수익대비 예정가격비율 r =낙찰율 s_1 =지원조건수혜(수익의 50%) s_2 =용자지원조건수혜(수익의 2.1%)를 나타낸다.

2. 입찰기초금액 산정대안

<표 10-5>는 연근해어선의 감척사업에서 지원하는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방식 및 지급규모를 나타낸다. 지금 현재 연안어업은 입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수익조사금액을 기초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입찰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근해어선감척사업은 2007, 2008년에 수익금액의 50%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정액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0-5>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지원규모 및 방법

구분	지원금액	비고
연안어업	2005년 입찰제도입시 업종별 수익의 70%를 입찰기초금액으로 산정하고 최대 4,000만원으로 한정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근해어업	2007, 2008년 기준 업종별 수익의 50%를 정액으로 지원	향후 입찰제 도입이 요구됨

원양어업의 업종·해역별 기초금액은 앞에서 업종·해역별, 어선규모별 평년수익액을 토대로 결정하되 그 대안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실제 어떤 가격수준을 기초 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찰에 참여시킬 어업인의 범위와 기존 원양어선감척사업에서의 지원조건,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서의 지원규모, 정부의 어선감척사업예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양어선감척사업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입찰제 도입에 따른 입찰예정가격은 업종·해역별·톤급별로 조사된 평년수익액 3년분(“폐업지원금”)의 70%, 80%, 90%, 100% 각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참고로, 현재 연안어선에 대한 입찰 기초금액은 수익의 70%수준이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찰예정가격대비 낙찰율 및 기존 원양어선감척지원조건(국고보조 50%, 용자 30%, 자담 20%)등을 고려할 때 원양어선감척사업의 입찰기초금액도 평균수익의 최소 70%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어선·어구 잔존가격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금번 입찰의 경우에는 어장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 기초가격에 어선·어구 잔존가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입찰예정가격산정

현재 일반적인 입찰(공사 및 용역)의 경우 입찰시 공개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금액의 ±2% 또는 ±3%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15개(기초금액보다 높은 7개 금액 및 기초금액보다 낮은 8개의 금액)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하고, 15개의 복수예정가격 중에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연안어업입찰의 경우 ±2%범위 내에서 단일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원양어선감척을 위한 입찰시 연안어업어선감척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11장 어선·어구 등 처리방안 검토

제1절 정부매입 또는 선주임의 처리방안 검토

1. 정부매입 처리방안

폐업 어선의 처리방안 중 정부매입 방안은 정부가 폐업지원금과 선박잔존가치를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선박을 인수하여 고철로 처리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말하며, 이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 장 점

- 폐선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간편하다.
- 원양어선 감척사업의 목적에 가장 적절하게 폐선을 처리할 수 있다.
- 폐선을 공공의 목적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 폐선을 외국에 판매할 경우 외화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감척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 단 점

- 폐선처리에 정부 부담의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 폐선과 폐선처리업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선박을 이동시키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장단점으로 볼 때, 정부가 폐업지원금과 선박잔존가치를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선박을 인수하여 고철로 처리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은 원양어선의 감척을 실시하려는 정부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폐선처리를 정부가 책임져야하므로 폐선처리에 정부의 인력과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은 국내 항을 모기지로 하는 원양어선의 감척 시에 발생하는 폐선의 처리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선주임의 처리방안

폐업 어선의 처리방안으로서 선주임의 처리방안은 정부가 폐업지원금만 선박소유자에게 주고, 폐업할 선박은 선주가 임의로 직접 처분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 장 점

- 폐선처리에 수반되는 정부의 행정업무와 비용을 줄어든다.

◦ 단 점

- 폐선이 그 목적에 맞게 처리되지 않고 불법 전매되어 어장에 재진입 될 수 있다.
- 폐선이 영세한 폐선처리 업자에게 맡겨질 경우 처리기술 및 시설부족으로 인해 작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폐선에 대한 폐선확인 절차가 복잡하다.
- 폐선처리에 대한 감시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등이 불법투기 될 가능성이 있다.
- 폐선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할 시 고성능 소각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서는 대기오염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폐선처리 시 발생하는 소음·분진과 폐유 유출 등이 우려된다.

이상과 같은 장단점으로 볼 때, 정부는 폐업지원금만 선박소유자에게 주고, 폐업할 선박은 선주가 직접 임의 처분하는 방법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있는 어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지어업인 경우 폐선을 폐선처리업체까지 운반하거나 정부가 관리 하는데 행정적으로 불편하고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선주임의 처리방안으로 폐선을 처리한다면 그 처리과정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주에게 폐선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그 처리과정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SURVEY회사에 맡겨 처리결과를 위탁시킬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제2절 정부매입시 어선·어구 처리방안 검토

1. 감척어선을 고철로 처리하는 방안

감척된 폐어선을 그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폐선처리 전문업체에 넘겨 고철(scrap)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감척 대상 원양어선들의 선령을 살펴보면 북양트롤은 80% 이상이 30년 이상이고, 대서양 기지트롤의 경우에는 85%이상이 30년 이상이며, 인도양 기지트롤은 100% 모두 30년 이상의 선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감척되는 선박도 대부분 30년 이상의 선령이 예측되므로 재활용 보다는 고철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선체로서의 고철가격은 톤당 60만원 이상씩 하므로 고철가격도 상당히 괜찮은 편으로 여겨진다.

고철로 처리하는 방안 중에는 먼저 폐선을 해체한 후 고철로 공매하는 방안과 폐선 자체를 공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폐선 해체 후 고철로 공매하는 방안은 해체에 필요한 적정한 장소의 확보가 곤란하고, 해체 시 대기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체에 필요한 제거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 산정의 처리절차가 복잡하므로 폐선 자체를 공매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처리방안으로 여겨진다.

폐어선을 폐선처리 전문 업체에게 넘기면 폐선처리업체는 먼저 기관류(주기관, 보조기관, 각종 펌프류 등), 항해용 기기류(앵카, 앵카로프, 조타기, 자동항법장치, 나침의, 자이로콤파스, 선회창 등), 전자장비류(레이다, 무전기, 어군탐지기, 소나, GPS 네비게이트, GPS 플로터, NET FINDER, EPIRB 등), 갑판·어업기구류(양망기, 양승기, 사이드로라, 로라, NET WINCH, DECK MACHINERY, 냉동 및 냉장시설 등)의 시설물을 떼어낸 후, 사용 가능한 제품은 따로 분류하여 재사용 할 수도 있고, 선체와 재사용할 수 없는 선박의 기기류에 대해서는 고철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2. 감척어선의 재활용 방안

가.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방안

정부 또는 공공 기관에서 필요한 선박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말하며, 과거 감척 사업으로 발생한 연근해어선은 공공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감척어선을 개조하여 수산해양 자원조사를 위한 시험조사선으로 이용하거나, 어장관리선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산계고등학교 또는 대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실습선이나 해양수산 연구조사선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감척선박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선박 구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척예상 선박의 선령이 30년 전후로 예측되므로 실제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해양레포츠 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

감척선박을 청정한 해양에 투하하여 수중에 스킨스쿠버들의 수중관광 및 레저목적 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다.

폐선박의 인공적인 투하는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늘어나는 해양레포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해외 원정 스쿠버들을 국내에 유인할 수 있다. 연중 수많은 다이버들이 국내의 좋지 않는 잠수 환경 때문에 해외원정 다이빙을 떠나는 것을 막고 국내로 유인할 수 있어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모여드는 유명한 난파선 다이빙 장소는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악천후로 선박이 암초 또는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된 후 세월이 오래 경과된 곳으로 다양한 어족과 해초가 군집하여 다이버들이 침몰선 내·외부를 유영하면서 탐사나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감척선박을 다이버들의 안전한 수중활동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박에서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적정한 투하장소까지 운반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다.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방안

폐선을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관광사업에 이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폐선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선상 카페, 레스토랑 또는 선상 숙박시설 등의 공간으로 이용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폐선 처리에 관련된 법령

우리나라는 1961년 오물청소법에 의해 생활쓰레기와 1977년 환경보전법에 의해 산업폐기물을 각각 규제하다가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통합하여 규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폐기물 규제는 폐기물관리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폐선의 처리와 관련된 것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폐선박은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의

거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동법 제18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해양환경관리법

폐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 따라 선박해체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의 해체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한 선박처리장이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작업선 1척, 배수펌프 2대, 절단기 10대, 50톤급 이상의 크레인 1대 및 33㎡ 넓이의 사무실 등이다.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①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해역관리청은 방치된 선박의 해체 및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장비 등을 갖춘 선박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의 신고 등) ①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 가. 해체하려는 선박의 해체 전 유창 청소와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나. 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사항
- 다. 오염물질의 유출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체장소 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3.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오염물질의 처리실적서

② 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과 관련 별표 2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7에서 선박처리장의 시설·장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톤수 5톤 이상의 작업선 1척
2. 배수펌프 2대
3. 절단기 10대
4. 50톤급 이상의 크레인 1대
5. 33㎡ 넓이의 사무실

제12장 폐업(구조조정)에 의한 전업 및 실업대책

제1절 업종별 선원수 및 선원수급실태

1. 업종별 선원수

원양어선의 어업종류별 선박척당 내·외국인 선원수는 <표 12-1>과 같다. 이 자료는 2008년 4월 1일 현재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의 내부 자료에 의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원양어선의 선박 1척당 평균 선원수는 35.80명이며, 그 중에서 내국인 선원은 8.89명(해기사 5.1명, 부원 3.79명)이고 외국인 선원은 26.92명이다. 만약 운반선을 제외하면 선박당 평균 선원수는 38.12명이고, 그 중 내국인 선원은 9.03명(해기사 4.83명, 부원 4.20명)이고 외국인 선원은 29.10명이 된다.

척당 제일 많은 선원이 취업하고 있는 어업종류는 북양트롤어업으로서 94.83명이며, 내국인 선원은 15.0명(해기사 7.0명, 부원 8.0명)이고 외국인 선원은 79.83명이다. 이어서 채낚기어업 31.63명(내국인 7.70명, 외국인 23.93명), 봉수망어업 30.50명(내국인 9.5명, 외국인 21.0명), 기지트롤어업 30.43명(내국인 7.67명, 외국인 22.76명) 순이다.

척당 제일 적은 선원이 취업하고 있는 어업종류(운반선은 제외함)는 선망어업으로서 척당 25.07명(내국인 12.32명, 외국인 12.75명)이며, 다음으로 연승어업 25.18명(내국인 6.61명, 외국인 18.57명), 기타어업 29.22명(내국인 4.39명, 외국인 24.83명) 순이다.

내국인 선원이 제일 많이 취업하고 있는 어업종류는 북양트롤어업으로서 15.0명(해기사 7.0명, 부원 8.0명)이고, 이어서 선망어업 12.32명(해기사 5.0명, 부원 7.32명), 봉수망어업 9.5명(해기사 5.0명, 부원 4.5명), 채낚기어업 7.7명(해기사 5.0명, 부원 2.70명), 기지트롤어업 7.67명(해기사 4.0명, 부원 3.67명), 연승어업 6.61명(해기사 5.0명, 부원 1.61명) 순이다.

외국인 선원이 제일 많이 취업하고 있는 어업종류는 북양트롤어업으로 79.83명, 다음으로 기타어업 24.83명, 채낚기어업 23.93명, 기지트롤어업 22.76명, 봉수망어업 21.0명, 연승어업 18.57명, 선망어업 12.75명 순이다.

<표 12-1> 원양어선 어업종류별 선박적당 내·외국인 선원수(단위: 명)

구 분 업 종	내국인 선원수		외국인 선원수	합계 선원수
	해기사	부원		
연승어업	5.0	1.61	18.57	25.18
선망어업	5.0	7.32	12.75	25.07
북양트롤어업	7.0	8.0	79.83	94.83
기지트롤어업	4.0	3.67	22.76	30.43
채낚기어업	5.0	2.70	23.93	31.63
붕수망어업	5.0	4.50	21.0	30.50
운반선	7.0	0.88	11.68	19.56
기 타	2.78	1.61	24.83	29.22
평 균	5.10	3.79	26.92	35.80

자료: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표 12-2>는 원양어선 어업종류별 선박척수 및 총선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도 2008년 4월 1일 현재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의 내부 자료에 의한 것이다.

<표 12-2> 원양어선 어업종류별 선박척수 및 총선원수(단위: 척, 명)

구 분 업 종	선박척수	내국인 선원수		외국인 선원수	총선원수
		해기사	부원		
연승어업	137	685	220	2,544	3,449
선망어업	28	140	205	357	702
북양트롤어업	6	42	48	479	569
기지트롤어업	99	396	363	2,253	3,012
채낚기어업	44	220	119	1,053	1,392
붕수망어업	2	10	9	42	61
운반선	19	133	15	222	370
기 타	18	50	29	447	526
합 계	353	1,676	1,008	7,397	10,081

자료: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원양어선에 취업하고 있는 선원수는 선박척수 353척에 10,081명이며, 그 중에서 내국인 선원은 2,684명(해기사 1,676명, 부원 1,008명)이고 외국인 선원은 7,397명이

다.

제일 많은 선원이 취업하고 있는 원양어선의 어업종류는 연승어업으로 3,449명(내국인 905명, 외국인 2,544)이고, 이어서 기지트롤어업 3,012명(내국인 759명, 외국인 2,253명), 채낚기어업 1,392명(내국인 339명, 외국인 1,053명) 순이다. 기지트롤과 북양트롤을 합하면 트롤어업이 3,581명(내국인 849명, 외국인 2,732명)이 되므로 가장 많은 어선원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일 적은 선원이 취업하고 있는 어업종류는 봉수망어업으로 61명(내국인 19명, 외국인 42명)이고, 이어서 운반선 370명(내국인 148명, 외국인 222명), 기타어업 526명(내국인 79명, 외국인 447명) 순이다.

내국인 선원이 제일 많이 취업하고 있는 어업종류는 연승어업으로 905명(해기사 685명, 부원 220명)이고, 이어서 기지트롤어업 759명(해기사 396명, 부원 363명), 선망어업 345명(해기사 140명, 부원 205명), 채낚기어업 339명(해기사 220명, 부원 119명) 순이다.

외국인 선원이 제일 많이 취업하고 있는 어업종류는 연승어업으로서 2,544명, 이어서 기지트롤어업 2,253명, 채낚기어업 1,053명, 북양트롤 479명, 기타어업 447명, 선망어업 357명 순이다.

2. 선원수급 실태

원양어선에서의 선원은 노·사간의 협정에 의해 승무정원증서상의 승무정원의 55%까지는 외국인으로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원과 갑판장 및 조기장 정도만 내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고, 일반 부원은 대부분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원양어업에 신규 공급되는 내국인 선원의 수는 아주 적고, 원양어선의 선원으로서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재복귀하여 승선하기도 하고, 기존에 타 선사에 근무하던 선원들이 회사를 옮겨가며 필요인력을 채워가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내국인 선원의 수급은 회사에 고용 중인 선원들로부터 그들의 친지나 동료들을 소개 받아 채우는 비율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회사직원의 지인을 통하거나 회사 홈페이지 및 회사 게시판 등을 통하여 선원이 수급되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인 선원의 수급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선원 송입 대리점을 통하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으로부터 2년 정도의 계약직으로 수급 받고 있

으며, 계약만료 후 필요한 선원은 재계약하여 승선시키고 있다. 또한 해외기지 어업인 경우 현지 어장 주변국에서 현지인들을 직접 수급받기도 한다.

3. 선원 수급상의 문제점

가. 내국인 선원

내국인 선원의 대부분이 40대 중후반 이상에서 50대에 해당되는 관계로 점차 고령화되어있고, 젊은 층은 선원이라는 직업을 3D 업종으로 인식하여 승선을 기피하고 있어서 선원수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승선 중인 선원은 기존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이며 신규선원의 공급은 거의 중단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고유가와 선박의 노후화로 원양어업의 어획량이 감소되고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원양어선의 임금구조가 육상의 타 업종이나 상선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 가정에 2자녀 이하가 출생되므로 부모나 젊은이 자신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원양어선의 승선이 육체적으로는 고생이 되더라도 옛날과 같이 목돈이 된다던지, 육상의 근무보다 수입이 많다든지 하는 특별한 매력화가 되지 않는 한, 내국인 선원의 인력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선원인력의 공동화 현상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인구공동화 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 식량산업인 수산업분야를 이끌고 지켜나갈 인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과 1960~70년대에 어렵게 개척하고 확보했던 어장을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선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외국인 선원

외국인 선원의 승선 시에는 승선초기에 언어소통과 문화나 생활양식 등의 관습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허위 승선경력자들과 체력조건이 열악한 자들로 인하여 기술숙련 미숙으로 인하여 조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내국인 선원인력의 공동으로 불가피하게 외국인 선원을 부원에 한해 대체 고용하고 있지만 내국인 선원인력의 양성이나 선원정책이 없다면 점차 해기사까지 외국인 선원인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가 점차 암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선원들이 점차 자국의 경제 수준에 걸 맞는 수준의 임금인상을 원하게 되고

ILO 등의 국제기구는 외국인 선원들에게도 자국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조선족이나 중국인 선원들의 임금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외국인 선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결국은 내국인 선원과 동등한 임금형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즉, 내국인 선원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수산업분야의 인력난 공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고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도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승·하선을 위해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도주이탈이 생겨 불법 체류자가 발생되기도 하므로 각종의 사회적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선원관리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문제 등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에서 구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의 보조를 받아 외국인 선원복지교육원을 준공하고, 2006년 5월 15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노조 자체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동 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인력의 수급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복지교육원이 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당초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따라서 어선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선원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 선원직의 매력화(승선 유도)를 위한 복지정책 수립
예로서 원양어선을 일정기간 이상 승선한 자에게 육상직의 수산업분야로 전직할 경우 사업자금의 저리 대출이나 수산분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
- 선원과 선원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국·공립 및 지자체의 공공시설 이용 시의 할인 혜택부여 등
- 외국인선원 고용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수립 필요
-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불가피한 현실성을 감안, 외국인 선원복지교육원의 활용 확대 및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지원정책 필요

제2절 업종별 실업선원 산출

업종별 실업선원 산출에 적용되는 연차별 감척물량은 ‘제9장 원양어선 업종별 폐업 우선순위 및 물량 연구’에 따른다. 북양트롤의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입찰 기초가를 3년 수익의 70%<A-1안> 및 3년 수익률의 100%<A-2안>로 각각 가정 시의 폐업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척물량은 <표 12-3>과 같다.

<표 12-3> 북양트롤의 어선·어구에 대한 미보상시의 연차별 감척물량

구분 업종	A-1안					A-2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
기지트롤 (대서양)	16	18	19	-	53	15	17	19	2	53
기지트롤 (인도양)	1	1	1	7	10	1	1	1	7	10
북양트롤	1	1	2	1	5	1	1	1	2	5
계	18	20	22	8	68	17	19	21	11	68

<표 12-4>는 감척물량 <A-1안> 및 <A-2안>에 따른 연차별 실업예상 선원수의 추정치이다.

1년차 감척 선박수는 <표 12-3>에서 <A-1안>이 기지트롤(대서양) 16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서 합계 18척이고, <A-2안>이 기지트롤(대서양) 15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 합계 17척이다. 선박당 평균 선원수는 <표 12-1>에서 기지트롤이 30.43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7.67명(해기사 4.0명, 부원 3.67명)이고 외국인이 22.76명이다. 또한 북양트롤은 선박당 94.83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5명(해기사 7.0명, 부원 8.0명)이고 외국인이 79.83명이다. 그러므로 실업예상 선원수는 업종별 감척 선박수에 선박척당 내·외국인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1년차의 실업예상 선원수는 <A-1안>이 합계 612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45명(해기사 75명, 부원 70명)이고 외국인은 467명이며, <A-2안>은 합계 582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38명(해기사 71명, 부원 67명)이고 외국인은 444명이다.

2년차 감척 선박수는 <A-1안>이 기지트롤(대서양) 18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서 합계 20척이고, <A-2안>이 기지트롤(대서양) 17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 합계 19척이다. 업종별 감척 선박수에 선박척당 내·외국인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2년차의 실업예상 선원수는 <A-1안>이 합계 673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61명(해기사 83명, 부원 78명)이고 외국인은 512명이며, <A-2안>은 합계 642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53명(해기사 79명, 부원 74명)이고 외

국민은 489명이다.

3년차 감척 선박수는 <A-1안>이 기지트롤(대서양) 19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2척으로서 합계 22척이고, <A-2안>이 기지트롤(대서양) 19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 합계 21척이다. 업종별 감척 선박수에 선박척당 내·외국인수를 곱하면, 3년차의 실업예상 선원수는 <A-1안>이 합계 797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83명(해기사 94명, 부원 89명)이고 외국인은 614명이며, <A-2안>은 합계 703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68명(해기사 87명, 부원 81명)이고 외국인은 535명이다.

<표 12-4> 감척물량 <A-1> 및 <A-2>에 따른 실업예상 선원수(단위: 척, 명)

구 분 년 차	감척예상 선박척수	내국인 선원수		외국인 선원수	실업예상 총선원수	
		해기사	부원			
A-1 안	1년차	18	75	70	467	612
	2년차	20	83	78	512	673
	3년차	22	94	89	614	797
	4년차	8	35	34	239	308
	계	68	287	271	1,832	2,390
A-2 안	1년차	17	71	67	444	582
	2년차	19	79	74	489	642
	3년차	21	87	81	535	703
	4년차	11	50	49	364	463
	계	68	287	271	1,832	2,390

4년차 감척 선박수는 <A-1안>이 기지트롤(인도양) 7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서 합계 8척이고, <A-2안>이 기지트롤(대서양) 2척, 기지트롤(인도양) 7척 및 북양트롤 2척으로 합계 11척이다. 업종별 감척 선박수에 선박척당 내·외국인수를 곱하면, 4년차의 실업예상 선원수는 <A-1안>이 합계 308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69명(해기사 35명, 부원 34명)이고 외국인은 239명이며, <A-2안>은 합계 463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99명(해기사 50명, 부원 49명)이고 외국인은 364명이다.

그러므로 4년차 동안 원양어선 68척의 감척으로 인한 실업예상 선원수는 <A-1안>과 <A-2안>이 모두 2,390명으로 같고, 그 중 내국인은 558명(해기사 287명, 부원 271명)이고 외국인은 1,832명으로 추정된다.

북양트롤의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경우에 입찰 기초가를 3년 수익의 70%<B-1안> 및 3년 수익률의 100%<B-2안>로 각각 가정 시의 폐업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척물량은 <표 12-5>와 같다.

<표 12-5> 북양트롤의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시의 년차별 감척물량

구분 업종	B-1안						B-2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기지트롤 (대서양)	7	9	12	19	6	53	6	8	11	17	11	53
기지트롤 (인도양)	1	1	1	1	6	10	1	1	1	1	6	10
북양트롤	1	1	1	1	1	5	1	1	1	1	1	5
계	9	11	14	21	13	68	8	10	13	19	18	68

<표 12-6>은 감척물량 <B-1안> 및 <B-2안>에 따른 년차별 실업예상 선원수의 추정치이다.

1년차 감척 선박수는 <표 12-5>에서 <B-1안>이 기지트롤(대서양) 7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서 합계 9척이고, <B-2안>이 기지트롤(대서양) 6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 합계 8척이다. 선박당 평균 선원수는 <표 12-1>에서 기지트롤이 30.43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7.67명(해기사 4.0명, 부원 3.67명)이고 외국인 22.76명이다. 또한 북양트롤은 선박당 94.83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5명(해기사 7.0명, 부원 8.0명)이고 외국인은 79.83명이다. 그러므로 실업예상 선원수는 업종별 감척 선박수에 선박척당 내·외국인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그 결과 1년차의 실업예상 선원수는 <B-1안>이 합계 338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76명(해기사 39명, 부원 37명)이고 외국인은 262명이며, <B-2안>은 합계 308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69명(해기사 35명, 부원 34명)이고 외국인은 239명이다.

2년차 감척 선박수는 <B-1안>이 기지트롤(대서양) 9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서 합계 11척이고, <B-2안>이 기지트롤(대서양) 8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 합계 10척이다. 업종별 감척 선박수에 선박척당 내·외국인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2년차의 실업예상 인원은 <B-1안>이 합계 399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92명(해기사 47명, 부원 45명)이고 외국인은 307명이며, <B-2안>은 합계 368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84명(해기사 43명, 부원 41명)이고 외국인은 284명이다.

3년차 감척 선박수는 <B-1안>이 기지트롤(대서양) 12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서 합계 14척이고, <B-2안>이 기지트롤(대서양) 11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 합계 13척이다. 업종별 감척 선박수에 선박척당 내·외국인수를 곱하면, 3년차의 실업예상 선원수는 <B-1안>이 합계 490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15명(해기사 59명, 부원 56명)이고 외국인은 375명이며, <B-2안>은

합계 460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07명(해기사 55명, 부원 52명)이고 외국인은 353명이다.

4년차 감척 선박수는 <B-1안>이 기지트롤(대서양) 19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서 합계 21척이고, <B-2안>이 기지트롤(대서양) 17척, 기지트롤(인도양) 1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 합계 19척이다. 업종별 감척 선박수에 선박척당 내·외국인수를 곱하면, 4년차의 실업예상 인원은 <B-1안>이 합계 703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68명(해기사 87명, 부원 81명)이고 외국인은 535명이며, <B-2안>은 합계 642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53명(해기사 79명, 부원 74명)이고 외국인은 489명이다.

<표 12-6> 감척물량 <B-1> 및 <B-2>에 따른 실업예상 선원수(단위: 척, 명)

구분 년 차	감척예상 선박척수	내국인 선원수		외국인 선원수	실업예상 총선원수	
		해기사	부원			
B-1 안	1년차	9	39	37	262	338
	2년차	11	47	45	307	399
	3년차	14	59	56	375	490
	4년차	21	87	81	535	703
	5년차	13	55	52	353	460
	계	68	287	271	1,832	2,390
B-2 안	1년차	8	35	34	239	308
	2년차	10	43	41	284	368
	3년차	13	55	52	353	460
	4년차	19	79	74	489	642
	5년차	18	75	70	467	612
	계	68	287	271	1,832	2,390

5년차 감척 선박수는 <B-1안>이 기지트롤(대서양) 6척, 기지트롤(인도양) 6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서 합계 13척이고, <B-2안>이 기지트롤(대서양) 11척, 기지트롤(인도양) 6척 및 북양트롤 1척으로 합계 18척이다. 업종별 감척 선박수에 선박척당 내·외국인수를 곱하면, 5년차의 실업예상 선원수는 <B-1안>이 합계 460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07명(해기사 55명, 부원 52명)이고 외국인은 353명이며, <B-2안>은 합계 612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145명(해기사 75명, 부원 70명)이고 외국인은 467명이다.

그러므로 5년차 동안 원양어선 68척의 감척으로 인한 실업예상 선원수는 <B-1안>과 <B-2안> 모두 2,390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558명(해기사 287명, 부원 271명)이고 외국인은 1,832명으로 추정된다.

제3절 감척선원 실업수당 소요액 산정

원양어선 감척으로 발생될 실업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2조(적용범위)와 제40조(실업수당)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20톤 이상의 어선에는 통상임금¹⁾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어선원의 임금은 선원법 제52조에 따라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실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시에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월고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선원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르면 어선원에 대한 통상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 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20퍼센트, 125퍼센트 또는 130퍼센트 중 한 가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선원법

제52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의 제40조·제42조·제50조·제51조·제87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고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급의 월액이 월고정급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리 지급한 월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본다.

※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20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25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0퍼센트로 한다.

1)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법 제3조에 의하면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구 해양수산부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선원최저임금을 98만 3,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어선원 재해보상 시 최저기준액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월 120만 3,000원, 승선평균임금은 월 192만 4,000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또한 선원최저임금의 특례로 동거의 친족만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승선실습을 위한 경우와 관련 노·사단체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임금책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국인 선원에 대한 원양어선 어업종류별 월 고정급의 평균적인 임금은 <표 12-7>과 같다. 자료는 한국선원노동조합의 제공에 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2008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의한 것이다. 이 중 북양트롤과 대서양외줄낚시 업종에 대한 월고정급의 임금은 본 연구진에서 북양트롤 및 대서양외줄낚시 업체의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다.

<표 12-7> 원양어선 업종별 월고정급(단위: 천원)

업종		연승	선망	북양트롤	기지트롤	채낚기	붕수망	대성외줄낚시
직책								
해 기 사	선장	1,513	1,833	4,860	1,793	1,663	1,663	1,737
	수석1항사	-	-	2,265	-	-	-	-
	1항사	1,233	1,383	1,915	1,343	1,283	1,283	1,321
	2항사	1,203	1,303	1,690	1,273	1,223	1,223	1,263
	3항사	-	-	1,515	-	-	-	-
	기관장	1,433	1,833	3,265	1,593	1,563	1,563	1,501
	수석1기사	-	-	2,265	-	-	-	-
	1기사	1,233	1,383	1,915	1,343	1,283	1,283	1,321
	2기사	1,203	1,303	1,690	1,273	1,223	1,223	1,263
	3기사	-	-	1,515	-	-	-	-
	통신장	1,333	1,483	2,040	1,383	1,383	1,383	1,453
	부 원	갑판장	1,233	1,383	2,015	1,343	1,283	1,283
갑고수		-	-	1,740	-	-	-	-
갑판수		1,203	1,303	-	1,273	1,223	1,223	-
갑판원		1,075	1,115	-	1,085	1,075	1,075	-
조기장		1,203	1,303	1,940	1,273	1,223	1,283	1,321
기고수		-	-	1,640	-	-	-	-
기관원		1,075	1,115	-	1,085	1,075	1,223	-
냉동사		-	-	1,965	-	-	-	-
조리장		1,153	1,290	1,640	1,253	1,153	1,153	1,213
처리장		-	-	1,865	-	-	-	-
처리반장	-	-	1,615	-	-	-	-	

자료: 국토해양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08년도

원양어선 내국인 선원의 해기사와 부원의 업종별 평균적인 월고정급 및 통상임금은 <표 12-8>과 같다. 여기서 해기사 및 부원의 업종별 월고정급은 <표 12-7>의 임금을 평균하여 나타낸 것이고,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에 선원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라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의 합의에 의한 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에 참치연승은 130%, 참치선망은 125%, 오징어채낚기는 130%, 꽁치봉수망은 130% 및 대서양외줄낚시는 125%의 요율을 곱하고 있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북양트롤과 기지트롤의 트롤어업은 120%의 요율을 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척선원 실업수당 소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을 내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2007~8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과 한국원양산업협회 간에 맺은 외국인 어선원 단체협약서에 의한 임금을 적용하였다. 2007.10부터 2년간 적용될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제 수당이 포함된 월임금은 부원 A급은 월 310~600\$, 부원 B급은 280~480\$ 및 부원 C급은 200~40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부원 A급은 2어기 이상 종료한 자중 승선경력 3년 이상인 자이고, 부원 B급은 1어기 이상 종료한 자중 승선경력 1년 이상인 자를 말하며, 부원 C급은 미경험자 또는 신규선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어선원의 평균임금을 410~420\$로 간주하고 환율을 곱하여, 내국인선원 최저임금의 반액인 491,500원을 외국인선원의 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였다.

<표 12-8> 원양어선 업종별 평균적인 월고정급 및 통상임금(단위: 천원)

업종	구분	월고정급		통상임금	
		해기사	부원	해기사	부원
참치연승		1,307	1,157	1,699	1,504
참치선망		1,503	1,252	1,879	1,564
북양트롤		2,240	1,803	2,687	2,163
기지트롤		1,429	1,219	1,714	1,462
오징어채낚기		1,374	1,172	1,787	1,524
꽁치봉수망		1,374	1,207	1,787	1,569
대서양외줄낚시		1,408	1,285	1,756	1,606
평균		1,519	1,299	1,901	1,627

그리고 년도별 실업수당 예상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년차별 실업수당액} = \text{년차별 실업예상 선원수} \times \text{월 통상임금} \times \text{실업기간 2월}$$

위의 식에 따라 년차별 실업수당 예상액을 계산하면 <표 12-9>와 같다. <A-1안>에서 1년차는 감척물량이 15척에 실업예상 선원수는 612명(내국인 145명, 외국인 467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486,618천원(해기사 270,722천원, 부원 215,896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459,061천원이므로 합계 945,679천원이 된다. 2년차는 감척물량이 20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673명(내국인 161명, 외국인 512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537,434천원(해기사 298,146천원, 부원 239,288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503,296천원이므로 합계 1,040,730천원이 된다. 3년차는 감척물량이 22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797명(내국인 183명, 외국인 614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632,144천원(해기사 349,476천원, 부원 282,668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603,562천원이므로 합계 1,235,706천원이 된다. 4년차는 감척물량이 8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308명(내국인 69명, 외국인 239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244,234천원(해기사 133,602천원, 부원 110,632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234,937천원이므로 합계 479,171천원이다. 그러므로 <A-1안>의 4년차 동안 감척 선박 68척의 실업예상 선원 2,390명에게 지급될 실업수당 예상액은 3,701,286천원이고, 그 중 내국인 선원은 1,900,430천원(해기사 1,051,946천원, 부원 848,484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은 1,800,856천원이 된다.

<A-2안>에서 1년차는 감척물량이 17척에 실업예상 선원수는 582명(내국인 138명, 외국인 444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464,134천원(해기사 257,010천원, 부원 207,124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436,452천원이므로 합계 900,586천원이 된다. 2년차는 감척물량이 19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642명(내국인 153명, 외국인 489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512,026천원(해기사 284,434천원, 부원 227,592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480,687천원이므로 합계 992,713천원이 된다. 3년차는 감척물량이 21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703명(내국인 168명, 외국인 535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559,918천원(해기사 311,858천원, 부원 248,060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525,905천원이므로 합계 1,085,823천원이 된다. 4년차는 감척물량이 11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463명(내국인 99명, 외국인 364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364,352천원(해기사 198,644천원, 부원 165,708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357,812천원이므로 합계 722,164천원이다. 그러므로 <A-2안>의 4년차 동안 감척 선박 68척의 실업선원 2,390명에게 지급될 실업수당 예상액은 3,701,286천원이고, 그 중 내국인 선원은 1,900,430천원(해기사 1,051,946천원, 부원 848,484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1,800,856천원이 된다.

<표 12-9> 원양어선 감척에 의한 년차별 실업수당 예상액(단위: 명, 천원)

구분 년차	실업예상 총선원수	내국인 실업 수당 예상액		외국인 실업 수당 예상액	총 실업수당 예상액	
		해기사	부원			
A-1	1년차	612	270,722	215,896	459,061	945,679
	2년차	673	298,146	239,288	503,296	1,040,730
	3년차	797	349,476	282,668	603,562	1,235,706
	4년차	308	133,602	110,632	234,937	479,171
	계	2,390	1,051,946	848,484	1,800,856	3,701,286
A-2	1년차	582	257,010	207,124	436,452	900,586
	2년차	642	284,434	227,592	480,687	992,713
	3년차	703	311,858	248,060	525,905	1,085,823
	4년차	463	198,644	165,708	357,812	722,164
	계	2,390	1,051,946	848,484	1,800,856	3,701,286
B-1	1년차	338	147,314	119,404	257,546	524,264
	2년차	399	174,738	142,796	301,781	619,315
	3년차	490	215,874	174,960	368,625	759,459
	4년차	703	311,858	248,060	525,905	1,085,823
	5년차	460	202,162	163,264	346,999	712,425
	계	2,390	1,051,946	848,484	1,800,856	3,701,286
B-2	1년차	308	133,602	110,632	234,937	479,171
	2년차	368	161,026	131,100	279,172	571,298
	3년차	460	202,162	163,264	346,999	712,425
	4년차	642	284,434	227,592	480,687	992,713
	5년차	612	270,722	215,896	459,061	945,679
	계	2,390	1,051,946	848,484	1,800,856	3,701,286

<B-1안>에서 1년차는 감척물량이 9척에 실업예상 선원수는 338명(내국인 76명, 외국인 262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266,718천원(해기사 147,314천원, 부원 119,404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257,546천원이므로 합계 524,264천원이 된다. 2년차는 감척물량이 11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399명(내국인 92명, 외국인 307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317,534천원(해기사 174,738천원, 부원 142,796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301,781천원이므로 합계 619,315천원이 된다. 3년차는 감척물량이 14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490명(내국인 115명, 외국인 375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390,834천원(해기사 215,874천원, 부원 174,960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368,625천원이므로 합계 759,459천원이 된다. 4년차는 감척물량이 21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703명(내국인 168명, 외국인 535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559,918천원(해기사 311,

858천원, 부원 248,060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525,905천원이므로 합계 1,085,823천원이다. 5년차는 감척물량이 13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460명(내국인 107명, 외국인 353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365,426천원(해기사 202,162천원, 부원 163,264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346,999천원이므로 합계 712,425천원이다. 그러므로 <B-1안>의 5년차 동안 감척 선박 68척의 실업선원 2,390명에게 지급될 실업수당 예상액은 3,701,286천원이고, 그 중 내국인 선원은 1,900,430천원(해기사 1,051,946천원, 부원 848,484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1,800,856천원이 된다.

<B-2안>에서 1년차는 감척물량이 8척에 실업예상 선원수는 308명(내국인 69명, 외국인 239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244,234천원(해기사 133,602천원, 부원 110,632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234,937천원이므로 합계 479,171천원이 된다. 2년차는 감척물량이 10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368명(내국인 84명, 외국인 284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292,126천원(해기사 161,026천원, 부원 131,100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279,172천원이므로 합계 571,298천원이 된다. 3년차는 감척물량이 13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460명(내국인 107명, 외국인 353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365,426천원(해기사 202,162천원, 부원 163,264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346,999천원이므로 합계 712,425천원이 된다. 4년차는 감척물량이 19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642명(내국인 153명, 외국인 489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512,026천원(해기사 284,434천원, 부원 227,592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480,687천원이므로 합계 992,713천원이다. 5년차는 감척물량이 18척이고, 실업예상 선원수는 612명(내국인 145명, 외국인 467명)이므로 실업수당 예상액은 내국인 선원은 486,618천원(해기사 270,722천원, 부원 215,896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459,061천원이므로 합계 945,679천원이다. 그러므로 <B-2안>의 5년차 동안 감척 선박 68척의 실업선원 2,390명에게 지급될 실업수당 예상액은 3,701,286천원이고, 그 중 내국인 선원은 1,900,430천원(해기사 1,051,946천원, 부원 848,484천원)이고 외국인 선원이 1,800,856천원이 된다.

제4절 감척선원 실업수당 지급주체 분석

1. 선원법에 의한 실업수당 지급

원양어선 감척으로 발생되는 실업선원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40조(실업수당)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20톤 이상의 어선에는 통상임금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선원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다만, 「해운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된 부선을 제외한다.

제40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의 침몰·멸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과거 감척사업 시의 실업수당 지급실태

가. 국제규제 감척사업

과거 국제규제 감척사업의 경우에는 실직 어선원들이 선원법 상의 실업수당을 받는 대신에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물전특별법" 제5조1항에 의해 통상임금의 6개월분의 실업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받음으로서, 선원법 상의 실업수당보다 3배를 지급 받은 바 있다.

나. 일반 감척사업

과거 일반감척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업 수당을 지급한 바는 없고, 감척어업자들의 책임 하에 통상임금의 2월분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원양어선 감척시의 실업수당 지급 주체

향후 원양어선 감척사업 시 정부가 실업 수당을, 선원법 제40조에 의해 실업수당 지급 의무자인 어선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 장 점

- 감척 지원금이 많아짐으로 감척에 관한 어업자의 관심이 높아진다.
- 감척 실업 선원들의 실업 수당 청구에 따른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감척 사업은 선박소유자 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선원들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

◦ 단 점

- 과거 일반 감척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 실업 수당 지원액만큼 감척 선박수가 감소될 수 있다.

현재의 규정에서는 원양어선의 감척 시에 발생할 실업선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실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월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양어선 감척사업 시 선원들의 실업수당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상 선박소유자의 감척사업 신청서류에 실업수당 지급 각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원양어선의 감척에 따른 실업선원들에게 과거의 국제규제 감척사업 시에 준하여 정부에서 감척선박의 선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한시법령이나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4. 감척 어선원에 대한 고용보험법 이용 권유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업²⁾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실업”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제2조3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히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 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이 제외되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65세 이상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양어업의 경우는 법인 소속이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5인 이상의 어업체에 해당되고 있고 실제로도 어선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은 거의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납부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인 가입자에게 90~240일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최대 960만원, 일일최대 4만원)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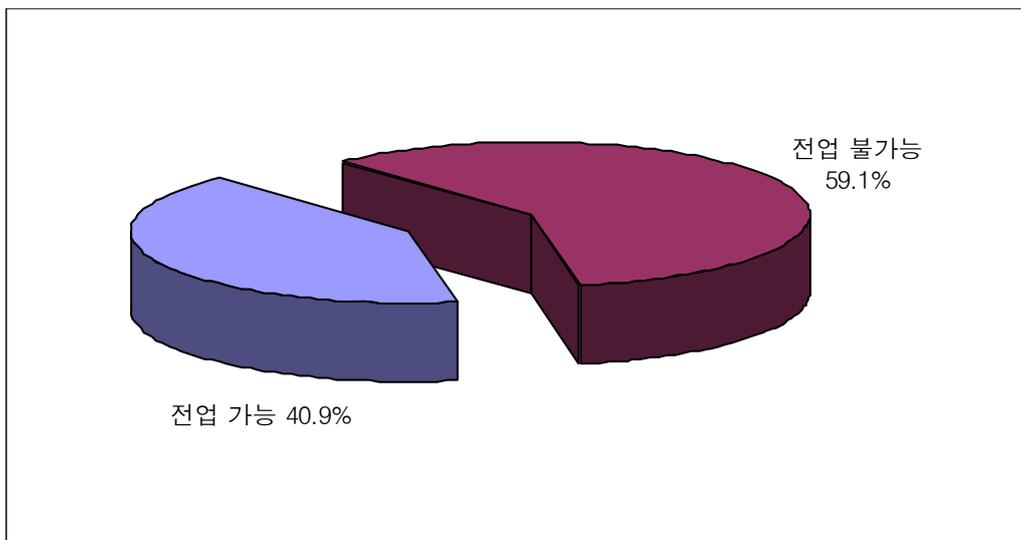
수급자격조건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가입방법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된다. 실업보험의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9%이고, 노사가 각각 1/2씩 분담하며, 고용안정사업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1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1~0.7%이며 이들은 모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제5절 감척선원의 전업대책 검토

1. 실업에 대비한 전업가능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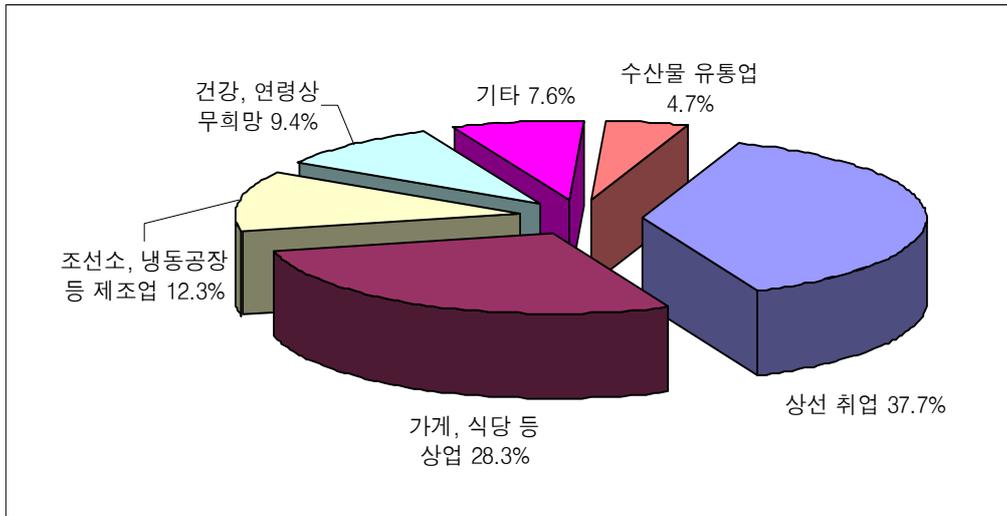
본 연구진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115명을 대상으로 5~6월에 걸쳐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의 협조로 감척 후 발생할 실업선원의 전업에 대하여 어선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에게 감척 후 다른 직업으로 전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의 설문 결과는 <그림 12-1>과 같다. 전업 가능한 선원이 41%였고, 전업이 불가능한 선원이 59%정도였다. 이는 육지와 격리된 오랜 선상생활을 하는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보전달의 한계와 새로운 직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두려움 등이 내재되어 과반수이상의 선원들은 현 직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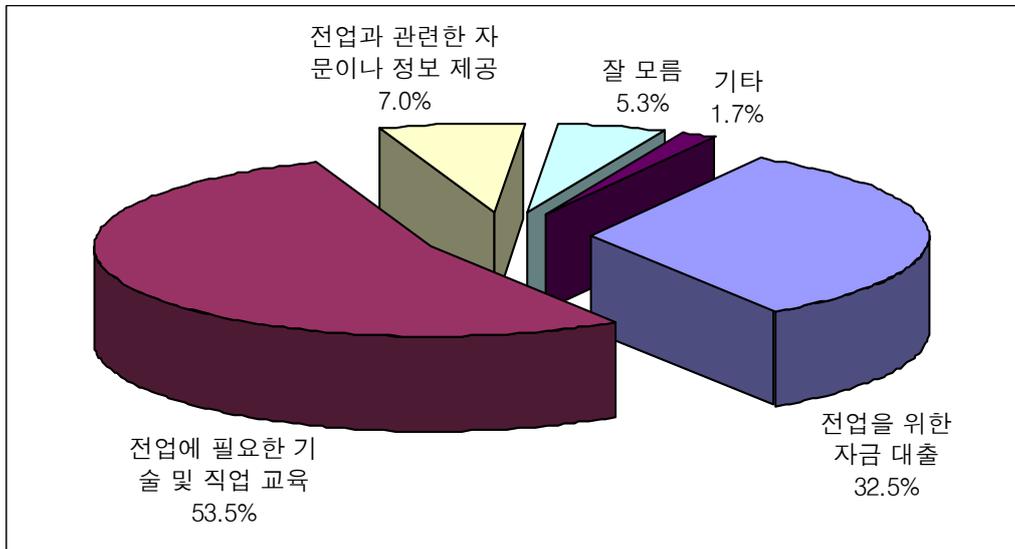
<그림 12-1> 감척 후 다른 직업으로의 전업 가능성

감척 후 다른 업종으로의 전업가능 형태에 대한 설문 결과는 <그림 12-2>와 같다. 상선으로의 재취업이 37.7%, 가게, 식당 등 상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사람이 28.3%, 조선소, 냉동공장 등의 제조업 분야로의 전직이 12.3%, 건강이나 노령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으로의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9.4%, 수산물 유통업 분야로의 전업이 4.7%, 기타 7.5% 정도이다. 기타에는 전업은 하고 싶으나 자금이 없어 전업을 못하거나 다른 분야로의 전업을 원하는 선원들이 포함된다.



<그림 12-2> 감척 후 다른 직업으로의 전업가능 형태

감척 후 전업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그림 12-3>과 같다. 전업에 필요한 기술 및 직업교육이 53.5%로서 과반을 넘으며, 이어서 전업을 위한 자금 대출이 32.5%, 전업과 관련한 자문이나 정보제공이 7.0%, 잘 모르겠음 5.3%, 기타 1.7% 정도로 조사되었다.



<그림 12-3> 감척 후 전업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

2. 선원으로의 재취업 알선

가. 감척 선원을 어선에 재취업시키는 방안

최근 5년간의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표 12-10>과 같다. 5년간 선박수는 57척 년평균 3.8%씩 감소하였고, 어선원수는 5년간 1,315명 년평균 11.2%씩 감

소하고 있다.

원양어선은 전체 선박수가 많지 않으므로 감척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감척물량 68척에 실업예상 선원수는 각각 <표 12-4>와 <표 12-6>에서 보는바와 같이 4년 또는 5년 동안 내국인이 558명(해기사 287명, 부원 271명)이 발생하므로 년차별로는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내국인 선원의 신규 공급이 그다지 잘되지 않고 있는 수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감척으로 인해 실직된 선원들 중 원양어선 또는 근해어선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선원들의 상당수는 수용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표 12-10> 최근 5년간 원양어선 어선원 취업현황(단위: 척, 명, %)

년도 \ 구분	선박척수	어선원수
2003	395	3,460
2004	360	2,859
2005	346	2,535
2006	345	2,339
2007	338	2,145
연평균 증감율	-3.8	-11.2

자료: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각 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어선원 수급안정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용역에 의하면 4년 뒤 2012년에는 원양어선의 선원 공급이 35%나 줄어들지만, 반면 수요는 31% 감소한다. 또한 <표 12-11>의 원양 어선원 수급전망에서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선원수요는 연평균 8.1% 줄어들지만, 선원공급은 10.1%씩 줄어들므로 선원난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에서 2005년에서 2020년까지 원양어선원의 수급 전망을 보면 수요는 6.1%씩 감소하나 공급은 10.9%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양어선 감척 사업에 의해 감척된 선원의 일부가 어선원으로 재취업을 원하더라도 원양어선에 재취업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내국인 부원들 중 해기면허 취득 후 원양어선에 계속 취업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한국해양연수원에서 원양어선 5급 간부선원 양성교육을 5개월간 받으면 수료 후 5급 항해사나 기관사의 해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 교재비, 숙식비는 전액 국비에서 무료로 지원되며, 과정 수료 후에는 원양산업연계(선사 등)에 취업도 지원된다.

〈표 12-11〉 원양 어선원 수급전망(단위: 명, %)

년도	구분	선원 수요	선원 공급	초과수요
2008		1,901	1,892	-9
2009		1,704	1,672	-32
2010		1,546	1,497	-49
2011		1,420	1,351	-69
2012		1,310	1,223	-87
2013		1,213	1,108	-105
2014		1,128	1,001	-127
2015		1,055	900	-155
연평균 증감율		-8.1	-10.1	-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선원 수급안정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2007

나. 감척선원을 내항상선에 취업시키는 방안

해운업계도 젊은이들의 승선기피현상으로 선원부족 현상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내항해운 쪽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래서 한국해운조합에서는 선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MOU를 체결하여 내항해운에 적합한 해기사 양성체제 구축, 근무 여건 개선, 선원에 대한 인식전환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한국해운조합은 2008년을 내항선원 수급안정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동 업무 협정을 통한 장학금 지원,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취업 지원 등을 비롯하여 내항선원의 적정인력 공급과 선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복지제도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원양어선의 감척으로 실직된 선원들을 어선과 상선의 체계가 다른 시스템에 따른 재교육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킨 후 내항해운의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내국인 선원들 중 해기면허 취득 후 내항해운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내항상선 5급 간부선원 양성교육을 5개월간 받도록 하면 수료 후 5급 항해사나 기관사의 해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 교재비, 숙식비는 전액 국비에서 무료로 지원되며, 과정 수료 후에는 내항해운 선박회사에 취업도 지원된다.

다. 외국인 선원을 대체하여 취업시키는 방안

어선감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 어선원들을 원양어선과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을 대체하여 취업시키면 어선원들의 실업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수행하려면 감척된 선원을 고용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더욱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한 재취업 알선 방안

한국선원 복지 고용센터는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본 센터는 국내외 선원의 취업동향과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원의 구직·구인등록 및 취업알선,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 업무, 국가·지자체·공동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 소지자들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다. 구직등록의 절차는 회원가입→로그인→구직신청→일자리검색→개인정보조회 순서로 하면 된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업안정기관으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선원 중 지원 대상자별로 정한 실업기간을 초과한 선원을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한 선주에게는 1년간 노동부에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주므로 센터에 구직 등록한 신규선원, 고령선원 등의 취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해기사 면허가 없는 내국인 부원들 중 해기면허 취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에게는 국비 해기사 면허취득과정의 교육을 통하여 4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상선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실직상태의 부원선원으로서 4급 해기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선원이고, 응시자격은 항해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 어선의 선박운항 경력 4년 이상인 부원선원이고, 기관은 주기관 추진력이 350kW 이상의 선박기관 운전경력 4년 이상인 부원선원이다. 교육기간은 6주 동안이고, 교육기간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약 11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교육수료 후 면허취득자 및 미취득자에게도 취업알선이 지원된다.

3. 해운·수산관련 분야로 취업시키는 방안

선원들 중에는 용접 등의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자도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좀 더

기술훈련을 시킨 후, 조선소 등으로의 전업을 알선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기술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안정자금과 기술훈련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원으로만이 아니고 수산업 분야 중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양식업이나 냉동·냉장업이나 부두나 항만의 하역 분야의 인력으로 우선 채용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어선감척 실업선원을 재취업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훈련을 통한 전업 안내

실업선원들이 전업을 희망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의 일자리 안내 및 직업훈련을 이용하여 전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www.job.go.kr](http://www.job.go.kr))

노동부에서 구직자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으로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보험 등 고용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이며 모든 국민에게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http://www.keis.or.kr))

취업알선시스템인 워크넷을 비롯하여 고용보험시스템, 직업훈련시스템, 자활지원시스템, 외국인고용시스템, 공공근로시스템, 고용정책결정지원시스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등 총 8종의 고용전산망을 운영한다.

-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

워크넷은 무료 취업알선 전산망으로서 구직자를 위한 채용정보와 구인자를 위한 인재정보, 고용동향 및 직업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www.hrd.go.kr](http://www.hrd.go.kr))

직업개발종합정보망(hard-net)은 직업훈련소개와 직종별, 대상자별 및 지역별의 훈련과정/훈련상담, e-Learning/수강상담 정보를 제공한다.

- 잡넷([//www.jobnet.go.kr](http://www.jobnet.go.kr))

잡넷은 일자리정보의 허브시스템으로서 직종별, 지역별로 인재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 잡마켓([//jobmarket.work.go.kr](http://jobmarket.work.go.kr))

잡마켓은 일자리정보, 인재정보 및 훈련정보와 사이버 직업소개기관으로서 전국의 유·무료 직업소개소에서의 구인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령자 워크넷([//senior.work.go.kr](http://senior.work.go.kr))

시니어워크넷은 고령자들에게 일자리정보 및 인재정보와 고령자 훈련정보를 제공한다.

◦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http://www.eps.go.kr))

외국인 고용허가제 소개, 취업, 고용절차 안내, 사업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www.newjob.or.kr](http://www.newjob.or.kr))

실직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지원, 구직자를 위한 기업정보 DB구축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전직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5. 어선감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정책 방안

일본에서는 200해리 수역 설정으로 해마다 연안국의 조업규제가 강력해지고 그 결과 어장이 상실되고, 선박감척으로 선원들의 실업이 발생되면서 「국제협정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특별법을 일찍부터 제정하여 선박감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의 직업과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어선감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선원들의 직업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에 일본 특별법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국제협정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어임법)」은 1977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러 어업협정이나 국제포경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일본의 어선이 감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감척으로 인해 어업이직자가 일시에 다수 발생하는 경우 어업이직자에게 「어업이직자 구직수첩」을 교부하여 취업지도나 취업훈련을 시키면서 취업촉진수당이나 훈련대기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어업이직자의 직업과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종래에는 어업이직자의 직업안정과 지위향상을 꾀하기 위해, 육상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고용대책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1975년 6월 1일 고용대책법의 어선판으로 어업재건 정비특별조치법(어특별)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어업의 경제적 모든 조건의 현저한 변동이나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어업이직자가 다시 해상에 재취업을 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정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고용대책법과 어특별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제협정체결, 어선감척, 선원 이직이라는 한정된 조건의 어업이직자를 대상으로 바다에서 육지 또는 바다에서 바다로의 재취업 시 어느 쪽이든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특정어업

일본이 외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조업구역이나 어획량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감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일시에 다수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어업을 「특정어업」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특정어업이 정부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일·미 어업협정, 일·러 어업협정 등에 의해 감척이 된 27개 업종과 국제포경위원회의 권고 영향을 받은 2개 업종을 포함해 29개 업종이다. 또한 이러한 업종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정부령으로 특정어업의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어업이직자

특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국제협정체결의 결과, 감척이 행해지고 이에 따른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자 중 ① 현재 실업하고 있는 자, ② 그 직업이 불안정하여 실업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를 「어업이직자」로 정하고 있다. 또 「특정어업에 종사했던 자」라 함은 ① 특정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승무원으로 운항, 어로, 어획물 처리, 가공, 냉동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했던 자, ② 특정어업의 예비원으로 고용되어 이직 직전에 다른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 ③ 특정어업의 예비원으로 고용되어 육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 ④ 특정어업을 위해 준비 작업이나 잔무 정리 등의 부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어업이직자 구직수첩의 교부

어업이직자가 어임법으로 정한 취업지도, 직업훈련, 모든 급부 지급 등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이직자 구직수첩」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어업이직자로서 육상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공공 직업안정소에 출두하여 어업이직자 구직수첩의 발급 신청수속을 밟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선, 기선 등 해상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지방 운수국에 출두하여 신청수속을 밟도록 하고 있다.

제13장 폐업어선의 처리실태분석

제1절 과거 연근해 감척어선 처리실태 분석

1. 연근해어선의 용도별활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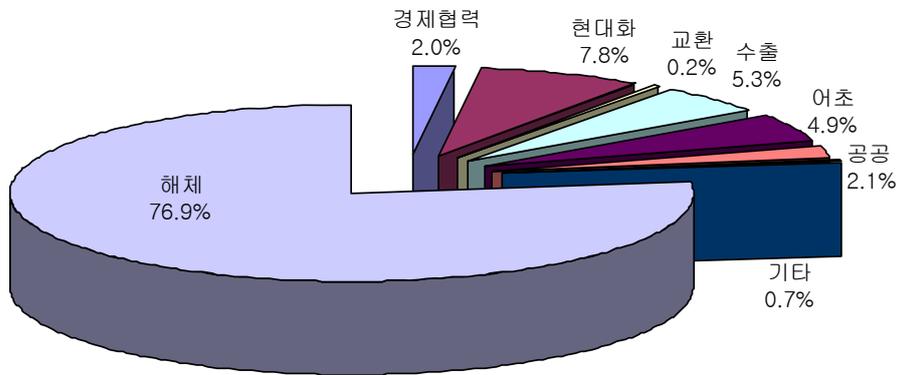
과거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시행한 감척사업에 의해 발생한 연근해어선 감척선박의 용도별 처리 건수 및 비율은 각각 <표 13-1> 및 <그림 13-1>과 같다.

<표 13-1> 연근해폐업어선재활용실적(1999~2006)

(단위: 척)

구분	계/년도	계	경제협력	현대 화	교환	수출	어초	공공	기타	해체
합계	계	4,915	68	263	8	178	166	70	24	2,580
	1999년	730	26	171	-	115	25	13	23	357
	2000년	140	-	21	2	7	5	-	1	104
	2001년	586	28	49	6	50	88	16	-	349
	2002년	275	14	22	-	6	46	32	-	155
	2003년	73	-	-	-	-	2	1	-	70
	2004년	712	-	-	-	-	-	3	-	709
	2005년	841	-	-	-	-	-	5	-	836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계	1,308	68	252	8	178	151	24	24	603
	1999년	652	26	171	-	115	25	13	23	279
	2000년	31	-	10	2	7	1	-	1	10
	2001년	509	28	49	6	50	83	8	-	285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계	3,607	-	11	-	-	15	59	-	3,522
	1999년	78	-	-	-	-	-	-	-	78
	2000년	109	-	11	-	-	4	-	-	94
	2001년	77	-	-	-	-	5	8	-	64
	2002년	159	-	-	-	-	4	29	-	126
	2003년	73	-	-	-	-	2	1	-	70
	2004년	712	-	-	-	-	-	3	-	709
	2005년	841	-	-	-	-	-	5	-	836
2006년	1,558	-	-	-	-	-	13	-	1,545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07)



<그림 13-1> 폐업어선재활용 및 처리실태(1999-2006년)

연근해어선의 폐어선의 처리실태를 보면 전체 감척어선의 76.9%가 해체되었으며, 일부 현대화(7.8%), 어초(4.9%), 공공(2.1%), 경제협력(2.0)로 활용되었다. 특히, 2004년 이후는 전체 감척어선의 일부(0.4~0.8%)가 공공용으로 활용되었을 뿐 나머지 전체가 해체 되었다.

2. 감척어선을 재활용 형태별 구체적인 내용

현재까지 감척어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인공어초 시설로 활용

어선에서 기관이나 어구 등 재활용 될 수 있는 장비들을 분리하고 해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선체에 남아 있는 기름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인공어초로 투하하여 어족 자원의 서식지나 산란지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99년~'03년까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발생한 폐선 166척이 인공어초로 이용되었다.

폐어선의 인공어초 활용은 다양한 어류들의 서식처와 산란처를 제공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멘트블록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되는 인공 어초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폐업어선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활용형태이다. 그러나 인공어초 시설 사업집행지침 및 관리규정상 폐업어선은 인공어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강제(鋼製)선박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척어선으로 발생하는 FRP선은 현재 인공어초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공공기관에서 활용

정부 또는 공공 기관에서 필요한 선박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과거 감척 사업으로 발생한 연근해어선은 '99~'06년까지 70척이 공공용도로 이용되었다.

<표 13-3>은 공공기관 폐어선활용사례를 나타낸다. 공공기관 활용은 수산해양 자원조사를 위한 시험조사선으로 이용하거나, 어장관리선 그리고 청소년 교육을 위한 현장체험 실습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13-2> 공공기관 폐어선 활용사례

활용방안	활용주체	내용
해양오염 방제선	한국 해양오염 방제조합	2006년도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는 2006년도 감척된 통영시 2척, 강릉시 3척, 삼척시 4척 합계 9척의 감척어선을 마산, 동해, 인천, 부산, 목포, 평택지부의 해양오염 방제선으로 개조하여 항만내 쓰레기수거, 순찰 및 해양오염 작업선으로 재활용
자원조사 및 어장관리선	한국해양연구원	2006년도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감척어선 1척을 시험조사선으로 개조하여 통영바다목장화사업의 자원조사, 중간육성장 운영 및 어장관리선 등으로 활용
시험조사선	경상남도는 통영	2007년 감척어선 1척을 도립수산자원연구소의 시험조사선으로 재활용
체험학습장 전시용활용	전남 해남군	2007년 자연사박물관 및 자연사랑센터를 찾아오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장 전시용으로 6척이 사용
조형물 사용	고흥군	2007년 '추억의 거리' 경관 조성사업에 감척어선 3척 활용
	신안군	2007년 감척어선 16척을 조형물로 개조하여 활용
해양수련 활동 재활용	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선외기 16대를 제공받아 청소년들의 해양수련 활동에 재활용

공공용으로 제공된 후에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즉, 공공용으로 제공된 어선은 사용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 후 일반인들이 구매하여 어업에 재진입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다. 노후 어선의 대체용으로 활용

감척어선 중 선령이 적고 상태가 양호한 어선은 감척되지 않은 채 잔존하는 노후 선박과 교체하여 어선 현대화를 위해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감척선박 대신에 교체선박을 폐선한다. 과거 재활용 선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용도가 노후어선 대체용으로서 263척이나 활용되었지만 2002년 이후 감척선박은 이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감척어선의 노후어선 대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잔존 노후어선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서 국가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연근해어선의 감척사업의 주목적은 어업 노력량을 감소시켜 어족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며, 감척어선을 노후선과 대체하면 어업 노력량 감소효과가 감소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근해 감척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판단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외국에 수출하거나 원조로 활용

감척선박 중에서 경제성이 높은 선박에 대하여 외국에 수출하거나 원조하여 감척비용을 줄이거나 국가간의 협력 사업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말한다. 이 방법은 '99년~'06년까지 연근해어선 178척이 이용되었으나 수출 선박이 한국 근해에 진입하여 조업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는 중단되고 있다. 그러나 원양어선의 경우 폐어선에 대해 외국에 수출하거나 원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감척어선의 외국수출의 경우 외화를 획득할 수 있고 감척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외국에 기증 또는 원조를 통하여 국제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거 여수시에서 러시아 와니노시와 교류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 와니노시에 어업용이 아닌 자원조사 및 연구용으로 폐어선 2척을 기증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에 수출한 선박이 우리나라 근해에 진입하여 조업하게 되면 연근해감척사업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과거 감척선박은 외국에 수출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각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국내 인근어장에 진출한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제기 되었었다.

마. 기타 활용 내용

(1) 사격훈련 시 목표물로 이용

해군 함정 또는 공군 항공기의 사격훈련시, 모의 목표물 대신 폐선박을 실제 사격 목표물로 이용 하는 방안이다. 2003년 경남도청의 폐어선을 해군 부대에서는 훈련용으로 활용하고, 폐어선은 해상 사격 후 가라앉혀 수족 자원이 머무를 수 있는 인공 어초로 활용하였다.

(2) 해저공원을 조성하여 해양레포츠 공간으로 이용

감척선박을 청정한 해양에 투하하여 수중에 해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스킨스쿠버들의 수중관광 및 레저목적에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폐선박 투하와 침몰선을 이용한 다이빙 포인트가 형성된 곳은 경북 포항시 송라면 조사리 앞바다의 화물선, 울진군 나곡리의 화물선, 제주도 서귀포 내항의 화물선, 그리고 비양도의 화물선 등 4군데 정도이다. 아직 국내에서 폐어선을 활용하여 해양레포츠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없으나 해양레포츠인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폐어선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육상 관광자원으로 이용

지역 관광사업에 이용하거나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관광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말한다. 2006년에 경남 통영시는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관리토록하고, 감척어선을 임진왜란 당시의 관옥선(조선시대의 군선)으로 개조하여 한산대첩축제(통영시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행사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행사 후에는 통영항에 거북선과 함께 전시하여 어린이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폐선을 재활용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 여수시에서는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한 조형물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폐선된 선박 4척을 재활용하였다.

(4) 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

2007년 KBS 드라마(대왕 세종) 제작용으로 9톤급 연안감척어선 2척이 재활용되었다.

3. 폐선처리주체

폐선처리주체는 감척사업의 사업집행주체와 동시에 고려해야하며, 연근해어선 또는 원양어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2007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해양수산부)의 사업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되어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감척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의 업무는 시도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과거 원양어선 처리실태 분석

1. 원양어선처리 기준

기존 원양어선감척사업에서의 어선처리는 규정에 폐선처리 및 수출, 경제협력사업 활용 등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폐선처리 대상어선의 수출
 - 폐선처리할 어선을 우리 어선과 조업구역이 상호 경쟁관계가 있는 국가를 제외한 제3국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수출 할 수 있다.
 - 폐선처리 대상어선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집행주체에 수출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의 책임아래 수출을 추진하여야 하며, 수출이 완료되면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로부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가 첨부된 어선말소 증명서를 제출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폐선처리 대상어선의 수출에 따른 보상비 지원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어업손실액만 지급한다.

- 감척 대상어선을 경제협력사업에 활용
 - 폐선처리 대상어선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정부·민간인(단체)이 일본,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경제협력 국가(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지정)을 받은 어선은 동협력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집행주체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어선의 해체시 발생하는 폐선처리비용을 어선의 수리·운반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 '98 원양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1997, 해양수산부)

2. 원양어선처리 실태

'98년~'04년까지 원양어업의 감척내역은 다음 <표 13-4>과 같다.

<표 13-3> 원양어업의 감척내역

(단위 : 척)

구 분		계	'98-'99년	'00-'01년	'02년	'03년	'04년
계	척	40	6	7	5	3	19
북해도트롤 1)	척	6	6				
꽁치붕수망 1)	척	10		7	3		
오징어채낚기	척	24			2	3	19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04)

2004년 원양어선감척기준에서는 폐업보상비만 지급하고 어선·어구 및 시설물은 사업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처분하도록 개정·시행하였다.

3. 원양어선 폐선처리주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폐선처리주체는 감척사업의 대상어선(연근해어선 또는 원양어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양어업어선의 경우 연근해어선과 달리 지리적으로 원거리 있어 폐선처리를 위해 감척대상 어선의 국내입항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고, 따라서 폐어선의 처리주체는 정부가 아닌 개별어업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4> 어선처리주체별 특성 분석

처리주체	특성	기타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감척사업비에서 폐선처리비용을 일괄 차감하여 전국적인 전문해체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폐선처리 가능함, 감시 부족으로 인해 불법투기 및 불법 전매의 가능성이 낮음. 중앙정부의 감척행정업무 가중됨. 원양어업의 경우 어업근거지가 멀기 때문에 일부 업종은 해외에서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가 폐선처리업체를 선정하면 처리 물량이 소량이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음. 중앙정부의 감척행정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음. 원양어선의 근거지는 외국이거나 부산항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거의 없음 	현행 연근해어선감척에서 도입
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척어업이 직접 폐선처리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감척행정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음. 감시 부족으로 인해 불법전매의 가능성이 내재함 	과거 원양어선감척사업에서 도입한 적 있음

4. 원양감척어선 처리방안

원양어업의 경우 폐어선외에 기존 연근해어선에서 활용한 방안(인공어초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안, 기타용도(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방안, 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 등은 원거리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 또는 어선·어구의 잔존가와 폐선시 고철가의 차액부

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어선·어구는 개별적으로 어업인이 처리하도록 제안하였다.

수익에 대한 폐업지원금만 지급하고 어선·어구의 처리를 어업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많은 경우 외국에 수출하거나 합작형태의 재 조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어족자원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연근해어선감척사업과는 추진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어선어구의 잔존가와 폐선시 고철가격의 차액분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인이 반드시 폐선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주체는 폐업지원금 지급시 폐선처리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부 록 I

1. 어업별 (기대)평년수익액

1) 북양트롤

구분	톤당 평년수익액(원)	톤당 평년수익액 × 3년(원)			
		100%	90%	80%	70%
3000톤미만	130,539	391,617	352,455	313,294	274,132
3000톤이상	64,873	194,619	175,157	155,695	136,233

2) 대서양트롤

구분	톤당 평년수익액(원)	톤당 평년수익액 × 3년(원)			
		100%	90%	80%	70%
300톤미만	75,117	225,351	202,816	180,281	157,746
300톤이상	60,644	181,932	163,739	145,546	127,352

3) 인도양트롤

구분	톤당 평년수익액(원)	톤당 평년수익액 × 3년(원)			
		100%	90%	80%	70%
300톤미만	75,117	225,351	202,816	180,281	157,746
300톤이상	60,644	181,932	163,739	145,546	127,352

2. 어선·어구 잔존가치액

가. 선령별 잔존가액

1) 정률법

정률법은 매년 점감하는 물건의 잔존가격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년 감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매년말의 상각잔고에 대하여 정률을 곱하여 상각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2) 내용년수 및 잔존가치율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별표3 규정을 참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선의 내용년수인 25년으로 하고 잔존가치율은 20%를 적용하였다.

나. 의장품 등의 가액

의장품등에 대한 직접적인 금액 산정은 현재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나, 담보평가나 경매평가의 사례를 비교하여 적용할 경우 선체신조 가격의 18~20%(중간 값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평가사례 결과를 토대로 적용하였다.

다. 고철가액

본 조사에서 고철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래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4~5월 시점으로 kg당 510~59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시점인 2008년 7월 3째 주 기준으로는 600~630원(중간 값 615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점차적으로 고철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체를 해체하여 고철로 판매할 경우 선체중량의 고철비율은 60~80%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가격산출식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선령 25년이상 기준의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 가격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text{선박톤수} \times \{1,298,200\text{원(톤당 어선잔존가)} + 246,658\text{원(톤당 어구잔존가)}\} - \text{선박톤수} \times 0.6(\text{고철비율}) \times 615,000\text{원(톤당 고철가)}$$

단, 선령 2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식의 “톤당 어선잔존가” 및 “톤당 어구잔존가” 대신에 <표 부록 2>에서 제시하는 경과년수(선령)에 따른 톤당 어선잔존가 및 톤당 어구잔존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표 부록-1> 선령에 따른 톤급별 어선잔존가액

경과 년수	잔존 년수	톤급별 어선 잔존가액(천원)				고철가격 (천원/톤)
		~500톤	~1,000톤	~2,000톤	~3,000톤	
-	25	3,245,500	6,491,000	12,982,000	19,473,000	615
1	24	3,043,146	6,086,292	12,172,585	18,258,877	615
2	23	2,853,409	5,706,818	11,413,636	17,120,453	615
3	22	2,675,502	5,351,003	10,702,006	16,053,010	615
4	21	2,508,687	5,017,373	10,034,746	15,052,120	615
5	20	2,352,272	4,704,545	9,409,090	14,113,634	615
6	19	2,205,610	4,411,221	8,822,442	13,233,663	615
7	18	2,068,093	4,136,186	8,272,371	12,408,557	615
8	17	1,939,149	3,878,298	7,756,597	11,634,895	615
9	16	1,818,245	3,636,490	7,272,980	10,909,470	615
10	15	1,704,879	3,409,758	6,819,517	10,229,275	615
11	14	1,598,582	3,197,163	6,394,326	9,591,490	615
12	13	1,498,912	2,997,823	5,995,646	8,993,469	615
13	12	1,405,456	2,810,912	5,621,823	8,432,735	615
14	11	1,317,827	2,635,654	5,271,308	7,906,962	615
15	10	1,235,662	2,471,324	4,942,647	7,413,971	615
16	9	1,158,619	2,317,239	4,634,478	6,951,717	615
17	8	1,086,381	2,172,761	4,345,522	6,518,284	615
18	7	1,018,646	2,037,292	4,074,583	6,111,875	615
19	6	955,134	1,910,268	3,820,537	5,730,805	615
20	5	895,583	1,791,165	3,582,330	5,373,495	615
21	4	839,744	1,679,488	3,358,975	5,038,463	615
22	3	787,387	1,574,773	3,149,546	4,724,319	615
23	2	738,294	1,476,588	2,953,175	4,429,763	615
24	1	692,262	1,384,524	2,769,047	4,153,571	615
25	-	649,100	1,298,200	2,596,400	3,894,600	615

*감정평가사 의견 및 조사결과

<표 부록-2> 선령에 따른 톤당 어선잔존가액 및 고철가격

경과년수(년)	잔존년수(년)	어선잔존가(원)	어구잔존가(원)	고철가격(원)
-	25	6,491,000	1,233,290	615,000
1	24	6,086,292	1,156,395	615,000
2	23	5,706,818	1,084,295	615,000
3	22	5,351,004	1,016,691	615,000
4	21	5,017,374	953,301	615,000
5	20	4,704,544	893,863	615,000
6	19	4,411,220	838,132	615,000
7	18	4,136,186	785,875	615,000
8	17	3,878,298	736,877	615,000
9	16	3,636,490	690,933	615,000
10	15	3,409,758	647,854	615,000
11	14	3,197,164	607,461	615,000
12	13	2,997,824	569,587	615,000
13	12	2,810,912	534,073	615,000
14	11	2,635,654	500,774	615,000
15	10	2,471,324	469,552	615,000
16	9	2,317,238	440,275	615,000
17	8	2,172,762	412,825	615,000
18	7	2,037,292	387,086	615,000
19	6	1,910,268	362,951	615,000
20	5	1,791,166	340,322	615,000
21	4	1,679,488	319,103	615,000
22	3	1,574,774	299,207	615,000
23	2	1,476,588	280,552	615,000
24	1	1,384,524	263,060	615,000
25	-	1,298,200	246,658	615,000

※어구잔존가격은 선체 가격의 19%를 적용함

<표 부록-3> 어선규모별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입찰기초가격(선령 25년이상)
(단위: 천원)

구분	선박규모							
	100톤	150톤	250톤	350톤	450톤	550톤	650톤	750톤
잔존가치	154,486	231,729	386,215	540,700	695,186	849,672	1,004,158	1,158,644
고철가	36,900	55,350	92,250	129,150	166,050	202,950	239,850	276,750
차액	117,586	176,379	293,965	411,550	529,136	646,722	764,308	881,894

구분	선박규모						
	850톤	950톤	1,500톤	2,500톤	3,500톤	4,500톤	5,000톤
잔존가치	1,313,129	1,467,615	2,317,287	3,862,145	5,407,003	6,951,861	7,724,290
고철가	313,650	350,550	553,500	922,500	1,291,500	1,660,500	1,845,000
차액	999,479	1,117,065	1,763,787	2,939,645	4,115,503	5,291,361	5,879,290

3.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 폐업지원금 지급 방법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본 연구)	본 연구에서의 제시 근거
지원금지급방법	입찰제 시행	정액제 시행	입찰제 도입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방안임. 연안어업에서 입증
지원대상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선체확인비용 및 어선해체처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선체확인비용 및 어선해체처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	폐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액-폐선시 고철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지원규모	어업별·톤급별 3개년 평년수익액의 70%	어업별·톤급별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	어업별·톤급별 3개년 평년수익액의 70%~ 100% 범위내에서 결정	기존 감척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
어선처리방식	개별평가에 의한 평가금액지원	개별평가에 의한 평가금액지원	선주 임의처분	원양어선의 경우 사업집행주체가 폐선처리 어려움.
사업집행주체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업대상업종 및 척수가 적어 단일창구에서 사업집행 가능
감척지원조건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국고보조 100%	국고보조 100%	원양어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
입찰성립요건	입찰대상 업종별로 입찰대상척수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등록	-	입찰대상척수의 1.1배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등록	복수입찰자 도입을 위한 근거마련
사업대상자결정방법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후 전체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를 결정	신청자중 감척사업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	입찰대상척수 범위내 우선 사업대상자(1차 낙찰자)로 결정함. 나머지 입찰자를 통합하여 낙찰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감척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결정함	연안어업과의 형평성 및 원양어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입찰보증금 및 사업포기자 제재사항	향후 5년간 어선 감척사업 참여불가	향후 5년간 어선 감척사업 참여불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정부 귀속, 향후 5년간 어선 감척사업 참여불가	사업포기자 제재사항 강화
사업대상자 및 입찰신청자격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	선령 6년 ~ 20년에 이르기까지 업종별 기준 다름.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26년 이상인 어선	업종별 원양어선의 선령분포 특성을 반영

부 록 II

한미 FTA체결에 따른 원양어업 폐업지원금 집행지침

1. 목 적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원양어업 폐업지원금지급 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집행절차를 규정함.

2. 추진방향

- 가. 한미 FTA체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원양어업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급함.
- 나. 어업인이 폐업을 원하지 않고 한미 FTA체결로 인한 영향 정도가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함.

3. 사업대상 및 절차

- (1)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원양어업 중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지정하여 정한 어업에 한한다.
- (3) 1차년도 폐업지원금지급 대상 업종은 북양트롤, 해외기지트롤(대서양), 해외기지트롤(인도양) 이다.

4.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1) 북양트롤은 폐업지원금에 한하여 입찰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어업인들의 폐선처리 및 허가취소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1) 해외기지트롤(대서양, 인도양)은 폐업지원금 및 고철가격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액을 포함하여 입찰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어업인들의 폐선처리 및 허가취소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및 사업비

(단위 : 척, 백만원)

구분	사업물량	사업비
기지트롤(대서양)	15	-
북양트롤	1	-
기지트롤(인도양)	1	-
계	17	7,825

※ 사업물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북양트롤에 대한 어선어구잔존가치가 보상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나. 사업집행주체

(1) 사업집행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한국원양산업협회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사업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

(2) 국립수산과학원장, 수협중앙회장, 선박안전검기술공단이사장은 사업집행주체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사업시행체계

(1) 농림수산식품부

- (가) 사업집행지침수립
- (나) 사업대상 업종선정
- (다)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 (라) 입찰집행
- (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바) 지원금 지급 및 정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를 한국원양산업협회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 지원대상 및 조건

- (1) 북양트롤은 폐업지원금만 지급하고 기지트롤(대서양, 인도양)은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의 잔존가치와 고철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 (2) 해당업종별로 폐업지원금(또는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잔존가와 고철가의 차액)의 입찰기초가격으로 제시하면 입찰참가자 본인이 직접 희망하는 금액을 입찰서

로 표시하여 결정한다.

6.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1)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으며, 이 신청자격은 입찰참가자격과 동일하다.
- (가)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어업의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2년 전부터 본인 또는 회사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또는 원양어획물 반입실적보고를 한 자.
- ①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라) 원양어선 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26년 이상인 어선에 한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사업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자격은 입찰참가자격 제외대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가)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하여 감척한 경험이 있는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 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나) 종전에 원양어업 구조조정사업의 대상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후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되

지 않은 자.

- (다)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다만, 일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라) 「2000년도,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적용받아 감척된 폐업어선을 어선 현대화사업으로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자(어선원부, 어업허가 등의 기재사항이 '99.5.30 이후 소유권 또는 선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다만, 어선·어구를 어업인들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7. 입찰추진절차 및 방법

가. 입찰안내

- (1) 사업집행주체는 입찰공고 이전에 “세부사업집행계획”,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등 어업인들이 감척참가요령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대상 허가 어업자, 관련행정기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 (2) 사업집행주체는 입찰참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나. 입찰공고

- (1) 입찰은 입찰공고문에 의하되 농림수산식품부 및 원양산업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원양산업협회에 문서로 발송하여 모든 원양어업인들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입찰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나) 입찰방법(직접방문입찰)
 -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라) 입찰일시 및 장소
 - (마) 계약체결방법
 - (바) 입찰참가자격
 -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 (아)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단위별 기초가격

- (자) 잔여잔존가치(어선·어구잔존가치-선박고철가격)의 기초가격
 - (차) 감척 소요 예산(폐업지원금 및 잔여잔존가치)
 - (카)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3) 입찰공고문은 표준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 신청

- (1) 입찰참가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당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서식1)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 (마) 어선원부 1부
 - (바) 당해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폐지동의서 각 1부(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서식2)
 - (사) 인감증명서 1부
 - (아)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 (자)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 (차) 실적수당 지급 각서 1부(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서식7)
 - (카)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라. 입찰등록

-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등록서(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 (2) 입찰등록은 등록마감일 일과시간이내(18시)로 하며, 입찰신청시 제출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입찰성립요건

- (1) 입찰대상 업종별로 입찰대상척수의 1.1배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등록한 업종은 입찰이 성립되고, 업종별로 1.1배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등록하지 않은 업종은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 (2)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업종은 해당업종별로 재공고입찰한다.
- (3) 입찰대상척수와 등록인원의 비율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명으로 한다.

바. 입찰서의 제출

- (1) 입찰등록자는 지정된 기일에 입찰서를 작성하여 밀봉한 후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예정가격 작성 비치

- (1) 사업집행주체는 업종별·해역별, 톤급단위별 기초가격의 $\pm 2\%$ 범위내에서 단일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5개를 선정하여 산정된 평균가를 최종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2)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은 밀봉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입찰집행

- (1) 입찰서의 제출은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입찰참가자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사업집행주체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서를 개찰한다.
- (3) 사업집행주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 결과를 토대로 낙찰자(사업대상자)를 결정한다.
- (4) 입찰서 개봉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자. 낙찰자(사업대상자) 결정 방법

- (1) 각 업종·해역별로 예정가격과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과의 비율(이하 ‘낙찰율’이라 한다)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해당업종 입찰대상척수의 100%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사업대상자(1차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때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산정한다.
- (2) 1차 낙찰자가 아닌 모든 입찰자를 통합하여 낙찰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전체 감척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2차 낙찰자)로 결정한다.
- (3) 1차낙찰자와 2차낙찰자를 모두 사업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예비후보자”로 관리 한다.
- (4) 입찰결과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다.
- (5)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업종별로 재공고입찰 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에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에 의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차. 최종사업자 선정

- (1) 사업집행주체는 “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전체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종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어업인에게 통보한다.
- (2)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중 낙찰률이 가장 낮은 자부터 추가로 최종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카. 입찰보증금 및 사업포기자 제재 사항

- (1) 낙찰자 입찰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및 기타 입찰보증금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
- (2)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정부에 귀속하고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타. 입찰결과 안내

- (1) 사업집행주체는 입찰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원양어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 (2) 사업집행주체가 입찰결과를 통보할 때 사업의 집행절차,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파. 기타

- (1)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의한다.

8. 계약체결 및 계약불이행시 제제 조치

가. 계약체결

- (1) 사업집행주체는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표준계약서(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을 따로 정하여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 (2) 사업집행주체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사항을 이행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3) 사업집행주체가 지원금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결정 내용과 수산업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의 허가가 폐지되고 폐지될 것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확정, 지원금 집행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계약불이행시 제재 조치

- (1)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9. 감척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가. 사업대상자, 최종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사업대상자, 최종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0. 폐업어선 처리

가. 대상어선의 어업인 임의처분

- (1) 어선·어구 잔존가치와 선박해체처리시 고철가격의 차액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선주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 (2) 해체대상어선에 대한 선주 임의처분 형태는 해체하거나, 외국에 매각 또는 어업이 아닌 화물선, 여객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3) 임의 처분한 결과는 1개월 이내에 사업집행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해체처리

- (1) 어선·어구 잔존가치와 선박해체처리시 고철가격의 차액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해체를 원칙으로 한다.

- (2) 어업인은 선박해체처리업체에서 처리한 후 증빙서류를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처리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1.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가. 사업집행주체는 최종사업대상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어선·어구 잔존가치와 선박해체처리시 고철가격의 차액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폐선처리업체와 폐선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감척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안에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E = A - \{ C - (C \times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잔존가치평가액)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금액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계약상대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사업대상자 및 최종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감척사업비 지원전에 해당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잔존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지원금의 집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한다.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가) 사업자의 확정 및 지원금 집행 결정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포함하고 사업 완료 후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붙임 1)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 (목적) 이 유의서는 원양어선폐업지원금지급사업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입찰참가신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집행주체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 (1) 나, 다, 라의 경우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마. 어선원부 1부
 - 바. 당해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허가폐지동의서 각 1부
 - 사. 인감증명서 1부
 - 아. 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 자.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 차. 실적수당 지급 각서 1부
 - 카.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부받을 수 있다
 - 가. 입찰공고문
 - 나.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 다. 입찰참가신청서
 - 라.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
 - 마. 어선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 바. 기타 참고자료

5.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어선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6. (입찰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은 입찰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8.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전에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9. (경쟁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대상업종별로 입찰대상척수의 1.1배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등록하여야 성립된다.
10.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나.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라.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마.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바.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 사.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전에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 아.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 11.(입찰의 연기) ①사업집행주체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기간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12.(재공고입찰) ①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업종별 입찰대상척수의 1.1배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결과 유효한 사업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13.(사업대상자의 결정) ① 입찰에 부치는 각 업종별로 예정가격과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과의 비율(이하 ‘낙찰율’이라 한다)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해당업종 입찰대상척수의 100%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사업대상자(1차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때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산정한다.
- ② 1차 낙찰자가 아닌 모든 입찰자를 통합하여 낙찰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전체 예산의 100%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2차 낙찰자)로 결정한다.
- ③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④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자, 최종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계약포기자 또는 계약미이행자가 발생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찰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 ⑤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⑥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비율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낙찰률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가 낮은 자, 선령이 오래된 어선 순으로 서열을 결정한다.
- 14.(입찰결과 통지) 입찰결과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한다.
- 15.(어선·어구 등 시설물의 잔존가치) ①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 업종에 대한 어선·어구 등 시설물의 잔존가치와 폐선처리시 고철가격의 차액을 입찰기초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 ②어선·어구 등 시설물의 잔존가치와 폐선처리시 고철가격의 차액을 입찰기초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

거나 파손되면 다음에 따라 입찰기초금액을 산정한다.

(가) 사업자 선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사업자 선정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기준액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함한다.

16.(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①입찰결과를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사업대상자가 포기하거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중 낙찰률이 낮은 자순으로 추가로 최종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7.(계약의 체결) ①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자(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와 구비서류를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집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9.(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①사업집행주체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최종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 및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0.(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1.(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사업집행주체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2.(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식 2)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가. 주소 및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 . . . ()		
어선명		어선번호	어업의 명칭.종류		
건조일자			톤수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선체재질			기관종류	육상디젤(), 디젤()	마력

상기 본인은 년 원양어업폐업지원금지급사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어업허가폐지에 동의할 것을 확인함

2009. . .

위원인 주소

성명 (인)

(서식 4-2)

입찰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서접수 기간	2009. . . .~2009.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선박재원	선 명			어업의 종류 북양트롤
	톤수(신)			건조일자
<p>본인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기관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업허가를 반납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입찰자 (인감도장)</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귀하</p>				

(서식 5)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명 : _____ • 주 소 : _____ • 연락처 : _____ • 주민등록번호 _____	
계약내용	어 선 명		어업의 종류(톤수)
	계 약 금 액	일금 _____ 원정(₩ _____) - 폐업지원금 : _____	
	지 체 상 금 율	0.15%	
	어업허가증 반납일자	2009. . 까지	
	어선 반납일자/장소	2009. . 까지/	
	계약불이행시 제재 조건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p>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어선감척사업 최종사업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붙임서류 :1. 어선감척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부. (생략) 3. 어선 장비 등 물품내역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09. .</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상대자 (인)</p>			

(서식 7)

실업수당 지급 각서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원양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선원법 제40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에 고용된 어선원에게 2개월분의 실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 . .

위원인 성 명 (인)

귀하

(참고자료 2)

감척사업 추진절차

추진순서	수행 기관	내 용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원양어선 감척물량 및 소요예산 배정
사업집행지침 수립·시행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 입찰신청자격, 제출서류, 입찰방법,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결정
사업안내/ 입찰공고/ 사업홍보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협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 ○ 기초가격, 예산,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장소, 입찰방법,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입찰참가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참가신청서류 접수 ○ 입찰참가자격 유무 확인 후 유자격자에게는 입찰절차 안내
입찰서 접수	농림수산식품부	○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예정가격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 기초가격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밀봉 보관
개찰	농림수산식품부	○ 입찰서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
사업대상자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 입찰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결정 ○ 사업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업종은 재공고 입찰
입찰결과 안내	농림수산식품부	○ 입찰신청자 모두에게 입찰결과를 안내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농림수산식품부	○ 예산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 최종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어업허가취소	농림수산식품부	○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말소,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지급	농림수산식품부	○ 폐업지원금 입찰금액을 지급

(참고자료 3)

표준입찰공고문

○○ 공고 제2009- 호

원양어선 감척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원양어선 감척(○○업종)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 / ○○ ○○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09.○.○~2009.○.○ / ○○ ○○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09.○.○.○○ / 농림수산식품부
6.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업종별 감척물량 100%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 모든 입찰자의 낙찰률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고 감척예산의 100%내에서 추가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나.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도 사업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방법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최종사업자 선정 후 10일 이내
 - 나. 계약이행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사업대상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 1)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어업의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2년 전부터 본인 또는 회사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또는 원양어획물 반입실적보고를 한 자.
 - ①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 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3)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26년 이상인 어선에 한한다.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1)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하여 감척한 경험이 있는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 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2)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의 대상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후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다만, 일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종전의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사업에 의해 감척된 폐업어선을 어선 현대화사업으로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자(어선원부, 어업허가등의 기재사항이 '99.5.30 이후 소유권 또는 선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다만, 어업인이 어선 잔존가치를 포기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9. 입찰의 무효 :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제10항에 의합니다.

10. 입찰참가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 (마) 어선원부 1부
- (바) 당해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폐지동의서 각 1부
- (사) 인감증명서 1부
- (아)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 (자)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 (차) 실적수당 지급 각서 1부
- (카)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1.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업종	톤 미만	톤 이상~톤 미만	톤 이상~톤 미만	톤 이상
○○업종				
○○업종				

가. 기초가격은 계약적인 금액에 불과하고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의 ±2%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나. 북양트롤은 폐업지원금에 한하며, 기지트롤(인도양, 대서양)은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와 폐선처리시 고찰가격의 차액을 기초금액에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12. 소요예산

가. 입찰에 부치는 업종별 대상척수와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입찰대상척수	예산
○○		○○○백만원
○○		○○○백만원

13.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감척사업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과(전화번호 ○○○-○○○○) 또는 한국원양산업협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 ○.

농림수산식품부 입찰집행관

(참고자료 5)

입찰서(예시)

입찰서				
입찰내용	광고번호	제 2009- 〇〇호	입찰서접수기간	2009. . .
	건명	2009년 원양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입찰 (원양어업 〇〇업종, 〇톤)		
	금액	금 오천사백오십이만오천원정 (₩ 54,525,000)		
입찰자	성명	〇 〇 〇	주민등록번호	123456-9101112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료88 2동 농림수산식품부	전화번호	011-123-4567
선박재원	선명	〇 〇 〇	업종 및 조업해역	기지트롤어업(대서양)
	톤수(신)	323.1톤	건조일자	1980. 9. 9
<p>본인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기관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업허가를 반납하고 어선을 폐선처리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입찰자 아무개 (인감도장 날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 본 입찰서 예시를 입찰장에 미리 부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부 록 III

FTA 체결에 따른 직접피해지원 연구 - 원양어업 업종별 수익성 조사 -

2008. 4

전남대/군산대

<인사말씀>

본 설문 조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는 「FTA 체결에 따른 직접피해지원 계획 수립 연구」와 관련하여, 원양어업 부문의 피해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원양어업에 대한 업종별, 어업경영체별, 경영규모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원양어업 부문의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귀사의 답변과 의견이 향후 FTA 체결에 따른 원양어업 부문의 피해지원 뿐 아니라 WTO, DDA 등과 관련한 원양어업 전업종의 정책방안 마련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조사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회신 기한은 5월 9일 (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서 내용은 연구진 이외에는 보안이 유지되며, 연구 목적 이외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 4월
전남대/군산대

- ▶ 조사책임: 군산대 김수관 (sookwan@kunsan.ac.kr, 063-469-4834/010-4449-4834)
- ▶ 1, 2, 3항: 군산대 최강득 (choikd9@kunsan.ac.kr, 063-469-4493/010-6654-5755)
- ▶ 4, 5, 6항: 군산대 김재희 (jheekim@kunsan.ac.kr, 063-469-4487/019-375-2368)
- ▶ 7, 8항: 전남대 여동준 (djyeo@jnu.ac.kr, 061-659-3133/011-341-8095)

설문지 회신 주소

Email: jheekim@kunsan.ac.kr

우편: 전북 군산시 대학로 1170, 국립군산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김재희

FAX: 063-469-4481/4491

<원양어업 업종별 실태 및 조사표>

1. 일반현황 (업체별 작성)

1-1. 응답자

성 명		직 위 :
회사명		설립연도 : 년 월
주 소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1-2. 어업 및 조업관계

구 분		주업종	부업종1	부업종2	부업종3	부업종4
어업허가 업종명						
업종별 선박수						
주조업 어장						
주조업 어종						
업종별 종사원수	내국인					
	외국인					

* 만일 내(외)국인 20명, 해기사 5명, 부원 15명의 경우 '20(5/15)'와 같이 기입

3. 조업경비 (선박별로 1매씩 작성)

선박명: 예시) 해림2호(톤수, 진수연도, 합작유무) (단위 : 만원)

항목 \ 연도	2005	2006	2007	비고
어로경비				
1. 연료비				
2. 포장비				
3. 이료비				
노 무 비				
1. 급료				
2. 상여금				
3. 제수당				
4. 퇴직급여				
5. 잡금				
경 비				
1. 도장비				기타에는 17개 항목에는 없으나 중요한 지출을 기입
2. 소모품비				
3. 소모어구				
4. 보험료				
5. 제세공과				
6. 항만제비				
7. 지급수수료				
8. 통신비				
9. 복리후생비				
10. 수선비				
11. 여비교통비				
12. 운반제비				
13. 입어제비				
14. 용선료				
15. 냉동보관비				
16. 감가상각비				
17. 잡비				
18. 기타()				
당기어로원가				
어획물매출액				
국 내				
수 출				

* 선박명 뒤의 ()안에 선박 톤수와 진수연도 기록하며, 양식은 선박 수에 따라 복사해 사용

4. 감척의 고려항목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조사 (업체별 작성)

■ 본 조사는 원양어선 감척에 관한 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네트워크 의사결정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모형을 기반으로 하며, 감척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화 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박스로 묶어진 그룹 (FTA, 조업여건, 수익성, 감척의지)을 클러스터 (cluster)라 하고, 박스 안의 세부항목 (예: FTA로 인한 생산감소, 연안국규제,...,수익성확보, 감척선호도)을 노드 (node)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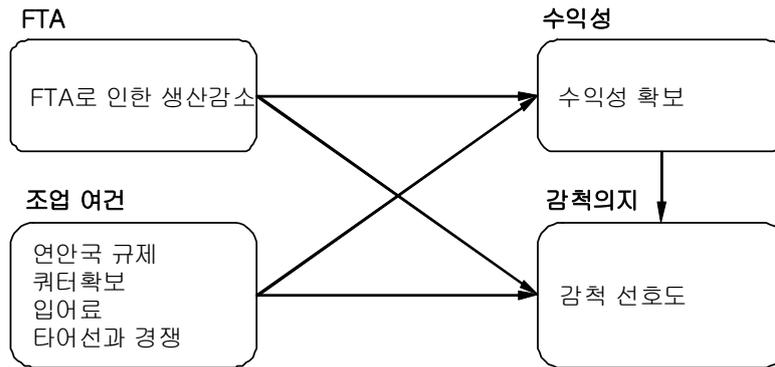


그림 1 감척 고려 요소 간 관계도

■ 설문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원양 업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시, “FTA1)로 인한 영향(A)”이 “조업여건(B)”보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FTA로 인한 영향(A)			√							조업여건(B)
	5	4	3	2	1	2	3	4	5	

- 5 : A가 B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Extreme importance)
- 4 : A가 B보다 매우 중요하다 (Very strong importance)
- 3 : A가 B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Strong importance)
- 2 : A가 B보다 조금 중요하다 (Moderate importance)
- 1 : A와 B는 중요성이 똑같다 (Equal importance)

- 주의: 이 설문의 답변에 일관성을 기해 주십시오. 가령, 포도, 사과, 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예로 들면, “포도를 사과보다 매우 선호(4)”하고 “사과를 배보다 조금 선호(3)”한다고 답했다면, 마지막 포도와 배의 비교에서 “포도를 배보다 절대적으로 선호(5)”하거나, 최소한 “포도를 배보다 매우 선호(4)”로 답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본 4번 항목의 설문에서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설문의 일관성 지수를 산정하고 이 수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설문을 제외할 예정이오니,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심껏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FTA를 의미함

4-1 클러스터 비교를 위한 설문입니다.

1)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직접피해지원액 산정 시, 아래의 두 평가기준 그룹 (cluster) 중 어느 기준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FTA로 인한 영향	<input type="text"/>	조업여건								
	5	4	3	2	1	2	3	4	5	
FTA로 인한 영향	<input type="text"/>	수익성								
	5	4	3	2	1	2	3	4	5	
FTA로 인한 영향	<input type="text"/>	업계의 감척의지								
	5	4	3	2	1	2	3	4	5	
조업여건	<input type="text"/>	수익성								
	5	4	3	2	1	2	3	4	5	
조업여건	<input type="text"/>	업계의 감척의지								
	5	4	3	2	1	2	3	4	5	
수익성	<input type="text"/>	업계의 감척의지								
	5	4	3	2	1	2	3	4	5	

2) FTA영향 (cluster)이 아래의 두 평가기준 그룹 (cluster)중 어느 기준에 얼마나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척의지	<input type="text"/>	수익성								
	5	4	3	2	1	2	3	4	5	

4-2. 노드 비교를 위한 설문입니다.

1) 조업여건 기준 그룹 (cluster) 내의 4개 세부항목 (노드) (예: 연안국 규제, 입어료, 쿼터확보, 타어선과 경쟁)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체크하시오.

연안국 규제	<input type="text"/>	입어료								
	5	4	3	2	1	2	3	4	5	
연안국 규제	<input type="text"/>	쿼터 확보								
	5	4	3	2	1	2	3	4	5	
연안국 규제	<input type="text"/>	타어선과 경쟁								
	5	4	3	2	1	2	3	4	5	
입어료	<input type="text"/>	쿼터 확보								
	5	4	3	2	1	2	3	4	5	
입어료	<input type="text"/>	타어선과 경쟁								
	5	4	3	2	1	2	3	4	5	
쿼터 확보	<input type="text"/>	타어선과 경쟁								
	5	4	3	2	1	2	3	4	5	

5. 감척 관련 고려항목에 대한 각 업종의 민감도 조사 (업체별 작성)

- ▣ 아래 조사는 감척의 고려요소가 각 업종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영향도의 크기를 고려해서 1(전혀 무관)과 5(절대적으로 큰 관계가 있음)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귀 회사와 무관한 업종으로 정량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 / 감척의 고려요소	FTA 피해	연안국 규제	쿼터 확보 어려움	입어료 부담	조업 경쟁여건	경영 수익성	감척 요구
북양트롤							
북양트롤 (합작)							
기지트롤 (대서양)							
기지트롤 (포클랜드)							
기지트롤 (인도양)							
기지트롤 (인도네시아)							
기지트롤 (뉴질랜드)							
새우트롤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채낚기							
대구저연승							
꽂치붕수망							
모선식 외줄낚시							
메로저연승							

6. 감척 의지 조사 (업체별 작성)

6-1. 다음 조사는 귀 회사의 감척의지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업종별, 톤급별** 감척의지와, (계획이 있을 경우)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의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시)

어선 업종	톤급 (톤)	보유 선박수	감척 의지			희망 감척어선 수					
			강	중	약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이후
북양 트롤	300톤 미만	-									
	300~400	-									
	400~500	2			√						
	500~1,000	3		√			1				
	1,000~2,000	1	√			1					
	3,000~4,000	-									
	4,000톤 이상	-									
대서양 트롤	300톤 미만	2			√						
	300~400	3	√				3				
	500톤 이상	-									

(설문 작성용 시트)

어선 업종	톤급 (톤)	보유 선박수	감척 의지			희망 감척어선 수					
			강	중	약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이후
()	300톤 미만										
	300~400										
	400~500										
	500~1,000										
	1,000~2,000										
	3,000~4,000										
	4,000톤 이상										
()	300톤 미만										
	300~400										
	400~500										
	500~1,000										
	1,000~2,000										
	3,000~4,000										
	4,000톤 이상										
()	300톤 미만										
	300~400										
	400~500										
	500~1,000										
	1,000~2,000										
	3,000~4,000										
	4,000톤 이상										

* 업종수가 많아 본 양식이 부족할 시는 복사하여 사용

6-2. 다음은 폐업지원 시 입찰기초가격에 대한 귀 회사의 선호도 조사를 위한 설문입니다. 최대한 높은 입찰기초가격을 선호하시겠지만, 가급적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입찰기초가	감척 의지				
		반드시 참여	가급적 참여	보통	가급적 불참	반드시 불참
북양 트롤	3년간 수익 × 90%이상		√			
	3년간 수익 × 80%		√			
	3년간 수익 × 70%			√		
	3년간 수익 × 60%					√
	3년간 수익 × 50%이하					√
대서양 트롤	3년간 수익 × 90%이상	√				
	3년간 수익 × 80%	√				
	3년간 수익 × 70%		√			
	3년간 수익 × 60%				√	
	3년간 수익 × 50%이하				√	

* 여기서 3년간 수익이라 함은 연평균 수익이 1억원일 경우×3년=3억을 의미함

(설문 작성용 시트)

	입찰기초가	감척 의지				
		반드시 참여	가급적 참여	보통	가급적 불참	반드시 불참
()	3년간 수익 × 90%이상					
	3년간 수익 × 80%					
	3년간 수익 × 70%					
	3년간 수익 × 60%					
	3년간 수익 × 50%이하					
()	3년간 수익 × 90%이상					
	3년간 수익 × 80%					
	3년간 수익 × 70%					
	3년간 수익 × 60%					
	3년간 수익 × 50%이하					
()	3년간 수익 × 90%이상					
	3년간 수익 × 80%					
	3년간 수익 × 70%					
	3년간 수익 × 60%					
	3년간 수익 × 50%이하					
()	3년간 수익 × 90%이상					
	3년간 수익 × 80%					
	3년간 수익 × 70%					
	3년간 수익 × 60%					
	3년간 수익 × 50%이하					

* 업종수가 많아 본 양식이 부족할 시는 복사하여 사용

